

釜山史料叢書 12

국역왜인구청등록(Ⅱ)

國譯 鄭景柱

監修 李源鈞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5

일 러 두 기

- 이 책은 왜인구정등록 전 8책(인조 15년, 1657년 ~ 경종 4년, 1724년) 중 제2책(1653. 3 ~ 1664. 12)을 국역한 것이다.
- 이 책은 조선후기 대일외교 및 무역과 관계되는 공문서를 발췌한 것이므로 국역문은 가능한 한 원문의 취지에 가깝게 직역을 하되, 외교 및 무역관례상 관습적으로 굳어진 용어는 가급적 그대로 사용하였다.
- 이 책은 조선시대 공용문서를 발췌한 것이므로 이두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대개 이두의 본 뜻을 살려 국역하였으나, 간혹 문장의 호흡이 너무 길어 문맥을 이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중간에 끊어 고친 곳이 있다.
- 원문의 어휘 중에 간혹 지금의 관용 표기와 다른 경우는, 재래의 관습을 중시하여 대개 원문대로 살렸다. 다만 필사 과정의 실수로 인한 오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각주에 그 사실을 밝히고 고쳤다.
- 일본 인명(人名) 및 지명(地名)에 사용된 한자는 일본 측의 표음(表音)이 분명한 경우에는 풀어썼으나, 조선 측의 한자음이 관용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조선 측의 한자음으로 표기하였다.

국역 왜인구청등록(Ⅱ)

(1653. 3~1664. 12)

차 례

□ 일러두기

□ 차 례

□ 국역 왜인구청등록(Ⅱ) 해제 13

□ 癸巳(1653年, 孝宗 4年)

- 3월 5일 倭人이 求請한 樂器·祭器와 鑄成燈籠 等物을 入結함 39
 - 樂器·祭器는 自給하고 牛黃은 換質함
 - 甲冑 入給은 감시 保留함
- 5월 21일 副特送正官 平成友가 醫員 李時稔의 下來와 求請藥材의 許質을 催促함 41
 - 李時稔은 이미 給馬下送했으며 藥材는 隨便覓給할 것

□ 甲午(1654年, 孝宗 5年)

- 3월 20일 差倭가 江戸에 있는 島主에게 燈籠鑄鐵에 필요한 鐵鐵의 出送을 要請 42
- 4월 10일 東萊府使가 恕首座에게 燈籠鑄鐵에 필요한 鐵鐵과 樣本の 出送을 催促함 42
- 6월 20일 燈籠監董事知譯官의 發送을 미룬 掌務譯官을 推考할 것 43
 - 甲午條特送船正官 一行이 燈籠鑄成에 필요한 樣本을 가지고 出來함
 - 燈籠鑄成에 필요한 所入鐵鐵은 館中에서 計納함

- 監童事知譯官을 急速差送할 것
- 6월 23일 燈寵鑄成監童事知譯官으로 金謹行을 察任할 것 45
- 7월 21일 館守倭 坪成久가 燈寵 鑄成時 刻銘을 要請 45
 - 燈寵銘을 撰出해 보낼 것

□ 乙未(1655年, 孝宗 6年)

- 1월 6일 鑄成 燈寵의 銘文中 「先賀大君」을 「大猷院殿」으로 改書할 것 47
- 25일 倭人求請 白蠟燭은 禁軍을 別定해 下送할 것 49
- 5월 18일 差倭 平成連이 要求한 大金線 等 6種의 求請物을 許賃함 49
- 23일 館守倭 平成久가 求請한 各色油紙 胡桃 松子를 慶尙道에서
隨便賃賃함 50
- 7월 5일 燔造差倭가 要請한 沐浴湯器의 鑄成을 許諾하고 善手匠人을 入給함 50
- 9월 16일 撰完된 燈寵銘은 吳竣에게 善寫下送케 할 것 52

□ 丙申(1656年, 孝宗 7年)

- 8월 26일 新館守 橘成稅가 幡摩守 要請으로 鋤器를 要請함 52
 - 倭人求請 鋤器를 量宣造給할 것

□ 丁酉(1657年, 孝宗 8年)

- 1월 26일 漂風人領來差倭 籐成元이 島主求賃物目 15種에 대한 許賃를 要請 53
 - 倭人求賃物目 및 그에 대한 防塞與否와 減定數
 - 難辦物은 防塞하고 上上人蔘 等은 減定하고 五味子 等은 換賃해줄 것
- 5월 3일 差倭 籐成之가 島主 求賃虎皮 70張의 許賃 要請 55
 - 差倭에 대한 接慰官 및 差備譯官 差定
 - 求賃虎皮는 減給하되 差倭의 反應을 본 후 다시 稟處할 것
- 5일 東萊에 下送한 求賃虎皮에 대한 禮曹公事를 別定禁軍하여 追還할 것 57
 - 島主求賃書契의 措辭에 대한 前規 考出
- 20일 島主求賃虎皮事는 廟堂에서 稟處할 것 58

- 島主求質虎皮에 대한 許質與否는 東萊府使의 馳啓를 본 후 處理할 것
- 東萊府使는 差倭 接慰官 差定 및 兩度宴贈給禮單 에 대해 馳報할 것
- 虎皮求質差倭 籐成之에 대한 兩度宴禮單物目
- 對馬島主에 대한 回禮物目
- 6월 5일 差倭에 대한 設宴 遲滯로 東萊府使 元萬石 推考 60
- 8일 求質虎皮 중 40張을 許質하고 回答書契를 撰出하여 下送할 것 61
- 11일 差倭가 回答書契에 島主의 江戸 入往 遲滯事由 添入 要請 63
 - 回答書契 措辭 添入을 不許함
- 7월 17일 虎皮求質差倭에 대한 上船宴 設宴 및 禮單雜物 贈給 64
- 8월 7일 差倭 籐成之 入歸 報告 64

□ 戊戌(1658年, 孝宗 9年)

- 1월 2일 倭人이 前對馬島主 埋葬時 所用物品을 求請 64
 - 求請物目
 - 倭人 求請物을 許質함
- 2월 30일 倭人에게 島主喪需用 求請物을 入給함 66
 - 該曹 下送의 品劣한 大紗 4匹은 急速 改備下送할 것
 - 紗段香物은 折價許給하지 말고 白給할 것
- 3월 29일 倭人이 平義眞 婚需用雜物의 求質를 要請 67
 - 求質物目 및 그에 대한 覓給防塞與否와 差備該司
 - 慶尙道 및 東萊府 可備之物은 東萊府使의 開錄別單대로할 것
 - 該曹覓給之物 중 難得之物은 半만 下送하고 易得之物은 所請 대로 準許할 것
- 4월 13일 倭人求請物件別單을 別定譯官하여 下送할 것 69
 - 倭人求質別單
- 9월 22일 왜인이 島主求質物件의 許質 要請 70
 - 白照布는 防塞하고 柏子 胡桃는 許質함
 - 乾大口漁와 公木은 年例應船條로 入給함
 - 黃筆 眞墨은 該曹에서 別擇好品하여 下送 許質케할 것

- 求貿物目別紙謄書
- 11월 3일 館守가 島主 求貿物인 生鶯 生野鶴 馬省의 許貿 要請 72
 - 生鶯은 防塞하고 野鶴은 慶尙道에서 隨便覓給할 것
 - 馬省은 半減하여 慶尙道에서 別造 許貿할 것
- 4일 倭人別求請인 野鶴은 慶尙道에서 覓給하고 生鶯은 防塞할 것 73
- 14일 倭人別求請인 野鶴의 慶尙道 覓給을 取消하고 湖南에 分定할 것 ... 74
- 12월 29일 倭人求請 馬省은 그들 要請대로 百介를 別造 許貿할 것 75

□ 己亥(1659년, 孝宗 10년)

- 4월 17일 差倭가 渡海譯官 入送 催促 및 馬醫方 貿送 要請 76
 - 渡海譯官 洪喜男은 이미 發程함
 - 馬醫方은 司僕寺에서 傳給할 것

□ 庚子(1660年, 顯宗 1年)

- 3월 24일 副特送正官이 島主求請으로 朱子語類와 朱子全書의 覓給 要請 77
 - 冊版이 없는 外方道에서 印出해 보낼 것
 - 朱子語類는 慶尙道, 朱子大全은 全羅道에서 印出해 東萊府로 直送할 것
- 27일 倭人求請 書冊은 冊版所在道에서 印出해 東萊府로 直送함 78
- 4월 13일 進賀差倭가 島主求請으로 萬病回春 2件의 求貿要請 79
 - 萬病回春 2件을 該道에서 隨便覓給할 것
- 20일 都禁徒倭가 江戸執政 求請物인 沙器 等の 造給을 要請 80
 - 沙器 鋤器 等物은 慶尙道에서 覓給하고玳瑁筆은 該曹에서 造送할 것
- 23일 鋤器 沙器 等物은 慶尙道에서 造備以給하고 玳瑁筆은 該曹에서 造送할 것 81
- 5월 7일 倭人이 島主求請物인 白苧布 綠豆末 圓扇子 馬省의 許貿 要請 82
 - 綠豆末 圓扇子 馬省은 慶尙道에서 造備 許貿, 白苧布는 減數自京許貿할 것
- 11일 倭人求貿物인 石帶星 造給에 필요한 玉石을 京畿道에서

	採取下送할 것	83
○ 5월 23일	倭人求請 石帶星은 南陽府 採取 玉石을 받아 水營匠人이 造給토록할 것	84
○ 28일	倭人求請物인 白苧布는 20匹로 減定해 下送할 것	84
○ 7월 20일	一特送正官이 柏子 胡桃 熟地黃 等 求請雜物의 覓給 要請	85
	- 柏子 胡桃는 慶尙道에서 入給하고 熟地黃은 黃海道에서 上送케 할 것	
○ 8월 5일	倭人求買物 中 熟地黃은 慶尙道에서 買得 入給함	86
○ 9월 1일	差倭 平成友가 黃鶯 等の 求買物 29種에 대한 許買 要請	86
	- 玉帶 赤石은 防塞하고 減定한 牛黃 虎膽 等物은 防塞 후 啓聞할 것	
	- 求買物目	
○ 10월 5일	禮曹에서 求請物目의 一部 防塞	87
○ 7일	慶尙監司가 虎膽 6種의 求請物은 諸道에 分定할 것	90
	- 求請物件 中 若干種은 防塞 후 回聽與否를 報告 啓聞하여 定奪할 것	
○ 13일	島主 求請物 貿送 催促次 飛船 出來	91
	- 虎膽 等 6種은 忠淸 江原 黃海道에 分定하고 防塞 후 다시 處置할 것	
○ 22일	虎膽 等 6種은 減定하고 牛黃 等 藥材 3種은 廟堂에서 稟處할 것	92
	- 九味淸心元은 該曹, 牛黃은 慶尙道, 桑寄生은 全羅道에서 隨便覓送할 것	

□ 辛丑(1661年, 顯宗 2年)

○ 4월 26일	新館守가 島主 求買物인 藥材 虎肉 書冊의 入送 要請	94
○ 5월 15일	新館守 籐成幸이 島主 求買物인 藥材와 書冊 42種의 許買 要請	94
	- 島主 求買物目	
	- 藥材 中 唐材는 防塞하고 鄉材는 覓給할 것	
	- 書冊 中 七書直解 이외는 慶尙道와 全羅道에서 印送할 것	
○ 7월 4일	全羅監司가 倭人 求請書冊의 書冊이 訛弊되어 印送 不可함을 通報	97
	- 儀禮經傳은 慶尙 全羅道, 近思錄은 咸鏡道, 經書는 慶尙道에서 印送할 것	
○ 8월 17일	館守倭가 島主 求買物의 許買 要請	97

- 活蝟 色紙 上墨은 慶尙道, 玳瑁筆 등은 該道에서 措備下送할 것
- 9월 13일 館守倭가 島主 求請物인 野鶴 等 6種의 許貿 要請 98
 - 倭人 求請物은 慶尙道 所産官이 從便貿給할 것
- 10월 13일 倭人 求請物 중 慶尙道 所産이 아닌 野鶴은 忠淸 全羅道에 分定함 99
- 12월 20일 差倭 橘成般, 平成裔가 身病으로 醫員 韓亭國의 下來를 要請 99
 - 該曹에서 給馬하여 醫員 韓亭國을 下送할 것

□ 壬寅(1662年, 顯宗 3年)

- 1월 28일 倭人이 島主 求請物인 紅氈 香扇墜의 求貿入送 要請 101
 - 戶曹에서 急速貿得하여 別定禁軍으로 下送케 할 것
- 2월 25일 漂風人領來差倭가 島主 求請物 10種과 書員 金明國의 繪畫를 要請 101
 - 菲我國所産物 5種과 李退溪文集은 閉論防塞하고 나머지는 貿給할 것
 - 金明國 下送은 不許하고 京中에서 繪畫 以送할 것
 - 倭人求請物目別單
- 3월 13일 倭人이 畫員 金明國의 下送 要請 103
 - 島主求請 繪畫見樣別單
 - 金明國을 倭人 要請대로 下送하고 各樣應入之物은 該曹가 擇給以送할 것
- 16일 差倭 籐成般 要請의 求請物 東醫寶鑑 醫林撮要 牛黃을 覓給下送할 것 106
- 7월 19일 差倭가 島主 求請物인 珊瑚 等 8種을 許貿 要請 106
 - 珊瑚 紙砲는 防塞하고 나머지는 隨便覓給할 것
- 10월 1일 壬寅條萬松阮送使正官 等이 島主 求請物인 綠豆末 等 4種의 許貿 要請 108
 - 倭人求請物을 慶尙道에서 從便許貿할 것

□ 癸卯(1663年, 顯宗 4年)

- 1월 2일 漂風人領來差倭가 島主 求貿物인 柏子 等 6種의 許貿 要請 108
 - 柏子 駿馬 等 5種은 慶尙道에서 從便許貿하고 玲瓏鐵鞍은 防塞할 것
- 20일 倭人이 島主 求貿雜物인 駿馬 等 25種의 許貿 要請 109
 - 玲瓏鐵鞍 等은 開諭防塞하고 朝鮮 產物은 許貿할 것
 - 島主 求貿物目 中 許貿物種
- 1월 22일 慶尙監司가 本道分定の 黃大口魚와 駿馬에 대한 他道 分定을 要請 111
 - 駿馬는 該司에서 貿得下送하고 黃大口魚는 慶尙道에서 貿得入送할 것
- 27일 頭倭가 島主 求貿物雜物 및 渡海譯官 催促 113
 - 島主 求貿雜物을 分定한 各道에 輸納을 催促할 것
 - 渡海譯官은 이미 下送함
- 29일 島主 求貿雜物의 預差馬 2匹을 더 下送함 114
 - 島主 求貿雜物을 措備한 후 別定譯官에게 給馬下送케 함
- 2월 6일 代官倭가 島主 求貿駿馬와 渡海譯官을 催促하고 敦厚油紙의 求貿 要請 114
 - 島主 求貿駿馬 및 渡海譯官은 이미 下送함
 - 敦厚油紙는 慶尙道에서 從便許貿할 것
- 16일 頭倭가 門慰譯官 入送 및 求貿雜物 催促 115
 - 門慰譯官 및 求貿馬匹은 이미 下送함
 - 各道 分定雜物의 急速 輸送을 嚴督할 것
- 23일 代官倭가 洒金翰林風月の 求貿 入送을 要請 116
 - 倭人의 洒洒金翰林風月 求貿를 措辭防塞함
- 4월 12일 新館守가 出來하여 島主 求貿物인 黃鶯의 許貿 요청 116
 - 黃鶯을 依數覓給할 것
- 5월 21일 代官倭가 執政 求請物인 人蔘 等 11種의 許貿 要請 117
 - 倭人 求請物 中 難得之物은 量宜減數하고 易得之物은 准許其請할 것
 - 許貿物目(1663년) 및 各道分定數

- 6월 7일 島主 求請雜物 措備 후 別定譯官에게 給馬下送토록 할 것 119
- 8월 20일 倭人이 島主 求請雜物 10種의 許貿 要請 119
 - 四書五經大全은 兩南監司가 印給, 性理大全 史記評林
朱子語類는 防塞할 것
 - 白苧布 白馬尾蠅鞭은 許貿하고 羊皮 貂皮 生熊皮는 防塞할 것
- 10월 19일 代官倭가 島主 求請雜物 중 防塞 당한 羊皮 貂皮 生熊皮의
許貿를 要請 121
 - 3種皮物을 減數해 許貿할 것
- 11월 3일 副特送使正官倭가 島主 求請物 10種에 대한 許貿 要請 122
 - 棗栗 等 易得之物은 依數 許貿하고 나머지는 減數許貿할 것
 - 黃大口魚는 慶尙道産 常大口魚로 代貿할 것
 - 許貿物目 및 減數와 各道分定數

□ 甲辰(1664年, 顯宗 5年)

- 1월 5일 倭人이 島主求貿物 21種의 許貿 要請 124
 - 退溪集 등 14種은 防塞하고 四書大全 等 7種은 許貿할 것
 - 許貿雜物物目 및 措備該司
- 2월 2일 倭人이 半減된 2種皮物에 대한 全數 許貿 및 防塞당한 生貂의
許貿 要請 127
 - 羊皮 黃獺皮는 全數 貿送하고 生貂는 防塞할 것
- 5월 頭倭가 關白 求請物인 虎皮와 駿馬의 許賣 要請 129
 - 駿馬는 該司에서 貿得下送할 것
 - 虎皮는 半減하여 該曹에서 下送하고 商賣輩가 賣齎去하여
論價許貿케 할 것
 - 島主 求貿羊皮 및 黃獺皮 加貿分을 別定禁軍에게 給馬下送케 할 것
- 14일 島主求請駿馬 2匹은 預差馬 2匹을 下送함 130
 - 島主求貿虎皮를 該曹에서 措備한 후 別定禁軍에게 給馬下送할 것
- 3월 5일 頭倭가 島主求貿物인 馬鞍과 年例鷹子の 許貿 要請 131

- 馬鞍 2부는 該曹에서 精造下送, 年例鷹子是 慶尙江原道에 催促
入送할 것
- 4월 16일 頭倭가 求請 鞍馬의 許貿 催促 및 白蛤皮匣 黃蠟의 求貿 要請 …… 132
 - 馬鞍은 이미 下送했고 白蛤皮匣 黃蠟은慶尙道에서 準數 覓給할 것
- 18일 代官倭가 下送 駿馬 중 1匹만 擇執하고 나머지는 點退함 …… 133
 - 倭人の 改備要請에 對備해 平市署에서 好品馬 1匹을 搜得以待할 것
- 윤 6월 3일 館守倭가 關白 求請物 23種에 대한 許貿 要請 …… 135
 - 李退溪集 等 5種은 防塞하고 나머지 18種은 或減數하여 許貿할 것
 - 求貿物目(1664年) 減數와 各道 分定數
- 14일 館守倭의 要請으로 螺鈿函 造送을 위한善手匠人을 招給함 …… 137
- 16일 島主別差正官 源成倫이 問慰譯官 入送 및 玉帶鉤와 野鶴의
許貿 要請 …… 137
 - 玉帶鉤는 防塞하고 野鶴은 許貿할 것
- 25일 代官倭가 求貿野鶴 및 玉帶鉤의 許貿 催促 …… 138
 - 野鶴은 許貿하고 忠淸全羅道에 分定할 것
 - 玉帶鉤는 東萊府 商賣輩에게 私商和賣케 할 것
- 7월 5일 慶尙道 分定 野鶴은 兩湖에 移定을 慶尙監司에게 通報 …… 139
 - 館守倭가 島主求請物 5種의 許貿 要請
 - 生照布 白照布는 許貿하고 浮厚石은 防塞할 것
 - 虎乙骨 子安貝는 防塞 후 回聽與否를 報告 啓聞할 것
- 9일 島主求請物 중 子安貝는 防塞, 虎乙骨은 減數하여 慶尙道에서
覓送할 것 …… 141
 - 戶曹에서 生細布와 白細布를 下送함
 - 慶尙道에서 照布를 覓得하여 品色이 優秀하면 依數換給할 것
- 13일 倭人求貿照布는 35尺으로 斷給할 것 …… 143
- 22일 倭人求貿物 중 玉帶鉤는 減數許貿하되 該曹에서 給價貿得 下送할 것 …… 143
 - 東萊府에서 入給한 笛竹을 館倭가 退送함
 - 倭人求貿物 중 豹皮를 貂皮로 誤報한 假訓導 李尙漢을 治罪할 것
 - 豹皮를 該曹에서 依數措備하여 急速下送할 것

○ 8월 8일	倭人이 島主求貿物 9種의 許貿 要請 및 芙蓉香의 準數入給 要請 …… 145
	- 島主求貿物은 許貿하고 芙蓉香은 該曹에서 假劑 下送할 것
○ 12일	倭人求貿豹皮를 誤報한 假訓導 李尙漢을 捉入決仗함 …… 147
○ 24일	甲申條 萬松院送使正官 藤成員이 島主求貿物 5種의 許貿 要請 …… 147
	- 活鶯 黃玉石은 防塞하고 小油紙 眞墨 色蠟紙는 許貿할 것
○ 9월 5일	島主求貿物인 生細布 白細布를 倭人에게 入給함 …… 149
○ 9월 15일	頭倭가 島主求貿物인 人蔘의 許貿 要請 …… 150
	- 求貿人蔘을 該曹에서 措備하여 下送할 것
○ 10월 28일	代官倭가 江戸 執政求貿物인 有毛熊皮와 木防已의 許貿 要請 …… 150
	- 有毛熊皮는 減數許貿하고 木防已는 準數許貿할 것
○ 12월 21일	倭人이 島主求貿雜物 30種의 許貿 要請 …… 151
	- 虎皮 등 5種은 防塞하고 나머지 25種은 減數할 것
	- 玉帶鉤 有毛熊皮는 防塞하고 螺鈿匠은 隨便招給할 것
○ 25일	島主求貿雜物の 防塞과 減數에 대해 倭人과 論談 …… 153
	- 虎皮 등 8種은 防塞, 羊皮 등 11種은 減數, 黃毛筆 등 11種은 準數 許貿함
	- 島主求貿物目에 대한 減數 許貿 與否 및 各道 分定數
□ 影印本	倭人求請謄錄 第二冊 …… 157
□ 찾아보기	…… 307

국역 왜인구청등록(Ⅱ) 해제

김 동 철

(부산대 사학과 교수)

차 례

1. 진상(進上)과 회사(回賜)
2. 구청(求請)과 구무(求買)
3. 『왜인구청등록』 개관
4. 구청 물품
5. 구청에 대한 조선측 대응
6. 『국역 왜인구청등록(Ⅰ)』 개관
7. 『국역 왜인구청등록(Ⅱ)』 개관

국역 왜인구청등록(Ⅱ) 해제

전근대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는 사대(事大)와 교린(交隣) 등 여러 가지 통교(通交) 관계가 존재하였다. 조선과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는 조선 국왕과 일본 막부장군 사이에 수평적인 대등한 교린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 대마번(대마도)과는 조공적 기미관계를 맺고 있었다.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교환된 외교문서는 각각의 통교관계를 반영하고 있었다. 조선과 일본간에는 국서(國書)와 서계(書契)라는 두 종류의 교린문서가 교환되었다. 국서는 조선 국왕과 일본 막부장군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이고, 서계는 조선의 예조·동래부·부산진과 일본의 대마번 등 실무부서 사이에 교환된 문서이다. 이 국서와 서계에는 별폭(別幅)이라는 문서가 딸려 있었다. 별폭은 예물(禮物)의 종류와 수량을 적은 물품 목록이다.

이 외에도 조선과 일본 사이에는 외교와 무역이 분리되지 않은 채 여러 형태의 물품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1. 진상(進上)과 회사(回賜)

임진왜란으로 단절되었던 조선과 일본간의 국교는 1609년 5월에 기유약조(己酉約條)를 체결함으로써 재개되었다. 그러나 실제 양국 사이의 무역은 기유약조가 체결된 지 2년후인 1611년 9월 대마도에서 최초의 세견(歲遣) 제1선을 파견하면서 시작되었다.

대마도에서 조선으로 건너오는 배는 모두 사절이 탄 사선(使船), 사송선(使送船)이었다. 따라서 왜관의 입항에서 출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외교의례가 이루어졌다. 왜관에 도착한 사절 일행은 부산진의 연향대청(宴享大廳)에서 동래부사와 부산진첨사에게 바다를 건너온 인사를 하였다. 이것을 ‘다례의(茶禮儀)’라고 불렀다. 일본의 대마도주가 조선의 예조참의에게 보내는 서계가 여기서 전달되었다. 이 서계에는 대마도주가 조선국 왕에게 헌상하는 물품 목록인 별폭이 붙어 있었다. 일정한 예식(例式)에 따라 진헌(進獻)의 의식이 행해졌다. 이것을 진상(進上 : 후에는 封進으로 바뀜)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으로부터 서계와 함께 회사(回賜)라는 답례 물품이 내려졌다.

사절이 탄 사선(使船) 1척마다 물품의 점수와 교역이 이루어졌다. 의례적인 물품을

주고 받는 ‘진상과 회사’가 기본이었다. 사전에는 공무역, 개시무역(사무역)을 위한 무역품도 있었다. 즉 대마도에서 조선으로 건너오는 1척의 사전에는 진상·공무역·개시무역(사무역) 3종류의 물품이 실려 있었다.

2. 구청(求請)과 구무(求貿)

예조에서 편찬한 외교자료집인 『춘관지(春官志)』 연례송사(年例送使)조에서는 공무역·회례·구청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춘관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왜국에서 헌납하는 것에는 ‘진상’이란 것이 있고, ‘공무역’이란 것이 있다. 진상이란 것은 후추, 백반, 단목, 주홍, 화연갑, 동반(銅盤), 금병풍, 구리거울 등이다. 서계 안에 별폭을 마름질해 넣고 진상 물품을 나열하여 적기 때문에 별폭진상이라 한다. 공무역이란 것은 구리, 납 두 물건 및 단목, 흑각이다. 이 물건을 헌납하고서 대가를 받아가지고 돌아가기 때문에 무역이라고 한다.

우리가 주는 것으로는 회례(回禮)가 있고, 공무가목(公貿價木)이 있고, 구청조(求請條)가 있다. 회례란 별폭진상에 답례하는 것으로 인삼, 호피, 표피, 백명주, 흑명주, 매, 돛자리, 붓, 먹 등이다. 모든 물건의 양쪽 끝에는 모두 예조의 조인(照印)을 찍는다. 회례를 주고 또 그 진상 물품에 따라 값을 쳐서 무명배를 주는 것을 진상가목(進上價木)이라 한다. 공무가목이란 구리, 납, 흑각의 값을 쳐서 무명배로 주었던 것이다.

구청이란 왜인들의 구걸로 인하여 주는 것이다. 인삼·매·다리미·마성·종이·붓·대추·밤·울무 등속인데, 왜국에서 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증물(贈物)이라고도 한다(求請者 因倭人求乞而賜給者也 人參鷹火熨斗馬省紙筆棗栗薏苡之屬 倭地所不產之物 或謂之贈物)。

『춘관지』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에서 헌납하는 것으로는 진상과 공무역, 조선에서 지급하는 것으로는 회례, 공무가목, 구청이 있다.

구청이란 일본측에서 자국에서 잘 생산되지 않는 물건을 구하기를 간절하게 요청하면, 조선에서 이를 사급(賜給)·증여(贈與)하는 것을 말한다. 구청은 증물(贈物), 증급(贈給)이라고도 하였다. 이처럼 구청은 서계·별폭 등의 외교적 의식을 띠지 않고, 특별히 요청한 물건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진상과 회사와 구분된다. 또한 물품 요구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하므로 ‘거래’ 의미의 공무역과도 구분된다.

일본측이 요구하는 물품을 조선측이 무상(無償)으로 지급하는 ‘좁은 의미의 구청’ 외에, 유상(有償)으로 지급하는 ‘넓은 의미의 구청’이 있다. 이 ‘넓은 의미의 구청’을 흔히 구무(求買)라고 부른다. 즉 구청에는 구무(求買)하기를 요청한다는 의미의 구청도 포함되어 있다. 일본측에서 유상으로 구입할 것을 요청한 물품에 대해, 조선측에서 유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구무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다. 그러나 무상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한 물품에 대해, 유상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구무에 해당된다. 역으로 유상으로 구입할 것을 요청한 물품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했다면, 이것은 요청 자체는 구무이지만 결과는 구청인 것이다.

따라서 구청은 일본측의 요청·요구라는 용어 자체의 의미보다는, 이에 대해 조선측이 어떤 형태로 지급했느냐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춘관지』에서도 구청을 조선에서 지급하는 항목으로 분류하였던 것이다. ‘좁은 의미의 구청’이 회사의 성격에 가깝다면, ‘넓은 의미의 구청’은 공무역의 성격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춘관지』에는 연례송사조에 구청 항목이 있는 것 외에, ‘구청’조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 구청조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왜인이 구청하는 것은 그 지방에서 나지 않는 물건이나 희귀한 것으로서, 중세 이래로부터 그들의 구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주는 것을 증급(贈給)이라 부르고 혹은 구청이라고도 부른다. 이 외에 또 특별히 구청이 있으면, 조정에서 사급(賜給)하기도 하고, 혹은 민간에서 판매하는 것을 허락하기도 했다.」

『춘관지』 구청조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구청에 대한 조선측의 지급은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구청은 유상으로 지급하는 구무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구청이란 대마도주가 대마도에서 필요한 물건이나 에도(江戸)막부의 요청에 의해 조선측에 수시로 필요한 물품을 요청할 때, 조선측에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지급하는 행위로 특별한 형식이나 규정은 없었다. 구청, 구무, 청구, 증급, 증물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편찬된 여러 외교 자료집에도 구청은 다양한 명칭으로 정리되어 있다. 『춘관지』에서는 구청(求請), 『동문회고』에서는 청구(請求), 『변례집요』에서는 구무(求買)조로 각각 편성되어 있다.

3. 『왜인구청등록』 개관

『왜인구청등록』은 예조(禮曹) 전객사(典客司)에서 편찬한 책으로 모두 8책이다. 원본은 필사본(筆寫本)으로 책 크기는 41×26.6cm이다. 현재 서울대 규장각(奎 12955)에 소장되어 있다. 1637년(인조 15) 3월부터 1724년(경종 4) 4월 사이에 연례송사 및 각종 차왜 등 일본인의 각종 구청에 관련하여, 동래부사·경상감사 등이 올린 각종 장계와 이에 대한 호조 및 비변사의 회계(回啓)를 예조 전객사에서 등록한 원본이다.

전객사는 예조의 속사(屬司)다. 1405년(태종 5) 육조 속사제가 정립될 때 예조의 속사로 설치되었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으로 폐지되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예조에 속한 관청으로는 계제사(稽制司)·전향사(典享司)·전객사의 세 속사가 있었다. 이 가운데 전객사는 중국·일본·야인 등 사신의 접대와 조공, 외국인에 대한 왕의 하사품 등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다. 즉 조선시대 대외관계의 실무를 총체적으로 관장하는 부서였다. 고종 때 편찬된 『대전회통』에도 ‘야인에 대한 영접은 지금은 폐지되었다’는 조항이 붙어 있을 뿐, 나머지는 『경국대전』과 같은 내용이다. 따라서 전객사의 기능은 폐지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왜인구청등록』의 수록 시기를 원본의 책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책 : 1637년(인조15) 3월~1653년(효종 4) 2월.

제2책 : 1653년(효종 4) 3월~1664년(현종 5) 12월.

제3책 : 1665년(현종 6) 1월~1676년(숙종 2) 11월.

제4책 : 1677년(숙종 3) 1월~1678년(숙종 4) 12월.

제5책 : 1677년(숙종 3) 1월~1687년(숙종13) 10월.

제6책 : 1688년(숙종14) 1월~1692년(숙종18) 10월.

제7책 : 1693년(숙종19) 4월~1704년(숙종30) 11월.

제8책 : 1717년(숙종43) 7월~1724년(경종 4) 4월.

대체로 한 달에 두세 건이 기록되어 있으나, 뒤쪽에는 서너 달에 한 번, 또는 1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기록된 곳도 있다. 1677·1678년분은 제4·5책에 날짜와 내용에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1704년 12월부터 1717년 6월까지의 기록은 없다. 간혹 날짜가 뒤바뀐 기사가 수록되는 등 편집상의 착오가 보이기도 한다.

『왜인구청등록』은 1992년 12월 서울대 규장각에서 「규장각자료총서 금호시리즈 대외관계편」이란 이름 아래 3권으로 영인 출간되었다. 영인본 제1권에는 원본 1~2책, 제2권에는 원본 3~5책, 제3권에는 원본 6~8책이 수록되어 있다. 서울대 규장각 영인본에는 원본의 내용을 날짜별로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을 목차에 싣고 있어서, 『왜인구청등록』 내용의 윤곽을 파악하기에 대단히 편리하다. 그리고 영인본에는 김윤제(金允濟)의 상세한 해제가 실려 있어서, 필자가 이를 참고·인용하면서 국역본의 해제를 작성하였다.

주요 내용은 일본인의 각종 구청과 관련하여 동래부사나 경상감사 등이 올린 장계와 이에 대한 예조와 비변사의 논의 및 처리과정에 대한 각종 문서들로 이루어져 있다. 즉 구청물목, 동래부에서의 구청사실 및 감정(減定) 협상 보고, 예조 및 비변사의 논의과정과 처리지침, 구청물품의 각도 및 해사(該司)에 대한 조치와 분정(分定)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서울대 규장각에는 조선후기 대일관계에 관한 각종 등록류가 소장되어 있다. 이들 등록류를 상세하게 분석한 한문중(韓文鍾)의 연구에 따르면, 규장각 소장의 대일관계 등록류는 30여종에 이른다. 참고로 그 제목만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각양차왜등록목록(各樣差倭謄錄目錄)』, 『고부차왜등록(告訃差倭謄錄)』, 『공작미등록(公作米謄錄)』, 『도주고환차왜등록(島主告還差倭謄錄)』, 『고환등록(告還謄錄)』, 『도중실화등록(島中失火謄錄)』, 『동래부접대등록(東萊府接待謄錄)』, 『동래부접왜장계등록가고사목록초책(東萊府接倭狀啓謄錄可考事目錄抄冊)』, 『논상사미등록(論賞賜米謄錄)』, 『별차왜등록(別差倭謄錄)』, 『서계위식등록(書契違式謄錄)』, 『세선응련등록(歲船鷹連謄錄)』, 『세선정탈등록(歲船定奪謄錄)』, 『세선항식출래등록(歲船恒式出來謄錄)』, 『역관상언등록(譯官上言謄錄)』, 『왜관수리등록(倭館修理謄錄)』, 『왜관이건등록(倭館移建謄錄)』, 『왜인구청등록(倭人求請謄錄)』, 『왜인작나등록(倭人作拏謄錄)』, 『재판차왜등록(裁判差倭謄錄)』, 『전객사별등록(典客司別謄錄)』, 『조위차왜등록(弔慰差倭謄錄)』, 『진하차왜등록(陳賀差倭謄錄)』, 『징채등록(徵債謄錄)』, 『치하(차왜)등록(致賀(差倭)謄錄)』, 『통신사등록(通信使謄錄)』, 『통신사왕환시광주부판교참거행등록(通信使往還時廣州府板橋站舉行謄錄)』, 『통신사초등록(通信使草謄錄)』, 『표왜입송등록(漂倭入送謄錄)』, 『표왜입송회사등록(漂倭入送回謝謄錄)』, 『표인영래등록(漂人領來謄錄)』, 『표인영래차왜등록(漂人領來差倭謄錄)』, 『회사차왜등록(回謝差倭謄錄)』

30여 종의 등록 가운데 동래부에서 편찬한 『동래부접대등록』, 『동래부접왜장계등록 가고사목록초책』과 광주부에서 편찬한 『통신사왕환시광주부판교참거행등록』을 제외한 나머지는 예조나 예조 전객사에서 편찬한 것이다. 예조에서 편찬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록류도 실체는 대부분 예조 속사인 전객사에서 편찬한 것이다.

등록이란 이전의 전례(前例)를 적어 놓은 기록이다. 조선시대 각 관청에서는 그 집무 사항을 적은 관아문서와, 관아 사이에 주고받은 공문서를 등사수록(謄寫收錄)한 책자를 작성하여 해당 사안의 ‘등록(謄錄)’이라 칭하였다. 이러한 등록 작업은 일차적으로 국가의 중요문서로서 영구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서에 한하여 행해졌다. 등록에는 문서를 연월일순으로 나열하였는데, 그 사이에 설명이나 고설(考說)을 붙이지 않은 가장 일차적인 자료이다. 따라서 조정에서 어떤 문제를 논의할 때 등록을 참고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춘관지』 구청조에 보면, 「또 특별히 구청이 있으면, 혹은 조정에서 사급(賜給)하기도 하고, 혹은 민간에서 판매하는 것을 허락하기도 했다. 그것은 본조 등록에 자세히 실려 있으므로 지금은 오직 그 조목만 들어서 후일의 상고(相考)에 대비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본조 등록’이 바로 『왜인가청등록』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춘관지를 편찬하는데 『왜인가청등록』이 일차 사료로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춘관지』 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외교자료집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변례집요』(예조 전객사 편), 『동문휘고』(예조 승문원 편), 『통문관지』(김지남·김경문 편), 『증정교린지』(김건서 편) 등을 편찬하는데도 『왜인가청등록』을 비롯한 대일관계 등록류가 일차 사료로 이용되었다.

4. 구청 물품

일본은 대마도에서 사용되는 물품이나, 에도(江戶)막부에서 요청한 각종 구청 물품을 연례송사나 각종 차왜가 파견될 때 조선측에 요구하였다. 『변례집요』 구무조에 따르면, 1609년 5월에 일본 사신이 구하는 황납(黃蠟) 200근을 강원도와 경상도에 분정(分定)하고, 준마(駿馬) 4필 가운데 3필은 평시서에서 돈을 주고 구입하여 내려 보내고, 1필은 경상도에서 구입하여 주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일본측에서 황납 200근과 준마 4필을 구청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년 6월에는 일본 사신에 요구하는 우황 4냥, 청심원(淸心元) 30환(丸), 금박(金箔) 600장, 서각(犀角) 1냥,

석웅황(石雄黃) 4돈, 육종용 1근 10냥, 천궁(川芎) 1근 1냥, 인삼 13근, 웅담 1부(部), 황단(黃丹) 5냥, 매화연(梅花硯) 3부, 황모필(黃毛筆) 90병(柄), 궁궁(芎穹) 10냥, 우황 1부, 황기(黃芪) 10냥, 현호색(玄胡索) 5냥 등을 내려 보내라는 예조의 관문(關文)이 있었다.

『변례집요』 구무조를 보면, 기유약조 체결 후 최초로 파견된 1611년 9월에 도항한 세견제1선은 조선측에 노루(獐子), 사냥개(獵犬), 원정(蜆蜻), 모직물(遼東帽段), 무림목박백지(無簾目薄白紙), 매(俊鷹) 등을 구무(求買)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측에서는 노루·사냥개·원정은 훈도에게 명하여 상인에게서 구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3종류와 새로 구청한 웅담은 구하기 어려워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1609년 국교가 재개되면서 일본인들의 구청 요구는 지속되었다. 구청 물품은 『왜인구청등록』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한문중의 연구에는 『왜인구청등록』에 나와 있는 구청 물품을 다음의 10종류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한문중이 정리한 것을 중심으로 인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서적류

사서대전(四書大全), 오경대전(五經大全), 성리대전(性理大全), 주자대전(朱子大全), 주자어류(朱子語類), 주자절요(朱子節要), 사기평림(史記評林), 논어, 맹자, 중용, 춘추, 대학장구보유(大學章句補遺), 맹자집주(孟子集註), 용학집주(庸學集註), 언해무경칠서(諺解武經七書), 칠서직해(七書直解), 의례경전속통해(儀禮經傳續通解), 대장경, 문한통고(文韓通考), 속문한통고, 동국통감(東國通鑑),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동문선(東文選), 퇴계집, 성재집(誠齋集), 동파집(東坡集), 전등신화(剪燈新話), 호전집해(胡典集解), 이문집람(吏文輯覽), 마의서언해본(馬醫書諺解本), 의학입문, 의학정전(醫學正傳), 의림촬요(醫林撮要), 동의보감, 두진원론(痘疹源論), 비급초본(備急草本), 화제국방(和劑局方), 응골방(鷹鵠方), 참동계(參同契), 십이율(十二律), 대명령(大明令), 예기(禮記), 진간재시집(陳簡齋詩集), 왕형공시집(王荊公詩集), 육象山문집(陸象山文集), 문장변체(文章辨體), 산곡내외별집(山谷內外別集), 이백시집(李白詩集), 두자미시집(杜子美詩集), 영규율수(瀛奎律髓), 조선지도

② 약재류

인삼, 사삼(沙蔘), 오미자, 결명자, 우황, 웅담, 호담(虎膽), 호두골(虎頭骨), 구미

(九味)청심원, 숙지황, 백출(白朮), 창출(蒼朮), 황금(黃芩), 황기(黃芪), 상기생(桑寄生), 생호간(生虎肝), 육중용(肉蓯蓉), 목방기(木防己), 지모(知母), 시호(柴胡), 전호(前胡), 마황(麻黃), 상산(常山), 하수오(何首烏), 백렴(白蘘), 천문동(天門冬), 승마(升馬), 천마(天麻), 백두옹(白頭翁), 창이(蒼耳), 소계(小薊), 관중(貫中), 호본(蒿本), 누로(漏蘆), 백미(白薇), 호황련(胡黃連), 의이(薏苡), 원지(遠志), 위령선(葳靈仙), 백선피(白蘚皮), 진교(秦艸), 상륙(商陸), 목단, 속단(續斷), 여로(藜蘆), 대계(大薊), 보골지(補骨脂), 목숙(苜蓿)

③ 금수류

응자(鷹子), 양마(良馬), 월라준마(月羅駿馬), 마상재마(馬上才馬), 체대마(體大馬), 나자(驪子), 황앵(黃鶯), 생장(生獐), 생조(生雕), 백양(白羊), 금조(禽鳥), 혈연(穴燕), 전옹(鸛鷹), 야학(野鶴), 활위(活蝟)

④ 모피류

호피, 표피, 양피, 유모옹피(有毛熊皮), 황구피, 적견피(赤犬皮), 당초피(唐貂皮), 어피, 산서피(山鼠皮), 황광피(黃獺皮) 청서피

⑤ 다기·제기류

다완, 등롱(燈籠), 목욕탕기, 종경(鍾磬), 유기, 향로, 축대, 화병

⑥ 문방구류

진묵(眞墨), 대모필(玳瑁筆), 황모필(黃毛筆), 자필(咨筆), 화룡필(畫龍筆), 오죽필(烏竹筆), 홍당죽필(紅唐竹筆), 화병대필(畫柄大筆), 백죽필(白竹筆), 용편필(龍鞭筆), 도화지, 소유지(小油紙), 색납지(色蠟紙), 색지, 주지(紬紙), 우산지, 금묵(琴墨)

⑦ 직물류

백조포(白照布), 백저포, 세저포, 홍전(紅氈), 잠사(蠶絲), 대금백(大金錦), 생조포(生照布), 대선단(大線段), 대사(大紗)

⑧ 어패류

건대구어, 황대구어, 이어(鯉魚), 문어, 부어(鮒魚), 석린(石鱗), 자안패(子安貝)

⑨ 과일류

호도, 송자(松子), 백자(栢子), 조속(棗栗), 진자(榛子)

⑩ 기타

갑주, 목궁(木弓), 예복, 심의, 원선자(圓扇子), 미선(尾扇), 향선추(香扇墜), 마성(馬省), 석대성(石帶星), 옥대구(玉帶鉤), 금수(錦綉), 영롱당철(玲瓏唐鐵), 지포(紙砲), 당화(唐貨), 백합피갑(白蛤皮甲), 척촉(躑躅), 적죽(笛竹), 오죽, 악기, 녹두말(菉豆末), 황납(黃蠟), 자석영(紫石英), 산호, 황옥석(黃玉石), 백양석(白羊石), 흑양석, 부후석(浮厚石)

이와 같이 왜인이 구청한 물건은 서적, 약재, 금수, 모피, 다기·제기, 문방구, 직물, 해산물, 과일 등 다양하였다. 그 중에서 매와 말 등의 금수류는 주로 대마도주가 막부 장군에게 바치는 진상품이었다. 다기·제기류는 막부장군 등 최고 지배층의 구청에 의한 것이 많았다. 특히 제기류는 동조권현궁(東照權現宮; 德川家康), 대유원(大猷院; 德川家光), 엄유원(嚴猷院; 德川家綱) 등의 제사에 사용하는 물품이었다.

서적류는 유교경전이 많으며, 의학 서적, 문집, 대장경, 조선지도 등도 있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동의보감, 의학입문, 의학정전, 의림촬요, 두진원론, 비급초본, 화제국방, 마의서언해 등 의서(醫書)를 많이 구청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수한 경우에는 사기 번조(燔造)에 필요한 각종 흙이나, 별당·정자각 등 건축물도 포함되어 있었다. 구청은 물품에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나전장, 유기장, 사기장, 안자장(鞍子匠), 주동장(鑄銅匠) 등 기술자나, 일본인의 신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원, 화원까지도 요청하였다.

한편 조선에서도 일본에 물품을 구청하였다. 대마도의 소(牛) 등 가축류와 칼(刀劍)·유황등 무기나 화약 원료를 구청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 예조 승문원(承文院)에서 편찬한 『동문회고』(附編 권22) 「청구(請求) 1」에서는 ‘아국인(我國人)’, 「청구(請求) 2」에서는 ‘일본국인(日本國人)’이라 하여, 우리가 구청한 내용은 ‘아국인’ 항목을 설정하여 별도로 정리하였다.

5. 구청에 대한 조선측 대응

『왜인구청등록』에 나오는 일본측의 첫 구청은 정축(인조 15, 1637) 3월 13일조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호조에서 입계(入啓)하기를, “이제 예조에 계하(啓下)한 이문(移文)을 보니 대마도의 특송선(特送船)과 세견선(歲遣船) 등의 선박에 대하여 도주(島主) 이하 각왜(各倭) 등의 구청 잡물 및 결과(結裹)에 들어갈 잡물이 매우 많습니다. 백저포(白苧布), 백면주(白綿紬), 흑마포(黑麻布), 황모필(黃毛筆), 인삼 등의 물건은 본조에서 구입하여 내려보내고, 호표피(虎豹皮), 백목(白木), 초주지(草注紙), 초석(草席), 유사(柳筥), 줄바[條所], 유둔(油菴), 유지(油紙), 협판(挾板), 백지 등의 물자는 본도(本道)에서 공물(貢物)의 남은 포목으로 값을 제하고 내어주거나, 혹은 금번의 은가(銀價)로 계감(計減)하여 공무역(公貿易)으로 지급하며, 홍주보(紅紬襖)는 본도에서 단목(丹木)을 사들여서 붉게 물들이는 것이 더욱 편리하고, 백포보(白布襖)도 또한 갖추어 지급하면 일이 매우 편리하겠습니다. 또한 금번에 화를 입은 일은 저쪽에서 반드시 모르지는 않을 터인데, 혹 그렇지 못하더라도 전과 같이 홍희남(洪喜男) 등에게 명하여 타일러 지급하게 함에 마땅하겠기에 감히 입계(入啓)하나이다” 하였다. 전교(傳敎)에 “입계대로 하라” 하였다.」

이 내용을 보면 일본의 구청에 대한 조선의 처리 방식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백저포·백면주·흑마포·황모필·인삼 등은 호조에서 구입하여 내려 보냈다. 둘째, 호표피·백목·초주지·초석·유사·줄바·유둔·유지·협판·백지 등은 일본에 지급할 공목(公木) 값에서 제하고 주었다. 공목 값이란 대개 공무역으로 일본에서 구입한 물품 값이다. 또는 은 값에서 제하고 주기도 하였다. 은 값이란 일본에서 수입된 은에 대해서 조선측이 지급해야 하는 물품 값을 뜻한다. 셋째, 홍주보·백포보는 경상도에서 마련하여 지급하였다.

구청에 대한 처리 방식은 조선에서 생산되는 물품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대개 그 요구를 허용하였다. 수량이 많은 물품은 수량을 줄여 허락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물품이나 구하기 어려운 물품은 구청을 거절하거나, 왜관 개시일에 상인을 통해 조달하도록 하였다. 개시무역(사무역)으로 교역이 어려운 물품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정을 거쳐, 호조·동래부·경상감영 등 해당 관청을 통해 조달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값을 별도로 상제하는 등 여러 방법을 제시하였다.

구청을 허락한 전례가 없는 물품은 엄하게 배척하였다. 이미 허락한 전례가 있는 물

품에 대해서만 구청을 허락하였다. 이러한 구청에 대한 처리과정은 『왜인구청등록』을 이용하여 구청관행과 결제방식 등을 분석한 정경주(鄭景柱)의 연구에서 상세히 언급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구청의 처리 유형을 ㉠ 해조비급(該曹備給; 호조나 예조 등 물품과 관련된 관청에서 마련하여 지급), ㉡ 본부비급(本府備給; 동래부에서 마련하여 지급), ㉢ 본도먹급(本道覓給; 경상도에서 마련하여 지급. 경상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은 다른 도에서 구하여 지급), ㉣ 자상매매(自相賣買; 왜관에서 상인이 사무역으로 매매)의 네 가지로 나누었다. 그리고 구청에 대한 거래 결제의 유형은 ㉤ 공목계제(公木計除; 공무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공목을 제하고 지급하는 것) ㉥ 물화피집(物貨被執; 왜관에 물품을 먼저 반입하고 대금을 뒤에 결제받는 방식)과 은화피집(銀貨被執; 피집물화의 대금을 은 등으로 결제하는 방식)의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6. 『국역 왜인구청등록』(Ⅰ) 개관

『국역 왜인구청등록』은 전 5권으로 간행되어, 2008년 완간될 예정이다. 이번에 간행되는 국역본(Ⅰ)은 1637년(丁丑, 인조 15) 3월 13일에서 1653년((癸巳, 효종 4) 2월 10일까지의 기사를 번역한 것이다. 원본의 제1책, 규장각 영인본 『倭人求請謄錄一』의 1~342쪽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규장각 영인본에서는 날짜별로 내용을 요약한 요약문을 목차에 실고 있다. 그리고 같은 날짜에 수록된 기사라도 원본에서 문두(文頭)에 ‘一’로 구분하여 시작되는 기사는 독립된 기사로 처리하여 별도의 목차를 달고 있다.

원본에 있는 날짜별로 기사항목을 한 건으로 보고, 연도별 기사항목의 건수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단 동일한 날이라도 따로 명기되어 있으면, 규장각 영인본에서 정리한 것처럼 다른 건으로 처리하였다.

『국역 왜인구청등록(Ⅰ)』의 연대별 기사항목 수

연 대	1637	1638	1639	1640	1641	1642	1643	1644	1645
항목수	13	4	13	14	3	3	1	5	3
연 대	1646	1647	1648	1649	1650	1651	1652	1653	(합계)
항목수	5	12	7	5	12	3	13	4	120

위의 표에 보면, 국역본(Ⅰ)에 수록된 기사 건수는 모두 120건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연도별로 항목 수가 상당히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왜인가청등록』이 시작되는 초기인 1637년에서 1640년까지는 항목 수가 많다가, 1641년에서 1646년까지는 다른 시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왜인가청등록』도 1637년부터 시작되지만, 앞서 언급한 30여종의 규장각 소장의 대일관계 등록류 가운데 『각양차왜등록목록』, 『공작미등록』, 『논상사미등록』, 『별차왜등록』, 『서계위식등록』, 『세선응련등록』, 『세선정탈등록』, 『역관상언등록』, 『징채등록』, 『치하(차왜)등록』, 『표왜입송등록』, 『회사차왜등록』이 1637년부터 기사가 시작된다. 이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이며, 등록류를 파악하는데도 매우 주목되는 현상이다.

이처럼 등록의 수록 시기가 1637년을 기점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이미 한문종이 주목한 바 있다. 한문종은 그 중요한 이유로 다음 두 가지를 언급하였다.

첫째, 정묘·병자호란(1627·1636년) 등 전란으로 인한 공문서의 소실이다. 전란으로 등록 편찬에 필요한 공문서가 거의 소실되어, 현존하는 등록의 대부분이 병자호란 이후부터 수록하고 있다.

둘째, 병자호란 이후 대청관계의 변화에 따라, 대일관계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야나가와(柳川)사건’으로 불리는 국서개작(國書改作)사건을 계기로 도쿠가와(德川)막부는 교토(京都) 오산(五山)의 승려를 대마도 이정암(以酹庵)에 파견하여 외교문서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637년부터는 도항하는 사송선에 대한 접대형식과 교역방법을 간소화하는 겸대제(兼帶制)가 실시되었다. 이처럼 통교체제의 변화에 따라 조선에서도 대일외교와 관련된 각종 기록을 정리하여 편찬하기 시작하였다.

국역본(Ⅰ)의 기사 내용을 보면, 구청물품과 절차 및 교섭과정 등을 일반적으로 적은 기록과 함께, 목록과 같은 형식으로 구청의 내용을 정리한 항목이 들어 있다. 내용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표기한 것도 있고, 이름 없이 후록의 형식으로 나열한 것도 있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묘(1639) 8월 16일조 역관등수본등서(譯官等手本謄書), 차왜 등지승(藤智繩) 별구청 약재물록, 잡물구청병원매(并願買), 경진(1640) 5월 30일조 후록(後錄), 경진 9월 21일조 후록, 경진 10월 21일조 후록 용약(用藥), 신사(1641) 8월 13일조 후록,

임오(1642) 2월 21일조 왜소지(倭小紙), 후록, 임오 3월 6일조 후록 등지승(藤智繩) 구청약재, 임오 12월 4일조 후록, 갑신(1644) 3월 25일조 서적목록, 을유(1645) 3월 20일조 후록 구청약재류, 구청잡물, 을유 6월 9일조 후록, 정해(1647) 9월 16일조 후록, 정해 12월 3일조 왜인구무별단(別單), 기축(1649) 7월 20일조 후록 구청물목(物目), 기축 8월 14일조 구무물목, 경인(1650) 10월 21일조 구청물목, 임진(1652) 9월 26일조 구청물목, 임진 11월 19일조 구무물목, 임진 11월 23일조 차왜 굴성정(橘成正) 구청물목 감록(減錄), 계사(1653) 2월 8일조 구청물건 등이다.

이러한 별구청물목, 구청물목, 구청물건, 구무물목, 구무별단, 수본 등 후록 내용들은 기사의 말미에 구청의 물목 내용과 이에 대한 처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어 구청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대단히 좋은 자료이다.

을유(1645) 6월 9일조 후록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구청자	구 청 물 품	구청에 대한 조선측 대응
도주(島主)	말	본도에 명하여 인근 읍의 말이 있는 곳에 알려 무역을 허락
	피꼬리	본도에서 이미 분정하여 들여줌.
	노루, 다람쥐, 토끼	본도에서 먹급(覓給)
정관(正官)	마서(1부), 문갑, 금은전(金銀箭)	방색(防塞)
	주역(周易) 1부, 화연(花硯), 호육(虎肉), 호안(虎眼), 호간(虎肝), 호담(虎膽), 마성(馬省), 준웅(俊鷹) 1연, 우황(牛黃), 웅담(熊膽),	본도에서 제급(題給)
부사(副使)	『황화집(皇華集)』 1부	방색(防塞)
	진묵(眞墨), 대화연(大花硯), 산수유(山茱萸), 산약(山藥), 우황(牛黃), 택사(澤瀉)	본도에서 제급(題給)
	신발	지급
	상인삼(上人蔘)	가져온 예단 가운데서 덜어내어 줌
	황모필(黃毛筆) 30자루	해사(該司)에서 내려 보냄
	숙지황(熟地黃) 2근, 석린(石鱗) 10근	황해도에서 제급

구청자	구 청 물 품	구청에 대한 조선측 대응
등지승 (藤智繩)	『의림촬요(醫林撮要)』 1부	해사에서 급가하여 의사(醫司)에서 사서 보냄
	호경골(虎脛骨), 호두골(虎頭骨), 호간(虎肝), 호육(虎肉), 황기(黃芪), 당귀(當歸), 대황(大黃), 천궁(川芎), 백출(白朮), 황금(黃芩), 방풍(防風)	본도에서 제급
	지모(知母) 2근, 백렴(白蘘) 2근, 대석린(大石鱗) 10근	황해도에서 제급
	매 1연	강원도에서 제급
	자석영(紫石榮)	방색
봉진압물 (封進押物)	황모필(黃毛筆) 20자루	해사에서 내려보냄
	진묵(眞墨), 백지(白紙), 마성(馬省), 백작약(白芍藥)	본도에서 제급
	숙지황(熟地黃) 2근	황해도에서 제급
	준옹(俊鷹)	방색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구청물품을 도주(島主), 정관(正官), 부사(副使), 등지승(藤智繩), 봉진압물(封進押物) 등 구청자별로 나눈 후, 각 물품에 대한 조선측의 대응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구청물품 가운데는 서적류, 약재류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약재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가 주목된다.

㉠ 경진(1640) 10월 18일조

정관이 말하기를 ‘도주가 에도에서 섬으로 돌아오는 날 대군이 도주에게 이르기를, 남만(南蠻)의 상선이 이미 끊어져 약재를 얻어 쓸 방도가 없으니 조선의 약재를 널리 무역하라 하거늘, 도주가 어렵지 않다고 대답하였더니, 대군이 크게 기뻐하여 즉시 약사(藥肆)를 에도와 왜경(倭京), 오사카(大坂) 등지에 설치하고, 그 패 이름을 조선약사(朝鮮藥肆)라 하여 내걸었는데, 제가 관(館)에 와서 보니 약을 파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 도주가 대군에게 실언한 책임을 면치 못하겠다고 하거늘, 답하기를 ‘전일에 등차

(藤差)도 이 일을 말하였으므로, 동래부사가 이미 상사에게 보고하여 얻기 어려운 것 외에는 아마도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였더니, 정관이 말하기를 '전에 이미 보고하였었다 하니 감사함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하니, 바라건대 다시 보고하여 재촉해주시도록.

㉠ 경진(1640) 11월 20일조

약재는 대군(大君)이 조선약사(朝鮮藥肆)를 창건하여 간절히 얻고자 하는 것으로, 26종 내에 10종은 각기 1,000근, 16종은 각기 500근을 해마다 팔도록 허락하여 계속 대군 앞으로 납입할 것이니, 보통으로 여기지 말고 산출되는 곳에서 와서 팔도록 해주면 매우 좋겠다. 전일에 약재를 잡종과 혼동하여 내려보냈기에 당연히 사들이지 않을 것이로되 단지 죽은 말의 뼈를 사듯이 당약(唐藥)으로 서로 교환하였으니 또한 양쪽이 편한 일이다.

1640년 당시 도쿠가와막부의 대군은 3대 장군인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다. 이 두 기사를 보면, 남만무역이 중단되어 약재를 구하기 어렵게 되자 조선무역에 주력하여, 대군이 에도(江戸), 교토(京都), 오사카(大坂)에 '조선약사(朝鮮藥肆)'를 창건하고 약재를 구청(구무)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다. 이 기사를 통해 세 곳에 '조선약사(朝鮮藥肆)'가 창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약재와 관련해서는 타시로 카즈이(田代和生)가 대마번(대마도)의 인삼좌(人蔘座)에 대해 주목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조선인삼을 파는 인삼좌는 에도, 교토, 오사카 등지에 설치되었다. 에도 인삼좌는 1674년에 설치되었다. 따라서 이보다 이미 30여년 전에 이에미쓰에 의해 약재를 파는 조선약사가 창설되었다는 것은, 구청(구무)에 의해 수입된 조선약재가 일본 내에서 유통되는 실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 이 조선약사와 인삼좌의 관계는 알 수 없지만, 필자가 아는 한에서는 지금까지 '조선약사'는 기존 연구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자료의 발굴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7. 『국역 왜인구청등록(Ⅱ)』 개관

『국역 왜인구청등록(Ⅱ)』는 1653년(癸巳, 효종 4) 3월 5일부터 1664년(甲辰, 현종 5) 12월 25일까지의 기사를 번역한 것이다. 원본의 제2책, 규장각 영인본 『倭人求請謄錄 一』의 345~640쪽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규장각 영인본에서는 날짜별로 내용을 요약한 요약문을 목차에 실고 있다. 그리고 같은 날짜에 수록된 기사라도 원본에서 문두(文頭)에 ‘一’로 구분하여 시작되는 기사는 독립된 기사로 처리하여 별도의 목차를 달고 있다.

원본에 있는 날짜별로 기사항목을 한 건으로 보고, 연도별 기사항목의 건수(件數)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단 동일한 날이라도 따로 명기되어 있으면, 규장각 영인본에서 정리한 것처럼 다른 건으로 처리하였다.

『국역 왜인구청등록(Ⅱ)』의 연도별 기사항목 수

연대	1653	1654	1655	1656	1657	1658	1659
항목수	2	6	6	1	15	11	1
연대	1660	1661	1662	1663	1664		(합계)
항목수	18	7	7	15	30		119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연도별로 항목 수가 상당히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656년과 1659년은 각각 1건, 1653년은 2건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1664년은 30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보인다. 1664년은 건수뿐 아니라 원문의 기록도 양적인 면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국역 왜인구청등록(Ⅱ)』의 첫 기록은 계사(癸巳, 효종 4, 1653) 3월 5일조이다. 기사의 내용은 <동래부사가 성첩(成貼)한 장계 내용>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啓目)>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동래부사가 성첩(成貼)한 장계 내용>은 왜인이 구청한 등룡(燈籠)을 왜관에 납입하였더니, 왜인들이 극구 칭찬하였다는 내용, 왜인이 구청한 갑주(甲冑)는 지급하는 것을 보류하고 왜인이 간청해 마지않으면 들어주자는 방안, 훈도 김근행(金謹行)은 중병이므로 차도가 있으면 올려 보내려고 하고, 역관 이형남을 그대로 머물게 하는 것을 묻는 내용이다.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啓目)>은 변방의 일은 방편에 따라 선처함이 마땅하므로 장계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다. 그대로 시행하라는 임금의 윤허가 있었다.

『국역 왜인구청등록(Ⅱ)』의 각 날짜별 기사는 3월 5일조에서 본 것처럼, 동래부사의 장계, 또는 예조나 승정원 등 해당 부서의 입계(入啓), 예조나 비변사 등 해당 부서의 계목(啓目) 등으로 대개 구성되어 있다. 기사는 왜인들이 요구하는 구청물품, 구청물품에 대한 교섭·조정과정, 동래부사의 보고, 조정(朝廷)의 논의와 결정 등이 기본 내용이다. 구청물품은 본문의 내용 속에도 들어있지만, 별단(別單), 물목(物目)과 같은 형식으로 정리된 것도 있다. 구체적인 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후록(後錄)으로 정리되어 있다. 『국역 왜인구청등록(Ⅱ)』에 기록된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을미(1655) 5월 18일조 소구물목(所求物目), 병신(1656) 8월 26일조 번마수소구유기주성물목(幡摩守所求鎡器鑄成物目), 정유(1657) 1월 26일조 구무별단(求貿別單), 5월 20일조 후록(後錄), 무술(1658) 1월 2일조 구청물목(求請物目), 3월 29일조 구무물건등서(求貿物件謄書), 4월 13일조 구무물건별단(求貿物件別單), 9월 22일조 구무별지등서(求貿別紙謄書), 경자(1660) 4월 20일조 물목(物目), 5월 7일조 소구잡물건기(所求雜物件記), 10월 5일조 구무건기(求貿件記), 신축(1661) 5월 15일조 도주구무물목(島主求貿物目), 임인(1662) 2월 25일조 소구건기(所求件記), 2월 25일조 왜인구무물목별단(倭人求貿物目別單), 3월 13일조 도주구무견양별단(島主求貿見樣別單), 7월 19일조 도주구무물목등서단자(島主求貿物目謄書單子), 계묘(1663) 1월 20일조 후록(後錄; 도주구무물목중허무물중(島主求貿物目中許貿物種), 5월 21일조 후록(後錄), 8월 20일조 도주구무잡물문서(島主求貿雜物文書), 11월 3일조 후록(後錄), 갑진(1664) 1월 5일조 구무잡물건기(求貿雜物件記), 윤6월 3일조 구무건기(求貿件記) 및 후록(後錄), 12월 21일조 잡물구무건기(雜物求貿件記), 12월 25일조 후록(後錄) 등이다.

이러한 구청이나 구무의 물목, 별단, 등서, 건기, 단자, 문서, 후록 등은 일본측이 요구하는 물품의 내용과 이에 대한 조선측의 처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어, 구청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대단히 유용하다. 무술(효종 9, 1658) 3월 29일조 구무물건등서(求貿物件謄書)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무술(효종 9, 1658) 3월 29일조에 기록된 구무물건(求買物件)

구무물품	수량	구무에 대한 조선측 대응	비고
상상인삼(上上人蔘)	100근	해조(該曹)에서 참작, 찾아 줄 것	
상상황금(上上黃金)	5·60냥		
상상 각색 대단(大段)	30필		
상상 금선(錦線)	20필		
상상 선단(線段)	20필		
백방사주(白方絲紬)	100필		
백릉기주(白綾其紬)	100필		
백화사주(白花絲紬)	100필	본부(本府) 기술자(匠人)들에 게 주조하게 하여 지급	
대화용촉(大畫龍燭)	2쌍		
유기 대접[鑰大貼]	3죽(竹)		
유기 보시기[鑰甫兒]	5죽	장사꾼(商賈)들에게 전례대로 매매하게 할 것	
백면주(白綿紬)	200필		
미선(尾扇)	300자루	일공(日供)의 지급물자 중에서 끌어다 줄 것	
녹두가루[菉豆末]	100근		
청밀(淸蜜)	30근		
화석(花席)	30장	본부(本府)에서 편의대로 지급 할 것	
곡수화유지(曲水畫油紙)	30장		
후지(厚紙)	50권(卷)	별무(別買)할 필요가 없다는 뜻 전달	상수(喪需) 구청때 많이 지급했음
채전(彩氈)	5·6장	역관(譯官)이 이미 방색(防塞)	서울에서도 구하기 어려움
산호수(珊瑚樹)	1쌍		
옥패(玉佩)	4·50개		
안장(鞍裝)	2부(部)	역관들이 이미 방색	사사로이 무역을 요구할 일이 아님.
대화로(大火爐)	2쌍	역관들이 이미 방색	서울 기술자주조 가능. 육 로운송 불가능
대초돈(大草苧)	50번(番)	연례 지급물자로 끌어다 지급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구무물품에 대한 조선측의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다양하게 대응 처리하였다. 요구에 응하기 어려운 물품은 역관들을 통해 지급하지 못함을 알렸다. 동래부에서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 중앙의 해당 관청에서 마련하는 경우도 있었다. 상인들로 하여금 매매를 허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역 왜인구청등록(Ⅱ)』에 보이는 구청·구무 관련 내용 가운데 주목되는 점들을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등룽(燈籠) 구청 문제이다.

등룽에 관한 기사는 1653, 1654, 1655년에 집중되어 있다. 1653년의 2건 중 1건은 등룽에 관한 내용이다. 등룽은 일본측에서 마련한 구리와 납으로 주조하였다. 기술자는 경상도에 분정하였다. 등룽은 큰 석탑(石塔) 형상으로 각 모서리마다 물상을 조각하였다. 왜관에 납입하자, 정밀하게 만들어져 왜관의 왜인들이 매우 만족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1654년의 6건 기사는 모두 등룽과 관계되는 내용이다. 등룽의 견본은 에도(江戸)에서 만든 것이었다. 일본측은 등룽을 통신사가 가지고 가서 일광산(日光山)에 두면 광채가 날 것이라고 하였다. 등룽을 주조할 때 일을 감독할 감동(監董) 역관 1인이 서울에서 차출되었다. 일의 중요성 때문에 부산참사가 전례대로 차사원(差使員)이 되었다.

1653년에 주조한 등룽은 대마도주가 기술자를 빌어와서 주조한 것이어서 형체가 높고 크지 않았다. 1654년의 높이 2자, 너비 3자를 더 요구하였다. 내년엔 갈 통신사행이 등룽을 가지고서 일광산(日光山)에 올려서 계미년(1643) 통신사 때 준 종·향로 등과 함께 두기를 바라며, 특히 등룽에다 명(銘)을 새겨 주기를 원하였다. 등룽명(燈籠銘)에 대해서도 대마도주는 “명 가운데 ‘선귀대군(先貴大君)’ 네 글자를 ‘대유원전(大猷院殿)’으로 고치고, ‘동조(東照)’ 및 ‘대유원(大猷院)’의 두 줄을 한 자쯤 조금 높이 써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을미(1655) 1월 6일 기록에는 일광산등룽명병서(日光山燈籠銘并序)가 기록되어 있다. 국역된 내용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난 해에 일광산 산중에 동조대권현(東照大權現)을 위하여 도량을 넓게 베풀었다는 소문을 듣고 이미 법종(法鍾)을 주조하여 보내어 효성을 현창하였거니와, 이제 또

대유원전진(大猷院殿眞)을 아울러 설치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등룡을 주조하여 영산(靈山)에 보내어 숭봉(崇奉)하는 도구로 사용하도록 돕고, 인하여 영모(永慕)하는 뜻을 찬양하여 명을 짓노라. 공덕을 크게 세워 제천(諸天)에 아울러 참여하고, 도량을 이미 열어 지혜의 등불 바야흐로 걸었는데, 구리를 녹여 등룡을 만들어 신광(神光)을 호위하고, 이에 법연(法筵)에 두어서 휘황하게 불꽃을 토하니, 한없이 효성스런 생각으로 명복을 올리나니, 보방(寶坊)을 길이 밝히고, 금륜(金輪)을 영구히 굴리도록. 을미년 월 일.”

이 등룡명(燈籠銘)은 행사직(行司直) 오준(吳竣)이 쓴 것이다(을미 9월 16일조). 1655년에 통신사가 파견될 것을 예견하고, 일본측에서는 1654년 일광산에 둘 등룡을 주조하여 보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등룡 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통신사를 비롯한 외교교류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둘째, 화원(畵員) 김명국(金明國)의 회화(繪畵) 구청 문제이다.

김명국의 그림을 요구하는 내용은 임인(1662) 2월 25일, 3월 13일조에 보인다. 막부(幕府) 대군(大君)이 김명국의 그림을 원하므로, 그를 부산 왜관(倭館)에 직접 불러서 수십 폭의 그림을 그리게 하고 싶다고 하였다. 김명국은 전에 통신사를 따라 두 번 일본에 갔는데 그림을 잘 그린다고 칭송을 받아서, 그의 그림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김명국이 그림 그리는데 쓸 화초(畵綃) 2필의 구입을 요구하였다.

조선측에서는 김명국이 연로하고 병들어서, 그림 그리기 위해 천리길을 왕래하는 것은 폐단이 있으므로, 서울에서 그려 보내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일본측에서는 김명국이 통신사를 따라 일본에 왔을 때도 목전에서 그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시켜 대신 그리게 할 뿐 아니라, 간혹 술에 취해 붓 놀리는데 힘을 다하지 않은 적이 있으므로, 만약 서울에서 그리면 같은 폐단이 있을 것이므로, 반드시 왜관에 와서 보는 데서 그릴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화초(畵綃), 들어가는 채색 값, 그림 공가(工價), 오고가는 사이의 양식과 말의 비용 등 물자는 일본측에서 부담한다고 하였다. 조정에서는 일본측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특히 3월 13일조에는 그림의 견본 내용을 적은 도주구무견양별단(島主求貿見樣別單)

이 수록되어 있다. 국역된 내용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백초(白綃) 26폭 내 10폭은 길이 2자, 진채색(眞彩色)의 채녀(採女) 그림. 8폭은 길이 3자의 담채색(淡彩色)의 팔선인(八仙人) 그림. 이른바 팔선인은 곧 음중팔선(飲中八仙)을 말함이다. 그린 뒤에 백색 단자(段子)를 잘라 소첩(小籤)을 만들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을 시켜 그 팔선(八仙)의 호칭을 쓰게 하여 각기 그 화폭 위에 붙이게 하고, 또 하나의 소첩을 만들어 모년 모월 모일 조선국인 김명국이 그렸다고 쓰고, 또 그 도장을 그린 사람 이름 아래에 찍어서 8폭 가운데 마지막 폭의 아래에 붙이며, 8폭은 길이 3자에 진채색으로 춘하추동 네 계절의 큰 산수 경치 및 인물화를 그리고, 모모 풍경이라 써서 각기 소첩을 붙여, 무역하기를 요구하며, 화초 2필이 만약 이 척수에 모자라면 혹 더 사들여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등본을 보냈음.

이 별단 내용을 보면, 요구하는 그림은 채녀화(採女畫)와 팔선인화(八仙人畫), 산수화, 인물화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림의 크기, 채색, 화기(畫記), 낙관 등 그림 전반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양국의 회화사, 회화교류사에 대한 문헌 기록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화가 김명국 개인은 물론이고 조선후기 회화교류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셋째, 서적 구청 문제이다.

서적에 대한 구청은 특정한 시기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중요한 서적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논어, 대학, 맹자, 시경, 서경, 사서대전(四書大全), 오경대전(五經大全), 칠서직해(七書直解), 근사록(近思錄), 성리대전(性理大全), 주자대전(朱子大全), 주자어류(朱子語類),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 의례경전(儀禮經傳), 의례경전통해집전(儀禮經傳通解集傳), 성리군서구해(性理群書句解), 사서집석장도(四書輯釋章圖), 사기평림(史記評林), 동의보감, 의림촬요(醫林撮要), 만병회춘(萬病回春), 마의방(馬醫方), 이퇴계전집(李退溪全集), 동국통감(東國通鑑),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고사촬요(攷事撮要)

일본측이 구청한 서적의 종류는 다양하며, 시기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다. 서적은 대마도주나 에도(江戸)의 집권층이 주로 요구하였다. 중국의 유교 경전류가 중심이었다. 그 외에 우리 나라의 의서, 역사, 지리서도 포함되어 있었다.

서적 구청에 대한 조선측의 대응은 사안이나 시기에 따라 달랐다. 동래부나 경상도에 서 쉽게 구할 수 없을 경우, 책판(冊版)이 지방에 있으면, 그 도에서 인출하여 장정을 하여 동래부로 보내고, 책판이 없으면 해당 관청에서 구하여 보내도록 하기도 하였다. 가격을 백급(白給, 무상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목(公貿木)으로 계제(計除)하는 경우에는 편의대로 무역하여 지급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특히 구하기 어렵거나 중요한 책일 경우에는 방색(防塞), 즉 요청을 거절하였다.

예를 들어 계묘(1663) 8월 20일조에 보면, 사서대전 2질, 오경대전, 성리대전, 사기평림, 주자어류 각 1질을 구무(求貿)하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사서대전 2질, 오경대전 1질은 경상감사, 전라감사에게 명하여 도내에 책판이 있는 곳에서 인출하고 장정을 하여 지급하고, 성리대전, 사기평림, 주자어류는 현재 간행하는 곳이 없다는 뜻으로 방색하도록 하였다. 갑진(1664) 윤6월 3일조에 보면, 이퇴계집(李退溪集) 2권, 고사촬요(攷事撮要) 3권의 구무에 대해, 판본이 산실된 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다.

넋재, 호피(虎皮) 구청 문제이다.

호피에 대한 구청도 시기에 따라 달랐다. 특히 정유년(1657)에 집중적으로 보인다. 1657년의 기사 15건 중 8건이 호피와 관련된 내용이다.

1655년에는 통신사가 갈 때, 에도에 가서 여러 집정 등에게 보낼 예단에 쓸 명목으로 상호호피(上好虎皮)의 구무를 요청하였다(을미 5월 18일, 23일). 1657년에는 체구가 크고 털이 좋은 호피 70장의 구무를 요청하였다(정유 5월 3일). 에도에 화재가 났을 때 대군(大君)의 피물(皮物)로 된 여러 도구들이 모두 타 없어져서 이를 개조하는데 쓸 목적으로 요구한 것이다(정유 6월 11일). 이에 대해 호피가 조선에서 나는 것이지만 해당 관청에 비축한 것이 없고, 나라에서도 쓸 곳이 있으면 각 지방에 분부하여 겨우 수합하여 쓰는 형편이므로, 70장 중 40장만 전례대로 무역을 허락하였다. 그리고 부족분의 일부는 상인들로 하여금 왜관에서 매매하도록 하였다(정유 6월 8일).

1664년에는 관백(關白)이 호피 60령(令)을 구하므로, 값의 고하는 따지지 말고 좋

은 품질의 호피을 무역을 허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측에서는 60명 중 30명만 무역을 허락하되, 나머지 부족분은 정유년(1657) 사례에 따라 호피 15명은 장사꾼의 사장(私藏) 호피를 내려보내 환무(換貿)하도록 하였다(갑진 2월 5일).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왜인구청등록』은 등록이라는 자료의 특수성 때문에 구청(구무)에 대한 기록이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공목계제(公木計除), 물화피집(物貨被執)·은화피집(銀貨被執)은 공무역의 대금 결제와 맞물려 있어, 공무역의 실태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또 구청의 처리 유형의 하나인 자상매매(自相賣買; 私相賣買)는 개시무역(사무역)의 실태를 아는 데도 유용하다.

그러므로 『변례집요』·『동문회고』·『춘관지』·『증정교린지』·『통문관지』 등 대일 외교관계의 기본 자료집, 『전객사별등록』·『논상사미등록』·『공작미등록』·『세션응련등록』·『세션정탈등록』·『각양차왜등록목록』 등 등록류, 그리고 대마도 종가문서(宗家文書)의 관련 기록 등과 서로 비교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선후기 조선과 일본과의 교역에 관해서는 최근 많은 연구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교역사에 관한 연구는 공무역, 개시무역(사무역), 밀무역에 관한 연구가 중심이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진상과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도 이루어지고 있다. 구청(구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경주의 연구가 유일하다. 구청(구무)은 무상으로 지급되는 증여와 유상으로 지급되는 무역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독특한 물품 교류이다. 외교와 무역이 미분리된 채 이루어지는 전근대 조선과 일본 양국의 경제교류의 독특한 양상을 잘 보여준다. 이번 국역본의 간행을 계기로 구청(구무)을 비롯한 조선과 일본과의 외교·무역교류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해제는 다음 참고문헌의 성과를 참고하여, 상당 부분은 그대로 인용하면서 작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참고문헌

- 金文濟, 「倭人求請謄錄」 해제, 『倭人求請謄錄 一』, 서울대 규장각, 1992.
 김동철, 「국역 왜인구청등록(Ⅰ) 해제」, 『국역 왜인구청등록(Ⅰ)』, 부산시사편찬위원회, 2004.

-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제V집, 史部 2), 서울대도서관, 1982, 188쪽 「倭人求請膳錄」 항목.
- 鄭景柱, 「仁祖-肅宗朝의 倭人 求請慣行과 決濟方式-朝鮮後期 對日貿易 事例 紹介-」 『貿易評論』 창간호, 경성대 무역연구소, 1994.
- 韓文鍾, 「朝鮮後期 日本에 관한 著述의 조사 연구-對日關係 膳錄類를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86집, 국사편찬위원회, 1999.
- 鄭成一, 『朝鮮後期 對日貿易』, 신서원, 2000.
- 洪性德, 『十七世紀 朝·日 外交使行 研究』, 전북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 田代和生,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創文社, 1981.
- 『국역 춘관지』, 법제처, 1976.
- 『국역 증정교린지』, 민족문화추진회, 1998.
- 『국역 통문관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8.
- 『邊例集要』(활자본), 국사편찬위원회, 1970.
- 『同文集考』(영인본), 국사편찬위원회, 1978.
- 하우봉, 「증정교린지 해제」 『국역 증정교린지』, 민족문화추진회, 1998.
- 하우봉, 「변례집요 해제」 『국역 변례집요 1』, 민족문화추진회, 2000.

국역 왜인구청등록(Ⅱ)

(1653. 3 ~ 1664. 12)

國譯 鄭景柱

監修 李源筠

계사(1653) 3월 초5일

동래부사 임(任)¹⁾이 27일 성첩한 장계 내용. 이제 이번에 주조한 등롱(燈籠)과 촛대 및 서울에서 내려보낸 악기(樂記), 제기(祭器) 등의 물건을 실어가려고 임진(壬辰) 조 만쇼오잉[萬松院] 송사(送使)²⁾ 평성륜(平成倫)이 타고온 배 1척이 격왜(格倭)³⁾ 40명을 갖추어 물건을 싣고 발선하여 들어갔다고 하여 치통(馳通)⁴⁾한다 하였는데, 이른바 등롱과 촛대, 향로, 화병 등의 물건은 신(臣)이 도입하기 전에 본도의 순찰사가 부산첨사(釜山僉使) 신 박이명(朴而□)에게 차원(差員)⁵⁾을 차정(差定)하게 하여 역관 이형남(李亨男) 차지⁶⁾로 감독하여 왜인이 스스로 마련한 동철(銅鐵)과 납철(鐵鐵) 6,000여 근으로 주조하고, 기술자와 물자는 본도에 분정하였는데, 여러 가지 모양의 물건은 극히 정묘하였으며, 등롱에 이르러서는 완전한 하나의 높고 커다란 석탑(石塔) 형상으로 각 모서리마다 물상을 조각하여 공사가 거창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기술자의 기교가 실로 보기 드문 것임을 알았음. 본월 24일에 신이 부산첨사와 더불어 물품을 살핀 뒤 역관 이형남에게 시켜 왜관에 납입하게 하였더니, 왜인들이 극구 칭찬하며 말하기를 “이렇게 만들기 어려운 물건을 십분 정밀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도주(島主)가 떠날 기일에 맞출 수 있어서 더욱 기쁘고 다행이라”하며 사례하여 마지 않았고, 장차 배에 실어 보낼 것이라 하였음. 본월 26일 사시(巳時)⁷⁾에 금군(禁軍) 권순적(權順迪)이 예조(禮曹)의 관문(關文)과 제기(祭器), 악기(樂器), 심의(深衣)⁸⁾ 등의 물건을 영수하여 왔거늘, 신이 일일이 대조 점검한 뒤 다시 더 정돈하여 이름을 줄지어 적고,

- 1) 임(任) : 효종 임진(1652) 11월에 부임하여 갑오(1654) 12월에 교체된 동래부사 임의백(任義伯)이다.
- 2) 만쇼오잉[萬松院] 송사(送使) : 조선 후기에 대마도 도주인 소오 요시토모[宗義智]의 외교 공적을 인정하여 그의 원찰(願刹)인 만쇼오잉의 이름으로 해마다 무역선 한 척의 내도를 허락하였는데, 그 무역선의 책임자를 일컫는다.
- 3) 격왜(格倭) : 격군 노릇을 하는 왜인. 격군(格軍)은 '결꾼'으로 배의 운항을 위해 뱃사공을 돕는 보조 인원을 가리킨다.
- 4) 치통(馳通) : 역마를 달려 급하게 통보함. 여기서는 왜선의 출입을 감독하는 부산진첨사(釜山鎭僉使)가 왜관무역을 담당하는 동래부사(東萊府使)에게 사정을 알린 것을 말한다.
- 5) 차원(差員) : 공사간의 일을 담당하기 위해 임시로 차출한 인원.
- 6) 차지(次知) : 맡아서 처리하는 일 또는 사람.
- 7) 사시(巳時) :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의 시간.
- 8) 심의(深衣) : 고대 예서(禮書)에 나오는 예법에 맞추어 제작된 예복(禮服). 『예기(禮記)』의 「심의(深衣)」와 「옥조(玉藻)」에 그 형식과 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주석가에 따라 그 재질과 모양이 조금씩 다른 점이 있어서 역대로 예학자들의 논란이 많았다. 이 때 제작하여 보낸 심의는 어떤 학설에 근거한 것인지 분명치 않다.

한편으로 해조(該曹)⁹⁾에서 특별히 부조하도록 허락하여 환무(換貿)하지 않게 한다는 뜻을 역관 이형남과 별차(別差)¹⁰⁾ 이상한(李尙漢)¹¹⁾에게 시켜 말을 전하고, 관수(館守)¹²⁾ 평성구(平成久)에게 들어 주라 하였더니, 송사(送使) 정관(正官) 및 대관(代官) 여러 왜인들이 일시에 모여 각기 다투어 보고서는, 극히 놀라고 기뻐하여 어쩔 줄을 몰라하며 즉시 배에 함께 싣고는, 신에게 서신을 바쳐 누누이 치사하면서 말하기를 “이번에 예조에서 내려보낸 것은 모두 정밀하고 화려할 뿐 아니라, 백급(白給)¹³⁾하는 혜택도 입었고 또 도주가 떠날 시기에 맞추었으니, 조정에서 후덕하게 보살펴 주시는 뜻이 보통 때보다 훨씬 벗어났기에, 장차 이 뜻을 도주에게 자세히 알려겠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예조의 관문 내용의 뜻을 자세히 살펴본즉, 악기(樂器) 등의 기구들은 곧 백급(白給)하는 것이고, 우황(牛黃) 3부(部)는 환무(換貿)¹⁴⁾하는 물건이기에 한꺼번에 들여주는 것은 장애되는 바 있겠기에, 먼저 악기 등의 물건을 준 뒤에 우황은 다음날 들여주어서 환무(換貿)하게 하였습니다. 왜인들도 신이 말한 바 대로 하였는데, 그 중에 갑옷과 투구는 다른 물건과 다릅니다. 신이 전일에 다만 저들의 말만 거론했으나 치계한 뒤에 무역을 허락하는 것이 어려움을 돌이켜 생각하고는, 역관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로 망색하여 기꺼이 허락한다는 뜻을 보여주지 아니하였더니, 저 사람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신은 이제 허다한 여러 기구들을 백급(白給)한 것이 실로 저들의 바람 이상으로 벗어남을 보고, 신은 저들이 바람보다 지나친 데 대하여 놀라고 기뻐하여 다른 생각에는 미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짐짓 갑옷과 투구는 보관해 두고 악기 등의 물건을 먼저 주어서 그들의 안색을 살펴보았더니, 저들은 한결같이 기뻐하고 감격하여 갑옷과 투구에 대하여는 언급할 겨를이 없는 것이, 과연 신이 생각한 바와 같기로, 동 갑옷과 투구를 그대로 놓아두고 기다렸다가, 만약 도주가 말을 전하여 다시 간청하여 마지 않으면 들여주어야 할 형편이고, 만약 말을 전해오지 않으면 이는 다시 올려보낼 계획입니다. 이미 내려보낸 뒤에 이렇게 처치하는 것이 실로 참람한 일이로되,

9) 해조(該曹) : 이조(吏曹), 호조(戶曹), 예조(禮曹), 병조(兵曹), 형조(刑曹), 공조(工曹) 등 육조(六曹) 중 해당하는 관청. 여기서는 외교를 담당하는 예조를 가리킨다.

10) 별차(別差) : 조선 후기 왜관 무역에 입회하기 위해 차출된 특별 통역관.

11) 이상한(李尙漢, 1618-?) : 정선 이씨로 자는 사수(士秀)이며, 효종 신묘(1651) 식년시의 역과에 합격하여 왜역으로 종사하고 교회(敎誨)의 관직을 지냈다.

12) 관수(館守) : 부산의 왜관(倭館)을 관리하기 위해 대마도에서 파견한 왜인. 관수왜(館守倭).

13) 백급(白給) : 값을 받지 않고 그냥 지급함.

14) 환무(換貿) : 대가를 교환하고 물건을 교역하는 일.

변방 일의 형세가 다른 곳과는 달라서 사정에 따라 임시로 조처하지 않을 수 없는지라, 황송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훈도 김근행(金謹行)은 근래에 중병을 얻어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 병에 차도가 있으면 즉시 올려 보내려고 역관 이형남을 짐짓 그대로 머물게 하려는데 어떠하올지, 해조(該曹)에 명하여 가부를 지시해 주시기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갑옷과 투구는 다른 물건과 달라서 당초에 방색하려고 하였는데 저쪽에서 누누이 간청하여 마지않으므로 부응하도록 허락하였으나, 변방의 일은 방편에 따라 선처하여 기회를 잃지 않음이 마땅하니, 장계대로 시행하게 하시며, 이형남은 김근행이 병으로 소임을 살피지 못하니 짐짓 그대로 머물러 차도가 있기를 기다렸다가 즉시 올려 보내도록 하여도 무방합니다. 이런 뜻으로 사역원(司譯院)에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순치(順治) 10년 3월 초5일 동부승지 박안제(朴安悌)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계사(1653) 5월 21일

동래부사 임(任)의 장계 내용. 훈도 김근행(金謹行)¹⁵⁾의 수본(手本)에, “부특송 정관 평성우(平成友)가 말하기를, ‘서수좌(恕首座)가 의원을 찾아 약을 물으려고 병든 몸을 부축하여 멀리서 왔는데, 명의를 구하지 못해서 극히 민망하니, 이시찬(李時燦)이 언제 내려올지 날짜를 헤아리며 고대하고 있으며, 복용할 향약(鄉藥)의 약재도 지급하여 주시면 일일이 계산하여 갚겠고, 이로 인하여 회생할 길을 얻으면 그 큰 은혜를 각골난망 하겠다’고 한다” 하였음. 신은 이시찬이 내려오는 것의 늦고 빠른 여부는 미리 헤아리기 어려울 듯하고, 향약은 편의대로 순찰사와 상의할 것이라고 말을 만들어 회답하였기에 연유를 아울러 치계함.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시찬은 이미 말을 지급하여 내려보냈거니와, 요구하는 바의 약물은 먼 곳의 사람을 대접하는 도리에 있어서 부응하지 않아서는 불가하니, 산출되는 약재를 편의대로 찾아 주되, 값을 계산할 필요는 없다고 본도 감사에게

15) 김근행(金謹行, 1610-?) : 김해인으로 인조 정묘(1627) 식년시의 역과(譯科)에 합격하여 왜역(倭譯)으로 자헌대부의 품계까지 올랐다.

행이(行移)함이 어떠할지. 순치 10년(1653) 5월 21일 동부승지 신 심(沈)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갑오(1654) 3월 20일

동래부사 임(任)의 장계 내용. 왜선 한 척이 나왔기에 즉시 별차 박원랑(朴元郎) 등에게 사정을 물어 보라 하였는데 돌아와 하는 말이, “왜선 한 척은 계사년조 겸대(兼帶) 세견 제10선인데 또한 대관왜(代官倭) 등의 짐을 실어가려고 나왔다고 하거늘, 저쪽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별로 다른 일은 없었다”고 하였음. 사정을 예사로 물었을 뿐 저쪽의 사정을 조금도 물을 만한 형편이 아니어서, 역관 김근행(金謹行)을 시켜 믿을 만한 대관왜에게 서찰을 보내어 별도로 저쪽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대관왜의 답장 내용에, “2월 초승에 에도(江戸)에서 나온 소식에 도주가 3월 그믐이나 혹 4월 초에 대군(大君)에게 말미를 받아 출발하여 나올 것이라고 하였는데 시기는 분명히 통기하지 않았다”고 함.

전일에 신이 조정에서 등롱(燈籠) 주조를 허락한 일을 차왜(差倭)에게 언급하여 속히 등롱의 겨냥(見樣)을 보내어 주조하도록 하였는데, 차왜가 이 말을 섬의 봉행(奉行) 등에게 전하였더니, 봉행 등이 기쁜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급히 비선(飛船)을 에도에 보내어 도주에게 보고하고, 그대로 납철(鑛鐵)을 보내어 주조하는 일을 돕도록 청하였는데, 회답이 아직 안 나왔다고 함.

갑오(1654) 4월 초10일

동래부사 임의 장계 내용. 왜승(倭僧) 서수좌(恕首座)가 하직하고 돌아갈 즈음에 한번 접촉하는 일은 이미 장계를 올려 확정하게 하였기에, 부특송선(副特送船)의 잔치를 마친 뒤, 신이 부산첨사(釜山僉使)와 더불어 평상복으로 평좌(平坐)¹⁶⁾하여 서수좌(恕首座)를 불러 보았더니, 서승(恕僧)이 예를 행하고 앉은 뒤에 문답하였는데, 서승(恕

16) 평좌(平坐) : 공식의 예법을 따지지 않고 편하게 앉음. 왜인들이 무역사절로 오면 반드시 조선국왕의 전패를 모신 대청에서 배알하는 예가 있기 때문에 이른 말이다.

僧)이 또 말하기를 “저번에 청한 등룡은 통신사(通信使)가 가지고 가서 닛꼬오산[日光山]에 두면 생색이 매우 클 것이고, 이미 조정의 주조 허락을 받게 되어 기쁘고 다행이며, 납철은 귀국의 소산이 아니라서 마련할 수 없기에, 과연 영감께서 말씀하신 대로 봉행 등이 비선(飛船)으로 도주에게 알렸으니 오래잖아 회답이 돌아올 것이고, 돌아오는 즉시 내어 보낼 것이니 속히 주조하기 바란다”고 하거늘, 신이 답하기를 “이 한 조목은 내가 해조(該曹)에 품신하였는데, 등룡에 들어갈 비용이 실로 많은데다가 그 중 납철은 본디 나올 곳이 없는데 이제 장차 내보내겠다니 나 또한 다행이거니와, 다만 겨냥이 나와야만 겨냥에 의거하여 마련하여 주조할 수 있겠으니 시급히 내어 보내라는 뜻으로 누차 통고하였음에도, 아직도 소식이 없으니 그 연고를 모르겠다”고 하였더니, 서승(恕僧)이 답하기를 “등룡의 겨냥은 예도에서 나와야 할 것인데 도중(島中)에서도 고대하고 있으니 나오면 즉시 보내겠다”고 하였음.

갑오(1654) 6월 20일

동래부사 임의 장계 내용. 갑오조 특송 제3선 및 평언삼(平彦三) 등의 다례(茶禮)¹⁷⁾를 행하고 서계(書契)를 받아 올려 보내오며, 등룡(燈籠)을 주조하여 만들 때 일을 담당할 역관을 재촉하여 내려보낼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전에 등룡을 주조할 때 감독한 역관을 급속하게 내려 보내는 일로 얼마 전에 동래부사가 치계하여 복계하고 윤허를 받았기로, 감독하는 일을 주관할 역관 1인을 가려서 차출하여 수일 내로 보내도록 해사(該司)¹⁸⁾에 즉시 분부하였는데, 이 장계를 보니 또 정관(正官) 등이 재촉한다는 말이 있으니, 이는 필시 돌려보낸 이문(移文)이 미처 내려가지 않은 소치인지라, 즉시 해원(該院)¹⁹⁾에 물었더니 위 항목의 역관을 아직 보내지 못했다고 함. 왜인을 접대하는 막중한 일을 계하(啓下)한 지 여러 날이 되도록 거행하지 아니하고 미루는 것이 해괴함. 당해 사무를 담당하는 역관을 해당 관청에서 엄중하게 죄를 주고, 감동(監董) 역관을 즉시 보내도록 하라는 뜻으로 회이(回移)함이 어떠할지. 순치 11년(1654) 6월 20일. 우부승지 신

17) 다례(茶禮) : 부산에 온 왜의 무역 사절을 맞이하여 조선 측에서 거행하는 간단한 접대 의식 절차.

18) 해사(該司) : 여기서는 사역원(司譯院)을 가리킨다.

19) 해원(該院) : 해당하는 원(院). 여기서는 역관을 담당하는 관청인 사역원(司譯院)을 가리킨다.

이행진(李行進)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동래부사 임의 장계 내용. 왜선 7척이 나왔기에 즉시 별차 홍여우(洪汝雨)²⁰⁾에게 사정을 물어보라 하였더니 회언(回言) 내용에, “갑오조 특송선 및 부특송선과 세견선 등이 나왔는데, 사정을 탐문하니 정관 등이 하는 말에, 등룡을 주조하기 위한 나무로 만든 겨냥이 나왔으며, 들어갈 납철(鑛鐵)은 들어가는 수량대로 왜관에서 헤아려 납입하겠다고 말을 하여 왔으며, 금년조 여러 배의 송사(送使) 등은 아울러 모두 속히 보낼 것이니 반드시 금년 9월이나 10월 내로 일을 마치고 섬으로 돌아오라는 뜻으로 도주가 말을 보냈기로, 금년조의 여러 송사 정관 등은 이미 차출하였기에 만쇼오영(萬松院)도 오래잖아 잇달아 나올 것이라”고 하였음. 등룡의 겨냥이 이제 이미 나왔으니 주조하는 일은 신이 마땅히 본도의 순찰사에게 보고하여 완료하겠거니와, 동철은 전례대로 확정하여 비록 본부에서 간품(看品)²¹⁾한 동철을 들어가는 분량만큼 지급하겠으나, 들어갈 납철은 이미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고 그 수량이 많아서 극히 염려되었는데, 이제 다행히도 저 사람들이 우리의 청에 따라 수량에 맞춰 주려고 하니 참으로 다행이고, 그 사이에는 역관 김근행 등이 주선한 힘도 많았음. 등룡을 주조하는 일은 중대한 일인지라 부산첨사가 전례대로 차사원(差使員)²²⁾이 되는데, 담당 역관이 없어서는 안되었으니 전년의 사례대로 일을 주관할 역관 한 사람을 급급히 차출하여 보내도록 해당 관청에 명하여 확정 시행하시기를. 전에는 본부에서 주선하여 당년조의 세견선의 시간 간격을 넓게 두어 나오게 하고, 혹 반 넘어 이듬해에 오기도 하여 물력(物力)을 여유 있게 하였으므로 지탱할 수 있었고, 근자의 전례가 되었는데, 이제 일로 인하여 일제히 잇달아 모여들면, 물력이나 인부나 주선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까 염려되어, 또한 본도 순찰사와 더불어 방편을 마련하여 처리할 계획이거니와, 한편으로 역관을 시켜서 십분 타이르게 하였으나, 그들이 계획을 이미 확정하여 반드시 따를지는 확정하기 어렵다는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도주가 이제 장차 섬으로 돌아와서 등룡의 겨냥을 이미 내보냈고, 들어갈 납철 역시 수량대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20) 홍여우(洪汝雨, 1626-?): 남양 홍씨로 자는 패연(沛然)이며, 효종 경인(1650)에 역과에 합격하여 왜역(倭譯)에 종사하고, 통정대부의 품계까지 받았다.

21) 간품(看品): 품질과 규격을 검사함.

22) 차사원(差使員): 일을 담당하기 위해 차출된 관원.

허락하였다 하며, 본부에서 간품한 동철을 그 들어갈 양 대로 즉시 내어 주어 때 맞춰 등룡을 주조하도록 하되, 주조할 때 감독하는 일을 주관할 역관은 해당 사역원에 명하여 급속히 가려 차출하여 보내며, 매년 세견선 각 선박의 절반을 이듬해에 내보내는 것이 이제까지의 정해진 규범인데, 금년에는 당년조 세견선을 일시에 내보내려는 계획은 규범에서 벗어났으니, 무슨 일로 일제히 나오는지 모르나 여러 가지로 타일러 기어코 듣게 하라는 일로 분부하심이 어떠할지. 순치 11년(1654) 6월 12일 우부승지 신 홍처량(洪處亮)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갑오(1654) 6월 23일

예조단자

사역원(司譯院)에서 첩정(牒呈)한 내용. 등룡을 주조할 때 감독하여 일을 주관할 역관을 차출하여 보내려고 하는데, 서울에 있는 자는 실로 합당한 사람이 없고, 전 훈도(訓導) 김근행이 저쪽의 사정을 익히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 부산에 있으니, 등룡을 주조할 때 감독하는 일은 이 사람으로 정하는 일로 첩정한다 하였음. 첩보한 대로 김근행에게 책임을 맡게 하라는 일로 동래부사에게 행이함이 어떠할 지. 순치 11년(1654) 6월 22일 입계하여 입계한 대로 함.

갑오(1654) 7월 21일

동래부사 임의 장계 내용. 이 달 초3일에 관수 평성구(平成久)가 등룡 담당 역관 김근행을 불러서는 대마도의 봉행 등이 보낸 서찰을 보여주며 말하기를, “도주가 등룡을 주조하는 한 가지 일로 에도에서 대마도로 비밀리에 통기하였으므로 봉행 등이 이렇게 서찰을 보내었다. 대개 지난 해에 주조한 등룡은 도주가 기술자를 빌어와서 주조한 물건인지라 형체가 그다지 높고 크지 않았으나, 이번의 등룡을 지난 해에 주조한 것과 꼭 같이 한다면 특별히 주조하는 의의가 조금도 없는지라 조금 더 높고 크게 하지 않을 수 없다. 높이는 2자를 더하고, 너비는 3자를 더한 뒤에야 귀중한 용구가 될 수 있겠다”고 하였다 하며, “명년 사신의 행차에 이 등룡을 가지고 에도로 들어가면, 닛꼬오산(日光山)에 올려서 계미년(1643) 통신사 때 조정에서 주신 종과 향로 등의 물건과 앞뒤로

줄지어 두어서 큰 은덕을 과시할 것이고, 전에 하사한 종에는 예조참판 이식(李植)²³⁾이 짓고 행사직(行司直) 오준(吳竣)²⁴⁾이 글씨를 쓴 명(銘)을 새겼기로 관백(關白) 이하의 관원들이 지금까지도 나라를 진정하는 귀중한 보물로서 천년토록 잊지 못할 것으로 귀하게 다루고 있으니, 이번의 등롱(燈籠)에도 또한 명을 새기도록 해주신다면 그 생색이 이전보다 배가 될 것이고, 연소한 관백이 필시 더욱 기뻐하고 집정 여러 장수들도 모두들 감사하여 칭송할 것이다. 관계되는 바 작지 아니하되 이 일은 이목에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도주가 감히 서계(書契)에 곧바로 전달하지 못하고 봉행(奉行) 등으로 하여금 비밀리에 저희들에게 통기하였으니, 이 뜻을 동래 영감 앞에 간절하게 전달하여 기어코 소청을 얻어내라”고 이렇게 누누이 말하였다고 역관 김근행이 와서 고하거늘, 신은 등롱이란 물건을 주조하는 것이 원래 쉽지 아니하여 크면 클 수록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염려스러운데, 그러나 이미 주조하여 주기로 허락하였으면 몇 자 높고 크게 하는 것으로 다룰 수는 없으니, 역관 등이 편리하고 좋게 타일러 약간 감하도록 하여 너무 높고 크게 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할 듯하다고 정녕 분부하였으며, 명을 새기는 한 가지 일에 있어서는 사체(事體)가 중대하여 반드시 도주의 서계(書契)를 기다린 뒤에야 해조(該曹)에 품신할 수 있지 어찌 한 장의 사사로운 서찰을 문득 믿고서 전보(轉報)할 수 있겠으며, 하물며 종이라는 기구는 천하에 통용되는 것이라 전에 명을 새겨 주는 것은 마땅하나, 이번 등롱은 일본에 있는 것이고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것이어서, 물건의 명칭을 부여함에 분명치 아니하고 명을 짓기에 합당치 아니하여 요청한 뜻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김근행을 시켜 말을 만들어 회답하게 하였더니, 관수 평성구가 아주 걱정하는 기색을 띠면서 말하기를 “에도의 형편이 예전과 달라서 양국 수호와 관련된 일은 모두 도주가 몰래 통기하여 간절히 애걸하는 정성이므로, 스스로 청한 흔적을 숨기려고 감히 서계에 올려 전달하지 못했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차왜 한 사람이 한 장의 서계를 가지고 나오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 않았겠는가? 이전에도 형편이 이러하기로 임오년(1642)에 종과 향로 등을 주조할 때에도 사신(私信)으로 통기하였음은 이에 근거하여 알 수 있다. 등롱이 비록 다른 나라에 없는 것이라고 하나 이는 곧 등불을 밝히는 대인데, 종이나 등이 특별히 경중이 없으니 명을 하사하는 데 무슨 다름이

23) 이식(李植, 1584-1647) : 자는 여고(汝固) 호는택당(澤堂), 광해군 때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대제학과 판서에 이르렀다. 문장이 뛰어나 사대가(四大家)의 한 사람으로 불려졌다.

24) 오준(吳竣, 587-1666) : 자는 여완(汝完), 호는 죽남(竹南)인데, 광해군 때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한성부 판윤(判尹)에 이르렀으며, 당대에 명필로 명성을 떨쳤다.

있을 것이며, 더구나 전에 이미 허락한 일을 이다지 어렵게 여기니 실로 민망하고 절박하다. 관백이 보배로 중시하는 것은 단지 명(銘)을 하사함에 있을 따름인데 만약 명을 얻지 못하면 등룡은 실로 중요하지 않으며, 연가에도 이것은 긴요하지 않다. 도주가 반드시 피차간에 주선하고자 함은 양국의 만세 태평을 위하자는 계책이니 모름지기 통찰하여 속히 해조에 보고해 달라”고 간절히 애걸하였다고 돌아와 보고하였음. 신이 저들의 실정을 상세히 탐지하려고 여러 날 고집하며 수삼 차 사람이 오고갔지만 짐짓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신이 임오년(1642)의 『주종등록(鑄鍾謄錄)』을 살펴보니 그 때 도주 또한 스스로 요청한 사실을 숨기려고 명백하게 서계를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신이 말한 내용을 깊이 살펴보니 반드시 청을 이루려고 기약하는데 한결같이 가로막으면 차왜(差倭)를 정하여 나오는 일로 접대하는 데 번거로울 뿐 도리어 이익은 없을 터인데 이 또한 염려스러우니, 명을 짓는 한 가지 일을 어떻게 답을 해야 할른지, 묘당(廟堂)에 명하여 좋을 데로 지휘하여 주시어 한편으로는 도주에게 회답할 수 있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등룡을 진작 주조할 수 있도록 함이 실로 마땅할 것임.

이에 근거하여 비변사(備邊司)에서 첨부한 계목. 먼 곳 사람들의 요청이 지극한 정성에서 나왔고 또한 대단히 어려운 일도 아닌지라 그들의 요청을 따라주지 않을 수는 없으니, 해당 관청에 명하여 전례대로 지어서 써 줌이 어떠할지. 순치 11년(1654) 7월 20일 도승지 신 이행진(李行進)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왜인들이 요구하는 등룡의 명은 임오년(1642) 종명(鍾銘)의 사례에 의거하여 승문원(承文院)에 명하여 곧장 지어서 보냄으로써 주조할 시일에 맞추도록 함이 어떠할지. 순치(順治) 11년(1654) 7월 21일 동부승지 신 서(徐)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을미(1655) 정월 초6일

동래부사 정창주(鄭昌胄)²⁵가 지난 12월 28일에 성첩한 장계. 본월 27일 갑오조

25) 정창주(鄭昌胄) : 효종 갑오(1654) 12월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을미(1655) 3월에 상고(喪故)로 인하여 교체되었다.

부특송 정관 등에게 전례대로 다례를 베풀었고 서계(書契) 별폭(別幅, 1654. 12. 27) 등을 받아 올려 보냈고, 등롱명(燈籠銘)은 대마도로 들여보내어 그 회답이 나오기를 기다려 명을 새길 계획임은 본도의 도신(道臣)이 전에 이미 치계하였다 하거니와, 이번의 부특송사가 나올 때 도주의 회답 내용에 “동 등롱명에 고쳐야 할 글자가 있으니, 본디 명 가운데 ‘선귀대군(先貴大君)’ 네 글자를 ‘대유원전(大猷院殿)’이라 고치고, ‘동조(東照)’ 및 ‘대유원(大猷院)’²⁶⁾의 두 줄을 한 자 썸 조금 높이 써서 보내라는 뜻으로 조정에 장계로 알려 편의대로 고쳐 쓰는 일을 간청한다” 하였는바, 이른바 대유원(大猷院)은 전 관백(關白)의 원당(願堂)의 이름이고 동조(東照) 두 글자는 이전부터 서계에 줄을 바꾸어 높여 써넣었으니, 고쳐 써 주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겠기에 동 도주가 스스로 쓴 초본을 아울러 베껴 써서 해조(該曹)로 올려 보내니, 해조로 하여금 급속히 고쳐 써서 내려보냄이 어떠하올지,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일광산등롱명병서(日光山燈籠銘并序) : 지난 해에 일광산 산중에 동조대권현(東照大權現)을 위하여 도량을 넓게 베풀었다는 소문을 듣고 이미 범종(法鍾)을 주조하여 보내어 효성을 현창하였거니와, 이제 또 대유원전진(大猷院殿眞)을 아울러 설치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등롱을 주조하여 영산(靈山)에 보내어 숭봉(崇奉)하는 기구로 사용하도록 돕고, 인하여 영모(永慕)하는 뜻을 찬양하여 명을 짓노라. 공덕을 크게 세워 제천(諸天)에 아울러 참여하고, 도량을 이미 열어 지혜의 등불 바야흐로 걸었다네. 구리를 녹여 등롱을 만들어 신광(神光)을 호위하고, 이에 법연(法筵)에 두어서 휘황하게 불꽃을 토하네. 한없이 효성스런 생각으로 명복을 올리나니, 보방(寶坊)을 길이 밝히고, 금륜(金輪)을 영구히 굴리세. 을미년(1655) 월 일.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도주가 소청한 일은 ‘선대군’을 네 글자 ‘대유원전’이라 바꾸고, 두 줄을 한 자 정도 조금 높여 써서 보내는 두 가지 조목인데, 이른바 대유원은 곧 원당의 명칭이라 하는 바, 그들의 바람대로 바꾸어주는 것이 무방하니, 급속히 고쳐 써서 보냄이 어떠할지. 순치 12년(1655) 정월 초7일 동부승지 신 유(柳)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26) 대유원(大猷院) :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손자 이에미쓰(家光)의 묘가 있는 곳. 다이슈잉(大猷院). 닛코오(日光)에 있음.

을미(1655) 정월 25일

예조에서 입계하기를, “왜인이 구청한 백랍촉(白臘燭)²⁷⁾ 50자루를 해당 관청에서 갖추어 보내는 일로 일찌기 이미 계하하였는데, 가져다가 품질을 살펴보니 전일에 보낸 내하(內下)²⁸⁾의 백랍촉에 비록 미치지 못하는 듯하나, 그 때는 닛꼬오산(日光山) 향전(香奠)에 쓸 것이라 칭하였고 이번에는 범연한 무역 요구에서 나온 것이며, 또한 해조에서 제조한 것을 비록 재삼 고쳐 만들더라도 이보다 더하지 않을 것이니, 마땅히 이것을 보내도록 하여 해조에서 특별히 일을 맡을 만한 근면한 금군(禁軍)을 정하여 급급하게 내려보내게 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전교에 “알았다”고 하심.

을미(1655) 5월 18일

동래부사 한진기(韓震琦)²⁹⁾가 5월 12일에 성첩(成貼)한 장계. 이달 11일에 신이 관소(館所)에 가서 차왜(差倭) 평성연(平成連) 등과 전례대로 다례를 베풀고 이리저리 문답하고 과할 무렵에, 차왜가 신에게 구청물목(求請物目, 1655. 5. 11)이라고 글을 바치면서 말하기를, “이들 물건은 도주께서 이번 통신사가 예도에 들어갈 때 여러 집정(執政) 등에게 줄 예단에 사용될 물건으로 만분 긴급하니, 비록 구청하지는 못하지만 시가에 따라 값을 쳐서 사가겠다”고 이렇게 간절하게 요구하여 마지아니하는 바, 단자(單子) 중에 청한 바 대금란(大金欄) 10권(卷)이라 한 것은 곧 대금선(大金線) 10필이고, 대란견(大欄絹) 10권은 대선단(大線段) 10필이며, 대단자(大段子) 10권은 곧 대단(大段) 10필이며, 상조호포(上照好布)³⁰⁾ 50필은 곧 품질 좋고 잣수가 긴 백저포(白苧布) 50필이라 하였기로, 동 요구한 바 물목은 계미년 통신사 때의 구청에 견준다면 그 수량이 매우 적으니, 해조에 명하여 급급히 참작하여 처치하게 하시며, 상항의 서계 등을 감봉하여 올리는 일임.

27) 백랍촉(白臘燭) : 흰 밀랍으로 만든 초.

28) 내하(內下) : 내사(內賜). 왕이 신하에게 물건을 내려 주는 일.

29) 한진기(韓震琦) : 효종 을미(1655) 4월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병신(1656) 11월에 좌수사와 다툼 일로 나포되어 갔다.

30) 상조호포(上照好布) : 상품의 좋은 조포[上好照布]의 오기로 보임.

각 군주[列主]에게 선물하는데 급히 사용할 비품(誹品). 대금란(大金欄) 10권, 대란견(大欄絹) 10권, 대단자(大段子) 10권, 상호조포(上好照布) 50필, 상호호피(上好虎皮) 10매, 상호표피(上好豹皮) 10매. 계(計).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번 차왜 평성련(平成連)이 요구한 물품 중 3종은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어서 형편이 어려운데, 통신사가 갈 때 사용할 것이라고 도주의 말이 이렇게 간절하여 방색할 수 없으니, 전례대로 해조에 명하여 급속히 마련하여 내려보내어 무역을 허락하게 함이 어떠할지. 순치 12년(1655) 5월 19일 우부승지신 성(成)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을미(1655) 5월 23일

동래부사 한진기(韓震琦)가 5월 18일 성첩한 장계. 관수(館守) 평성구가 신에게 글을 바쳤는데, “어제 작은 배가 나올 적에 도주가 저에게 서신을 보내어 말하기를, 이번 통신사가 에도에 들어갈 적에 여러 집정 등에게 보낼 예단에 소용될 대금란(大金欄), 상호피(上虎皮) 등 6종은 차왜 평성련(平成連)을 내보낼 때 이미 무역 요청을 하였거니와, 또 긴요한 것은 각색의 유지(油紙) 50편(片)과 호도(胡桃) 10섬[石], 잣[松子] 10섬이니, 급급히 사들여서 통신사가 오기 전에 들어 보내라고 하였는데, 모르지기 이 뜻을 알고 급급히 사들여 달라”고 이렇게 간청하였는바, 비록 이렇게 사소한 물건이라도 매양 요청하는 것은 부당하기에 역관을 시켜 타일러 방색함이 옳겠으나, 이 물건이 통신사가 갈 때 사용할 것이므로 도주가 간청한다 하며, 또한 전례가 있을 뿐 아니라 저들이 이미 무역하여 들여보내겠다고 하오니, 전례에 의거하여 본도 순찰사에게 보고하여 편의대로 찾아 무역할 계획이온 바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을미(1655) 7월 초5일

동래부사 한진기(韓震琦)가 지난 6월 29일에 성첩한 장계. 방금 접한 훈도(訓導) 등의 수본(手本) 내용임. 번조차왜(燐造差倭)가 들어갈 때 말하기를 “제가 지금 비록 들

어가지만 도주가 발선한 뒤에 즉시 나오겠거니와, 주조할 물건이 많아서 관수(館守)에게 상세하게 언급하였으니, 관수의 말을 자세히 듣고 솜씨 좋은 장인을 들여 보내달라”고 하였음. 관수의 말로는 “번조차왜가 말한 바 주조할 물건은 지금 주조하여 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도형(圖形)을 내어 보여주거늘, 그 도형을 보니 배 형상의 목욕탕기(沐浴湯器) 2좌(坐), 주척(周尺)³¹⁾으로 마련하면 길이 12척, 너비 3척, 높이 2척, 좌우의 발 10개, 앞뒤와 좌우에 들어올리는 고리 10개, 또 꽃꽂이 병〔插花瓶〕3좌, 또 자그마한 배 형상의 등을 다는 것(懸燈) 30개, 매 길이 3척, 너비 1척 2촌, 또 대(臺)를 갖춘 다기(茶器) 3좌이거늘, 소인들이 말하기를 “이 도형을 보면 이는 작다고 할 수 없는 물건이니, 결단코 주조를 허락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방색하였더니, 관수가 말하기를 “이 물건은 곧 평의진(平義眞)이 이번 통신사를 모시고 대마도까지 모시고 왔다가 예도로 돌아갈 적에, 대군(大君)에게 별도로 올릴 만한 보기 좋은 물건이 없기 때문에 이 물건을 가지고 얼굴을 낼 계획이고, 주조하는 데 들어갈 동철과 납철은 모두 저희들이 낼 것이니 단지 솜씨 좋은 자를 얻어 정밀하게 주조하고자 할 따름이며, 하물며 예조에서 회답한 서계(書契) 가운데 각색 장인을 모조리 지급한다고 써 넣었는데, 여러분이 어찌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가? 모름지기 이 뜻을 동래 영감 앞에 진달해 달라”고 누누이 말하기로, 연유를 수본(手本)으로 한다 하였음. 관수(館守) 등이 이번의 통신사 때 여러 곳에 보낼 예단에 사용될 물건이라 청하면서, 전후로 무역 요구한 물건이 빈번하기로, 이제 이번에 요구하는 일은 역관 등에게 명하여 이치에 근거하여 타일러 짐짓 방색하겠거니와, 다만 도주의 아들 평의진이 대군에게 들여주어 얼굴을 낼 것이라 운운하며, 주조하는 동철과 납철 등의 물자를 모두 저들이 마련하겠고, 다만 우리나라의 솜씨 좋은 장인을 빌어서 만들어 들여보내겠다고 하니, 주조를 허락할 지 여부를 해조에 명하여 확정하여 지휘해 주시도록.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도주(島主)의 아들이 납입하여 얼굴을 내겠다고 하며 이렇게 간절히 요구하면서, 동철과 납철을 마련하여 주고 제조할 장인만 빌리고자 할 따름이니, 소원대로 주조하도록 허락하는 뜻으로 회이(回移)함이 어떠할지. 순치 12년(1655) 7월 초6일 동부승지 신 성(成)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31) 주척(周尺) : 길이를 재는 단위의 하나. 대략 20cm 내외이다.

을미(1655) 9월 16일

예조 단자. 일본국에 보낼 등롱명(燈籠銘)은 이미 완성하여 행사직(行司直) 오준(吳竣)으로 하여금 써서 내려보내게 함이 어떠할지. 입계하여 입계한 대로 시행함.

병신(1656) 8월 26일

동래부사 한(韓)이 13일 성첩한 장계 내용. 이 달 13일 새 관수(館守) 굴성세(橘成稅)에게 전례대로 다례(茶禮)를 베푼 뒤에, 굴성세가 “그대로 평좌(平坐)하여 간절히 면전에서 진달할 일이 있다”고 간청하거늘, 관수왜(館守倭)는 예사 차왜와 전주어 다르기 때문에 그 청에 따라 문답하였는데, 작은 종이 하나를 바치며 말하기를, “이것은 번마수(幡摩守)가 구하는 물건”이라 하거늘, 신이 답하기를 “도주가 구하는 유기(鎡器)도 그 수량이 너무 많아서, 부산에 작업장을 설치하고 지금 주조한 지 이미 여러 달이 지났는데도 일을 마치기에는 아직 멀고, 들어가는 물자와 인력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내가 어찌 다시 장계로 알릴 수가 있겠는가? 너의 마음에도 미안하지 않은가?” 하였더니, 관수가 말하기를, “지극히 감격스러운 일임을 모르지 않지만, 이것은 번마수(幡摩守)가 새로 청하는 것이라, 장계로 알려 속히 만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였음. 번마수가 구하는 유기 물목(物目)을 베껴 써서 해당 관청으로 올려 보내는 일임.

번민수 유기 주조물목

소촉대(小燭臺) 3쌍, 발이 있는 작은 등잔 3쌍, 전촉(剪燭) 9개, 잘라낸 초의 심을 넣어두는 그릇[剪燭心入盛器] 3쌍, 젓가락[筯] 50쌍, 삼층 함 6좌, 사층 함 6좌, 5층 함 6좌, 죽통화준(竹桶花樽) 6좌, 화대반(花臺盤) 9개.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전부터 새 관수가 나오면 전례대로 잔치를 베풀어 접대하였는데, 이번에 굴성세가 새 관수로 나오자 동래로 하여금 두 차례 잔치를 베풀게 하였는데, 이번 굴성세를 보니 평좌하여 이야기하자고 청하고서는 부채(負債)에 대한 일을 먼저 꺼내고, 이어서 쌀을 바꾸는 말을 꺼내니, 이는 곧 그의 본태이나, 이후로 필시 그치지 않을 터이니, 오직 이치에 근거하여 방색할 것이고, 번마수가 구하는

유기 등의 물건은 그다지 어렵지는 않고, 저들을 접대하는 도리에 있어서 방해되지 않으니 그대로 부응하되, 근래 도주의 구청이 연속되어 끊이지 않고, 이번에는 번마수가 구하는 것이 또 이러하여, 부자간에 각기 제 체면으로 번갈아 구청하면 실로 계속하기 어려운 일이고, 이번이 처음이니, 거기에 부응하는 일은 반드시 익히 강구해야겠기에, 해조에서 감히 마음대로 하지 못하겠으니, 묘당(廟堂)에 명하여 품의하여 조처하게 함이 어떠할지. 순치 13년(1656) 8월 23일에 좌승지 신 김(金)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이에 근거하여 비변사에서 첨부한 계목. 도주의 구청이 앞뒤로 이어지고, 번마수가 요구하는 유기 또한 이렇게까지 되니, 매양 그대로 부응하기는 어려운 듯하되, 저들을 접대하는 도리로는 삭막하게 할 수 없고, 구하는 각종 물자 또한 마련하기 어려운 물건도 아니니, 재량하여 만들어 주라는 뜻으로 해조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순치 13년(1656) 24일 우부승지 신 채(蔡)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받음.

정유(1657) 정월 26일

동래부사 원(元)이 18일 성첩한 장계. 이달 15일 병신조 평의진(平義眞)의 특송제1선 정관(正官) 등에게 연회를 베풀고, 17일 바람에 떠내려간 사람을 데리고 온 차왜 등 성원(藤成元)에게 전례대로 다례(茶禮)를 베풀 뒤 서계 등을 받아 올려보내며, 차왜가 다례 때 별단(別單, 1657. 1. 17)을 품속에서 꺼내어 바치거늘, 신이 열어보았는데, 상인삼(上人蔘) 등 15종을 도주가 예도에 갈 때의 예단에 사용할 것이라고 특별히 구청하였거늘, 신이 답하기를 “이번 여기에 기록한 물자들은 모두 우리나라에서 희귀한 것이고, 대금란(大金欄)과 대섬란(大閃欄)은 본디 우리나라 소산이 아닌데다 근래에는 더욱이 전혀 없고, 그 밖에 능자사(綾子紗), 능화사주(綾花絲紬), 경광주(輕廣紬)³²⁾, 문사(紋紗)³³⁾ 또한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며, 예전에는 장사꾼들이 간혹 저축이 있었으나 지금은 무역이 끊어졌으며, 인삼은 비록 우리나라 소산이나 장사꾼들이 가진 것은

32) 경광주(輕廣紬) : 가볍고 폭이 넓은 명주.

33) 문사(紋紗) : 무늬가 있는 얇은 비단.

지금 이번의 특별 무역에 적합하지 않으며, 황조포(黃照布) 역시 희귀한 물건인데 요즘에는 제 철이 아니어서 더욱이 구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을 만들어 방색하였더니, 차왜가 애걸하기를 “도주가 2월에 장차 예도 행차를 할 터인데, 저희가 나올 적에 반드시 무역하여 오라고 정녕 면전에서 말하였는데, 이제 영감의 말을 들으니 낙망이 막심하여 도주에게 돌아가 보고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한편으로 노하고 한편으로 애걸하며 태도가 한결같지 아니하니, 그 형편이 참으로 한결같이 굳게 막기가 어렵겠기로, 신이 십분 참작하여 대금란 10필과 대섬란 10필, 황조포 50필은 전부 방색하고, 상인삼 100근 중 50근과 능자 100필 중 70필, 사릉 100필 중 50필, 화사주 100필 중 50필, 문사 30필은 방색하되, 그 밖에 방색하지 못한 것은 상인삼 20근, 백저포 50필, 오미자 30근, 녹두가루 100근, 잣[柏子] 10섬, 호두 20섬인데, 날날이 해조에 보고하여 처치를 기다리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신이 물러나 생각하니, 왜인들이 매양 예도의 예단이라 칭하며 전후로 무역을 요구한 것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아니하였는데, 매양 장계로 알리는 것이 실로 황공하여, 본부의 장사꾼들이 가진 물자 중에 만일 적합한 것이 있으면 여기서 충당하여 지급하는 것이 매우 편하겠으므로, 서울에서 온 장사꾼을 불러서 힐문하였더니 이른바 상상(上上) 인삼은 본디 장사꾼들이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고, 상인삼 또한 좋은 품질인데 저들이 소지한 것은 모두 보통 품질이며, 그밖에 능자 등 여섯 가지 물종도 저들 중에는 전혀 저축한 것이 없고, 녹두가루 100근만은 거두어 모아서 충당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들이 한 말 뿐 아니라 수세안(收稅案)에 기록된 것을 가져다 살펴보았으되 이런 물종이 전혀 없기에, 동 별단을 베껴 써서 해당 관청으로 올려보내면서 방색할 물종 및 줄일 수량을 각색 물자 아래에 기록하였거니와, 그들의 말과 안색을 살펴건대 범연하지 아니한 듯하여 끝내 방색하기는 어려우니, 해조에 명하여 속히 지휘하여 주시기를.

구무별단

상상인삼(上上人蔘) 20근, 상인삼(上人蔘) 100근 중 50근 방색, 대금란(大金欄), 대금선(大錦線) 10필 모두 방색, 대섬란(大閃欄), 대선단(大線段) 10필 모두 방색, 능자(綾子) 100필 중 70필 방색, 사릉(紗綾) 능기초(綾其綃) 100필 중 50필 방색, 화사주(花紗紬) 100필 중 50필 방색, 경광주(輕廣紬) 100필 중 50필 방색, 문사(紋紗) 50필 중 30필 방색, 황조포(黃照布) 50필 방색, 백저포

(白紵布) 50필, 오미자(五味子) 30근, 녹두가루[菽豆末] 100근 본부(本府)에서 찾아 지급할 것, 잣[栝子] 10섬, 호두[胡桃] 20섬.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도주가 무역을 요구한 수량이 15종에 이르는데, 본부에서 이미 전량 방색한 대금란, 대섬란, 황조포 3종 외에도 희귀한 종류가 많아서, 물력(物力)을 헤아려보면 극히 방대하여 말을 만들어 방색하여야 마땅하나, 저들이 이미 에도로 들어갈 때 사용할 것이라고 간청하며 사사로이 무역하겠다고 말을 하니, 상항의 마련하기 어려운 3종은 이미 모두 방색하였고, 그 나머지 각종의 물건은 또 전량 허락하지 않아서 낙망하게 하기는 어려운 듯하니, 상상인삼 20근, 백저포 50필, 문사 20필, 상인삼 50근, 능자 30필, 사릉과 화사주와 경광주 각 50필은 모두 본부에서 줄여 정한 대로 해당 관청에 명하여 마련하여 내려보내어 가격을 넉넉하게 정하도록 하며, 녹두가루는 본부에서 이미 찾아 지급하였고, 오미자 30근과 잣 10섬과 호도 20섬은 그 수량이 비록 많으나 모두 본도에서 생산되는 것이니 모조리 환무(換貿)할 수 없을 듯하지만, 또한 본도에 명하여 편의대로 찾아 주게 하여 멀리 온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게 함이 마땅할 듯하니, 이런 뜻으로 본도의 감사 및 본부에 행이(行移)함이 어찌할지. 순치 14년(1657) 정월 25일 우부승지 신 홍처량(洪處亮) 차지로 입계하여 그 대로 윤택함.

정유(1657) 5월 초3일

동래부사 원(元)이 4월 26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부산첨사(釜山僉使)가 치통(馳通)한 내용임. 왜선 한 척이 서계를 가지고 나왔거늘 즉시 훈도 이형남(李亨男)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물어 보라 하였더니 돌아와서 하는 말이, “차왜 등성지(藤成之)가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別幅)을 가지고 왔거늘, 그 나온 연유를 물었더니 차왜가 말하기를, ‘도주가 에도로 들어가는 연유를 알리고자 서계를 가지고 나왔는데, 바람의 기세가 연일 불순하였으나 대군(大君)이 구하는 물건이 대단히 긴급하기로, 타고 오던 배는 악포(鰐浦)에 떨어뜨리고 비선(飛船)으로 나왔다’고 하거늘, 대마도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백장로(柏長老)와 상국사(相國寺)를 교대하려고 길장로(吉長老)가 대마도에 내도하였다고 하며, 가지고 온 서계는 다례(茶禮)하는 날 바칠 것이라고 하기로 우선 베껴 써

가지고 드린다”고 하여 받아 올려 보내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이제 이번에 무역을 요구하는 호피(虎皮)는 그 수량이 많을 뿐 아니라 그 품질 또한 체구가 크고 털이 좋은 것으로 무역을 요구하는데, 예사로 보내는 예단 따위 처럼 구차하게 충당하여 들어보내는 것과는 다르니, 이렇게 칙사(勅使)가 중첩되고 경비가 모조리 고갈된 시기에 이런 의외의 청이 있어 참으로 염려되오며, 접위관(接慰官) 수령을 차출하는 일은 본도에 보고하는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제 이 차왜가 또 나온 것을 보면 비록 평소의 사례가 아니지만 접대하는 도리는 또한 빠트릴 수 없으니, 본도에 명하여 가까운 읍의 문관 수령을 차출하여 접위관의 임무를 대행하게 하고, 두 차례의 연례(宴禮) 및 예단 등의 일 또한 전례대로 마련하여 실행하며, 차비역관(差備譯官)은 전에 내려간 자로써 그대로 겸하여 살피게 하며, 요구하는 물자가 곧 관백이 구하는 것이라 하지만, 서계의 격식 사례는 비록 한 글자라도 결코 그들이 제멋대로 고치도록 들어주어서는 안되겠거니와, 요구하는 물건도 또한 모두 방색하여 먼 곳 사람들의 바람을 섭섭하게 하여서는 안될 터이니, 요구하는 호피(虎皮) 70장 중에 꼭 그 값을 받도록 할 것은 아니나 수량을 감하여 지급함이 마땅할 듯하되, 저 사람들은 한 번 길을 열어주면 문득 늘 있는 사례로 여기니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짐짓 홍역관(洪譯官)에게 명하여 요구가 너무 많아서 즉시 부응할 수 없다는 뜻으로 타이르고, 그 실정과 태도를 살핀 다음에 그 문답을 보고서 다시 품의 처리함이 어떠할지. 도승지 신 윤순지(尹順之)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예조에서 입계하기를, “전교(傳敎)에 이르기를 ‘대마도주가 무역을 요구한 호피 일로 예조에서 이미 회계(回啓)하였는데, 그 공사(公事)³⁴를 이미 동래로 내려보냈느냐? 만약 아직 내려보내지 못했다면 그 회계(回啓)를 짐짓 늦추고 공사를 도로 들여오게 하며, 만약 이미 내려보냈다면 급히 잘 달리는 사람을 보내어 뒤쫓아가서 불러 가지고 오라고 즉시 분부하라’ 하교하셨는데, 그 공사는 어제 오시(午時) 즈음에 이미 파발(擺撥)로 부쳤으니, 지금 비록 급히 잘 달리는 사람을 보내더라도, 해당 관청에서 보내는 문서는 모두 파발을 거쳐 보내고, 한편으로 이문(移文) 파발은 다급하게 재촉하는 데다, 공사

34) 공사(公事) : 공적으로 결정된 일을 적은 문서 또는 그것을 시행하는 일.

가 내려간지 이제 벌써 하루 반이니, 미치지 못할 염려가 있기에 감히 입계한다” 하였더니, 전교에 “알았다”고 하였음.

정유(1657) 5월 초5일

승정원에서 입계하기를, “동래에 내려보낸 공사(公事)를 잘 달리는 사람을 급히 뒤따라 보내어 불러 가져 오라는 일로 지난밤에 하교하신 뒤, 즉시 해당 관청에 분부하여 사람을 시켜 급히 달려가게 하였는데, 오늘 아침 예조의 관리를 불러 물어보니 하는 말이, 지난밤 회계(回啓)의 공사를 계하(啓下) 즉시 공문(公文)을 만들어 내어 가지고 비국(備局)으로 가서 파발(擺撥)에 부쳐보냈다 하고, 또 비국의 관리를 불러 물었더니, 오늘 문을 열 때를 기다려 예조의 관리가 내왕하면서 즉시 파발에 부쳤다고 합니다. 막중하고 시급한 공사를 이렇게까지 늦추는 것이 극히 놀랍기에 예조에 청하여 해당 관리를 가두어 다스리게 하였고, 또 예조의 초기(草記)를 보니, 그 공사는 본월 초3일 오시에 가서 파발로 부쳤다고 하는데, 초3일 오시에 나갔으면 지금 이미 하루 반 남짓인데 비록 나는 듯이 뒤따라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미칠 수 있을 지 보장하기 어렵고, 더구나 남쪽 길은 보발(步撥)로는 하루 반인지라, 먼저 출발한 사람을 뒤에 가는 자가 반드시 따라가지 못할 걱정이 있어서 매우 염려스러우니, 별도로 금군(禁軍)을 정하여 말을 지급하여 뒤따라 보내는 것이 어떠할지, 황공하여 감히 입계하나이다” 하였더니, 전교에 이르기를 “입계한 말이 옳다. 그대로 하라, 길에서 미치지 못하면 동래에 도착하여 가져 오라는 말을 하여 보냄이 옳을 것이다”고 하였음.

예조에서 입계하기를, 예조에서 동래부사의 장계에 첨부하여 올린 계목으로 인하여 전교하시기를 “앞서는 도주가 무역을 요구하는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서계에는 ‘오로지 입으로 하는 말에 부친다[專付舌頭]’고 하거나, ‘오로지 차사의 입에 부친다[專付差使之口]’고 하였을 뿐인데, 지금은 별도로 서계를 만들어 강제로 규정한 것 같이 하니, 아마도 전일에 없었던 일인 듯하다. 본조(本曹)의 문서에는 과연 전례의 규범이 없었는지 상고하여 입계하라” 하셨습니다. 왜인 서계의 각년 등록을 가져와 상고했더니, 기축년(1647) 8월에 조수(鳥獸)를 구청할 때의 서계에는 이르기를 ‘방금 귀국 경내의 조수를 청하였는데’라 하였고, 경인년(1650) 10월의 준수한 새매[俊鵞]를 구청할 때의 서계에

는 ‘오로지 각 관아에 알려 구하기를 요구한다’고 하였는데, 이 두 차례에는 말씨가 매우 공손하였고, 임진년(1652) 6월의 수리(鷺鳥)를 구청할 때의 서계에는 ‘수리 대 여섯 연(連)을 간절히 바라는 바이오니 각 관청에 타일러서 산 채로 붙잡아서 신속하게 부산에 오도록 해 달라’고 하였고, 동년 9월에 준마(駿馬) 등의 물건을 구청할 때의 서계에는 ‘우리 대군(大君)에게 헌납하려고 개사(价使) 한 사람을 차출하여 보내니, 각도에 다니며 알려져 구하면 다행이겠다’고 하였으니, 이 두 차례는 아마도 오만한 것 같고, 다른 나머지 서계는 대동소이하며, 동년 8월 등롱(燈籠) 야장(冶匠)을 빌려주기를 요구할 때의 서계에는 곡절을 갖추어 말하고, 말단에는 ‘좋아하는 바의 형상은 사개(使价)의 구설(口舌)에 부친다’고 하였으니, 이는 형상을 지적하여 말한 듯합니다. 전일에 조수를 구청할 때 부산과 동래에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귀국 경내의 조수인데, 각 도에 구하도록 타일러 왜관에 도달하도록 하면 얼마나 더 감사하겠습니까? 차사 평성구의 허끝에 부칩니다’ 하였고, 예조에는 ‘구걸한다[乞]’는 글자를 사용하였는데, 이번의 서계 역시 부산 동래로 보내는 서계인지라 예전의 서식과 크게 차이가 없는 듯한데, 오만한 뜻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신은 당초 회계(回啓)할 때 살펴 알지 못하고 말씀드려서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고 감히 입계하나이다. 전교에 이르기 “이것만이 아니다. 논의할 일이 많이 있으니 후일에 인견할 때 품의 조처하겠다”고 하였음.

정유(1657) 5월 20일

예조에서의 입계. 동래부사의 회첩(回牒)을 보니, 무릇 차왜(差倭)에게 다례(茶禮)를 하는 날 그 서계를 받고 그 말하는 바를 듣고서 날날이 치계하는 것이 전해오는 옛 규범인데, 이제 이번 호피(虎皮) 무역을 요구하는 일은 다례할 적에 비록 ‘이 물건은 근래에 서울과 지방에 전혀 없으니 요구에 응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을 하여 방색하였으나, 전례에 의거하여 치계하는 것을 저들이 반드시 상세히 알 터인데, 이제 만약 관문(關文)의 말 뜻대로 만든다면, 다만 일에 있어서 무익할 뿐 아니라 또한 믿고 듣지 않을 것이기에, 이제 짐짓 장계에 한 말로 방색한다고 하고 거기에 답한 말은 회보하지 않았으나, 뒤이어 동래부사의 장계를 비국(備局)에 계하(啓下)한 것을 보니, 저 사람들과 접촉하여 이야기 할 때 맨 처음 호피 무역을 요구하는 일을 말하고는, 대략 뒤에 간 이문(移文)의 내용으로 방색하였으나, 본조의 이문에는 당초 감히 장계로 알리지 못한다

는 뜻으로 타이르게 하였음에도, 부사(府使)는 ‘본조에 보내었는데 본조에서 감히 입계하지 못했다’고 말을 하였으니, 이는 본조의 이문(移文)이 늦은 듯 한데서 말미암은 것이지만, 저 사람들은 필시 장계를 올린 것을 알 것이므로, 본조에서 입계하지 않은 것으로 말할 것입니다. 장계 가운데 문답한 것이 비록 분명하지 않으나, 저 사람들이 말하는 사이에 낙망한 마음은 또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큰 일을 정할 즈음에 나온 것이라, 꼭 급급히 부응하도록 허락할 것은 아니나, 또한 오래도록 명백하게 분부하는 일이 없어서는 안될 터이니,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도록 함이 어떠할지. 전교에 “윤희한다” 하였음.

비변사에서의 입계. 예조에서 ‘해당 차왜가 호피의 무역을 요구하는 일을 명백한 분부 없이 오래 둘 수 없으니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도록 하는 일’로 입계하여 전교에 ‘윤희한다’는 일로 명하였는데, 이전부터 왜인이 무역을 요구한 물건은 해당 관청에서 참작하여 복계(覆啓)하되 혹 방색하거나 혹 원 수량 중에서 감하는 등 본디 시행한 규정이 있는데, 이제 이번 호피는 비록 전량을 허락하지 못하더라도 수량을 재량하여 해당 관청 및 본도에 명하여 전례대로 무역을 허락함으로써 멀리서 온 사람의 바람에 부응함이 어떠할지? 전교에 이르기를 “다시 동래의 치계를 본 뒤에 분부함이 가하다” 하였음.

동래부사에게 보내는 이문. 예조에서 상고한 일. 당초 호피(虎皮) 공사(公事)를 금군(禁軍)이 가지고 갈 때 이문(移文)한 당초의 일은 본부에서 회첩(回牒)한 뜻으로 이미 잘 알았거니와, 그 아래의 ‘가까운 읍의 수령을 접위관(接慰官)으로 차출하는 일 및 두 차례의 연례(宴禮)와 예단(禮單) 등의 일은, 혹 그 보낸 이관(移關)을 도로 가지고 온 일 때문에, 전례대로 행하는 일을 빠뜨리게 되면 극히 잘못인데, 본부에서 필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로되, 혹 전례대로 행하지 않을 폐단이 있으면 참으로 작은 일이 아닌 지라 염려되므로, 접위관이 나간 일자 및 두 차례의 연례(宴禮)와 예단을 증정한 연유를 급급히 치보할 것.

예조단자

차왜 등성지(藤成之)의 하선연(下船宴)과 회환연(回還宴) 두 차례의 연회의 예단.

각기 백저포(白苧布) 4필, 백면주(白綿紬) 4필, 흑마포(黑麻布) 2필, 백목면(白木綿) 5필, 황모필(黃毛筆) 20자루, 이상은 해당 관청에서 마련하여 내려보냄. 네 장을 붙인 유둔(油氈)³⁵⁾ 1부, 화석(花席) 2장, 진묵(眞墨) 20개, 이상은 본도에서 제급(題給)³⁶⁾함. 시봉(侍奉) 1인과 압물(押物) 1인의 두 차례 연례(宴禮)에 각기 백저포 2필, 백면주 2필, 백목면 3필, 반종(伴從) 5명의 두 차례 연례 예단, 각기 백면주 1필, 백저포 1필, 백목면 2필, 이상은 해당 관청에서 마련하여 내려보냄.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앞서 대마도 도주에게 회답하는 서계 및 동래 부산의 답장 초고를 아울러 승문원(承文院)에서 말을 만들어 지어내게 하였는데, 회례(回禮)하는 물건은 아울러 본가(本價)를 보고 참작하여 마련하며, 계목을 후록(後錄)하니, 해당 관청 및 본도에 명하여 급급히 마련하여, 원 서계가 올라오는 즉시 내려보냄이 어떠할지.

후록 회례(回禮) : 표피(豹皮) 1장, 인삼 2근, 백저포 6필, 백면주 6필, 흑마포 5필, 백목면 10필, 황모필 30자루. 이상은 해당 관청에서 마련하여 내려보냄. 동래 부산 두 곳의 회례 : 각기 백면주 4필, 백저포 4필, 흑마포 2필, 백면주 5필. 이상은 해당 관청에서 마련하여 내려보냄.

정유(1657) 6월 초5일

예조에게 입계하기를, “앞서 호피(虎皮) 무역을 요구하는 차왜(差倭)에게 혹 이문을 도로 가져왔다고 하여 예사로 행하는 일까지 빠트린다면 극히 잘못인데, 본부에서 필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터이나, 혹 행하지 않는 폐단이 있을까 염려되므로, 본도의 접위관(接慰官)이 나간 일자 및 두 차례의 연례(宴禮) 예단(禮單)을 준 연유를 치보하라는 일로 동래부에 이문(移文)하였는데, 이제 회보(回報)를 보니, 접위관이 본부에 중첩하여 도착하면 폐를 끼침이 없지 않겠기에 장차 형편을 보고 본부에서 접대하고자 하는데, 지금은 부사가 왜관에 출입하는 것이 편치 아니한 바 있어서, 역관으로 하여금 차

35) 유둔(油氈) : 비가 올 때 장막 등에 사용하기 위해 종이를 이어 붙여 기름을 먹인 종이.

36) 제급(題給) : 제사(題辭)를 매기어 줌.

사왜(差使倭)에게 타이르게 하고, 밀양부사를 청하여 와서 날짜를 정하여 연회를 베풀 계획이라 하니, 그 사소한 폐단만 헤아려 진작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오래까지 이른 것은 일이 매우 편치 못하니, 동래부사 원만석(元萬石)³⁷⁾을 추고(推考)³⁸⁾함이 어떠할 지?” 하였는데, 전교에 이르기를 “윤택한다” 하였음.

정유 6월 초8일

동래부사 원(元)이 초2일 성첩한 장계. 차왜 등성지가 주간하는 호피 무역 요구를 방색하는 일로 해당 관청에서 신에게 분부한 지 이미 오래로되, 방금 서계 하나로 저들과 서로 버티고 있는데, 호피의 일은 원래 대단한 관계가 아님에도 전례에 따라 할 이런 사소한 일로 이런 때에 다투고 힐난하는 것이 타당하지 못한 듯하기로, 해당 관청에서 분부한 뜻을 형편을 보아 타이르라는 일로 수역(首譯) 홍희남(洪喜男)³⁹⁾에게 신척하였으나, 방금 도부(到付)한 홍희남의 수본(手本)에, “당일 관수(館守)에게 가서 호피 무역을 요구하는 차왜(差倭)를 불러와서 함께 앉아 말하기를 ‘격식에 어긋난 서계를 고치기 전에 호피 무역 요구의 일로 치계하였다가 해당 관청에서 감히 입계하지 못하고 동 장계를 도로 내려보냈는데, 동래 영감과 관수가 서로 접촉할 적에 장차 이 연유를 명백히 말하였을 뿐 아니라, 호피는 비록 우리나라 소산이지만 본디 해당 관청에 저축한 것이 없고, 만약 나라에서 사용할 곳이 있으면 각 지방에 분부하여 근근히 거두어 모아서 사용하는 것이고, 도주의 무역 요구가 70장이니 되니 결단코 부응하기 어렵다’고 말을 만들어 방색하였더니, 관수가 말하기를 ‘서계를 미처 고치기 전에 호피 무역을 요구하는 장계를 올리기가 쉽지 않다 하였는바, 그 때는 분명치 않으나 그 때 동래 영감 앞에 일일이 진달하였거니와, 이번 무역 요구는 절박한 데서 나왔고, 서계를 만들어 진달까지 한 것은 빨리 무역해 가려는 뜻이지 조금도 공짜로 얻으려는 계획은 터럭 하나라도 없으니, 평상시와 꼭 같이 팔러 오면 값에 준하여 무역해 가서, 대군(大君)의 여러가지

37) 원만석(元萬石) : 효종 병신(1656) 12월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정유(1657) 6월에 차왜(差倭)의 서계(書契)를 고치지 않은 일로 나포되어 갔다.

38) 추고(推考) : 벼슬아치의 죄과를 추궁하여 살핌.

39) 홍희남(洪喜男, 1595-?) : 남양 홍씨로 자는 자열(子悅)이며, 광해 계축(1613)의 역과에 합격하여 왜역에 종사하다가 승록대부의 품계까지 받았다.

기구를 개조하는 데 입납하려고 하니, 비록 그 수량에 차지 않더라도 장사꾼들에게 무역을 허락한다고 알리면, 그 무역되는 대로 하나하나 들여보낼 계획이니, 이 뜻을 동래 영감 앞에 고하여 다시 치계하여 도주의 바람에 부응해 주시도록 해달라'고 한 연유를 수본(手本)⁴⁰⁾하는 일"이라고 수본을 하였음. 이전부터 모든 물자의 무역을 요구할 때는 처음에 비록 정한 수량이 있더라도, 가지고 돌아갈 때에는 반드시 한결같이 그 수량대로 한 것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이번 호피는 또한 장사꾼들이 평상시에 매매하는 물건이기에, 등성지가 나온 즉시 신이 장사꾼들에게 분부하여 그들로 하여금 찾아 들이게 하였기에, 몇 장을 장사꾼들이 이제 이미 왜관에 들였으니, 이로 본다면 이후로 필시 이어오는 자가 있을 것인데, 차사가 와서 고한 뜻도 우연이 아닌지라, 비록 전량을 부응하기는 어렵지만 또한 너무 낙망하게 하여서도 안될 것이니, 해당 관청에 명하여 장사꾼들에게 엄하게 신칙하여 다수를 내려 보내주시며, 해당 관청에서도 몇 장을 속히 내려보내어 섹책하도록 하십시오. 등성지의 말로는 그는 별로 담당하는 일이 없으니 회답 서계를 해당 관청에서 내려보내면 즉시 들어갈 것이며, 호피는 관수에게 명하여 무역하는 대로 들여보낼 것이라 하오니, 동 회답 서계를 해당 관청에 명하여 속히 내려보내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호피 무역을 요구하는 차왜가 나온 지 이미 오래되어 아직 비선(飛船)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서, 형편을 보아 무역을 허락하라는 일로 계하하였는데, 방금 접한 동래부사 원만석의 치계에는 매양 다른 서계의 양식이 어긋난다고 하여 또 진작 무역을 허락하지 아니해서, 오래도록 머물게 하여 먼 곳 사람의 바람을 저버리는 것은 불가한 듯하고, 요구하는 70장 중 40장만 전례대로 무역을 허락하되, 장계에는 해조에 명하여 몇 장을 내려보내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속히 해조에 분부하여 적절하게 해아려 내려보내도록 하며, 회답 서계도 즉시 해당 사역원에 명하여 지어내게 하여 일시에 내려보냄이 어떠할지? 우승지 신 남용익(南龍翼)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40) 수본(手本) : 공사(公事)에 대한 자필 보고서.

정유(1657) 6월 11일

동래부사 원(元)이 초7일 성첩한 장계. 당일에 도부(到付)⁴¹⁾한 접위관 밀양부사 김하량(金廈樑)의 이문(移文) 내용에, “부사가 본월 초 6일 부산부(釜山府)에 달려가서 호피 무역을 요구하는 차왜 등성지(藤成之)와 압물(押物) 1인, 시봉(侍奉) 1인, 반종(伴從) 5명 등을 전례대로 숙배(肅拜)한 뒤 진상(進上)을 받아 올리고, 인하여 관소(館所)에 가서 전례대로 초차연(初次宴)을 행하고 안부를 물은 뒤에 해당 관청에서 보낸 예단(禮單)과 잡물을 별단(別單)에 적어 전해 주었더니, 차왜(差倭)가 말하기를 ‘잔치가 이미 감격스러운데, 해당 관청에서 각종 잡물을 특별히 하사까지 하시니 더욱 지극히 감격한다’ 하고 사례하여 마지 아니하였으며, 중배례(中盃禮) 때 차왜가 말하기를 ‘이번 호피 무역의 요구는 절박한 데서 나왔으나 서계를 만들어 전달하였는데, 모조록 있는 곳에 분부하여 속히 와서 팔게 하도록 해 달라’ 하거늘, 부사가 답하기를 ‘호피는 비록 우리나라 소산이나 본디 해당 관청에서 저축한 바 없고, 70장이나 되는 많은 장의 호피는 결단코 갑자기 부응할 수는 없다’고 말을 만들어 방색하였더니, 차왜가 또 말하기를 ‘에도에 화재가 났을 때 대군(大君)의 피물(皮物)로 된 여러 도구들이 모두 소진되어 바야흐로 고쳐 마련하려고 하는데, 도주가 광채를 내려고 소용이 급박하니, 비록 일시에 수를 채울 수는 없더라도 연속하여 팔러 오면 값에 맞추어 무역하여 들여보낼 것이고, 관수가 이 일을 전담하니 이 뜻을 일일이 치계하여 도주의 바람에 부응해 주기 바라며, 또한 다이슈잉(大猷院) 분향(焚香)의 일로 일어난 에도의 화재를 위로하기 위하여 각 도의 장관(將官)들이 모두 들어갔는데, 도주는 관백(關白)이 보내는 물건을 귀국에 전해드리면 반드시 역관을 보내어 치사(致謝)하는 일이 있어서 접촉한 뒤에 들어간다는 뜻을 보고에서 빠트렸으나, 집정 등이 다시 서찰을 보내어 재촉하여 부득이 들어갔으니, 회답서계 가운데 말을 첨가하여 넣어서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하라’고 하거늘, 답하기를 ‘이 일은 내가 관장하는 바 아니어서 해조에 보고할 수 없다’고 하고 파하고 나왔다”는 일로 이문하였기에 연유를 치계함.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호피의 무역을 요구하는 차왜가 도주가 들어가는 것이 조금 늦다는 뜻을 회답 서계 가운데 첨가하여 넣자고 하였으

41) 도부(到付) : 공문이 도착함.

나, 다만 말이 명백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가 회답하는 문서에 첨가하여 넣을 필요가 없음은, 김하량이 이미 해조에 보고할 수 없다고 답하였으니, 지금 이후로도 이런 뜻으로 방색할 것을 밀양부사 및 동래부사에게 아울러 회이(回移)함이 어떠할지. 좌승지 신 정(鄭)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정유(1657) 7월 17일

동래부사 원(元)의 장계 내용. 본월 초8일 호피 무역을 요구하는 차왜 등성지(藤成之) 등에게 상선연(上船宴)을 베푼 뒤, 해당 관청에서 보낸 예단과 잡물을 단자(單子)에 적어 전해 주었더니, 차왜가 말하기를, “접위관을 특별히 보내어 두 차례 잔치를 베풀어주심에 감격하거니와, 해당 관청에서도 각종 예단을 거둬 하사하시니 더욱 지극히 감격한다”고 한 일임.

정유(1657) 8월 초7일

경상감사 임(任)이 초2일에 성첩한 장계. 차왜 등성지가 들어간 일임.

무술(1658) 정월 초2일

동래부사 홍(洪)⁴²⁾이 25일 성첩한 장계임. 어제 왜선 1척이 노인(路引)⁴³⁾을 가지고 나왔기에, 즉시 훈도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물어보라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나온 연유를 탐문하였더니 ‘관수에게 보내는 봉행 등의 사서(私書)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거늘, 관수에게 가서 그 연유를 물었더니 관수가 말하기를, ‘도주(島主)의 주검을 모신 영구(靈柩)가 11월 초2일 에도를 떠나 동월 16일 오오사카[大坂]에 도착하였는데,

42) 홍(洪) : 효종 정유(1657) 7월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무술(1658) 7월에 경상감사로 승진되어 간 홍위(洪葦)이다.

43) 노인(路引) : 입국증명서.

그 뒤로 바람이 불순하여 대마도에 도착할 시기를 알 수 없으나, 형세가 필시 세전(歲前)에 내도할 것이므로, 장사(葬事) 때에 쓸 잡물을 마련하여 보내라는 봉행(奉行) 등의 서찰 및 물목이 내도하였다'고 하였음. 뒤따라 훈도 이형남(李亨男)과 별차 이상한(李尙漢) 등이 와서 고한 내용에, “전 도주의 매장 시에 쓰는 물건을 구청하는 비선(飛船)이 이 일을 위하여 나왔는데, 관수 등은 ‘전 도주(島主)가 두 나라 사이에 있으면서 40여 년 동안 후한 은혜를 입었다가, 오늘에 이르러 불행히도 몸이 죽어 송종(送終)하는 물건을 또 이렇게 구청하는데, 땅에 들어간 뒤로 다시 은혜를 입고자 하여도 되겠는가?’ 하였다”고 함. 이번 이 물건은 상례에 쓰일 것이고, 그의 하는 말이 십분 간절한지라, 우리가 은근히 보살피는 도리에 있어서도 꽤히 베푸는 것이 마땅할 듯하거니와, 구하는 물건은 사단(紗段) 이외에 또한 대단히 마련하기 어려운 물건은 없어서, 종이와 부채(扇), 과일, 납촉(蠟燭) 등의 물건은 한편으로 도신(道臣)에게 치보하여 상의하여 찾아 주도록 하며, 그 중 대단(大段)⁴⁴⁾, 대사(大紗), 부용향(芙蓉香) 등의 물건은 해조에 명하여 확정해서 마련하게 하여 성화같이 내려보내 주시기를. 이번에 온 노인(路引)은 또한 요시나리(義成)의 도서(圖書)를 사용하였는바, 요시나리의 상례 물자를 요구하면서 아직도 요시나리의 도서를 사용하는 일은 매우 근거가 없지마는, 만인(蠻人)이 본디 사리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요시나리가 이미 죽고 요시자네(義眞)는 미처 오지 않았으니, 그 사이의 부신(符信)은 의거할 곳이 없는지라, 아직 이전의 형식을 준수하올지? 그들에게 있어서는 무식한 것이나 우리로서는 손상될 바 없기로 짐짓 받아 올리오며, 요구하는 물목을 베껴 써서 감봉(監封)하여 해조로 올려보내는 일 및 구청물목임.

극품(極品)의 각색 대단(大段) 10필, 극품의 각색 유문사(有紋紗) 10필, 부용향(芙蓉香) 30가지[枝], 극품의 장지(壯紙) 100권, 후백지(厚白紙) 200권, 운암지(雲暗紙) 10권, 운화지(雲花紙) 10권, 색선(色扇) 1000자루, 황밀(黃蜜) 50근, 잣[栢子] 10섬, 호도(胡桃) 10섬, 유지(油紙) 10권.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면 왜인이 도주를 매장하는 물자라 하면서 구청이 매우 간절하니, 먼 곳의 사람을 대접하는 도리에 있어서 수량대로 부응하여 위안하는 도리로 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 단사(段紗)와 부용향 등은 해조에 명하여 마련하여 내려보내게 하며, 종이와 부채, 황밀과 과일 등의 물건은 본도에서 편

44) 대단(大段) : 중국에서 나는 비단의 한 가지로 한단(漢緞)이라고도 하였다.

의대로 찾아 주라는 뜻으로 경상감사에게 아울러 행이(行移)함이 어떠할지. 순치 15년(1658) 정월 초2일 동부승지 신 한진기(韓震琦)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무술(1658) 2월 30일

동래부사 홍(洪)이 25일 성첩한 장계. 정유조 부특송사(副特送使)가 나온지 이미 오래인데, 문득 듣자니 도주(島主)의 상과 또 일이 있다고 하여 봉진연(封進宴)을 진작 행하지 못하고, 어제에서야 차왜(差倭) 등이 전례에 의거하여 진상(進上) 숙배(肅拜)한 뒤에 하선연(下船宴)을 행하였음. 도주의 상에 쓰일 물자로 요구한 사단(紗段)은 전에 이미 들여주었고, 본도에서 획정한 각색의 종이와 부채, 황밀, 과일 등의 물건은 도착하는 대로 지급하여 거의 다 지급하였지만, 해조에서 내려보낸 대사(大紗) 10필 중 4필은 색깔과 품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이미 내려왔기에 비록 도로 올려보내지 못하지만 또한 들여보낼 수 없어서 훈도 김근행(金謹行)이 있는 곳에 놓아두었으며, 동 구청한 사단(紗段)과 향 등의 물건을 무역하는 것은 값을 쳐서 계산해 들이겠다고 원하였는바, 무역을 요구하는 잡물의 값을 쳐서 계산해 들인 것이 전후로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지금 이 요구는 상례 용품이라고 칭하는 것이라, 그 값을 받아들일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속히 해조에 명하여 품의하여 지휘하여 봉행하도록 해 주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대사(大紗) 4필은 이미 품질이 열등하여 동래에 놓아두었다 하며, 그 대체 물자를 해조에 명하여 급속히 고쳐 마련하여 내려보내도록 하되, 사단과 향 등의 물건은 당초 왜인들이 상례용품으로 사용하려 한다고 간절히 요청하기에 그대로 부응하도록 허락했으나, 저들이 이제 비록 값을 쳐서 계산해 들이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먼 곳 사람을 대접하는 도리에 있어서 결코 그 값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 백급(白給)한다는 뜻으로 말을 만들어 언급하는 것이 합당할 듯하니, 이런 뜻으로 회이(回移)함이 어떠할지. 순치 15년(1658) 2월 30일 동부승지 권대운(權大運)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무술(1658) 3월 29일

동래부사 홍(洪)이 22일 성첩한 장계. 왜의 작은 배 한 척이 나왔기에 즉시 훈도 이상한(李尙漢)에게 사정을 물어보게 하였더니, 돌아와서 하는 말이, “작은 배에는 두왜(頭倭) 1인 등이 노인(路引)을 가지고 나왔는데, 두왜가 하는 말이 ‘나온 일은 번마수(幡摩守)가 이번 5월 초열흘째 집정(執政)의 여식에게 장가들어 처로 삼는데, 그 때 쓰일 잡물을 급급히 무역하여 보내는 일로 관수(館守) 및 대관(代官) 등에게 보내는 서찰을 가지고 나왔다’고 한다” 하였음. 뒤따라 바친 훈도 김근행(金謹行) 등의 수본 내용에, “어제 나온 비선(飛船)에 사정을 물은 일은 부산첨사의 치통(馳通)에 상세히 있고, 관수(館守)의 말에 ‘이제 이 비선은 오로지 요시자네(義眞)의 혼수에 쓰일 잡물 등을 무역하는 일로 나왔는데, 그 중에 금자(金子)는 근래에 장사꾼들이 전혀 가지고 오지 않으며, 주단(紬段)과 인삼 등의 물건은 장사꾼들이 비록 간혹 가지고 오지만 그 수량이 영성할 뿐 아니라 극품(極品)이 없으며, 인삼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상상품(上上品)을 얻으려고 하므로, 그 형편이 동래 영감 앞에 진달하지 않을 수 없으니, 해조로 전달하여 급급히 무역을 허락해주시면, 값은 공목(公木) 및 혹 다른 잡물 중에서 요구하는 물건으로 일일이 값대로 납입하여 교환하겠다고 하는 일로 에도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서찰 및 무역 요구 물목을 내어 보여주거늘, ‘금자(金子) 등은 당화(唐貨)이니 서울에도 전혀 없고, 인삼도 역시 철이 늦어서 무역을 허락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는 뜻으로 말을 만들어 타일렀더니, 관수가 언짢아 하는 기색을 하면서 말하기를, ‘이는 섬에서 매매하여 이익을 취하자는 것이 아니라 혼례의 대사에 사용하려는 것이며, 이는 요시자네가 처음으로 청하는 것으로, 에도에서 사람을 보내어 값대로 무역하고자 하는 일이니, 중간에서 일을 맡은 사람의 도리는 단지 해조에 전달하여 따라 줄지 안 따를지의 여부를 기다림이 마땅할 것인데, 어찌하여 매사를 중간에서 방색하는가?’ 하면서 한편으로 간청하기로, 부득이 그가 무역을 요구하는 물목을 베껴 써서 수본(手本)과 후록(後錄)으로 올린다”고 수본을 하였음. 상례 물품의 요구를 마치자 혼수(婚需)의 요청이 잇달아 오는 것은 짐승의 일이라 굳이 책망할 것도 없으나, 우리로서는 수용하는 것이 참으로 민망함. 물건이 많고, 겹하여 구하기도 어려우니 일일이 그대로 허락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미 혼수라 하고, 그 뜻이 또한 간절하여 또한 전연 거절할 수도 없겠기로, 동 무역 요구 물목을 수량대로 베껴 해조로 올려보내거니와, 그 중 마련하기 어려운 물건은

다시 역관에게 명하여 타일러 방색하라 하며, 본도에서 생산되는 물건은 마땅히 도신(道臣)과 상의하여 찾아 주되, 분정(分定)하여 운반할 때 민폐가 없지 않겠기로, 장차 일공(日供)으로 지급할 물자를 끌어와서 들여주며, 기술자가 만드는 것으로 장사꾼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또한 본부에서 편의대로 찾아 지급할 계획이며, 사소한 곡절은 감히 장계에 모조리 번거롭게 알리지 못하나, 그 중 각 물건 아래 사유를 갖추어 기록하여 조정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대비하였음. 해조에서 부응하는 물건도 비록 한결같이 그 수량대로 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지급할 물건은 다소를 막론하고 반드시 극품을 가려서 저 사람들이 점퇴(點退)하는 우려가 없도록 함이 합당할 것임.

무역 요구 물건의 등서 : 상상인삼(上上人蔘) 100근, 상상 황금(上上黃金) 5·60냥, 상상 각색 대단(大段) 30필, 상상 금선(錦線) 20필, 상상 선단(線段) 20필, 백방사주(白方絲紬) 100필, 백릉기주(白綾其紬) 100필, 백화사주(白花絲紬) 100필[이상은 해조에서 참작하여 찾아 줄 것]. 대화용촉(大畫龍燭) 2쌍, 유기 대접(鋸大貼) 3죽(竹)⁴⁵⁾, 유기 보시기(鋸甫兒) 5죽 [이상은 본부에서 기술자들에게 주조하게 하여 지급할 것]. 백면주(白綿紬) 200필, 미선(尾扇) 300자루 [이상은 장사꾼들에게 전례대로 매매하게 할 것]. 녹두가루 100근, 청밀(淸蜜) 30근, 화석(花席) 30장 [이상은 일공(日供)의 지급물자 중에서 끌어다 줄 것]. 곡수화유지(曲水畫油紙) 30장 [본부에서 편의대로 지급할 것]. 후지(厚紙) 50권[상례에 쓰는 물건을 구청할 때 지급한 것이 또한 많으므로 별도로 무역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이미 타일렀음], 채전(彩氈) 5·6장, 산호수(珊瑚樹) 1쌍, 옥패(玉佩) 4·50개 [이상은 서울에서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역관이 이미 방색하였음]. 안장(鞍裝) 2부 [이른바 안장은 예사의 안장이 아니라 통신사가 갈 때 조정에서 예도로 보내는 것과 같은 것이니 곧 어안(御鞍)의 모양이라 하는데, 이는 사사로이 무역을 요구할 일이 아니고, 사체에 관계된 것이라 부응할 수 없다는 뜻으로 역관들이 이미 방색함]. 대화로(大火爐) 2쌍 [이른바 화로는 평상시의 화로에 비할 바 아니고 형체가 극히 무겁고 커서 서울의 기술자라야 주조하여 만들 수 있는데, 육로로는 운송할 수 없으므로 역관들이 이미 방색함]. 대초둔(大草蓆) 50번(番) [연례 지급물자로 끌어다 지급함].

45) 죽(竹) : 옷이나 그릇 등의 열 벌을 일컫는 단위.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면 왜인이 요시자네(義眞)의 혼수라고 하면서 매우 간절하게 무역을 요구하고, 물건이 매우 많으며 또한 마련하기 어려운 물건도 있거니와, 이는 규정 외에 구청하는 일이니 부응하도록 허락하거나 방색할 즈음에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대하여 신의 예조에서는 감히 마음대로 하지 못하오니 묘당(廟堂)에 명하여 논의하여 조처함이 어떠할지. 순치 15년(1658) 3월 28일 동부승지 신 권(權)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비변사에서 첨부한 계목. 요시자네(義眞)가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책임을 감당하여 대마도로 나와 이렇게 무역을 요구하는 물건인데, 맨 처음의 청을 전연 방색하여 먼 곳 사람의 바람을 이지러지게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또한 전연 백급(白給)하는 데 견줄 것도 아니니, 동래부사 홍위(洪葦)가 기록한 별단(別單) 가운데 본도(本道)와 본부(本府)에서 마련할 수 있는 물건은 모두 이대로 시행하도록 하며, 해조에서 찾아 줄 물건은, 그 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물건은 원래 수량 중 반만 내려보내고, 구하기 쉬운 물건은 청한 대로 허락함이 마땅하니, 이렇게 해조와 해도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순치 15년(1658) 3월 29일 우부승지 신 이(李)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무술(1658) 4월 13일

예조에서 입계하기를, “방금 호조(戶曹)의 이문(移文)을 보니, 왜인이 무역을 요구한 잡물을 이미 마련하였다고 하는데, 각종의 무역을 허락한 물건 중 그대로 허락할 것과 절반으로 허락하는 수량을 별단(別單)에 써서 입계하였으니, 역관 한 사람을 별도로 정하여 가지고 내려보낸다는 뜻으로 감히 입계한다” 하였더니, 전교에 “알았다. 전부터 이런 물건은 가지고 가는 사람이 중간에서 서로 바꾸어 다른 나라의 모욕을 받는다고 하니, 본조에서 이런 폐단을 엄하게 방지하여 보내라”고 하였음.

예조의 단자

왜인이 무역을 요구한 물건의 별단. 상상인삼(上上人蔘) 100근 중 50근, 황금(黃金) 5·60냥 중 50냥, 상상각색대단(上上各色大段) 30필 중 20필, 초록봉

화문대단(草綠鳳花紋大段) 1필, 남육화문대단(藍六花紋大段) 1필, 남운문대단(藍雲紋大段) 5필, 천청화문대단(天青花紋大段) 2필, 다홍육화문대단(多紅六花紋大段) 1필, 다홍운문대단(多紅雲紋大段) 3필, 다홍봉화문대단(多紅鳳花紋大段) 1필, 유록육화문대단(油綠六花紋大段) 3필, 유록운문대단(油綠雲紋大段) 1필, 초록운문대단(草綠雲紋大段) 3필, 상상금선(上上錦線) 20필 중 10필, 천청금선(天青錦線) 5필, 다홍금선(多紅錦線) 5필, 상상선단(上上線段) 20필 중 10필, 천청선단(天青線段) 6필, 남선단(藍線段) 4필, 백방사주(白方絲紬) 100필 중 50필, 백릉기주(白綾其紬) 100필 중 50필, 백화사주(白花絲紬) 100필 중 50필, 대화룡촉(大畫龍燭) 2쌍. 순치 15년(1658) 4월 13일 입계.

무술(1658) 9월 22일

동래부사가 9월 17일 성첩한 장계. 어제 해시(亥時)에 도부한 부산첨사 이시정(李時挺)의 치통(馳通) 내용임. 당일 유시(酉時) 쯤에 왜의 작은 배 한 척이 노인(路引)을 가지고 나왔거늘, 훈도 이상한(李尙漢)과 별차 변이표(卞爾標)⁴⁶⁾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물어 보라 하였더니, 회언(回言)에 “작은 배에는 두왜(頭倭) 1인과 격왜(格倭) 5명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나온 연유를 탐문하였더니, 두왜가 말하기를, ‘저는 대마도에서 시급히 사용할 물건의 무역을 요구하러 나왔을 뿐 특별히 다른 일은 없다’ 하거늘, 또 도주가 나왔는지 여부를 물었더니, 아직 대마도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였음. 관수(館守)에게 가서 무역을 요구하는 물건을 물었더니 역시 대단한 물건이로되 소용이 시급하기로 부득이 비선(飛船)이 나왔다고 하기로 동 선박의 노인을 가져다 들인다”고 하면서 회언(回言)하였으므로, 동 노인을 받아 보내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뒤따라 바친 훈도 이상한과 별차 변이표 등의 수본(手本) 내용에는, “어제 나온 비선에 무역을 요구하는 물건의 본뜻을 상세히 탐문하였더니, 관수(館守) 및 대관왜(代官倭) 등의 말에, ‘도주가 곧 내려올 것인데 이 물건을 미리 마련하였다가 대마도에 돌아온 즉시 에도의 집정(執政) 여러 장수들에게 예단을 보내려고 한다’ 하거늘, 무역을 요구하는 물건 중에

46) 변이표(卞爾標, 1623-?) : 밀양변씨로 자는 탁연(卓然)이며 효종 경인(1650)에 역과에 합격하여 왜역으로 종사하다가 자헌대부의 품계까지 받았다.

서 이른바 백조포(白照布)⁴⁷⁾는 이미 철이 지나 무역을 허락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는 뜻으로 타일러 방색하였으며, 그 밖에 잡물은 수본(手本)에 후록(後錄)하는 일”로 치통한다고 수본하였음. 이전부터 왜인이 무역을 요구하는 일은 희귀한 물건이 아니면 아울러 모두 무역을 허락하였고, 이번에는 도주가 대마도로 돌아온 뒤에 쓸 것이라고 간절하게 무역을 요청하므로 그 중 백조포는 역관 등이 이미 방색하였고, 잣과 호두는 감사에게 보고하여 즉시 무역을 허락하도록 하였으며, 건대구어(乾大口魚)는 일공(日供)으로 받을 것을 해아려 지급하고 다음 해의 사례에서 지급할 조목에서 회감(會減)⁴⁸⁾하였으며, 공목(公木)도 역시 연례(年例)의 지급하는 것을 수량을 계산하여 들여주었는데, 황필(黃筆)과 진묵(眞墨)에 대하여는 저들의 말이 ‘평상시 예단에 하사하여 보내주는 것이 모두 좋은 품질이 아닌데, 이번에는 정교하고 좋은 시필(試筆)과 쇠금대절진묵(洒金大折眞墨)을 가려서 지급하기를 간절히 요청하여 마지않는다’고 하기에, 도내의 각 읍에서 왜공(倭供)으로 납입하는 먹을 가져다 보니, 모두 송연(松烟)으로 조작하여 외면에 칠을 하여 색깔을 취했을 뿐인지라, 저들이 이렇게 간청하는데 이런 먹을 들여주기는 불가하기로, 동 필묵은 해조에 명하여 특별히 좋은 품질을 가려 속히 내려 보내주시어 무역을 허락하도록 하오며, 이 뒤로는 각 읍에서 받는 진묵도 좋은 품질로 와서 들이라는 뜻으로 해조에 분부하도록 명하심이 어떠하올지. 동 선박의 노인 하나 및 무역을 요구하는 물목을 별지에 베껴 써서 감봉(監封)하여 해조로 올려보내는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도주가 아직 대마도로 나오지 않았으며 대마도에서 시급하게 사용할 물건이라고 무역을 요구하는 일로 비선을 보내어 노인을 가져다 들었는바, 이전부터 무역을 요구하는 물건은 대단하지 아니하면 일찌기 이미 무역을 허락하였거니와, 이제 이번의 무역을 요구하는 물건 중 백조포는 부사 민정중(閔鼎重)이 이미 방색하였고, 잣과 호두는 그 수량이 너무 많았으나 본부에서 감사에게 보고하여 즉시 무역을 허락하게 하였으며, 건대구어는 일용으로 받는 것을 계산하여 주어 회감하고, 공무목(公貿木)도 역시 연례로 지급할 것을 해아려 들여주었다고 하는 바, 편하고 마땅한 듯하나, 황필(黃筆)과 진묵(眞墨)에 이르러서는 저들이 반드시 좋은 품질을 얻고자 한다 하면서 필묵은 더욱이 장계를 하여 특별히 좋은 품질을 속히

47) 백조포(白照布) : 백저포(白苧布). 흰 모시베.

48) 회감(會減) : 주고받을 것을 맞추어 비기고 남는 것을 셈함.

내려보내라는 일로 해조에 분부하되, 본도에서 평상시 지급하는 먹을 모두 송연(松烟)으로 조작한다 하는 바는 매우 부당한 일이니, 지금 이후로는 전과 같이 하지 말고 좋은 품질의 진묵(眞墨)을 가려서 지급하라는 뜻으로 본도에 알려 해당 각 읍에 신칙함이 어떠할지. 순치 15년(1658) 9월 23일 우승지 신 이정기(李廷夔)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구무별지등서(求買別紙謄書)

황도필 100자루, 진묵 50홀 [해당 관청에서 내려 보낼 것], 호도 50섬, 잣 50섬 [본도에서 마련할 것], 대구어 200마리, 공목 30동 [연례 지급할 것으로 들여줄 것], 흰모시베 30필 [타일러 방색함].

무술(1658) 11월 초3일

동래부사 민(閔)⁴⁹이 10월 26일에 성첩한 장계. 방금 접한 훈도 이상한과 별차 변이표 등의 수본 내용에, “관수의 말이 ‘도주가 에도로부터 내려 올 때 귀국의 살아있는 찌꼬리 10마리와 살아 있는 두루미(生野鶴) 5마리, 마성(馬省) 100개를 집정 등이 구청하기로 도주가 분부를 듣고 왔는데, 이 세 가지를 급급히 무역하여 보내려고 어제 나온 송사선(送使船)에 글을 써 왔으니, 이 뜻을 동래영감 전에 고하여 기일에 맞추어 무역을 허락해 달라’고 말하거늘, 소인 등이 답하기를 ‘살아 있는 찌꼬리와 두루미는 비단 철이 아닐 뿐 아니라, 산채로 잡기는 극히 어려울 뿐만이 아니고, 마성(馬省)은 전례대로 구청하는 마성을 들여주겠다’는 뜻으로 언급하였더니, 관수왜가 말하기를 ‘평상시에 항용 구청하는 마성으로는 에도 집정에게 부응할 수 없으니, 검은 말총[黑馬尾]로 옷을 하고 색말총[色馬尾]으로 그물을 엮어 조작한 것으로 무역을 허락하라’고 누누이 간청하기로, 연유를 수본(手本)으로 한다”고 수본하였음. 왜인이 소청한 살아 있는 찌꼬리는 이미 제 철이 아니고 털빛이 이미 변하였기로 타일러 방색하게 하였더니, 왜인이 대답하기를 ‘색깔이 변한 줄은 잘 알지마는, 도주가 이미 에도의 집정과 서로 언약하였기에 약속을 어기기 어려우니, 만약 잡아 주기만 한다면 길들이는 사이에 몇 달이 지나가서

49) 민(閔) : 효종 무술(1658) 8월에 동래부사로 도입하여 기해(1659) 3월에 예조참판으로 간 민정중(閔鼎重)이다.

초여름이 되면 저절로 색깔이 날 것이라' 하였으며, 두루미는 회색인 것을 얻으려 하고, 마성도 특별한 모양으로 만들 주기를 간절히 청하여 마지않음. 옛적에는 구청하는 일에 도주가 모두 동래로 서찰을 보내어 청하였는데, 중년 이래로 도주의 서계(書契)가 없이 관수와 대관왜(代館倭) 등이 직접 무역을 요구하는 받기[件記]를 가지고 역관을 통하여 바치는데, 그것이 과연 도주의 요청인지 알 수가 없으나, 외국 사람(外夷)이 무역을 청하는 물건은 백급(白給)하는 것과 다름이 있어 전연 방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로, 한편으로는 장계로 알리며 한편으로는 본도 감사에게 보고하였음. 그 중 두루미는 곧 전라도와 충청도 등지에서 나는 것이라고 하는데 해조에 명하여 속히 참작하여 분부하시어 위의 3종을 그 반수로 감하여 진작 무역을 허락함이 어떠하올지.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왜인이 특별히 구청하는 산 피꼬리 10마리와 두루미 5마리, 마성 100개 등의 물건은 비록 방색하기 어렵다고 하나, 이 깊은 겨울에 산 피꼬리는 이미 제 철이 아니어서 얻을 길이 만무하니 시종 방색함이 마땅하며, 두루미는 그 수가 많지 않으나 호남 호서에 분정(分定)하기에는 폐단이 많으니 본도에서 편의대로 찾아 지급하며, 마성도 장계대로 반수로 감하여 또한 본도에 명하여 별도로 조작하여 무역을 허락한다는 일로 본도 감사에게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순치 15년(1658) 11월 초3일 동부승지 신 조복양(趙復陽)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무술(1658) 11월 초4일

경상감사 홍(洪)이 10월 29일에 성첩한 장계. 방금 접한 동래부사 민정중(閔鼎重)의 치보(馳報) 내용에 “당해 도주(島主)가 무역을 요구하는 산 피꼬리와 두루미, 마성 등의 물건을 간절히 청하여 마지않는데, 외이(外夷)가 청구하는 물건을 전부 방색하기는 어려움이 있기로, 한편 장계로 알리며, 위의 물건을 속히 분정(分定)하여 진작 무역을 허락하도록 해 달라는 일로 첩정(牒呈)한다” 하였음. 먼 곳 사람이 요청하는 무역을 방색하기 이미 어려우면 무역을 허락하는 외에는 다시 다른 이유가 없는데, 그 중 두루미는 곧 호서(湖西)와 호남(湖南)에서 나는 것인데, 잡는 것이 이르거나 늦거나 회색은

또한 구하기 쉬우니, 이는 오직 해조에서 참작하여 지휘해주실 것이거니와, 산 꾀꼬리에 있어서는 가을과 겨울이 지난 뒤에는 혹 다른 새로 변하거나 혹 바위 구멍에 칩거하여 있다 하는데, 털이 꾀꼬리가 아니고 소리도 꾀꼬리가 아니며 날아다니거나 모이는 모양도 꾀꼬리가 아니어서, 어떻게 그것이 꾀꼬리인줄 알아서 능히 잡을 수 있겠는가? 이제 온 도내의 백성을 움직여도 한 마리의 꾀꼬리도 잡지 못할 것이 분명하되, 또한 저들의 말에 만약 잡아 주면 길들이는 사이에 몇 달이 지나가서 초여름이 되면 저절로 빛깔이 날 것이라 하는데, 이로 보면 예도로 들여보내는 것이 명년 여름임을 또한 알 수가 있으니, 바로 초여름을 기다려 깃털이 분명해 진 다음에 즉시 잡아 주어 보내도록 하는 것이 매우 편하고 마땅하며, 이르고 늦은 것이 비록 다르지만 무역을 허락하였으니 어찌 반드시 얻지도 못할 시기에 백성의 인력을 낭비하겠는가. 이미 이런 뜻으로 동래에 분부하였고, 다시 역관들에게 명하여 이대로 타일러 기어코 따르도록 하였으며,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왜인이 특별히 구청(求請)하는 두루미와 산 꾀꼬리, 마성 등의 물건은 마침 동래부사 민정중의 장계로 인하여 이미 복계(覆啓)하고 행회(行會)하였거니와, 두루미의 회색은 비록 호서 소산이나 그 수량이 많지 않으니 본도에서 죽히 사냥하여 얻을 수 있고, 산 꾀꼬리는 이미 제 철이 아니어서 얻을 길이 만무하니 본부에 명하여 타일러 방색함이 마땅하니 전대로 분부하여 거행하라는 뜻으로 회이함이 어떠할지. 순치 15년(1658) 11월 초5일 동부승지 신 조복양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무술(1658) 11월 14일

경상감사 홍(洪)이 11월 초8일에 성첩한 장계. 방금 도부한 예조 관문에 운운하는 일로 관문을 하였는데, 산 꾀꼬리는 결단코 이 시기에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로 동래부사에게 분부하여 다시 역관들에게 명하여 방색한다는 뜻으로 방금 이미 치계하였으며, 마성은 아직 조정의 분부를 기다려 각 읍에 분정할 계획이고, 두루미도 그 수가 많지 않아서 본도에서 편의대로 찾아줄 수 있으면 반드시 멀리 호남·호서지방에까지 파

급하여 폐단을 가져올 필요는 없지만, 본도의 해변에는 본디 두루미가 없고, 신이 일찌기 동래에 있으면서 매우 상세하게 보고 듣기로는, 왜관의 왜인들이 죽은 두루미를 많이 구하자 동래 부산의 장사하는 사람들이 예사로 호서·호남 양도에서 잡았고, 심지어는 관청에 청원하여 물금첩(勿禁帖)⁵⁰⁾을 받아 내어 달을 넘겨 오가기까지 하였는데, 본도의 해변에 이런 물건이 있으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까운 곳을 두고 먼 곳에 갈 필요가 없을 것이니, 이로써 본다면 본도에 두루미가 없음이 매우 분명하여 의심할 것이 없으며, 이전부터 저 사람들이 무역을 요구할 때 다소를 막론하고 매양 호남과 호서에 분정하는 것이 이미 규례(規例)가 되었고, 실로 본도에서 그물을 펼쳐 잡는 폐단을 모면하려고 다른 도에 미루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산출되는 것이 없어 잡을 길이 없어서이니, 이제 이 두루미를 이전대로 호남과 호서에 분정하는 일을 다시 해조에 명하여 품의하여 시행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왜인이 특별 구청한 두루미 5마리는 그 수량이 많지 않은데 만약 호남과 호서에 분정한다면 그 폐가 적지 아니하겠기로 본도에서 편의대로 찾아 주라고 복계하고 행회하였는데, 이 장계를 보니 본도의 해변에는 원래 두루미가 없고, 이전부터 이 물건은 다소를 막론하고 매양 호남·호서에 분정하였다고 하는바, 이미 본도의 산출이 아니라면 사냥하기가 쉽지 아니하니, 장계대로 충흥도(忠興道)에서 3마리, 전남도(全南道)에서 2마리를 분정한다는 뜻으로 양도에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순치 15년(1658) 11월 14일 우승지 신 이정기(李廷夔)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험함.

무술(1658) 12월 29일

동래부사 민(閔)이 23일 성첩한 장계. 지난 10월분 훈도 이상한(李尙漢)과 별차 변이표(卞爾標) 등이 바친 수본(手本) 내용에, “관수왜가 도주의 특별 무역 요구라고 칭하면서 산 피꼬리 10마리와 두루미 5마리와 마성 100개를 얻고자 요구하는 것을, 전례대로 구청의 마성을 들여주겠다고 언급하였더니, 관수왜는 평상시 향용하는 구청 마

50) 물금첩(勿禁帖) : 관에서 금지하는 사항을 특별히 허가하는 허가장.

성은 에도의 집정에게 부응하는 데는 불가하고, 검은 말 꼬리로 옷을 하고 색이 있는 말 꼬리로 그물을 엮어 특별히 만든 것을 무역하도록 허락해달라고 누누이 간청한다고 수본한다” 하였거늘, 즉시 낱알이 거론하여 장계로 알린 뒤, 산 꾀꼬리는 명년 봄을 기다려 잡아 주고, 마성은 본도 감사의 분부로 인하여 50개로 감하였고, 마성 50개는 각 관에 분정하여 보내왔거늘, 훈도 홍여우(洪汝雨)와 별차 최유립(崔裕立)에게 명하여 일일이 수량을 대조하여 대관왜에게 주게 하였는데, 왜인의 말에 동 마성을 말꼬리로 장식하는 것은 매우 관계 없고 본디 우리들이 청한 것이 아니라고 함. 섬의 풍속에는 마성으로 그릇을 세척하는 데 쓰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무역하거니와, 평상시 사용하는 마성을 좋건 말건 간에 다시 더 지급하여 백 개의 수량을 채워달라고 하였으며, 백합껍질(白蛤殼)도 놀이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당초에 아울러 청하였는데 어째서 입급하지 않는지 하였음. 동 마성은 이미 상용의 마성을 청한다 하니 이는 천한 물건이라 반드시 수량을 감할 것도 없이 모두 그들의 간청에 부응함이 마땅할 듯 하기로 본부에서 연례로 받는 구청조로 50개를 감사에게 보고하고 우선 이급(移給)하였으며, 백합껍질은 본부에서 찾아주었음. 대개 마성을 장식한다는 설은 당초 왜인의 소청이 아니었다면 역관 이상한 등이 중간에서 만들어 내어 왜인들에게 잘 보이려는 계획이었는데, 그 정상이 극히 통탄스러우니 조정에 명하여 조치하게 하시기 바라는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왜인이 청한 바 마성 100개 중 50개를 감하여 역관의 수본 대로 말꼬리로 장식하여 입급하였더니 당초 그들이 요구한 바가 아니고 곧 역관 이상한 등이 중간에서 만들어 내어 왜인들에게 잘보이려고 한 것이라 하였는 바, 그 정상이 극히 통탄스러우니 이상한 등은 지금 비록 형벌로 심문할지라도, 이 한 조목은 별도로 문목(問目)을 받아낸 뒤에 각별히 형벌로 심문하오며, 마성도 좋고 말고를 물론하고 다시 더 지급하여 100개의 수량을 채우는 것이 무방하니, 이런 뜻으로 회이함이 어떠할지. 순치 15년(1658) 12월 30일 행도승지(行都承旨) 신 홍중보(洪重寶)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기해(1659) 4월 17일

동래부사 이만웅(李萬雄)⁵¹이 이 달 12일에 성첩한 장계. 부산첨사 이시정(李時挺)

이 치통(馳通)한 내용에, 왜의 작은 배 한 척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즉시 별차 최유립(崔裕立)⁵²⁾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작은 배에는 두 왜 1인과 격왜 6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그 나온 연유를 물었더니, 두왜가 하는 말이 ‘관수 및 두 차왜에게 보내는 사서(私書)를 지니고 있다’ 하거늘, 관수 및 두 차왜에게 가서 탐문하였더니, 관수 등의 말이 ‘도주를 속히 들어오라고 에도에서 재촉하니, 도해역관(渡海譯官)을 밤낮없이 재촉하여 들여보내라고 하며, 『마의방(馬醫方)』 한 권은 또 에도에서 구하는 것이므로 도주의 이번 행차에 가지고 가려고 하니, 이 뜻을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급급히 사들여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동 『마의방』 한 권을 급속히 무역 허락할 것을 전고(詮告)한다’ 하였고, 노인은 규정 외라 받지 않았다”는 일로 돌아와 말하였기로 연유를 치통하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이제 이번에 나온 두왜는 오로지 도해역관을 재촉하는 일이온데, 동 역관은 생각컨데 필시 이미 길을 떠났을 것이고, 『마의방』 한 권도 또한 무역을 허락할 것인지? 이전에 무역을 허락하였을 때가 있었는데, 해조에 명하여 속히 사서 보내어 부응하도록 하는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면 도해역관을 재촉하고 『마의방』을 사들여 보내는 일인데, 역관 홍희남(洪喜男)은 길을 떠난 날짜로 헤아리면 금명간에 부산에 도착할 것이거니와, 『마의방』은 다른데 있는 곳이 없고, 사복시(司僕寺)에 저축한 한 권을 내려보냄이 마땅할 듯하니, 파발에 명하여 전하여 주게 함이 어떠할지. 순치 16년(1660) 4월 17일 동부승지 신 유계(兪槩)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경자(1660) 3월 24일

동래부사 정태제(鄭泰齊)⁵³⁾가 2월 18일에 성첩한 장계. 훈도 윤성립(尹誠立)의 수본(手本)에, “부특송사 정관(正官)이 소인에게 서찰을 보내어 만나보기를 원한다고 하

51) 이만웅(李萬雄) : 효종 기해(1659) 3월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동년 11월에 왜인의 공작미(公作米) 때문에 과격한 장계를 올린 일로 나포되어 갔다.

52) 최유립(崔裕立, 1616-?) : 경주최씨로 자는 대관(大寬)이며 인조 임오(1642)의 역과에 합격하여 왜역에 종사하였고, 주부(主簿)의 관직을 지냈다.

53) 정태제(鄭泰齊) : 기해(1659) 11월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현종 신축(1661)에 나포되어 갔다.

거늘, 즉시 왜관에 갔더니, 말하기를 ‘저희들이 나올 적에 도주가 긴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다고 『주자어류(朱子語類)』와 『주자대전(朱子大全)』 등의 책을 급급히 찾아 보내라고 하였기로, 어제 잔치할 적에 동래 영감 전에 진달하려 하였는데, 시끄러운 가운데 감히 입을 열지 못하였으니, 훈도가 모름지기 이 뜻을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속히 찾아 주어 에도로 들여보내게 해 달라’고 누누이 간청한 일로 수본을 한다” 하였음. 왜인의 소청에 일일이 부응하는 것은 불가하여 모쪼록 타일러 방색할 계획이거니와, 위의 서책은 에도의 집정 등이 구하는 것으로 이 때문에 도주가 반드시 구하려고 하여 만분 절박하다 하는 바, 만약 시종 방색할 수 없다면 전례대로 해조에 명하여 편의대로 찾아서 내려보냄이 어떠하올지,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부특송 차왜가 간청하는 『주자어류』와 『주자대전』 등의 책자는 도주가 반드시 구하려하기에 만분 절박하다 하는 바, 이는 필시 집정 등이 요구하는 것으로, 저들로서는 얻고자 하는 뜻이 실로 우연이 아닐 것이니, 찾아 보내어 그 바람에 부응함이 마땅하나, 책판(冊版)이 지방이 있으니, 그 도에서 인출하여 장정을 하여 곧바로 동래부로 보내고, 만약 책판이 없으면 해조에 명하여 값을 주어 사서 보냄이 어떠할지. 순치 17년(1660) 3월 24일 좌부승지 신 오(吳)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예조에서 상고할 일. 방금 계하하시기를 동래부사의 장계에 의거한 예조의 회계에 운운한 일을 계하하였는데, 동 『주자어류』 책판은 도내 금산군(金山郡)에 있으며, 『주자대전』 판목은 전라도 전주부(全州府)에 있다 하는데, 이는 먼 곳 사람이 구하는 바의 물건인지라 지연해서는 안되니, 관문이 도착하는 즉시 급급히 인출하여 장정을 하여 곧바로 동래부로 보내어, 도부(到付)를 받아 올려보내어 증거가 되도록 하되, 거행하는 형편 및 도부 일시를 이문(移文)할 것. 경상도와 전남도로 행이(行移)함.

경자(1660) 3월 27일

예조에서 상고할 일. 방금 본부에 계하한 서장 내에 있는 『주자대전(朱子大全)』과

『주자어류(朱子語類)』 등의 책은, 도주가 현재 예도에 있으면서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속히 찾아 달라는 일로 부특송 정관이 누누이 이야기하였다 하였는바, 해조에 명하여 편의대로 찾아 주라는 일로 장계하였기에, 저번에 본부의 장계로 말미암아 본조에서 복계(覆啓)하기를 상항의 책판이 있는 곳에서 인출하여 보내는 일로 계하였는데, 『주자어류』의 판본은 경상도 금산군(金山郡)에 있으며, 『주자대전』의 판본은 전라남도(全羅南道) 전주에 있다 하였기로, 급급히 인출하여 장정을 하여 곧 바로 본부로 보낸 뒤 도부(到付)를 받아 살펴보고 오라는 일로 두 도의 감사에게 이미 행회(行會)하였으니, 이 뜻을 아울러 상고하여 시행할 것.

경자(1660) 4월 13일

접위관 윤지미(尹趾美)가 4월 초7일에 성첩한 장계. 본월 초5일에 진하차왜(進賀差倭)에게 하선연을 베푼 뒤 문답한 이야기는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방금 접한 수역관 홍희남(洪喜男)의 수본 내용에, “차왜의 말이 일본에 약간의 의서(醫書)가 있으나 모두 정묘(精妙)하지 못하니 귀국의 『만병회춘(萬病回春)』 2건의 무역 요구를 위해 나왔는데, 도주가 말하기를 이 뜻을 접위관에게 고하여 값을 주고 무역해 가게 해 달라 하였다”고 수본하였는데, 『만병회춘』은 그 나라에도 있어서 때때로 가지고 나와 팔기도 한다 하였는데, 이제 이번 차왜는 사들이겠다고 하는 바, 그 의도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 책은 당초 인출하여 배포한 것이 넓지 않았고, 또 판본이 훼손되어 부응해 주기가 어려운 듯할 뿐 아니라, 차왜가 말하는 바를 굽혀서 따라 줄 수는 없으나, 미세한 물건을 도주가 말을 하여 간절히 구하기까지 하는 바 또한 방색할 수도 없겠기에, 동 『만병회춘』을 해조에 명하여 편의대로 찾아 내려보내게 함이 어떠할지.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저번에 동래부사 정태제의 장계로 인하여 부특송 차왜가 구하는 『주자어류』와 『주자대전』 등의 책을 양남(兩南)의 감사에게 명하여 판본이 있는 읍에서 인출하여 보내는 일을 허락하도록 이미 복계하여 행회하였는데, 이제 진하차왜(陳賀差倭)가 또 도주의 뜻으로 간절히 의서(醫書)를 구함에, 그 청에 부응하도록 허락함이 무방한 듯하니, 『만병회춘』 3건을 해조에 명하여 편의대로 찾아

사서 보냄이 어떠할지. 순치 17년(1660) 13일 우승지 신 이은상(李殷相) 차지로 입계 하여 그대로 윤허함.

경자(1660) 4월 20일

동래부사 정태제(鄭泰齊)가 4월 14일에 성첩한 장계. 방금 바쳐온 훈도 윤성립(尹誠立)의 수본에, “당일 소인이 왜관에 갔더니 이른바 도금도왜(都禁徒倭)가 와서 소인을 보고는 말하기를 ‘저희가 나온 것은 오로지 공작미(公作米)를 운송하기 위한 일인데, 예도의 집정 등이 구청하는 물건이 있다고 하기에 동 물목을 베껴 써 가지고 나왔으니, 일일이 무역해 가겠다는 뜻을 동래 영감 전에 고하되, 이 일이 만분 긴급하니 유기장(鑰器匠)과 사기장(沙器匠)과 옹기장(甕器匠) 등을 불러와 들여보내어 겨냥을 보여준 뒤에 밖에서 만들어 주거나 전례대로 왜관 안에서 구워 만들거나 상의하여 선처하며, 석대성(石帶星)도 예전부터 만들어 주는 규례가 있었으니, 대성(帶星)에 합당한 돌 및 기술자를 왜관 안에 아울러 들여보내거나 이런 모양으로 밖에서 만들어 주거나, 예사로 보지 말고 속히 마련하여 들여주어야 다음달 열흘 사이에 비선(飛船)으로 들여보낼 계획이라 운운’ 하였기로, 동 물목을 베껴 써서 올려보내는 일로 수본한다’ 하였음. 동 왜인이 가지고 온 물목을 가져다 보니, 각양의 사기(沙器) 70넙(立)과 석대성 14개, 호육(虎肉), 호두(虎頭), 호안(虎眼), 호담(虎膽), 호경골(虎脛骨), 호설(虎舌) 각 1부와 대모(玳瑁)붓자루 60개, 각양 유기(鑰器) 도합 62넙(立)인데, 상항의 물건은 그들이 비록 값을 주고 무역한다고는 말하지만, 부응할 즈음에 그 폐단이 적지 아니하겠기에 역관에게 명하여 십분 타일러 기어코 방색하라 하였거니와, 이제 들으니 그들의 비선이 나온 의도는 실로 만분 절박하다 하는 바 시종 방색하기는 어려운 듯하고, 사기와 유기, 호육 등의 물건을 전례대로 순찰사에게 보고하여 본도에서 감당하여 찾아주려고 하며, 이른바 석대성은 돌이면서 돌이 아닌 것으로 남양(南陽)에서 채굴되는 옥과 같이 돌과 비슷하면서 돌이 아닌데, 찾아 주면 저들이 필시 좋아할 것이니, 본도에 혹 산출되는 곳이 있거든 순영에 보고하며, 대모 붓자루는 그 길이가 근 4치라 하는데 해조에 명하여 편의대로 찾아서 내려 보내주실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금도왜(禁徒倭)의 말에 ‘저는

오로지 공작미(公作米)를 운반하는 일로 나왔는데 빈배 네척이 오래잖아 나올 것이라'고 하였으며, '에도의 집정 등이 구청하는 물건은 만분 급하다'고 하기로, 정태제가 이미 '쉽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왜인에게 답하였으며, 각종의 유기와 사기 및 석대성, 호두, 호안(虎眼) 등의 물건은 본부에서 조정하여 혹은 감사에게 보고하여 본도에서 담당하여 찾아주겠으나, 대모 붓자루 60개는 해조에 명하여 찾아서 내려보내 주시도록 하며, 동 붓자루 60개를 해조에 명하여 만들어 보내게 하며, 동 환미(換米) 절반을 들여주는 일은, 저들이 비록 십분 간절하게 청하지만 민간의 기근이 막심한 것이 지금 철이라고 하여, 한편으로는 역관들이 잘 조정하고 한편으로는 도신(道臣)과 상의하여 처치하라는 뜻으로 아울러 회이(回移)함이 어떠할지. 순치 17년(1660) 4월 21일 행도승지 신 김수항(金壽恒)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경자(1660) 4월 23일

경상감사 홍처후(洪處厚)가 4월 19일 성첩한 장계. 방금 동래부사 정태제(鄭泰齊)의 치보를 접하였는데, 그 중 공목(公木)과 바꾸는 짚에 대한 한 조목은 더욱 난처하다 하였고, 유기(鑪器)와 사기(沙器)·옹기(甕器) 등의 물건은 형편을 보아 조치할 계획이라 하였으며, 석대성(石帶星)과 대모(玳瑁)붓은 본도에서 마련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니, 해조에 명하여 마련하여 내려보냄이 마땅할 것이고, 호육(虎肉)과 호안(虎眼), 호담(虎膽), 호설(虎舌), 호경골(虎脛骨)은 감영의 창고에 보관해 둔 것이 마르고 썩어 정갈치 않아서 점퇴 당할 폐단이 없지 아니하며, 살아있는 범을 사냥하여 잡기도 쉬운 일이 아닌지라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하는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공작미(公作米) 한 조목은 이미 동래부사 정태제의 장계에 감사와 상의하여 잘 처리하라고 복계하여 윤택이 내렸으며, 유기와 사기 및 호두 등의 물건은 정태제의 장계에 본도에서 마련하여 지급하겠다는 뜻이 있었으며, 석대성은 그 형태와 모양의 대소가 어떠한지 모르지만 정태제는 단지 옥돌과 같은 것으로 구하기가 어렵다고 염려하였으나 달리 해조에 명하여 마련하여 내려보내라는 말은 없었으니, 본도에서 합당한 돌을 구하여 만들어 줌이 마땅하겠으며, 대모 붓자루는 정태제의 장계에 대모 붓자루만 만들어 보내라고 청하여 계하한 뒤에 즉시 해조에 분부하

였는데, 이제 이번 감사 홍처후의 장계 내의 사연이 이러하니, 모필을 아울러 만들어 보내라는 일로 다시 해조에 분부하시되, 이러한 말뜻을 동래부사에게도 아울러 회이함이 어떠할지. 순치 17년(1660) 4월 24일 행도승지 김수항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경자(1660) 5월 초7일

동래부사 정태제가 4월 29일에 성첩한 장계. 이달 19일 왜의 작은 배 한 척이 나왔기에 즉시 훈도 윤성립(尹誠立)과 별차 이신남(李信男)⁵⁴⁾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는데 돌아와 하는 말이 “비선에는 격왜 8명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나온 연유를 탐문하였더니 격왜 등이 하는 말이, ‘세저포(細苧布), 녹두가루, 원선자(圓扇子), 마성(馬省) 등의 물건을 무역 요청하여 들여보낼 뜻을 알리고자 나왔다’고 한다” 하였으며, 일시에 올라온 별견역관(別遣譯官) 홍희남의 수본에, “당일 비선이 나왔다고 관수왜가 저희에게 서찰을 보내어 보기를 원하거늘, 제가 즉시 왜관에 갔더니, 관수가 하는 말이 ‘도주가 이 달 초5일에 대군(大君)에게 하직하고 초8일에 에도를 떠나 다음 달 보름 쯤에 본도에 당도할 것인데, 대군 이하 여러 집정에게 예물을 보내고자 구하는 잡물 받기 [件記]를 가지고 왔다’고 내어 보여주거늘, 동 받기를 보니 ‘백저포(白苧布) 새[升]⁵⁵⁾가 가늘고 자가 긴 극품(極品)으로 30필, 녹두가루 100근, 원선자(圓扇子) 200자루, 마성(馬省) 100개 중 50개는 말꼬리로 옷을 한 것’이라 하였기로 연유를 수본으로 한다” 하였음. 일전에 금도왜(禁徒倭)가 나왔을 때 각양의 유기와 사기, 대모 붓자루, 석대성, 호두 등의 물건을 이미 무역 요구하는 청이 있었는데, 이제 비선이 또 나왔는 바, 근일에 왜인의 구청이 끝이 없어 일일이 부응하기 어려울 듯하여 역관들에게 엄하게 신칙하여 말을 만들어 방색할 계획이거니와, 도주가 다음 달에 대마도로 돌아온다고 하면서 무역을 요구하는 4종의 물건은 대군 이하의 여러 집정에게 예물로 보내야 하는 것이기에 만분 절박하여 비선까지 내보냈다고 하는바, 만약 시종 방색할 수 없다면 녹두가

54) 이신남(李信男, 1607-?) : 연곡(連谷) 이씨로 자는 여실(汝實)이며 인조 계유(1633)에 역과에 합격하여 왜역에 종사하였다.

55) 새[升] : 피륙을 잘 때 베틀에 거는 실의 울을 새는 단위. 1새는 80울인데 10새는 800울이고 15새는 1200울이다. 울이 많을 수록 가늘고 촘촘한 베가 되고 울이 적을수록 거칠고 엉성한 베가 된다.

루와 원선, 마성 등의 물건은 본도에서 마련할 수 있을 듯하고, 저포는 본도 소산이 아니어서 어떻게 하올지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왜선이 또 백저포 등의 물건을 구무하는 일로 나왔다고 하는바, 근일에 구청이 빈번하여 일일이 부응하기 어려운 것은 참으로 정태제의 장계의 내용과 같으나, 도주가 장차 에도에서 나와 대군 이하 집정들에게 예물을 보내려고 하는 그 뜻이 아마도 우연이 아닌 듯하고, 또한 구무라고 이름하였으니 전연 방색함이 마땅치 않으니, 네 가지 물건 중에 녹두가루와 원선과 마성은 장계대로 본도에서 마련하여 무역을 허락하며, 백저포의 새[升]가 가늘고 자가 긴 극품 30필은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희귀한 물건이라고 이렇게 말을 만들어 타일러서 그 필수를 감한 뒤에 서울에서 사서 보낸다는 뜻으로 회이함이 어떠할지. 순치 17년(1660) 5월 초7일 좌승지 신 오(吳)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경자(1660) 5월 11일

예조의 계목. 저번에 동래부사 정태제(鄭泰齊)의 장계로 인하여 왜인이 무역을 요구하는 대모필(玳瑁筆) 60자루(柄)를 해조에 명하여 만들어 보내는 일로 입계하여 윤택을 받아 해조에 분부하였는데, 잇달아 본도 감사 홍처후(洪處厚)의 장계에 대모필의 무역을 요구한다는 말이기도, 본조에서는 다시 대모필을 만들어 보내는 일로 복계하여 윤택을 받아 즉시 해조에 명하여 이미 마련하여 보냈으며, 무역을 요구한 물건 중 석대성(石帶星)은 그 체제가 어떠한지 알 수가 없어 본도에서 합당한 돌을 구하여 만들어 지급함이 마땅하다는 뜻으로 복계하여 행이하였는데, 방금 정태제의 칙정(牒呈)에는 왜인이 붓자루만 구하지 필설(筆舌)⁵⁶⁾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 동 대모 붓자루만 정밀하게 만들어 내려보내라고 하였는데, 60자루의 필설은 원래 중요한 물건이 아니나, 이미 내려보냈으니 이렇게 말을 만들어 입급하여도 무방할 듯하거니와, 석대성은 본부에서 장계를 한 다음에 홍희남이 추후에 생각하기로, 정축 무인 연간에 과연 만들어 주었는데, 남양의 옥석을 해조에서 채취하여 내려보내고, 수영(水營)의 기술자가 그들의 겨냥에

56) 필설(筆舌) : 필모(筆毛). 먹을 묻혀 글씨를 쓸 수 있게 짐승의 털을 가공하여 묶어 붙인 붓의 핵심 부분.

의거하여 만들어 주었으며, 그 겨냥을 보니 모난 것과 둥근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둥근 것은 길이는 2치, 너비는 1치 5푼이고, 모난 것은 길이가 1치 5푼이고 너비가 1치 4푼이며, 두께는 모두 5푼이라 하였으니, 이는 무게가 무거워 운반하기 어려운 물건이 아닌지라, 대성(帶星) 14개를 만드는데 들어갈 옥을 경기도에 명하여 속히 채취하여 내려보내도록 함이 마땅하고, 동래부사에게도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순치 17년(1660) 5월 11일 좌승지 신 오(吳)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경자(1660) 5월 23일

예조에서 상고할 일. 저번에 본부의 장계로 인하여 왜인이 구하는 석대성을 만들 옥석을 남양부에서 채취하여 내려보내는 일로 계하하여 분부하였는데, 동 옥석 큰 덩어리 두 개를 채취하여 와서, 그 옥석으로 대성 14개의 길이와 두께의 겨냥에 맞추어 나누어 만들면, 두 덩이로 넉넉히 만들 수 있겠기로, 각도 각 지방관으로 하여금 색리(色吏)를 정하여 차례로 전하여 보내게 하였으니, 겨냥에 의거하여 만들어 주는 것은 전례대로 수영(水營)의 장인을 시켜 만들어 주되, 도부한 일시(日時)를 이문할 것.

경자(1660) 5월 28일

예조의 계목. 저번에 동래부사 장계의 왜인이 무역 요구한 물건 중 백저포(白苧布) 새[升]가 가늘고 자가 긴 극품으로 30필이라 한 것을, 본조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희귀한 물건이라 갑자기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는 뜻으로 말을 만들어 타일러 그 필수를 감한 뒤에, 서울에서 찾아 보낸다는 뜻으로 복계하여 행회하였는데, 방금 동래부사의 이첩(移牒)을 접하니 관왜(館倭) 등에게 십분 타일러 그 중 10필을 감하고 20필로 정하여, 극품으로 새[升]가 가늘고 자가 긴 것을 가려서 무역하기를 누누이 간청한다 하니, 해조에 명하여 특별히 좋은 것 20필을 가려서 금군(禁軍)을 정하여 가지고 내려 보내라는 뜻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순치 17년(1660) 5월 28일 행도승지 신 김(金)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경자(1660) 7월 20일

경상감사 홍(洪)이 7월 15일에 성첩한 장계. 방금 도착한 동래부사 정태제의 첩정(牒呈)에, 해당 훈도 윤성립(尹誠立) 등의 수본에 “이번에 나온 일특송(一特送) 정관왜(正官倭) 등이 서찰을 보내어 보기를 요구하거늘 소인 등이 왜관에 갔더니, 동 정관 등의 말에 ‘도주가 새로 에도에서 대마도로 돌아와 에도에 예물을 보낼 곳이 있다고, 저희들이 나올 적에 잣[柏子] 4섬, 호도 4섬, 숙지황(熟地黃) 4근, 산수유(山茱萸) 3근, 석린(石鱗) 3근 등의 물건을 급급히 무역하여 들여보내어 진작 예물을 보내도록 하라는 분부를 듣고 왔는데, 이런 뜻을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속히 무역하여 주시도록 해 달라고 이야기하기로 연유를 수본으로 한다”고 수본하였는데, 근래 왜인의 구무(求買)가 빈번하니 이치에 근거하여 방색하여야 마땅하나, 도주가 승습(承襲)한 뒤 본도에서 처음 나와서 구무하는 물건인지라 전연 방색하는 것은 불가하겠기로 장계로 알려져 무역을 허락하여야 마땅하오나, 이러한 사소한 물건을 매양 장계로 올리는 것이 매우 민망할 뿐 아니라, 무역 요구한 잡물 중에 호도와 잣은 철이 어긋났지마는, 잣은 산출되는 안동 등지에 남아 있는 것이 매우 많다 하니 수송하여 무역을 허락하게 하며, 호도는 이 시기에는 사들이기가 어려운 듯 하기로, 본부의 연향(宴享)에 쓸 것을 덜어내어 추이(推移) 입급할 계획이니, 즉시 분정(分定)하여 때에 맞추어 수송하도록 하며, 숙지황과 산수유, 석린 등의 물건도 분정하여 급급히 수송하는 일을 도에서 각별히 참작하여 처치하여 주시도록 첩정한다 하였음. 근래에 왜인이 연속하여 나와서 무역한다고 각종 요구하는 물건이 한량이 없는데, 당해 역관들이 타일러 방색하지 못하고 그들이 하는 대로 맡겨두니 극히 통탄스럽거니와, 이제 이번에 무역하고자 하는 물건은 종류가 많지 않고 찾아주기도 어렵지 않을 뿐 아니라 끝내 방색하기 어렵다면 차라리 그 청을 시원하게 들어주는 것이 나을 것이로되, 요구하는 물종 중에 숙지황은 본도에서 산출되는 물건이 아니오니 해조에 명하여 품의하여 진작 속히 내려보내 주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왜인의 구무가 과연 빈번한데 당해 역관들이 당초 타일러 방색하지 못하고 이러한 폐단을 가져오는 것이거니와, 요구하는 물종 중에 숙지황은 본도에서 산출되는 물건이 아니니 해조에 명하여 품의하여 진작 속히 내려보내도록 하라 하였는데, 이 약은 곧 황주(黃州)에서 산출되는 물건이니

숙지황 대여섯 근을 좋은 것으로 가려서 급급히 올려보내라는 뜻으로 황해감사에게 분부함이 어때할지. 순치 17년(1660) 7월 20일 동부승지 신 홍(洪) 차지로 입계하여 그 대로 윤허함.

경자(1660) 8월 초5일

동래부사 정태제가 7월 28일에 성첩한 장계. 이 달 27일에 도부한 예조의 관문에 운운한 일로 관문을 하였는데, 근래에 왜인의 무역요구가 빈번한데 역관들이 방색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순찰사의 장계 내용과 같거니와, 전후에 무역을 요구한 물건 중 그 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은 역관을 엄하게 신칙하여 타일러 감하게 한 것이 또한 한두번이 아니나, 미세한 일을 감히 번거롭게 장계로 올리지 못하였으며, 이제 이번 숙지황 약재 하나도 도주가 긴요하게 약용으로 쓸 곳이 있다고 이렇게 무역 요구하는 것인데, 그 수량이 많지 않고 본도에서도 구하기 어렵지 않겠기로 또 감히 치계하지 않았으며, 혹 저축한 것이 있으면 편리한 대로 찾아 보내달라는 뜻으로 순영에만 치보(馳報)하였는데, 순찰사가 치계(馳啓)하게 되었는데, 신이 당초 장계로 청하지 않은 것과 서로 어긋난 듯한데, 동 숙지황을 이미 찾아보내지 않았기로 본도에서 산출되는 청도(淸道) 등지에서 서너 근을 사들여 왜인에게 이미 들여주었으니, 황해감사에게 분부하여 숙지황을 내려보낼 필요가 없다고 하시기를. 대개 왜인이 무역을 요구하는 물건을 모두 공목(公木)으로 절가(折價) 계감(計減)하는데 비록 평상시 매매하는 것과 같지 않으나 또한 대단히 손해되는 것도 아니기로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경자(1660) 9월 초1일

경상감사 홍(洪)이 8월 24일 성첩한 장계. 일찌기 동래부사가 보고한 바 대마도 도주가 무역 요구하는 잣과 호두, 숙지황, 산수유, 석린 가운데, 숙지황은 본도에서 산출되는 물건이 아니어서 해조에서 내려보내라는 뜻으로 치계하였고, 그 밖의 잡물은 종종 치계하기가 번거로워 본도에서 모쪼록 찾아 줄 계획이나, 석린이 산출된다는 안동부에 찾아보내라는 뜻으로 엄하게 신칙하여 분부하였는데, 동 부사 이연(李演)의 첩정(牒呈)

에, “도주가 무역 요구하는 석린을 채취하여 그 중 조금 큰 것은 동래부로 수송하고, 작고 품질이 열등한 것은 돌려보내라고 하였던 바, 본부에서는 품질이 좋고 큰 것을 참으로 구하기 어려워 염려된다”고 하였는바, 본도에서 산출되는 석린이 이미 품질이 열악하여 거절을 당하면, 다시 채취하여도 끝내 품질 좋고 요구에 합당한 것을 구하기가 어렵겠기로, 긴박하여 부득이 이렇게 치계하니, 해조에 명하여 황해도에서 산출되는 석린 3개를 진작 속히 보낼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도주가 무역을 요구하는 석린을 산출되는 안동부로 하여금 채취하여 가려서 보내라고 하였더니 품질이 열등하여 거절당하겠다고 하였는데, 장계대로 크고 품질 좋은 석린 3근을 황해도의 산출되는 곳에 분부하여 속히 찾아보내도록 본도 감사에게 분부함이 어떠할지. 순치 17년(1660) 9월 초2일 우부승지 신 유(兪)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경자(1660) 10월 초5일

동래부사 정태제가 9월 28일 성첩한 장계. 유황(硫黃) 회례(回禮)를 예도에 들여보내는 일을 알리러 온 차왜 평성우(平成友)가 나온 뒤의 접대 전례 및 반종(伴從)을 감하여 정하는 뜻을 이미 연속하여 치계하였거니와, 방금 바쳐온 훈도 윤성립과 별차 이신남 등의 수본에 이르기를, “옛그제 차왜가 소인들에게 서찰을 보내어 만나보기를 요구하거늘, 오늘 늦게 왜관에 갔더니, 동 차왜가 안부를 물은 뒤에 인하여 ‘접위관이 어느 때 쯤 내려올 것인가 운운’하고 물었으며 한편으로 ‘귀국의 유황 회례를 영수하였다는 뜻을 예도에서 도주에게 통지하여 알리라 하였기로 도주가 특별히 저를 차출하여 보냈을 뿐 아니라, 도주가 섬에 돌아온 뒤로 예도의 집정들의 요구가 연속하여 끊이지 않아서, 도주가 대관(代官) 등에게 통지하여 무역해 가는 물건이 그 수량이 매우 많은데, 제가 이제 나와서 또 번거롭게 청하니 지루한 듯하나, 집정들이 구하는 것을 만약 부응하지 않으면 비단 도주가 허물을 받을 뿐 아니라 혹 양국의 사이에도 이롭지 못할 듯하므로 부득이 이렇게 간청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며, 동 무역요구 발기(件記)를 내어 보여주거늘, 소인들이 열어보니, 노랑피꼬리(黃鶯) 30마리, 수리(鷲鳥) 큰 것 2좌, 호담(虎膽) 20부, 호설(虎舌) 15부, 호육(虎肉) 10근, 호간(虎肝) 10부, 호두(虎頭) 10

개, 호경골(虎脰骨) 30개, 피금(皮金) 10장, 석린(石鱗) 1근, 화룡필(畫龍筆) 100자루, 진묵(眞墨) 200동, 마성(馬省) 100개, 벼루 30면, 연적(硯滴) 50개, 적석(赤石) 둘레가 5~6치 되는 것 10개, 옥대(玉帶) 1건, 구미청심원(九味淸心元) 200환, 우황(牛黃) 큰 것 3부, 뽕은 우황 15전, 하수오(何首烏) 1근, 오미자(五味子) 1근, 대추 큰 것 3근, 아교(阿膠) 1근, 백작약(白芍藥) 2근, 백복령(白茯苓) 5근, 황금(黃芩) 3근, 백출(白朮) 3근, 상기생(桑寄生) 1근이었음.

차왜는 또 말하기를, ‘전일에 대관 등이 대모필을 무역하여 보냈는데, 에도에서 구하는 것과 같지 않기로 이번에는 겨냥을 가지고 나왔으며, 먼저 도주가 있을 때 옥대를 귀국에서 무역하였기로 도주가 반드시 무역 요구하려고 고대하는 모습은 모두 진술하기 어려움이 있는데, 합당한 옥대를 무역해 가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였으며, 청심원(淸心元)도 전일에 대관 등이 편의대로 무역하여 보냈거늘, 에도에 들여보냈더니 여러 집정들이 사용해 보고는 모두 진짜 청심원이 아니라 하면서 즉시 퇴송(退送)하였으니, 도주의 무안함이 어떠하였을지, 좋은 재료로 정밀하게 조제하여 내려보내어 무역해 가도록 하시면 저희들이 감사함을 이기지 못하겠고 도주 또한 생색이 많이 날 것이니 이 뜻을 상세히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범상하게 듣지 말고 조정에 장계하여서 갈망을 부응해주기를 바라는 바라고 중복하여 말하며 간청하여 마지아니하기로, 동 구무물목의 등본을 올려보내오니 속히 처치하실 일로 수본한다”고 하였음.

무릇 왜인이 무역을 요구하는 물건은 모두 공목으로 절가 계감하는데, 근래에 종종 무역을 요구하는 것이 끝이 없어서 지탱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 준절하게 물리쳐서 굳게 방색하는 것이 마땅하지마는, 저들이 이렇게 갈망하고 이렇게 간청하는데 만약 전연 방색한다면 저들이 낙망하는 마음이 많을 뿐 아니라 혹 뜻밖의 경색될 걱정이 없지 아니하겠기로, 역관들을 시켜 말을 만들어 타이르게 하되, 동 차왜가 무역을 요구하는 각종의 물자는 지극히 많아서 감소하여 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옥대는 예전에 요시나리가 무역을 요구할 때 우연히 얻은 것이 있어서 과연 부응하였으나, 원래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어서 지금은 결단코 찾아줄 수 없으며, 적석(赤石)도 소산이 아니라서 얻을 길이 없으며, 노랑피꼬리와 수리(鷺鳥)는 모두 제 철이 아니어서 잡기가 극도로 어렵다는 뜻으로 상세히 언급하라는 일로 엄하게 더 신칙하였더니, 훈도 윤성립 등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소인이 분부대로 동 차왜에게 십분 타이르고 한편으로 다투어 옥대와 적석

은 방색할 수 있었으나, 수리와 노랑피꼬리는 명년 4·5월 사이에 잡는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호담은 20부에서 5부를 감하고, 호설은 15부에서 5부를 감하고, 호간은 10부에서 5부를 감하고, 호두는 10부에서 5부를 감하고 호경골은 30부에서 10부를 감하고, 진묵은 200동에서 50동을 감하였는데, 그 나머지 물건도 감하여 정하자고 온갖 말로 이야기하였지만 간절하고 다급하다 하면서 들어줄 생각이 없고, 이른바 화룡필은 그 겨냥을 가져다 바치는데 자루 위에 채색으로 용을 그리고 각교(角膠)로 붙인 것이며, 부서진 우황은 우황 중에서 깨어진 것이라 함. 호두 등의 물건은 수량을 줄일 수 있었고 옥대와 적석은 모두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라 역시 방색할 수 있었는 바, 훈도 윤성립이 주선한 공이 없지 아니함. 동 구무 물건에서 본도에서 산출되는 것은 순찰사에게 보고하여 찾아 줌이 마땅하거니와 본도 소산이 아닌 것은 해조에 명하여 편의대로 마련하여 급속히 내려 보냄이 어떠하올지. 이른바 화룡필의 겨냥은 해조로 올려보내는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또 왜인이 무역요구하는 일이 있어서 요구가 연속하여 끊이지 않을 뿐 아니라 물종이 이렇게 많은데, 교활한 왜인이 이전의 요청을 이룬 것을 좋아하여 이제 감히 이런 욕심을 내는 것인지, 매양 그들의 소원을 따라 주어서 그들의 교만한 버릇을 키워주는 것은 불가하거니와, 그 중 옥대와 적석은 우리나라에서 산출되는 물건이 아니어서 훈도 등이 이미 방색하였고, 그 밖에 각종 물건도 또한 타일러 수량을 감하였는데 물목이 극히 많아서 부응하려고 한다면 체례(體禮)⁵⁷⁾에 부당함이 있을 뿐 아니라 후일의 폐단을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중 우황 큰 것 3부와 부서진 우황 15전, 구미청심원 200환, 호담 15부, 호설 10부, 호간 5부, 상기생 1근 등의 물건은 모두 갑자기 마련하기 어려운 물건이라 역관들에게 명하여 이치에 근거하여 방색하여 기어코 듣게 한 뒤에 장계로 알리라는 뜻으로 회이함이 어떠할지. 순치 17년(1660) 10월 초5일 우부승지 신 정창주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57) 체례(體禮) : 대체와 예절.

경자(1660) 10월 초7일

경상감사 홍(洪)이 10월 초1일 성첩한 장계. 방금 도부한 동래부사 정태제의 치보(馳報)에, 해당 차왜 평성우가 구청한 물건 중 노랑피꼬리와 수리[鷺鳥]는 명년 사오월 사이에 잡아 주는 일로 조정하고, 적석(赤石)과 옥대(玉帶)는 방색하며, 호담(虎膽)은 20부에서 5부를 감하고, 호설(虎舌)은 15부에서 5부를 감하고, 호육(虎肉)은 10근, 호간(虎肝)은 10에서 5부를 감하고, 호두(虎頭)는 10부에서 5부를 가하고, 호경골(虎脛骨)은 30부에서 10부를 감하고, 진묵(眞墨)은 200동에서 50동을 감하며, 피금(皮金) 10장, 석린(石鱗) 1근, 화룡필(畫龍筆) 100자루, 마성(馬省) 100개, 벼루 30면(面), 연적(硯滴) 50개, 구미청심원(九味淸心元) 200환, 우황(牛黃) 큰 것 3부, 부서진 우황 15전, 하수오(何首烏) 1근, 오미자(五味子) 1근, 대추 큰 것 3근, 아교(阿膠) 1근, 백작약(白芍藥) 2근, 백복령(白茯苓) 5근, 황금(黃芩) 3근, 백출(白朮) 3근, 상기생(桑寄生) 1근임.

동 무역요구 물건은 본도에서 산출되는 것은 순찰사에게 보고하여 찾아줌이 마땅하거니와, 본도에서 산출되는 것이 아닌 것은 해조에 명하여 급속히 내려보내라고 연유를 치계하도록 첩정(牒呈)한다 하였음. 근래에 왜인이 무역 요구하는 물건이 끝이 없고, 찾아내라는 말이 한결같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니, 곤란한 일이 생길까 두려워 감히 방색하지 못하니 더욱 염려되거니와, 이미 방색하지 못한다면 마련해 줌이 마땅한데, 무역을 요구한 물품 중에서 진묵, 마성, 연자(硯子), 연적, 하수오, 오미자, 백작약, 백복령, 백출, 대추, 아교 등의 물건은 본도에서 끌어모아 들여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나, 호담, 호육, 호간, 호두, 호경골 등에 이르러서는 해조에서 반드시 본도에 분정할 것인데, 호담 등의 물건은 도내의 각관에 전혀 저축한 곳이 없으며, 신의 감영 및 좌우 병영(兵營)에도 또한 저축한 것이 없으며, 전일에 왜인이 무역을 요구할 때 호두 1부와 호경골 2개, 호간 만을 신의 감영에서 근근히 찾아 주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요구하는 바는 그 수량이 이렇게까지 매우 많아서 전혀 마련해낼 길이 없으니, 호담 등 6종은 각 도에 분정하여 진작 들여보내는 일을 해조에 명하여 품의하여 시행하도록 할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경상감사 홍처후의 장계 사연을 보면 왜인

이 무역을 요구한 물건을 분정하는 일이거니와, 동래부사 정태제의 장계를 복계할 때 이미 물건 중에 약간 종류를 역관들로 하여금 이치에 근거하여 방색하여 기어코 듣게 한 뒤에 다시 장계로 알리라는 뜻으로 품의 확정하여 회이하였으니, 본부에서 타일러 확정한 뒤에 참작하여 분부하겠다는 일로 회이함이 어떠할지. 순치 17년(1660) 10월 초7일 동부승지 민(閔)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경자(1660) 10월 13일

동래부사 정태제가 10월 초6일에 성첩한 장계. 이 달 초5일 부산첨사 정한기(鄭漢驥)가 치통하기를, 왜의 작은 배 한 척이 나왔기에 즉시 훈도 윤성립(尹誠立)에게 명하여 사정을 물어보라 하였는데 회언(回言) 내용에, “비선에는 격왜 8명이 노인(路引)을 가지고 나왔거늘, 나온 연유를 탐문하였더니, ‘왜관에 분부할 일이 있다’ 하기에, 대관왜 등에게 그대로 탐문하였더니, 특별히 다른 일은 없고 도주가 구하는 물건을 진작 무역하여 보내는 일을 재촉하려고 비선이 나왔다고 운운하였음. 노인(路引) 하나를 받아서 드리는 일로 회언한다” 하였기에, 동 노인을 받아 올려보내는 일로 치통한다 하기로, 동 노인을 해조로 올려보냄. 도주가 무역을 요구하는 물건은 훈도 윤성립이 수본(手本)에 베껴 써 왔기에 28일에 이미 치계하였으나, 동 무역요구 물건을 들여보내는 일로 비선까지 나왔다고 하는 바, 저쪽의 목마르듯 급한 사정을 이에 근거하여 알 수 있고, 물건 중 본도에서 산출되는 것은 순영에서 찾아 보냄이 마땅하거니와, 본도의 소산이 아닌 것은 해조에 명하여 편의대로 마련하여 급속히 내려보내기를. 어제는 바다가 어둡다가 그대로 비가 내렸는데, 본부의 두 곳 봉군(烽軍)이 모두 망보는 일을 그르침을 면치 못하였기에 잡아 와서 죄를 다스렸으며,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왜인이 무역 요구하는 물건의 종류와 수량이 과다하여 갑자기 마련하기 어렵기에, 역관들에게 명하여 이치에 근거하여 방색하라는 뜻으로 겨우 복계하여 동래부사에게 행회하였는데, 아직은 방색하여 듣게 하였는지의 여부를 모르겠거니와, 이제 동래부사 정태제의 장계를 보면, 무역 요구 물건의 일로 비선까지 나왔으니 본도의 소산이 아닌 것은 해조에 명하여 급속히 마련하여 내려 보내달라고 하였는바, 그 비선이 또 나온 것으로 본다면 타일러 전부 방색하는 것은 필시 기

약할 수가 없고, 그 물건 중에서 호두(虎頭), 호간(虎肝), 호설(虎舌), 호담(虎膽), 호경골(虎脛骨), 호육(虎肉) 등 6종은 아침 저녁 사이에 갑자기 마련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니, 편의대로 구하라는 뜻으로 짐짓 충홍도(忠洪道)와 강원도, 황해도 등 가까운 도에 분부하고, 다시 그 방색 여부를 살펴보고 품의하여 조처함이 어떠할지. 순치 17년(1660) 10월 12일 우부승지 신 홍처윤(洪處尹) 차지로 입제하여 그대로 윤택함.

경자(1660) 10월 22일

동래부사 정태제가 10월 16일에 성첩한 장계. 이달 12일에 도부한 예조의 관문에 운운하기를, “우황(牛黃) 형체가 온전한 것 3부 등의 물건은 모두 갑자기 마련하기 어려운 물건이니, 역관들에게 명하여 이치에 근거하여 방색하고 기어코 듣게 하라”는 일 이었고, 추가로 도부한 예조의 관문에는, “경상감사의 장계에 운운한 일은, 동래부사의 장계를 복계할 때 이미 물건 중에 약간 물종을 역관들에게 시켜 이치에 근거하여 방색 하여 기어코 듣게 하고 다시 장계하여 알리라고 하는 뜻으로 품의 확정하여 회이하고, 동래부사가 타일러 확정한 뒤에 참작하여 분정하겠다는 뜻으로 회이한다는 일”로 전후의 관문이 있었는데, 근래 왜인들의 무역요구는 끝이 없어서 결단코 일일이 부응해 주기 어렵기로, 당초 무역을 요구한 발기(件記)를 역관 등이 등서하여 올려보냈거늘, 역관들을 신칙하여 여러가지로 타일러 혹 방색하거나 혹 수량을 줄이고, 사유를 갖추어 장계로 알린다는 뜻으로 재삼 분부하였는데, 방금 바쳐온 훈도 윤성립(尹誠立)과 별차 이지방(李之芳) 등의 수본 내용에, “소인들은 분부를 받고서 내려왔기에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고 즉시 왜관에 가서 죽을 힘을 다해 다투면서 종일토록 타일러, 호담 15부 중에서 또 5부를 감하고, 호설 10부 중에서 또 3부를 감하고, 호육 10근 중에서 또 5근을 감하며, 호간 5부 중에서 또 2부를 감하고, 호두 5부 중 또 2부를 감하고, 호경골 20부 중에서 또 5부를 감하였으며, 부서진 우황은 전부 감하고 형체가 온전한 것만 3부, 구미청심원 200환, 상기생 1근 등은, 동 차왜 및 대관왜 등의 말에, ‘이제 이 구무하는 물건은 모두 예도 집정들이 구하는 물건이고 약재 중에서 청심원, 우황, 상기생 등의 물건이 더욱이 긴급하고 간절하니, 만약 일일이 부응하지 아니한다면 비단 도주가 허물을 당할 뿐 아니라 혹 양국 사이에 이롭지 못하겠기로 부득이 이렇게 간청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전에 예도에서 금수(禽獸)를 구무할 적에는 별차왜를 보내어 무역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에도 차왜를 특별히 보내어 본부에 폐를 끼칠까 염려되어 저희 일행에게 순순히 부쳤다고 하기에 훈도 등을 준엄하게 물리치고 굳건하게 방색하기를 이렇게 까지 하니 저희들은 다른 데서 구무할 길이 없으니 장차 이 사연을 도중(島中)에 통지하여 전례대로 특별히 구무차왜를 보내어 그 일을 중대하게 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패악한 짓을 행하여 갈수록 심한 지라, 여러가지로 타일렀으나 들어줄 생각이 없으니, 결단코 수량 전부를 방색하기는 극도로 염려되기로 연유를 수본으로 하는 일"이라고 수본하였음.

호두 등의 물건은 또 수량을 감하였는데, 청심원, 우황, 상기생 등의 물건은 그들이 무역하고자 하는 것이 오로지 여기에 있고, 차왜를 특별히 보낸다는 설은 모두 공같이 거니와, 십분 타이르고 한편으로 다투어 고집하였지만, 시종 방색하기는 어려운 듯하니, 변통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다시금 참작하여 품의 조처하시기를, 서계(書契)도 동차왜가 하는 말이 '조유(造諭) 두 글자는 지난해에 평지우(平智友)가 가져온 서계 가운데 있었음에도 폐단 없이 받았다'고 하는데, 전연 근거 없기까지는 않은 듯하니,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조처하게 하시기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의 문자를 보니 한 조목은 이미 품의 확정하여 회이하였거니와, 왜인이 무역을 요구하는 각종 물건은 역관들이 다시금 타일러 비록 수량을 경감하였으나 모두 긴요한 물건이 아니고, 세 가지 약물에 있어서는 갑자기 마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한 번 이런 길을 열면 교활한 왜인들이 이것을 고집하여 전례로 삼아 예사로 무역을 요구하여 필시 후일의 폐단이 될 터이니, 만약 시종 방색한다면 차왜가 노하여 패악한 짓을 저지르는 것이 날로 심해질 터이니,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고는 관계되는 바가 작지 않겠으니, 묘당에 명하여 품의해서 처리하게 함이 어떠할지. 순치(1660) 17년 10월 23일 좌부승지 신 홍(洪)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비변사에서 첨부한 계목. 왜인이 요구하는 구미청심원(九味淸心元), 우황(牛黃), 상기생(桑寄生) 등 세 가지는 약용(藥用)으로 긴요한 것이라고 무역 요청을 마지않는데, 모두 대단하게 중대한 물건은 아니어서 시종 방색하기는 아마도 미안할 듯하니, 구미청심원은 해조에 명하여 거기에 들어가는 당재(唐材)의 가격을 지급하고 의사(醫司)에서

법대로 정밀하게 제조하여 내려보내며, 우황(牛黃)은 본도 감사가 또한 마련할 수 있겠다고 하였거니와, 상기생(桑寄生)은 전남(全南) 우수사(右水使)가 관할하는 바다 섬 가운데서 산출되는 물건으로 감영에 가끔 봉진하고 남은 수량이 있는데, 해도에 명하여 편의대로 찾아 올림이 마땅하니, 이런 뜻으로 해조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순치 17년 10월 25일에 좌부승지 신 홍(洪)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신축(1661) 4월 26일

동래부사 이원정(李元禎)⁵⁸이 4월 20일에 성첩한 장계. 신은 이달 20일에 전 부사 정태제(鄭泰齊)와 교대하였는데, 방금 접한 부산첨사 정한기(鄭漢驥)가 치통하기를, 어제 작은 배가 나온 연유와 관수(館守)에게 다시 사정을 묻는다는 뜻은 이미 치통하였거니와, 방금 훈도 윤성립(尹誠立)이 사정을 묻고서 돌아와 하는 말 내용에, “신임 관수 한 곳에 다시 사정을 물었더니, 신임 관수의 말이 ‘도주가 에도로 들어가는데 여러 곳에서 요구하는 물건이 과다하기로 속히 무역을 요구하여 들여보내라고 봉행(奉行) 등이 서찰을 저희들에게 보냈을 뿐 별로 다른 일은 없다’고 하거늘, ‘이른바 구무는 어떤 물종이냐?’고 다시 물었더니, ‘약재와 호육, 서책 등의 물건이거니와, 저희들이 다례(茶禮)할 때 구무 목록을 바치고 친히 아뢰겠다’고 하였다”고 회언(回言)하였기로, 연유를 치통한다 하였다는 일임.

신축(1661) 5월 15일

동래부사 이원정(李元禎)의 장계. 이달 초6일 신임 관수 등성행(藤成幸) 및 반종(伴從) 3명 등에게 다례를 전례대로 베풀었고, 서계와 별폭 등을 받아 해조로 올려 보냄. 전일 이른바 도주의 구무(求貿) 목록은 다례할 때 바쳤는데 명목이 매우 많을 뿐 아니라, 서책 가운데 『칠서직해(七書直解)』는 우리나라에서 간행 된 것이 아닌 듯하며, 각종의 약재는 토산이 아닌 것이 많거늘, 신이 관수에게 말하기를 “우리나라에 있는 서

58) 이원정(李元禎) : 현종 신축(1661) 4월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임인(1662) 7월에 전임지인 장성의 곡물이 감축된 일로 나포되어 갔다.

책 및 토산의 약재는 마땅히 해당 관청에 보고하여 찾아보내겠거니와, 서책 가운데 혹 책판이 낡아서 인출할 수 없는 것이 없지 아니하며, 약재 가운데 본디 토산이 아닌 것이 많으니, 이는 해조에서도 찾아 보내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였더니, 답하기를 “사세가 이러하니 전량을 구하기는 참으로 쉽지 아니한 듯한데, 단지 있는 대로 찾아 주기 바란다”고 하거늘, 약재의 종류가 매우 많은데 종류마다 1근씩 마련하는 외에는 많이 얻을 수는 없다는 뜻을 훈도 윤성립을 시켜 타이르게 하였더니, 답하기를 “마련해 주시는 수량대로 받아 가겠는데, 그 중에 백렴(白蘚)⁵⁹⁾은 에도에서 요구하는 곳이 매우 많으니 반드시 10근은 채워야 용도에 맞출 수 있겠다”고 간청하였으며, 또 “서책과 약재 중에 무역을 허락하는 물종을 먼저 대마도로 통보하려 한다” 하거늘, 서책 책판이 각 읍에 흩어져 있어서 어떤 책판이 이지러지고 낡았는지, 어떤 책판이 인출할 수 있는지 또 렷하게 알 수가 없으니 짐짓 해조의 회답을 기다린 연후에 알 수 있으며, 약재는 중국산 약재이면 거론할 수 없고, 토산물 가운데도 마련하는데 쉽고 어려움 및 생산되는 시기와 채취 여부는 해조에서 의관(醫官)에게 물어서 회답을 들은 뒤에야 알 수 있다고 윤성립에게 시켜서 아울러 타이르게 하였음. 무릇 왜인이 구청하는 물건은 모두 공목(公木)으로 값을 매겨 계감(計減)하기에 원래 그냥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있는 대로 얻어가겠다는 뜻으로 편하게 말하였으므로, 신 또한 준절하게 배척하지 아니하고 좋은 모양으로 말을 하였는데, 본도에서 생산되는 것은 감사에게 보고하여 찾아주겠거니와, 본도 소산이 아닌 것은 해당 관청에 명하여 편의대로 마련하여 급속히 내려보내되, 만약 있는 것을 없다고 하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혹 장사꾼들이 사사로이 판매하여 얻으면 신의에 흠이 될 듯하여, 이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진실로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 아니면 그들의 소망에 부응하는 것도 무방할 듯함. 동 도주의 무역 요구 물목을 베껴 써서 해조로 올려보내오며 연유를 치계하는 일 및 도주의 무역 **요구 물목**.

흑마포(黑麻布) 20필, 『오경대전(五經大全)』, 『사서대전(四書大全)』, 『의례경전통해집전(儀禮經傳通解集傳)』, 『이퇴계전집(李退溪全集)』,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 『칠서직해(七書直解)』, 『근사록(近思錄)』, 청록승마(靑綠升麻), 상기생(桑寄生), 천오(川烏), 두은(頭銀), 시호(柴胡)⁶⁰⁾, 산두근(山頭根)

59) 백렴(白蘚) : 낙엽 덩굴 나무 가위톱의 뿌리. 학질(瘡疾)이나 창독(瘡毒)을 다스리는 데 사용한다.

60) 시호(柴胡) : 미나리과의 다년초 뿔미나리의 뿌리를 말린 약재. 학질 등에 발한, 해열제로 사용한다.

100부(部), 호로파(胡蘆巴)⁶¹, 부평(浮萍), 산수유(山茱萸), 백급(白芨)⁶², 과선(菓蓚), 호황련(胡黃蓮), 백미(白薇), 단삼(丹蔘), 누로(漏蘆), 천문동(天門冬), 택사(澤瀉), 사상자(蛇床子), 대청(大靑), 소청(小靑), 인진(茵陳)⁶³ 이상 21종 각 1근씩. 흑부자(黑附子), 육종용(肉蓯蓉), 반묘(班貓)⁶⁴, 청영석(靑礬石), 금성영석(金星礬石), 화예석(花藥石), 비상석(砒霜石), 적백하수오(赤白何首烏), 하수오(何首烏), 당귀(當歸), 우슬(牛膝)⁶⁵ 이상 11종, 근수를 적지 않음. 백렴(白蘘) 10근 등의 일로 별단(別單).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등성행(藤成幸)이 나올 때 도주(島主)가 무역을 요구하는 서책 및 약재 각종 중에 당재(唐材)는 찾아서 부응해주기 어려운데, 향재(鄉材)는 본도에 명하여 산출되는 대로 찾아서 부응하고, 백렴과 누로는 황해도에서 산출되고, 상기생은 전남도에서 산출되니, 또한 해당 도에서 마련하여 동래부사에게 보내도록 하여 전해주어서 먼 곳 사람의 바람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고, 그 중 산두근 100부와 대청, 소청은 모두 본국 소산이 아니라고 말을 만들어 방색함이 마땅할 듯하며, 서책은 비록 인출해 내는 종이가 들더라도 또한 공무(公貿)로 계제(計除)⁶⁶하는 것인지라 찾아서 지급함이 무방할 듯하니, 『칠서직해(七書直解)』 외에는 아울러 인출하여 지급하라는 일로 본도에 거행하도록 명하고, 본도에 만약 책판이 없으면 본도에서 전남도로 이문(移文)하여 인출하여 보내게 하며, 흑마포 24필은 해당 관청에 명하여 마련하여 내려보내라는 뜻으로 행이함이 어떠할지. 순치 18년(1661) 5월 15일 우승지 신 이(李)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험함.

61) 호로파(胡蘆巴) : 중국에서 생산되는 콩과에 속하는 일년초의 씨. 각기(脚氣)나 산증(疝症) 등을 다스리는 약재로 사용한다.

62) 백급(白芨) : 난초과에 속하는 다년초 대왕풀의 지하 구형 비늘줄기. 수렴(收斂), 지혈(止血)의 약재로 사용한다.

63) 인진(茵陳) : 사철쭉.

64) 반묘(班貓) : 가뢰과의 곤충 먹가뢰, 왕가뢰 등을 말린 약재. 피부 자극제나 발포제로 사용한다.

65) 우슬(牛膝) : 비름과의 다년초 쇠무릎지기의 뿌리. 이뇨제나 무릎 통증에 약재로 사용한다.

66) 계제(計除) : 비용을 셈하여 총액에서 제외함.

신축(1661) 7월 초4일

전남(全南) 감사의 장계. 왜인이 구청하는 오경(五經) 중 『시(詩)』, 『서(書)』와 사서(四書) 중 『논어(論語)』와 『대학(大學)』은 낡은 지 이미 오래여서 전혀 볼 수가 없사오며, 『근사록(近思錄)』도 낡아서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반이 넘기에, 인출하여 보내지 못하는 일로 별도로 예조에 이문(移文)하였는데, 본도에 원래 판본이 없는 『맹자(孟子)』 및 비록 판본이 있더라도 낡아서 알아볼 수 없는 『시전(詩傳)』, 『서전(書傳)』, 『논어(論語)』, 『대학(大學)』, 『근사록(近思錄)』 등 6종의 서책은 다른 도의 선본(善本)을 인출하여 보내도록 예조에 명하여 품의하여 처리하도록 할 것.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제목. 이 장계를 보니 도주가 구무하는 서책 중 본도에 없는 『논어』, 『맹자』, 『시』, 『서』, 『대학』, 『근사록』은 다른 도의 있는 곳에서 인출하여 보내도록 하였는 바, 『의례경전(儀禮經傳)』은 수년 전에 본 예조의 행으로 인하여 영남과 호남에서 반으로 나누어 새로 간행하게 하였기로, 전남도(全南道)에서는 반 부를 장차 인출하여 보내겠다고 하였으니, 반 부는 경남도(慶南道)에서 인출하여 지급할 것이며, 『근사록(近思錄)』은 함경도 안변부(安邊府)에 판본이 있다고 들었으니, 해당 도에 명하여 인출하여 장정을 하여 본조로 올려보내게 하여 보내주도록 하며, 『논어』, 『맹자』, 『시』, 『서』, 『대학』은 경상도에서 전에 계하한 내용대로 편의대로 찾아서 무역하게 하며, 도내에 만약 판본이 없으면 또한 동래부사에게 명하여 말을 만들어 방색하거나, 부득이하면 이번에 요구하는 책자가 본디 백급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목으로 계산하여 제외하는 것이니, 경상도에서 편의대로 무역하여 지급하여도 또한 무방한 바, 각 도 감사에게 이문하여 알림이 어떠할지.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신축(1661) 8월 17일

동래부사의 장계. 이달 12일 가훈도(假訓導) 최유립(崔裕立)과 별차(別差) 이지방(李之芳)⁶⁷⁾ 등이 와서 고한 내용에, “관수왜(館守倭)가 도주(島主)의 무역 요구 물목이

67) 이지방(李之芳, 1618-?): 회미(會尾) 이씨로 자는 자문(子聞)이며 효종 정유(1657)에 역과에 합격하여 왜역에 종사하였다.

라 칭하면서 한 장의 발기(件記)를 내어 보이며 말하기를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속히 찾아 달라’고 하기로, 동 물목 발기를 바친다”고 와서 고하였는데, 상항의 무역 요구 물명(物名)을 베껴 써서 해조로 올려보내거니와, 그 중 백양석(白羊石)⁶⁸⁾, 흑양석(黑羊石)⁶⁹⁾ 두 종류는 본디 우리나라에서 산출되는 물건이 아니라고 곧장 타일러 방색하였음. 이른바 산 고슴도치(活蝟)도 20마리로 써 올렸는 바 그 수가 과다하기로 역관 최유립 등으로 하여금 말을 만들어 타일러서 10마리로 감하였으니, 해당 관청에 명하여 전에 올린 등본의 명목을 상고하여 결정하여 분정(分定)해 주시기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도주가 무역을 요구하는 물목의 등본을 올려 보냈는 바, 이전부터 왜인이 무역을 요구하는 물건은 공무목(公貿木)으로 계감(計減)하여 환무(換貿)하였거니와, 물목의 산 고슴도치 10마리와 색지(色紙) 15권, 상품의 먹 50개는 본도에서 편의대로 무역하여 주도록 하며, 대모필(玳瑁筆) 150자루와 칠추필(漆抽筆) 50자루는 해당 관청에 명하여 전례대로 마련하여 내려보냄이 어떠할지.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신축(1661) 9월 13일

동래부사가 9월 초7일 성첩한 장계. 왜의 작은 배 한 척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즉시 가훈도 최유립(崔裕立)과 별차 이항백(李恒白)⁷⁰⁾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물어보게 하였는데 회언(回言) 내용에, “비선(飛船)에는 격왜 7명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나온 연유를 탐문하였더니, ‘관수에게 가는 사신(私信)을 가지고 왔다’고 하거늘, 관수에게 가서 그 연유를 물었더니 관수의 말이, ‘도주가 에도에 있으면서 장차 여러 집정 장수들과 노인(老人)을 우대하는 잔치를 베푼다고, 소용되는 두루미[野鶴] 20마리, 물오리[野鴨] 30마리, 기러기 20마리, 녹두가루 300근, 새로 산출된 호도와 잣 각 3섬 등

68) 백양석(白羊石) : 중국 백양산(白羊山)의 땅 속에서 파내는 석질(石質)의 약재로 약독(藥毒)을 푸는데 사용한다.

69) 흑양석(黑羊石) : 백양석과 같이 중국 백양산(白羊山)에서 생산되는 약재인데 검은 빛이 나는 것이다.

70) 이항백(李恒白, 1634-?) : 정선이씨로 자는 장경(長卿)이며 현종 경자(1660)에 역과에 합격하여 왜역에 종사하였다.

의 물건을 급급하게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라고 하였으며, 수봉행(首奉行) 평전시감(平田侍監)과 고천차우위문(古川次右衛門) 2인 및 도주가 항상 신임하는 10인 등을 잔치할 때 사환으로 부리려고 불러간다고 하는데, 이 일이 만분 긴급하니 동래 영감 전에 상세하게 고하여 달라'고 하거늘, 인하여 그곳 사정을 물었더니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다만 별차왜 준지승(隼之丞)과 굴성반(橘成般) 등은 이 달 스무 날 쯤에 바람을 기다릴 것이라고 하였다"는 일로 회언하였음. 상항의 무역 요구 물건을 해조에 명하여 속히 분정하여 때 맞춰 들여보내도록 할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도주가 예조에 있으면서 여러 집정 등과 노인을 우대하는 잔치에 사용할 두루미와 물오리, 기러기, 녹두가루, 호도, 잣 등의 물건을 급급하게 무역을 요구하여 들여보내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본디 공무목으로 계제(計除)하여 무역해 준 전례가 있으니, 본도에 명하여 산출되는 지방에서 편의대로 무역하여 주도록 하며, 수역(首譯) 김근행(金謹行)을 보내는 일은 별차왜(別差倭)가 나왔다는 또렷한 보고를 기다렸다가 출발하여 보냄이 어떠할지.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신축(1661) 10월 13일

경상감사의 장계. 왜인이 무역을 요구하는 두루미[野鶴]는 본도에 없고, 전에 무역을 요구할 때도 호남(湖南)과 호서(湖西) 두 지방에 분정(分定)하였으니, 해당 관청에 명하여 속히 산출되는 곳에 분부하여 수송하여 들여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왜인이 무역을 요구하는 물건 중 두루미는 본도 소산이 아니라고 하니, 충공도(忠公道)와 전남도(全南道) 양남(兩南)에서 각기 10마리 씩 분정하여 급급히 동래로 보내어 무역을 허락하는 일로 이문(移文)하여 알림이 어떠할지.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신축(1661) 12월 20일

동래부사 이원정(李元禎)이 12월 13일 성첩한 장계 내용. 수역(首譯) 김근행(金謹

行) 등의 수본(手本) 내용에, “차왜 굴성반(橘成般)은 평소 질병이 많은데, 이번에 나온 후로 병세가 가볍지 아니하고, 차왜 평성교(平成喬) 또한 흉복통(胸腹痛)이 때때로 발작하여 점차 위중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의 발선연(發船宴)도 이번 11일에 행하기로 이미 결정하였다가 이 병환으로 행할 수 없음. 의원 한형국(韓亨國)이 일찍이 도주 요시나리(義成)의 신병으로 말미암아 장계로 청원하여 섬에 들어가서 구호하여 살려내었으므로, 대마도 사람들은 비록 반드시 죽을 병이라도 한형국을 보면 반드시 살아나리라 생각한다고 두 차왜 등이 소인에게 간절히 말하거늘, ‘동래 염감께서 토질(土疾)로 중환을 앓고 있어서 앞서 한형국을 이미 스스로 재촉하였으니 오래지 않아 내려올 것이라고 여겼는데, 한성부(漢城府)의 회이(回移)가 내도하여 이르기를 이제 한형국은 바야흐로 혜민서(惠民署) 교수(敎授)가 되어 내려 올 수 없다고 하였다’는 뜻으로 말하였더니, 차왜 등이 문득 좋지 않은 안색으로 말하기를, ‘전에는 대마도의 서승(書僧) 서수좌(恕首座)가 그 신병을 위하여 사사로이 왜관에 왔을 적에도 서울의 의원을 청하여 와서 그 바람에 부응하여 주었는데, 저회 등은 이미 공무로 차출되어 왔는데도 이렇게 어렵지 않은 간청을 어찌하여 방색하는 지 매우 신의가 없다’고 하기로, 연유를 수본을 한다” 하였음. 신은 풍토에 익숙지 아니하여 배가 더부룩한(腹脹) 증세의 병이 무거워 몇 달 이래로 한결같이 고질병이 되었는데, 한형국이 제법 의술의 처방을 안다는 소문을 들었기로 군관(軍官)이 스스로 잡아오겠다고 희망하였고, 차왜가 병으로 인하여 의원을 구하는 일이 마침 그 뒤에 있었으므로, 역관 등이 오래잖아 내려올 것이라는 뜻으로 답하였는데, 바야흐로 목을 매달고 기다리고 있을 즈음에 그가 오지 않는다는 통보를 듣고서 낙망을 이기지 못하고 신의가 없다고 하였거늘, ‘당초 본부에서 잡아오려던 것은 공등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은 부사 자신의 병환을 위해서였으니 얼마나 최선을 다하였을 까마는, 바야흐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본부에서도 임의로 불러올 수 없다’고 반박하여 타일렀으나, 끝내 믿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서수좌의 병을 다스릴 적에 의관 이시찬(李時贊)이 계청하여 내려왔던 사례를 인용하여 속히 보기를 간청하였다는 수본 및 회언이 나왔기로,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차왜 평성교(平成喬)와 굴성반(橘成般) 등에게 모두 신병이 있어서, 서수좌(恕首座)가 병을 치료하였을 때의 사례에 의거하여 의원 한형국을 보고자 간청한다 하였는데, 장계대로 해조에 명하여 말을 주어

밤낮 없이 내려보내어 먼 곳 사람의 바람에 부응하도록 함이 어떠할지.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임인(1662) 정월 28일

예조 단자. 방금 접한 동래부사 이원정(李元禎)이 첩보한 내용에, 역관 이상한(李尙漢) 등이 와서 고하기를 “관수 및 대관왜 등이 말하기를, ‘지난날 부특송 송사선이 나올 적에 도주가 에도에 있으면서 서찰을 보내어, 극품(極品)의 홍전(紅氈) 5넙(立)과 향선추(香線墜) 30개 중 10개는 호도 같이, 20개는 혹은 나뭇잎 같거나 혹은 대나무 마디 같은 것을 급급히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라고 하였기로, 본부에 고하여 기어코 무역을 허락하라’ 한다고 와서 고하였는데, 이러한 사소한 물건은 위에 알리기에 불가하겠기로 감히 이렇게 첩보하오니, 동 홍전 15립과 향선추 30개를 기일에 맞춰 무역하여 보내어 먼 곳 사람의 바람을 잃지 않게 하는 일로 첩보를 올린다 하였음. 이전부터 이러한 무역은 공무목(公貿木)으로 환감(換減)하니, 이 홍전과 향선추 등의 물건을 호조(戶曹)에 명하여 속히 사들여 별도로 금군(禁軍)을 정하여 내려보냄이 마땅하고, 병조(兵曹)에도 아울러 알림이 어떠할지. 강희 원년(1662) 정월 28일에 입계하고 입제한 대로 시행함.

임인(1662) 2월 25일

동래부사 이원정(李元禎)이 2월 16일 성첩한 장계. 이달 14일 바람에 표류한 사람을 데려온 차왜(差倭)가 가지고 온 도주의 구무(求貿) 발기(件記)를 바치는 즉시 장계하여 알리겠다는 뜻은 이미 치계하였는데, 방금 바친 훈도 이상한(李尙漢) 등의 수본 내용에, “차왜의 이른바 ‘도주(島主)의 무역요구 물건은 곧 에도의 집정 등이 간절하게 구하는 물건이므로 부득이 도주가 에도에서 사람을 대마도로 보내어 알려져 조선에 무역을 요구하게 한 것으로, 도주는 전례대로 4월 보름에서 스무날 사이에 대군(大君)에게 하직하고 섬으로 돌아오려 하니, 반드시 도주가 에도에서 출발하기 전에 들여 보내 주라고 정녕 간청하여 왔는지라, 모름지기 3월 초순에 이곳에 도착하여야 기일에 맞출

수가 있고, 기일에 맞추지 못하면 그냥 준다 하더라도 쓸 데가 없다'고 하며, 이른바 '조선 안장(鞍子)은 전일 조선에 무역 요구하였으나 매양 지방 각 관아에서 책임 땀질로 만들어 지급하였으므로 매우 좋지 않아서 그 값만 허비하고 모두 버려 두고 있으니, 이번에는 한결같이 통신사가 올 때 들어온 안장 대로 십분 정밀하게 만들어야만 도주가 예도에서 광채를 낼 수 있을 것이라' 하며, 또한 '김명국(金明國)에게 수십 폭의 그림을 그리게 하려고 하니 그 자신을 반드시 불러서 그리게 하여 지급해 주기를 천만 간절히 바라는데, 이는 짐정 등이 구하는 것이 아니고 대군(大君)이 구하는 것이니 다시 심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거늘, 그들이 요구하는 발기를 살펴보았더니, 영룡당철안(玲瓏唐鐵鞍), 채전(綵氈), 옥병필(玉柄筆), 사자고동대향로(獅子古銅大香爐), 산호주(珊瑚珠) 등은 본디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어서 쉽게 얻을 수 없다고 방색하였으며, 『이퇴계문집(李退溪文集)』은 판본이 남아있다는 뜻으로 말을 만들어 방색하였으며, 그 나머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안장(鞍裝) 및 화초(畵綃)와 『의림촬요(醫林撮要)』, 종이 등의 물건은 저들이 이미 우리나라 소산인 줄 알 뿐 아니라, 전에도 값을 받고 무역을 허락하였고 또한 그 사례가 있어서 모두 다 방색할 수가 없기에, 짐짓 품의하여 찾아서 무역하겠다는 뜻으로 말을 하였으며, 김명국은 전에 통신사를 따라 두 번 일본에 갔는데 그림을 잘 그린다고 칭송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요청하여 왔거늘, 소인이 수십 폭 그림을 그리는 일로 천리 길을 왕래하는 것은 폐단이 있을 듯하여, 부득이하다면 그 그림 화폭을 서울로 보내어 그려 오게 함이 매우 편하겠다고 하니, 차왜가 답하기를 '서울로 보내어 그려 오게 하는 것도 무방할 듯하나, 다만 전일 일본에 들어갔을 때에도 보는 곳이 아닌 데서 그리면 매양 다른 사람이 대신 그려 사람을 속여서 값을 취하였으니, 이제 만약 서울로 올려 보내면 또한 대신 그릴 폐단이 없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목전에서 그려야 한다'고 하며, 동 무역 요구 중에서 이른바 화초(畵綃)는 곧 김명국에게 그림을 받아올 물건이라고 더욱 급급히 무역하여 주지 않아서는 안된다고 하기에, 동 구무 물목 가운데 짐짓 방색한 것과 아울러 수본의 후록(後錄)으로 하여 수본을 올린다"고 하였기에, 날날이 들어 치계하오며, 구무 물목의 별단(別單)을 베껴서 해당 관청으로 올려 보내는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바람에 표류한 사람을 데려온 차왜가 말한 바의 도주가 무역 요구하는 물건은 별단에 갖추어 있거니와, 그 중 영룡철안(玲瓏鐵鞍)

등 5종은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고, 『퇴계문집(退溪文集)』과 아울러 장계대로 방색하게 하였으며, 그 나머지는 품의하여 무역해 주겠다고 하였으니, 5종의 물건은 아울러 찾아 줌이 마땅하겠는데, 장지(壯紙) 30권, 백지 50권은 본도에서 가려 지급하게 하며, 『의림촬요』 1권 및 화초 2필은 해당 관청에 명하여 값을 주어 무역하게 하고, 이른바 조선안장 1부는 그들이 전일의 무역 요구에 매양 지방에서 색책하여 만들어 주었으므로 모두 버려 두고 있다 하니, 비록 한결같이 통신사가 갈 때 들어보낸 안장의 사례와 같이 만들 수는 없더라도, 해조에 명하여 정밀하게 만들어 내려보내어 먼 곳 사람의 뜻에 부응함이 사리에 합당할 듯 하며, 김명국은 이런 시기에 내려보내는 것은 폐단이 없지 아니하여, 해조에서 사들인 화초를 사용하여 여기서 그러서 보내는 것이 편하니, 이렇게 분부하여 시행함이 어떠할지. 입계한 대로 윤택함.

왜인의 구무 물목 별단 등본.

조선 안장(鞍裝) 여러 도구, 화초(畵綃) 2필, 『의림촬요(醫林撮要)』 1부, 상상(上上)의 장지(壯紙) 30권, 상상의 백지(白紙) 50권, 이상 5종은 품의하여 무역해 주겠다고 말함. 영롱철안(玲瓏鐵鞍) 여러 도구, 채전(綵氈) 5립, 옥병필(玉柄筆) 2자루, 사자형상의 고동대향로(古銅大香爐) 1쌍, 대산호주(大珊瑚珠) 10개. 이상 5종은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라 쉽게 구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타일러 방색하였더니, 답하기를 그 형편이 쉽지 않으나 그래도 모쪼록 극력 찾아 달라고 하였는데 끝내 방색할 계획임. 『이퇴계문집』 판본은 낡았다고 방색함.

임인(1662) 3월 13일

동래부사 이원정(李元禎)이 3월 초6일에 성첩한 장계. 이달 초2일에 도부(到付)한 예조에서 계하(啓下)한 관문 내용에, “바람에 표류한 사람을 데려 온 차왜(差倭)가 주관하는 도주(島主)의 무역 요구 물건 중에서 영롱철안(玲瓏鐵鞍) 등 5종 및 『퇴계문집(退溪文集)』은 장계대로 방색하고, 그 나머지 5종은 찾아 주는 것이 마땅하며, 안장도

정밀하게 만들어 내려보내되, 김명국은 내려보내는 데 폐단이 있어서 해당 관청에서 무역한 화초(畵綃)로 여기서 그려 보내는 것이 편할 듯하니, 길이와 너비의 척도 및 채색 여부를 역관을 시켜 상세히 차왜에게 물어 청하는 대로 그리게 하도록 하라”는 일로 관문이 왔기에, 즉시 역관에게 분부하였는데, 당일 훈도 이상한(李尙漢) 등의 수본(手本) 내용에, “도주가 무역 요구하는 물건 중 영롱철안 등 5종은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라고 당초 십분 방색하였지만, 차왜가 모조록 구하여 달라고 간청하여 마지아니하기로 부득이 수본한다” 하였는데, 이제 해당 관청에서 계하하여 관문으로 전령(傳令)한 사연에 따라 또 이렇게 다시 방색하였고, 그 밖에 우리나라 안장 등 5종은 원하는 대로 무역을 허락하고, 김명국은 연로하고 병이 있어서 내려오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울러 말하였더니, 차왜의 말이 “과연 조선에 없는 물건이면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 감히 다시 청하지 못하거니와, 비록 다시 해조에 고할 수 없더라도, 판사(判事) 등이 사사로이 찾아보면 혹시라도 비축해 놓은 곳이 있을 터이니 더 힘을 써 달라”고 하였으며, 또한 “전후 각종의 무역 요구는 도주가 쓸 물건이 아니라 예도의 집정 및 대군이 구하는 것이므로, 매양 무역을 청하는 것이 굳이 번거롭고 외람스러운 줄 알지만, 다만 조선의 안장은 전일 무역을 허락할 때 매양 지방에서 색책하여 지급하게 했으므로 모두 졸작(拙作)이었고, 다래[泥障]와 주피(周皮)⁷¹⁾ 등의 물건 역시 생가죽(生皮)으로 만들었으므로,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곧장 부러져서 도주가 매우 무안하였는데, 이번에는 전과 같이 하지 말고 반드시 정밀하게 만들어 급급하게 무역을 허락하며, 김명국도 이 몇 폭의 그림을 그리는데 일로 천리 길을 왕래하는 것이 폐가 있는 줄 모르지 않으나, 다만 김명국이 일찍이 통신사를 따라 일본에 들어갔을 때에도, 목전에서 그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시켜 대신 그리게 할 뿐 아니라, 간혹 술에 취하여 붓을 놀리는데 힘을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반드시 보는 곳에서 그리게 하여야 하는데, 연로하고 병이 있어 내려올 수 없다고 하는 바, 비록 서울에 있더라도 십분 유념하여 정밀하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으로 대신 그리게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청하여 올 것은 없으나, 만약 명국이 임의로 그리게 하면 반드시 전과 같이 아무렇게나 그릴 폐단이 있을 것이니, 모름지기 관가에서 불러다가 별도로 관인을 정하여 그리는데 보게 하여 극도로 정밀하게 그려 주어서 도주가 광채를 낼 수 있도록 하며, 화초(畵綃)와 들어가는 채색의 값과 명국의 그림 공가(工價)는 모두 들어가는 대로 정하여 오면 일일이 계산하여 드리겠거니와, 대개 먼 곳

71) 주피(周皮) : 고리짝이나 상자 등 물건의 둘레에 붙이는 가죽.

에서 그림을 그리면 혹 착오가 생길 걱정이 없지 아니하고, 돌려보내어 고쳐 그릴 즈음에 날짜만 허비할 뿐 아니라, 명국이 비록 늙고 병들었다 하나 움직이지 못할 지경에 이르지 않았다면, 오고 가는 데 폐단이 있을 따름인데, 그 오고가는 사이의 양식과 말의 비용 등의 물자를 저희들이 아울러 준비하여 주겠다고, 이 뜻을 동래 영감 전에 간절히 고하여 반드시 오도록 해 달라”고 누누이 마지않았으며, 요구하는 바 그림의 견본 및 길이와 너비 척수를 짐짓 왜서(倭書)로 써서 주거늘, 베껴 써서 수본의 후록(後錄)으로 하는 일로 수본한다 하였기에, 후록을 베껴 써서 해당 관청으로 올려 보내거니와, 김명국은 이런 때에 멀리 오는 폐단이 참으로 해당 관청에서 복계(覆啓)한 사연과 같되, 왜인의 성품이 지극히 교묘하고 세밀하여, 비록 평범한 구무 물건이라도 터럭만큼만 제 마음에 차지 않는 점이 있으면 반드시 바꿔달라고 청하는 것은 실로 홀러운 폐습이거든, 하물며 이번 관백(關伯)이 구하는 물건은 반드시 십분 정밀하게 하려고 할 것은 당연한 이치인지라, 먼 곳에서 그림을 그렸다가 혹 하나라도 그 뜻에 맞지 아니하면 오고 가며 고치는 폐단 또한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고, 먼 곳 사람의 청이 이렇게 간절하고 절박하기에 부득이 번거롭게 치계하오니, 황공함을 이기지 못할 일이며, 그리고 도주가 구무하는 겨냥 별단(別單)임.

백초(白綃) 26폭 내 10폭은 길이 2자, 진채색(眞彩色)의 채녀(採女) 그림. 8폭은 길이 3자의 담채색(淡彩色)의 팔선인(八仙人) 그림. 이른바 팔선인은 곧 음중팔선(飲中八仙)을 말함이다. 그린 뒤에 백색 단자(段子)를 잘라 소침(小籤)을 만들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을 시켜 그 팔선(八仙)의 호칭을 쓰게 하여 각기 그 화폭 위에 붙이게 하고, 또 하나의 소침을 만들어 모년 모월 모일 조선국인 김명국이 그렸다고 쓰고, 또 그 도장을 그린 사람 이름 아래에 찍어서 8폭 가운데 마지막 폭의 아래에 붙이며, 8폭은 길이 3자에 진채색으로 춘하추동 네 계절의 큰 산수 경치 및 인물화를 그리고, 모모 풍경이라 써서 각기 소침을 붙여, 무역하기를 요구하며, 화초 2필이 만약 이 척수에 모자라면 혹 더 사들여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등본을 보냈음.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차왜가 구하는 것 중에서 주도로 허락한 것 5종 중 안장과 『의림촬요』는 이미 서울에서 내려보냈고, 장지와 백지는 본도에 명하여 갖춰 주게 하였거니와, 김명국을 내려보내는 데는 폐단이 있어서 여기서 그려서 보내는 일로 계하하여 이문하였는데, 이 장계를 보니 먼 곳에서 그리는 것은 그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왕래하며 고치는 병폐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였는바, 내려보내는 폐단을 없애려고 하였다가 만약 혹 돌려보내어 고쳐 그린다면 도리어 손상되는 바가 있으니, 김명국을 그 청한 바대로 말을 주어서 밤낮 없이 내려 보내오되, 각양의 채색 및 들어갈 물자를 해당 관청에 명하여 가려서 지급하여 보냄이 어떠할지. 입계한 대로 윤택함.

임인(1662) 3월 16일

동래부사 이원정과 접위관(接慰官) 윤(尹)이 3월 초9일에 성첩하여 연명으로 올린 장계 내용. “이관(移關)한 일로 문답 운운한 것은 어떻게 조치할 지 모르겠음. 앞서 등지승(藤智繩)이 두 나라 일을 담당할 때도 별도의 구청(求請)이 있으면 부응하도록 허락한 사례가 있고, 이제 이번 성반(成般)은 곧 등지승을 교대하였는데, 『동의보감(東醫寶鑑)』 1질과 『의림촬요(醫林撮要)』 1질, 우황(牛黃) 2부 등을 전례를 끌어와 구청하였으니, 해당 관청에 명하여 품의하여 조치하게 하실 일임.”

이에 근거하여 비변사에서 첨부한 계목. 부산으로 왜관(倭館)을 옮기는 한 조목은 결코 가볍게 허락할 수 없다는 뜻은 전에 이미 계하하여 행회하였으니 이전대로 확정하여 시행하되, 귤성반(橘成般)이 구하는 『동의보감』과 『의림촬요』 각 1질은 해당 관청에 명하여 찾아서 내려보내고, 우황 2부는 감영에서 사서 줄 수 있을 것이니, 이런 뜻을 감사에게 아울러 알림이 어떠할지. 입계한 대로 윤택함.

임인(1662) 7월 19일

동래부사 이(李)가 7월 14일 성첩한 장계. 방금 바친 훈도 이상한 등의 수본 내용에, “저번에 나온 차왜에게 사정을 물은 사연은 그 때 이미 수본하였거니와, 동 차왜가 또 말하기를 ‘도주가 전후로 무역 요구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닌데 동래 영감께서 힘써 모조리 만들어 주시어 참으로 감격하고, 이제 이번에 무역 요구하는 물건 또한 도주가 크게 바라는 것이라, 나전연갑(螺鈿硯匣) 및 동철주물(銅鐵鑄物)은 그 모양을 가지고

왔으나, 이런 물건은 목도하는 곳에서 만들지 아니하면 반드시 착오를 일으키니, 동 동장(銅匠) 및 나전장(螺鈿匠)을 솜씨 좋은 자로 가려서 속히 들여보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며, 또한 비둘기 알 만한 산호(珊瑚) 2개와 지포(紙砲) 1쌍, 호도 4섬, 잣 3섬, 도화지(桃花紙) 60장, 흰 대합(大蛤)의 빈 껍질 6,000개, 순근(蓴根) 등의 물건을 널리 구하여 달라'고 말하거늘, 소인 등이 답하기를, '각종의 무역 요구는 실로 폐단이 있는데, 좋게 교제하는 도리에 있어서 그렇게 아니할 수 없거니와, 그 중 산호와 지포는 원래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고, 호도와 잣은 이제 이미 철이 지나서 거의 없다'고 타일러 방색하였고, 그 밖의 물건을 수분 후록으로 하는 일로 수분한다" 하였음. 도주가 무역 요구하는 물건이 번쇄하여 계속 부응해 주기가 어려운 형편이로되, 또한 전연 방색하는 것도 불가하기로, 그 중 산호와 지포는 원래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며, 호도와 잣 만은 허락하여 마지않겠지만, 이제 이미 철이 늦었다고 아울러 타일러 방색하였고, 나전연갑과 동철주물 등은 도주가 겨냥을 내어보냈다고 하기로, 주조할 장인(匠人) 및 도화지 등을 본도 감사(監司)에게 보고하여 편의대로 찾아 줄 계획이오며, 흰 대합의 빈 껍질과 순근(蓴根) 등의 물건은 실로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 아니기로 본부에서 편의대로 찾아줄 것임. 상항의 구무 물목 등본을 해당 관청으로 올려 보내는 일 및 **도주의 구무 물목 등본 단자임.**

산호, 크기가 비둘기 알 만한 것 2개. 지포 1쌍, 호도 4섬, 잣 3섬. 타일러 방색하였음. 나전연갑 1부, 동철 주물 2개. 이른바 주물은 곧 동철(銅鐵)로 하나 같이 게 형상으로 부어 만든 것. 도화지 60장. 순근 10떨기는 이식할 수 있도록 흠을 붙여서 줄 것. 별단(別單).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도주의 구무 물건 중에서 연갑과 동주물과 도화지, 순근, 백합 등의 물건은 동래부사가 이미 도신(道臣)에게 보고하여 편의대로 찾아 준다 하였거니와, 산호와 지포는 허락할 수 없지만, 잣과 호도 등의 물건은 철이 지났다고 방색하여 지급하지 않음은 먼 곳 사람의 대접을 성실하게 하는 도리에 아주 흠이 되니, 또한 편의대로 찾아 부응하라는 뜻으로 본도 감사에게 아울러 행회(行會)함이 어떠할지. 입계한 대로 윤택함.

임인(1662) 10월 초1일

동래부사가 9월 25일에 성첩한 장계. 이 달 24일에 왜선 3척이 서계를 가지고 나왔거늘, 즉시 훈도 이상한에게 명하여 사정을 물어보게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제1척 임인조(壬寅條) 만쇼오잉〔萬松院〕 송사 정관 등성원(藤成元) 등, 제2척은 수목선(水木船), 제3척은 동년조 평의진송사(平義眞送使) 정관 평성중(平成重) 등이 서계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였고,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별로 다른 일은 없다고 하며, 정관 등은 말하기를 ‘녹두가루 100근과 마른 대구 200마리, 잣과 호도 각 3섬은 곧 에도에서 구하는 물건인데, 이러한 물건은 에도 곳곳에서 구청이 빈번하여 도주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말할 겨를도 없고, 매양 조선에 무역을 요구하는 데도 번거롭고 외람스럽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이 네 가지를 급급히 무역 허락해 달라’고 하였다는 일로 수본한다” 하였음. 무역 요구한 물건은 모두 구하기 어려운 물건에 건줄 것이 아니고, 이전부터 모두 공목(公木)으로 값을 정해 계감(計減)하고 원래 그냥 주는 것이 아니며, 본도에서 생산되는 물건은 이전부터 분정(分定)하여 찾아 주는 것이 규례이니, 해조에 명하여 품의하여 처리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만쇼오잉 송사 및 평의진송사의 정관 등이 도주의 말로 무역을 요구하는 녹두가루와 마른 대구, 호도, 잣 등의 물건은 모두 에도에서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바, 그들이 무역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모두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 아니고, 공목으로 값을 정해 계감하는 전례가 이미 있으니, 본도에서 편의대로 무역을 허락하라는 뜻으로 회이함이 어떠할지. 입계한 대로 윤택함.

계묘(1663) 정월 초2일

동래부사의 장계 및 등본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바람에 표류한 사람을 데려 온 차왜에게 본디 접대하는 사례가 있어서 두 차례 잔치의 예단(禮單)을 사례에 비취 마련한다 하면서, 도주(島主)가 이 달 그믐께에 장차 에도로 갈 것인데 집정 등에게 사용할 잣 10말, 호도 10말, 황대구어(黃大口魚) 700마리, 큰 백합(白蛤) 빈 껍질 5,000개, 영롱철안(玲瓏鐵鞍) 1부, 위라[月羅]⁷²⁾ 준마 2필의 무역을 청한다 하였는데, 잣 등 네 가지 물품 및 준마는 본도에서 편의대로 무역을 허락하오며, 영롱철안은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니 다시 더 타일러 방색하라는 뜻으로 본도 감사에게 아울러 이문(移文)함이 어떠할지. 입계한 대로 윤택함.

계묘(1663) 정월 20일

동래부사가 정월 13일에 성첩한 장계. 본월 초1일에 나온 비선(飛船)에서 도주가 구무(求貿)한다는 마필(馬匹)과 영롱철안(玲瓏鐵鞍), 잣, 호도, 대구어(大口魚), 백합(白蛤) 빈껍질 등의 물건에 대하여 별차 정문수(鄭文秀)⁷³⁾가 가져와서 고하거늘, 동 받기[件記]를 상고하니 물목(物目)이 매우 많은데, 그 중에는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 있고, 초8일 비선이 나올 적에 요구한 물건은, 당초 사정을 물을 때는 거론하지 않다가 이제 비로소 발설하는 것은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으니, 이 말로 타일러 기어코 방색하라는 뜻으로 역관 등에게 엄하게 신칙하였더니, 훈도 이상한(李尙漢) 등이 바친 수본(手本) 내용에, “분부한 대로 다시 왜관에 가서 대관왜(代館倭) 등에게 말하기를, ‘도주의 무역 요구 잡물의 받기를, 초8일 나온 비선이 나왔으면 그 날 사정을 물을 때 어찌하여 언급하지 않고, 사정을 물은 연유를 이미 치계(馳啓)한 뒤에 이제 비로소 발설하는 것은 불가한 일이고, 무역 요구 잡물 가운데 우리나라 소산이 아닌 물건이 많고 물종 또한 너무 많아서, 결코 동래 영감에게 고하기 어렵다’고 말을 하여 방색하였더니, 대관왜 등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말하기를, ‘비선이 나온 날 미처 판사(判事) 등에게 이야기하지 못한 일은 저희들이 어둡고 민첩하지 못한 소치라 매우 극히 부끄럽거니와, 대개 도주가 무역을 요구하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종전부터 무역을 요구하는 물건은 비록 간혹 중대하더라도 판사(判事) 등이 저희들이 말하는 바를 듣고 동래 영감 전에 고하면, 한 마디도 방색하지 않고 즉시 장계로 알려 무역을 허락하고 값을 받은 것이 규례(規例)인데, 이 번에는 판사 등이 중간에서 가로막는 것을 일삼으니 매우 부당하다’고 하면서, 또 말하기를 ‘각종의 무역 요구는 도주 자신이 쓸 물건이 아니라, 에도로 들어가면 집정(執政) 및 대군(大君) 있는 곳에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도주가 두 곳 사이에 처하여 부득이 하여 무역을 요구한다’ 하거늘, 소인 등이 답하기를 ‘공 등의 말이 이

72) 위라[月羅] : 위라말. 털빛이 얼룩덜룩한 말. 화마(花馬).

73) 정문수(鄭文秀, 1626-?) : 온양 정씨로 자는 자화(子和)이며 현종 임인(1662)에 역과에 합격하여 왜역에 종사하였다.

러하나, 영릉철안의 안갑(鞍甲) 및 대단(大段), 대금선(大錦線), 대선단(大線段) 등의 물건은 원래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니 결단코 무역을 허락하기 어렵다'고 심분 방색하였으며, '그 밖의 나머지 잡물도 비록 우리나라 물건이라도 그 수량이 너무 많아서 또한 수량대로 무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하였더니, 대관왜 등이 답하기를 '판사 등이 중간에서 방색하지 말고, 동래 영감 전에 잘 고하여 도주가 에도에 들어가기 전에 무역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하게 말하였으며, 또한 말하기를 '준마 2필도 저희들이 나올 때 위라[月羅] 색인 줄로만 알았는데, 비선에서는 가라(加羅)⁷⁴ 위라[月羅] 두 필의 무역을 청하는 뜻으로 써 왔다'고 하는 바로 수분한다" 하였음. 무릇 왜인이 구무하는 물건은 비록 공목(公木)으로 값을 매겨 계감(計減)하지만, 각종의 무역 요구가 한 두 번이 아니어서 그대로 그 청에 부응하기 어려운 형편이로되, 도주가 에도에 들어갔을 때 요구에 응할 물건이라 칭하는데, 에도에 들어갈 때 무역을 요구하는 일은 이미 전례가 있으니 이제 전연 방색하기는 불가하겠기로, 그 중에 영릉철안, 선단(線段) 안갑(鞍甲) 및 대단(大段), 대금선(大錦線), 대선단(大線段) 등의 물건은 재삼 타일러 간신히 방색하였으며, 이른바 가라말과 위라말 두 필은 곧 전일 장계로 알린 가운데의 위라말인데, 이제 가라말과 위라말로 고쳐 써서 내보냈으며, 동 각종의 무역 요구 물종의 왜서(倭書)를 베껴 해당 관청으로 올려 보내오니, 해당 관청에 명하여 품의하여 조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전에 동래부사의 장계로 말미암아 도주가 무역 요구한 마필(馬匹) 및 잣과 호도, 대구어, 백합 빈 껍질 등 물건의 무역을 허락하는 뜻으로 복계하여 알렸는데, 이번 장계를 보니 관수가 또 도주가 무역 요구한 것이라고 왜서(倭書)의 발기(件記)를 내어주었는데, 물건의 종류가 매우 많고, 그 중에 우리나라 소산이 아닌 물건은 타일러 방색하였다고 하였거니와, 우리나라에서 산출되는 물건은 값을 매겨 계감하여 무역을 허락하는 전례가 이미 있어서 이제 전연 방색하는 것은 불가하고, 구하기 어려운 물건은 재량하여 수량을 감하고, 구하기 쉬운 물건은 그들이 청하는 대로 허락하여 먼 곳 사람의 바람에 부응함이 마땅할 것인데, 영릉철안 및 안갑과 각색 대단, 대선단, 대금단 등의 물건은 장계 대로 끝까지 방색하며, 무역을 허가하는 물목 중 해당 관청에서 마련하는 것과 각 도에 분정할 수량을 마련하여 후록(後錄)하니, 후록대로 급속히 마련하라는 뜻으로 해당 관청 및 각 도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74) 가라(加羅) : 가라말. 털빛이 검은 말.

후 록

도주의 구무 물목 중 무역을 허락하는 물종. 가라말 위라말 준마 2필-본도, 새끼양 가죽 300령(令)- 해조. 털이 있는 곰가죽 5령, 산서(山鼠) 가죽 400령, 황광(黃獐) 가죽 200령, 극품 인삼 30근 중 15근, 극품 황모필(黃毛筆) 200자루 중 반은 용을 그린 자루, 반은 당죽(唐竹) 자루, 황모(黃毛) 큰 붓 5자루-용을 그린 자루, 저모(猪毛) 큰 붓 5자루-용을 그린 자루, 극품 한림풍월(翰林風月) 50홀(笏), 취운(翠雲) 50홀-금가루를 뿌린 것, 극품 백저포(白苧布) 50필- 이상은 해조. 호두골(虎頭骨) 3부, 오색 밀지(蜜紙) 200장, 호담(虎膽) 10부(部) 중 본도와 강원도에 각기 4부, 충청도에 2부 분정. 호설(虎舌) 10부 중 본도와 강원도에 각기 4부, 충청도 2부로 분정함, 호경골(虎脛骨) 10부 중 본도와 강원도 각기 4부, 충청도 2부 분정. 호족조(虎足爪) 12 본도. 호간(虎肝) 10부 중 본도와 강원도에 각기 4부, 충청도 2부 분정. 호안(虎眼) 10 중에 본도와 강원도에 각4, 충청도 2부 분정. 각색 종이 200장- 본도. 원선자(圓扇子)- 오색 종이에 기름을 먹인 미선(尾扇) 100자루- 전남도(全南道)에 명하여 무역을 허락할 것.

입계한 대로 윤택함.

계묘(1663) 정월 22일

경상감사 정만화(鄭萬和)가 정월 18일 성첩한 장계. 방금 도부(到付)한 예조의 계하(啓下) 관문 내용에 운운하면서 관문을 보냈는데, 무역 요구한 잡물은 즉시 각 관아에 분정하여 급급히 마련하였거니와, 그 중 황대구어(黃大口魚)는 본디 본도 소산이 아닌데, 근년의 『구무등록(求貿謄錄)』을 살펴보니 모두 황대구어라는 색목(色目)은 없어 혹 본도 소산의 품질 좋은 대구어로 들여주어야 하겠고, 준마는 본도에서 적합한 물품을 구하기 어렵기로 종전의 무역 허락 규정을 동래부에 물어보았더니, 본부의 첩정(牒呈) 내에 “대구어를 왜공(倭供)으로 거둔 것으로 무역을 허락할지 다시 탐문하라는 일로 훈도에게 전령(傳令)하였더니, 훈도 이상한의 수본에, ‘즉각 도부한 전령에 근거하여 왜공 대구어 중에 큰 것으로 무역을 허락하겠다는 뜻으로 말을 하여 대관왜에게 타일렀더니, 답하기를 도주의 무역 요구 물목 중에서 황대구어라고 분명히 써넣었으니 황대구

의 무역을 허락하는 일로 다시 명백히 고하여 달라' 한다 하였으며, 준마도 전의 문서를 상고하였더니, 기해년(1659)에 준마 두 필을 먼저 확정하고 두 필을 추가로 확정하였는데, 추가로 확정된 두 필은 본도에 명하여 무역을 허락하여, 그 때 본도 각관에 분정하였는데, 말이 모두 적합하지 않아서 선후로 분정한 말을 모두 서울에서 내려보냈고, 먼저 확정된 두 필 가운데 한 필과 그리고 추가로 확정된 두 필 가운데 한 필 등을 피집(被執)하여 무역을 허락하였다"고 첩보하였사온 바, 대구어는 저쪽에서는 꼭 황대구(黃大口)의 무역을 요구하여, 본도 소산의 대구어는 비록 십분 극도로 간택하더라도 필시 순순히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때맞춰 조처하지 않을 수 없으며, 준마의 색품(色品) 역시 용이하게 얻을 수 없고, 이미 서울에서 내려보낸 전례가 있사오니 아울러 해당 관청에 명하여 급속히 확정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도주의 무역 요구 중 가라말과 위라말 준마 2 필 및 황대구어 700마리를 본조(本曹)에서 복계(覆啓)할 때 본도에 명하여 때맞춰 무역해 주게 하라고 입계하여 행회(行會)하였는데, 이 장계를 보니 기해년(1659)간에 위라 준마를 구무한 일이 있었으나 본도에 합당한 말이 전혀 없어서 전후로 분정한 네 필을 모두 서울에서 내려보냈다고 하며, 황대구어도 본도에서 산출되는 물건이 아니므로 왜공(倭供) 중에서 큰 것으로 무역을 허락함이 마땅하다고 대관왜를 타일렀더니, 답하는 것이 이러하여 필시 순순히 받아들여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바, 도주가 출발하기 전에 본도에서 만약 무역하지 주지 못하면 필시 임시로 난처한 걱정이 있으니, 동 가라말 두 필은 전례대로 해사(該司)에 명하여 값을 주어 사들여서 별도로 양마(養馬)⁷⁵⁾와 이마(理馬)⁷⁶⁾를 정하여 급히 내려보내며, 황대구어는 비록 본도 소산이 아니지만 도내 각 읍에서 값을 주어 널리 찾게 하면 그래도 마련해낼 수 있을 것이고, 이제 비록 함경도로 옮겨 분정한다 하더라도 먼 길에 오가며 무역하여 보내는 즈음에 기일에 맞출 이치가 없으니, 본도에 명하여 각 읍에 알려 크고 적합한 것을 각별히 그 수량대로 사들이고, 또한 훈도 등으로 하여금 말을 만들어 타일러 기어코 폐단 없이 들여 주라는 뜻으로 함께 회이(回移)함이 어떠할지. 입계한 대로 윤허함.

75) 양마(養馬) : 말의 먹이를 먹여 사육하는 사람.

76) 이마(理馬) : 말을 조련하고 다듬는 사람.

계묘(1663) 정월 27일

동래부사가 정월 21일 성첩한 장계. 이 달 21일 왜의 작은 배 한 척이 노인(路引)을 가지고 나왔는데 두왜(頭倭) 1인, 격왜(格倭) 7명이거늘, 즉시 훈도 이상한에게 명하여 사정을 물어보게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에, “두왜의 말이 ‘저희는 사기(沙器)를 구워 만드는 일로 나왔거니와, 도주가 2월 초순 간에 정녕 에도로 가는데, 도해역관(渡海譯官)은 모름지기 이 달 그믐 사이나 다음 달 초승에 맞추어야 하겠으며, 전일에 누차 무역 요구한 잡물은 곧 에도에서 사용할 것인데 도주가 에도에 들어가기 전에 모름지기 일일이 무역을 허락해주되, 그 중 마필은 서울에서 내려오는 사이에 필시 맞추지 못할 폐단이 있으니 경상도 안의 각 지방에서 혹 재주 있는 가라말과 위라말 준마 두 필을 급급히 무역 허락하라는 뜻으로 장계로 알려 재촉해 달라’ 하거늘, 소인 등이 답하기를 ‘본도에는 원래 색(色)이 있는 준마가 없고, 여러 도에 널리 찾지 않으면 구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 하였더니, 두왜 및 대관왜 등이 소리를 같이하여 말하기를 ‘비록 본도 소산이 아니라도 각 관과 각 역 및 큰 가문과 호족 집안에서 찾으면 어찌 두 필의 준마가 없겠는가? 이 일에 급급한 까닭은 도주의 걸음에 맞추지 못하면 천리마라 하더라도 소용없는 것이므로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하였음. 역관은 필시 오래잖아 내려올 것이나, 무역을 요구한 잡물은 다급한 걱정이 있을 뿐 아니라, 가라말과 위라말 및 황대구도 본도 감사가 계품하여 확정할 것이라 하였는바, 해당 관청에 명하여 즉각 품의 조치하여 기일에 맞추어 사서 보내 줄 수 있도록 하라는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사기 번조(燔造)의 일로 두왜가 나왔는데 전일 도주가 구무한 잡물 및 도해역관을 재촉한다 하였는바, 그 중 가라말과 위라말 준마는 해사에 명하여 급급히 사서 내려보내라는 일로 이미 알렸으며, 다른 나머지 물종도 본도 및 전남 강원 충청 등의 도와 해당 관청에 즉시 알려 도주가 출발하기 전에 속히 동래부로 보내라는 뜻으로 성화같이 행이(行移)하며, 도해역관은 이미 내려보냈는데, 이제 또 이렇게 재촉하고 있으니 다시 이 뜻을 각 도와 해당 관청 및 해사(該司)에 신칙하여 맞추지 못하는 걱정이 없게 하도록 하는 일로 이문함이 어떠할지, 입제한 대로 윤허함.

계묘(1663) 정월 29일

예조에서 입계하기를, 대마도 도주가 무역 요구한 가라말과 워라말 두 필을 해사(該司)에 명하여 마련하게 하였는데, 두 필만 내려보내고 만약 혹 탈이 있으면 미리 차비한 말이 없어서는 안될 터이므로, 유월라마(驩月羅馬) 두 필도 구하여 본조에서 끌어와 간품(看品)하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이른바 유월라마의 색품(色品)이 가라말이나 워라말보다 나은 듯하여, 두 가지 색깔의 말 각기 두 필을 아울러 내려보내어 선택하도록 함이 편할 듯하니, 전례대로 해당 사복시(司僕寺)에 명하여, 별도로 양마(養馬)와 이마(理馬) 각기 한 사람을 정하여 말을 주어 끌고 가게 하는 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전교에 윤택한다 하였음.

계묘(1663) 2월 초6일

동래부사가 정월 29일에 성첩한 장계. 아침에 왜인의 분간되지 않는 배 한 척이 나왔기에 즉시 훈도에게 명하여 사정을 물어보게 하였는데 회언(回言)에, “경자조(庚子條) 겸대2특송(兼帶二特送) 2호선이 대관왜(代官倭)의 짐을 실어가려고 노인(路引)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거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특별히 다른 일은 없다고 하며, 대관(代官) 등이 말하기를 대마도에서 봉행(奉行) 등이 보낸 사서(私書) 내용에 도주가 2월 초순 사이에 정녕 에도로 돌아갈 터인데 도해역관 및 무릇 무역을 요구한 잡물이 에도로 들어가기 전에 진작 보내달라고 재촉하였고, 그 중에서도 준마 두 필은 더욱 재촉하고 오라 하였는데, 동래에 고하여 장계로 알려 재촉하며, 또 돈후지(敦厚紙) 200장을 청하였다”고 하는 바, 비록 미세한 물건이지만 계속 무역을 청하는 것은 지루한 일인지라, 역관 등에게 명하여 엄한 말로 방색하였으나 굳이 청하여 마지않으니 또한 굳게 거절하기는 어려운지라, 본도 감사에게 보고하여 편의대로 무역을 허락하도록 하며, 문위역관(問慰譯官) 및 구무 잡물의 준마를 이제 또 재촉하는데, 역관은 오늘 내일 사이에 내도한다 하였으나 준마도 과연 기일에 맞추어 찾을 수 있을지 때 늦을 걱정이 염려되고, 동 배의 노인 하나를 받아 해조로 올려 보내는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대관왜의 말이 도주가 2월 상

순 사이에 에도로 향하고 도해역관 및 무역을 요구한 잡물을 이제 또 재촉한다 하거니와, 역관은 내려간 지 이미 오래되어 기일에 맞춰 들어갈 수 있을 것이며, 준마도 내려보낸 지 육 칠 일이 지났으니 아마도 맞추지 못할 걱정은 없는 듯하며, 그 나머지 무역 요구한 잡물도 이미 모조리 마련하여 지금 바야흐로 간품하여 묶고 있으니 내일이면 내려보낼 것이지만, 밤낮 없이 급히 가라는 뜻으로 가져가는 역관에게 엄하게 신칙하며, 추가로 요구한 돈후유지 200장은 계속 무역을 청하는 것이 번거롭지만 미세한 물건을 방색할 필요가 없어서, 본도에서 편의대로 무역을 허락함이 무방할 듯하니, 이런 뜻으로 본도 감사에게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입계한 대로 윤택함.

계묘(1663) 2월 16일

경상감사 정만화(鄭萬和)가 2월 13일에 성첩한 장계 및 동래부사가 같은 달 11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에 이르기를, 이 달 11일에 왜인의 작은 배 한 척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기에 즉시 별차 정문수(鄭文秀)에게 명하여 사정을 물어보게 하였더니 회언에, “나온 연유를 탐문하니 두왜(頭倭)가 말하기를 ‘저는 구무한 마필의 품질을 보고 사육하고 다듬기 위해 나왔거니와, 도주가 이 달 초순 사이에 에도로 들어가기에 문위역관(問慰譯官)을 재촉한 지 한 두 번이 아님에도 아직까지 소식이 없기로, 부득이 또 날짜를 3월 초나흘이나 닷새로 고쳐 잡아 에도로 들어갈 계획이며, 문위역관이 들어갈 기일을 탐지하기 위하여 겹하여 나왔는데, 여기 와서 알아보니 문위역관이 이미 내도하였으나 마필 및 무역 요구한 잡물이 아직 내도하지 않은 것이 많아서 극히 민망하니, 동 무역 요구한 잡물을 급급히 무역 허락하여 도주의 출발에 맞출 수 있게 동래에 고하여 장계하여 재촉해 달라’고 누누이 말하였다”는 일로 수본하였음. 문위역관은 이 달 스무날 사이에 배를 탈 것인데 무역 요구한 잡물 중 본도에 분정하여 납입하지 아니한 각 지방관에게는 다시 본도 감사에게 첩보하여 기일에 맞춰 와서 납입하도록 하고, 해조(該曹)에서 내려보낸 준마 등의 물건과 전남 충청 강원 등의 도에 분정한 물건은 맞추지 못할 걱정이 있사오니 해조에 명하여 다시 엄하게 독려할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두왜가 또 나와서 하는 말이 도주가 에도로 가는 것이 문위역관이 도착하지 않은 연고로 인하여 3월 초 4·5일경으

로 미루었는데, 문위역관은 이미 내려갔으나, 무역을 요구하는 마필과 잡물을 급급히 들여보내라 하였다고 하는 바, 무역을 요구한 말과 서울에서 무역을 허락한 잡물은 내려보내어 열흘이 지났으니 필시 맞추지 못할 걱정이 없거니와, 본도 및 전남 충청 강원 등의 도에 분정한 잡물도 전에 이미 누차 신칙하였으나 각별히 급속히 운반하여 보내라는 뜻으로 다시 이문하여 엄하게 독려함이 어떠할지. 입계한 대로 윤택함.

계묘(1663) 2월 23일

동래부사가 2월 18일 성첩한 장계. 이 달 17일 왜선 4척이 노인(路引)을 가지고 나와서 즉시 훈도 이상한(李尙漢)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는데 돌아와 하는 말 내용에, “대관왜 등의 말이 ‘쇄금(洒金) 한림풍월(翰林風月) 30홀(笏)을 급급히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라고 봉행(奉行)의 사서(私書)가 또 내도하였으니 동래에 고하여 3월 초순에 도주가 에도로 들어가기 전에 들여보내도록 무역을 허락하라’ 운운하거늘, 소인 등이 답하기를 ‘전일에 구무(求貿)한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어서 결코 계속하여 장계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하였더니, 대관왜 등이 답하기를 ‘전일에 구무한 수량이 여러 곳의 용도에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또 구무한 것이나 계속하여 장계로 알리는 것이 과연 불가하겠거니와, 동래 부산 두 영감이 저축한 물건으로 무역을 허락할지라도, 두 영감은 필시 도주가 갈망하여 얻으려는 뜻에 부응할 것이다’라고 간절하게 말하였다”고 함. 도주의 무역 요구 가운데 해조에서 내려보낸 각색 피물(皮物)과 필묵 등 11종을 역관 황덕겸(黃德謙)이 가지고 내려왔거늘 어제 겨우 이미 들여주었는데, 이제 온 배에 봉행의 사서(私書)로 통기한 것이라고 하면서 쇄금한림풍월 30홀을 또 더 청하였는바, 미세한 물건이지만 계속하여 더 청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며, 여기서 찾아 주려고 하여도 이미 저축이 없어서 결코 그대로 부응하기는 어렵겠기로, 다시 역관에게 명하여 방색할 계획이라는 일임.

계묘(1663) 4월 12일

동래부사 장계 내용. 신임 관수(館守)가 나왔기에 즉시 훈도 이상한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물어보게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관수의 말이 ‘대마도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도주가 서찰을 보내어 노랑피꼬리[黃鶯] 4마리를 에도에서 사용하려고 무역을 요구하여, 조선에서 뒤따라 올 일행에게 급급히 무역을 허락하라 하였으며, 가져온 서계는 다례하는 날 전례대로 바치겠다’고 하였다” 함. 노랑피꼬리 4마리는 그 수가 많지 않고, 또한 제철에는 이전부터 무역을 허락하였기에 방색하기 어려우니, 해조에 명하여 품의하여 처리할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신임 관수 평성상(平成尙)이 서계를 가지고 나왔다 하였는바, 관수가 나오면 접대하는 규정이 있으니 본부에 명하여 전례에 비취 거행하게 하며, 도주가 무역을 요구하는 노랑피꼬리는 이미 따라 주기 어려운 청도 아니고 또한 무역을 허락하는 전례가 있으니, 수량대로 찾아 줌이 무방하니, 이런 뜻으로 본도 감사에게 아울러 이문(移文)함이 어떠할지? 입계한 대로 윤택함.

계묘(1663) 5월 21일

동래부사가 5월 11일 성첩한 장계. 이 달 초10일에 왜선 3척이 나왔기에 즉시 훈도 이상한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물어보게 하였는데 돌아와 하는 말이, “이는 규정 외의 배라고 노인(路引)을 받지 않았으며,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대관왜(代官倭) 등이 말하기를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봉행 등의 사서(私書) 내용에 도주가 에도에서 서찰을 보냈는데, 집정 등이 극품의 인삼 30근과 산서피(山鼠皮) 300영(令), 양피(羊皮) 200령, 황광피(黃獐皮) 200령, 황대구어(黃大口魚) 300마리, 범발톱[虎爪] 28개, 호경골(虎脛骨) 28개, 돌비늘[石鱗] 1근, 우황(牛黃) 5냥, 돌도롱뇽[石蜥] 1근, 원청(莞靑) 1근을 급급히 무역하여 보내라고 하였으니,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속히 무역을 허락하라’고 하거늘, 소인 등이 답하기를 ‘인삼과 산서피, 양피, 황광피, 황대구, 범발톱, 호경골은 이미 무역을 허락하였으며, 우황, 돌비늘, 돌도롱뇽, 원청 등의 물건은 무역 요구가 이렇게 빈번할 뿐 아니라, 이른바 돌도롱뇽, 원청 등의 물건은 그 이름을 금시초문이라 우리나라 소산인지의 여부를 상세히 모르겠으나, 이러한 무역 요구 물건은 결코 동래 영감 전에 고할 수가 없다’고 하였더니, 관수와 대관 등이 말하기를 ‘인삼 등 7종은 무역을 허락했더라도, 집정 등의 구청이 또 이렇게 나왔으니 무역해서 보내지 않을 수가

없으며, 돌도룽농과 원청 등의 물건은 판사 등이 모름지기 중간에서 막지 말고 즉시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위의 인삼 등의 물건 11종을 급속히 장계로 알려 무역을 허락하여 도주의 광채가 나도록 하여 달라'고 하였다"고 함. 허다한 각종의 물건을 이미 겨우 허락하여 무역해 들여보냈거늘, 이제 집정 등이 구청한다고 말을 하여 인삼 등의 물건 11종을 또 무역 요구하였는바, 비록 공목으로 절가 계감하더라도 일이 매우 번거로와 일일이 따라주기는 어려운 듯하여, 역관 등을 시켜 타일러 방색할 계획이로되, 도주가 에도에서 서찰을 보내었다고 청탁하며 끝내 듣지 아니하니, 서로 후하게 지내는 도리에 있어서 일체를 굳게 거절하는 것은 불가한 듯하니, 해조(該曹)에 명하여 참작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면 대마도 도주가 에도에서 관왜(館倭)에게 서찰을 보내어 집정 등의 구청하는 인삼 등 11종을 무역 요구하여 도주의 광채를 낸다고 운운하였는 바, 저 사람들이 무역을 요구하는 물건이 비록 공무목(公貿木)으로 계감(計減)하여 환무(換貿)하는 일이나, 금년 초봄에 양피와 산서피 등 20여종의 무역을 이미 겨우 허락하였거늘, 이제 또 이렇게 많이 무역을 요구하니 그 청대로 부응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로되, 그들이 도주가 에도에 들어가 요구에 부응할 물건이라 하기에, 서로 좋게 지내는 도리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산출되는 물건은 절가하여 무역을 허락하는 데는 이미 전례가 있기에 이제 전연 방색하지 않았고, 전례대로 구하기 어려운 물건은 재량하여 수량을 감하고, 구하기 쉬운 물건은 그대로 그 청을 허락하여 먼 곳 사람의 바람에 부응하되, 무역을 허락한 물건 중 해조에서 마련하거나 각 도에 분정하는 수량은 전례대로 마련하여 후록하니, 후록에 의거하여 급속히 갖추어 보내라는 뜻으로 해조 및 각 도에 분부하며, 기해조 평의진(平義眞) 송사(送使)의 규정 외의 선박도 매양 내보내는 것은 매우 근거 없는 일이니, 다시 더 엄한 말로 타일러 기어코 들여 보내라는 뜻으로 아울러 회이(回移)함이 어떠할지.

후 록

극품 인삼 30근 중 15근, 산서피 300령, 양피 200령, 황광피 200령 - 이상은 해조에서 무역을 허락함. 황대구어 300마리 중 평상시 사용하는 큰 것으로 200마리를 본도에서 편의대로 무역을 허락할 것. 범발톱[虎爪] 28개 중 15개의 무

역을 허락하되 8개는 본도에서 7개는 강원도에서 갖추어 보냄. 호경골 28개 중 15개의 무역을 허락하되 본도 및 강원도와 충청도에서 각기 5개씩 갖추어 보냄. 석린 1근- 황해도에서 찾아 보냄. 우황(牛黃) 5냥 중 2냥 - 해조에 명하여 의사(醫司)에 값을 주어 찾아 보냄. 돌도롱뇽 1근 중 8냥은 본도에서 편의대로 찾아 줌. 원청 1근 중 5냥- 해조에 명하여 의사에 값을 주어 찾아 보냄. 입계한 대로 윤택함.

계묘(1663) 6월 초7일

예조에서 입계하기를, 대마도 도주의 구무 잡물을 해조에 명하여 갖추어 보내는 일로 이미 계하(啓下)하였는데, 수량에 맞추어 준비한 뒤에 전례대로 해원(該院)에 명하여 별도로 역관을 정하여 말을 지급하여 가지고 급히 내려보내라는 뜻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전교(傳敎)에 윤택한다 하였음.

계묘(1663) 8월 20일

동래부사가 8월 13일 성첩한 장계. 천성(天城)⁷⁷의 마거리(磨巨里)에 표류하여 정박한 왜선 1척이 관소(館所)에 돌아와 정박하였거늘, 다시 훈도 이상한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탐문하게 하였더니, “대마도에는 특별히 다른 일은 없고, 도주의 무역 요구라고 하면서 한 장의 문서를 내어 보이는데, 『사서대전(四書大全)』 2질, 『오경대전(五經大全)』, 『성리대전(性理大全)』, 『사기평림(史記評林)』, 『주자어류(朱子語類)』 각 1질, 극품의 백저포(白苧布) 20필, 백양피(白羊皮) 300령, 좋은 품질의 초피(貂皮) 100령, 흰 말 꼬리로 만든 승편(繩鞭) 20개, 털이 있는 생옹피(生熊皮) 20령이거늘, 소인 등이 말하기를 ‘각종의 무역요구가 한 두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니 이 번에는 결코 동래 영감 전에 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혹 고하더라도 동래영감께서도 장계로 알리기가 어려울 것이니, 이런 뜻을 날날이 거론하여 대마도로 회보(回報)하

77) 천성(天城) : 지금의 가덕도에 있었던 천성진(天城鎭)을 말한다.

라'고 이치에 근거하여 방색하였더니, 관수 및 대관 등이 답하기를 '판사 등이 하는 말이 이러하지만, 도주의 사사로운 용도가 아니라, 예도의 집정 등이 구청하기로 감히 물리치지 못하여 이미 허락하고 사람을 대마도로 내보내었기로 봉행 등이 서찰을 보냈다'고 하면서, 또한 말하기를 '이전에 도주가 있을 적에는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라도 집정 등이 구청하면 번거로움을 마다 않고 조선에 무역을 요구하여 일일이 부응했던 것은 조금도 다른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도주가 양국 사이에 처하여서 이리저리 일을 잘 하려고 하는 것은 실로 사정과 형편이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인데, 판사 등도 이미 자세히 알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방색하느냐? 대개 이미 집정에게 허락한 뒤에 끝내 찾아 주지 않는다면 도주의 무료함이 어떠하겠는가? 고집하지 말고 이러한 곡절을 일일이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속히 무역을 허락하여 도주의 갈망에 부응하라'고 누누이 말하여 마지않으며 간절히 애걸하는 기색이었음. 그래서 하왜(下倭)에게 몰래 물었더니 '조총(鳥銃)과 환도(環刀)를 더 가지고 온 자를 검색한다고 도금도왜(都禁徒倭) 한 사람이 나왔다'고 한다'고 회언(回言)하였음. 동 노인(路引) 하나는 해조(該曹)로 올려보내거니와, 각종의 무역요구가 전후로 계속되니, 비록 백급(白給)은 아니지만 일이 매우 번거로워 다시 역관에게 명하여 말을 만들어 타일러 방색할 계획이로되, 이미 예도의 구청이라고 하고 도주의 갈망이라 청탁하니, 비록 굳게 거절하는 뜻을 보였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청컨대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품의 조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이제 이번에 나온 왜선이 내어 보여준 도주의 무역 요구 잡물 문서 한 장에는, 『사서대전』 2질, 『오경대전』, 『성리대전』, 『사기평립』, 『주자어류』 각 1질. 극품의 백저포 20필, 백양피 300령, 좋은 품질의 초피 100령, 흰말 꼬리로 만든 승편 20개, 털이 있는 생옹피(生熊皮) 20령이거늘, 훈도 등이 각종의 무역 요구가 끊임없이 계속되어 들어주기 어렵다는 뜻으로 이치에 근거하여 방색하니, 관수 및 대관왜 등이 답하기를 이는 도주의 사사로운 용도가 아니라 예도의 집정 등이 구청하는 물건이고 도주가 이미 허락한 것은 형편이 부득이한 데서 나왔다고 하니, 저쪽 사람들이 무역 요구하는 물건은 비록 공무목으로 값을 매겨 교환 무역을 하지만, 금년 초봄에 요구한 양피 등의 각종 물건을 전후로 무역 허락한 지 1년이 차지 않았는데 이제 또 이렇게 많은 수량의 무역을 요청하니 방색함이 마땅하지만, 도주가 이미 예도의 집정에게 허락하였는데 한 물건도 그 청에 부응하지 않으면 또한 필시

낙망하는 한탄이 있을 것이니, 서책 가운데 『사서대전』 2질, 『오경대전』 1질은 양남(兩南)의 감사에게 명하여 그 도내에 책판이 있는 곳에서 인출하고 장정을 하여 지급하고, 『성리대전』, 『사기평립』, 『주자어류』는 우리나라에 현재 간행하는 곳이 없다는 뜻으로 방색하며, 백저포 20필은 호조에 명하여 가려서 내려보내게 하고, 흰 말꼬리 승편 20개는 본도에 명하여 정밀하게 만들어 주게 하고, 양피 300령은 이는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어서 매양 부응할 수 없고, 초피는 비록 이전에 무역을 허락할 때가 있었지만 지금 또 길을 열어주면 후일의 요청을 감당할 수 없음이 있고, 털이 있는 생웅피(生熊皮)는 비록 우리나라 소산이나 본래 희귀하고 또한 그 때가 아니라서 모두 찾아주기 어려우니, 동래부사에게 명하여 말을 잘 하여 타일러 기어코 듣게 함이 마땅하니, 이런 뜻을 해조 및 양도 감사에게 아울러 행이함이 어떠할지. 입계한 대로 윤택함.

계묘(1663) 10월 19일

동래부사가 10월 12일 성첩한 장계 내용. 왜선 3척이 나와서 즉시 훈도 이상한 등에게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언(回言) 내용에, 제1척은 세견제11선(歲遣第十一船)이고 제2척은 제12선(第十二船)이고 제3척은 제13선(第十三船)이며, 추가로 또 나온 제15선(第十五船) 등이 공작미(公作米)를 실어가려고 노인(路引)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며, 전일 도주가 무역 요구한 잡물 가운데 『사서대전(四書大全)』 2질 등의 물건만 무역을 허락하고, 『성리대전(性理大全)』 등은 판본이 산실된 지 이미 오래이며, 양피(羊皮) 300령은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고, 초피(貂皮) 100령과 생웅피(生熊皮) 20령은 비록 우리나라 소산이나 근년에는 희귀하기로 무역을 허락할 수 없다는 뜻으로 말을 만들어 대관왜(代官倭)들에게 말하였는데, 대관 등의 말이 “오늘 나온 배의 봉행(奉行) 등의 사서(私書)에 ‘각종의 무역 요구 물건은 변쇄한 줄 모르지 않으나, 도주가 두 나라 사이에 처하여 잘 처리하여 미봉하는 즈음에 에도의 집정 등의 요구를 부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무역을 요구하는 것인데, 다수를 방색하여 허락하지 아니하니 도주의 무안함이 어떠하겠는가? 판본이 산실된 서책 이외에 피물(皮物)은 전량의 무역을 허락하라는 뜻으로 다시 먼저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속히 무역을 허락하여 들여보내라’고 하였는데, 두 나라가 성신(誠信)의 도리로 말하자면 비록 그냥 얻는 물건이라도 용도가

긴요하면 허락해주지 않을 수가 없거늘, 값을 주고 무역을 요구하는 물건을 희귀하다고 하여 무역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교린의 우호관계에 매우 흠이 되니, 판사 등은 중간에서 막지 말고 이 뜻을 다시 동래영감 전에 고하여 도주의 간절한 바람에 부응하되, 이제 이미 밤이 깊었으니 여러 가지 곡절을 모조리 진술할 수 없으니 다시 들어오라”고 운운하였다는 일로 회언(回言)하였음. 동 노인 등은 해조로 올려보내거니와, 전에 무역 요구한 잡물 가운데 구하기 어려운 물건은 해조에서 방색하였으니, 3종의 피물을 또 이렇게 굳이 청하면서 값을 주고 무역하도록 요구한다고 청탁하며 공갈을 하여 마지않으니 또한 한결같이 굳이 거절하기는 어려운지라, 참작하여 무역을 허락함으로써 먼 곳 사람의 바람에 부응함이 어떠할른지.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치할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저번에 동래부사의 장계로 인하여 도주가 구하는 서책 가운데 『사서대전』 2질, 『오경대전』 1질과 잡물 가운데 백저포 20필, 흰 말꼬리로 만든 승편 20개를 부응해 주기로 허락하고, 백양피 300령, 좋은 품질의 초피 100령, 털이 있는 생웅피 20령은 모두 찾아주기 어렵다는 일로 복계하여 행회하였는데, 이 장계를 보니 대관의 말이 ‘이제 봉행 등의 사서 내용을 보니 각종의 무역 요구한 물건은 번거로운 줄 모르지 않으나 도주가 두 나라 사이에 처하여 일을 잘 미봉하려는 즈음에 예도의 집정 등이 이렇게 구청하는데 허락하지 않으면 도주가 무안함이 어떠하겠는가. 3종의 피물은 값을 들이고 무역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공갈하여 마지않으니, 한결같이 굳게 거절하기 어렵다고 하는바, 도주가 무역 요구하는 각종의 물건을 전후로 무역 허락한 것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닌데 그래도 욕심을 채우지 못하여 이제 또 굳이 청하였고, 본부에서도 끝까지 말을 만들어 타이르지 못하였으니, 한결같이 굳게 거절하여 방색하기 어려운 형편인지라, 백양피 300령 중 200령, 초피 100령 중 50령, 털이 있는 생웅피 20령 중 10령을 해조로 갖추어 보내고 공목(公木)으로 절가(折價)하여 환급(換給)하되, 이 외는 결코 부응을 허락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동래부사에게 명하여 말을 만들어 언급함이 마땅하니 이렇게 분부함이 어떠할지. 입계한 대로 운허함.

계묘(1663) 11월 초3일

동래부사가 10월 26일 성첩한 장계 내용. 부특송사왜(副特送使倭)에게 다례(茶禮)

를 행하고 서계(書契)를 받아 올린 뒤, 정관(正官)이 역관을 통해 말을 전하기를, “전후의 무역 요구가 한 두 번이 아니어서 굳이 미안한 줄 알지만, 도주가 예도에 있으면서 여러 집정들의 요구에 응한 물건이라 부득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제 이 물종은 도주가 갈망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간청하여 마지 않으면서 받기〔件記〕에 기록한 것을 내어보냈는데, 납지(蠟紙) 30장, 호경골(虎脛骨) 28개, 호조(虎爪) 60개, 적견피(赤犬皮) 250령, 황대구(黃大口) 600개, 우황(牛黃) 5냥, 완청(莞靑) 10냥, 대추 4섬, 잣 4섬, 생대울(生大栗) 2섬이온 바, 비록 그냥 주는 물건이 아니나 무역을 요구하는 청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따라주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오로지 집정의 요구에서 나온 것이어서 도주 또한 감히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바, 이웃끼리 잘 지내는 도리에 있어서 일체를 굳이 거절하여 그 바람을 잃는 것은 부당할 듯함. 대구어는 전일에 무역 요구한 수량이 많지 않은 것은 아니나, 매양 본도에서 산출되는 보통 대구로 대신 지급하는데 반드시 황대구를 무역하겠다고 하니, 동 무역 요구 물종을 해조에 명하여 품의 처리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도주의 금년 무역 요구는 가장 빈번하여 매양 무역을 허락하기는 불가할 듯하되, 집정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간청하여 마지않으니, 또한 굳게 거절하여 그 바람을 잃는 것은 불가하겠기에, 무역 요구한 물종 가운데 대추나 밤 등 구하기 쉬운 물건은 수량대로 무역을 허가하며, 황대구어는 비록 우리나라 소산이나 서울의 시장에서도 많이 구하기는 어려워 일찌기 전에 무역요구가 있었을 때도 매양 본도 소산의 보통 대구어로 대신 지급하였으니, 이번에도 역시 전례대로 본도 소산 가운데 큰 것을 가려서 대신 지급하며, 우황, 완청, 호경골, 적견피도 요구하는 수량이 제법 많으니 짐짓 수량을 줄여서 무역을 허락함으로써 낙망하여 돌아가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함이 마땅할 듯하니, 전례대로 종부중(從不從)을 마련하여 계목 후록(後錄)으로 하였으니, 해사(該司) 및 각 도에 알림이 어떠할지.

후 록

납지(蠟紙) 30장, 대추〔大棗〕 4섬, 잣〔栝子〕 4섬, 큰밤〔大栗〕 2섬, 적견피(赤犬皮) 250령 중 100령을 감함. 이상은 본도에서 무역을 허락함. 호경골(虎脛骨) 28개 중 8개를 감하여 10개는 본도에서 5개는 충청도에서 5개는 강원도,

호조(虎爪) 60개 중 20개를 감하여 20개는 본도에서 20개는 충청도와 강원도에 각기 10개씩. 우황(牛黃) 5냥 중 3냥을 감하여 해조(該曹)에서 양 의사(醫司)에 값을 주어 사들여 보냄. 완청(莞靑) 10냥 중 7냥을 감하여 3냥을 해조에서 양 의사(醫司)에 값을 주어 사들여 보냄. 황대구어(黃大口魚) 600개 중 300개를 감하여 본도 소산의 보통 대구 중 큰 것으로 골라 무역을 허락함.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갑진(1664) 정월 초5일

동래부사 이성징(李星徵)⁷⁸이 지난 12월 27일 성첩한 장계. 방금 접한 역관 등의 수본(手本)에, “이 달 11일에 나온 왜선 3척의 사정을 물을 때 무역 요구의 잡물이 있다고 하면서 성간 기운이 풀리지 않아 동 발기(件記)를 내어 보이지 않다가, 어제에서야 비로소 발기를 내었는데, 『이퇴계집(李退溪集)』 1질, 영롱철안(玲瓏鐵鞍) 2부, 적금(赤金) 100냥이며, 21일에 나온 왜선에서 무역요구한 잡물은 『성리군서구해(性理群書句解)』, 『사서집석장도(四書輯釋章圖)』, 『사서대전(四書大全)』, 『오경대전(五經大全)』, 『성리대전(性理大全)』, 『사기평림(史記評林)』, 『주자어류(朱子語類)』, 『동국통감(東國通鑑)』,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오미자(五味子), 목방기(木防己), 산 담비(生貂) 1마리, 살아 있는 철쭉 각색으로 재배할 수 있게. 초피(貂皮) 100령, 산서피(山鼠皮), 황광피(黃獺皮), 양피(羊皮) 각 200령, 상품 마성(馬省) 100개라고 발기를 내어 보여주거늘, 소인 등이 타이르기를 ‘전후로 무역 요구한 물건이 한 두 번이 아니고, 서책 가운데 대여섯 건은 일찍이 들어보지도 못한 책이니 비록 그냥 주는 물건이 아니지만 어떻게 무역하겠는가? 종종 장계로 알리는 일이 매우 번거로우니 결코 동래에 알릴 수 없다’고 여러 가지로 타일렀더니, 여러 왜인 등이 말하기를 ‘이는 도주가 사사로이 쓸 물건이 아니라, 에도의 집정 등이 구하는 물건이므로 도주가 부득이 에도에서 두왜(頭倭)를 보냈는데, 어찌하여 이런 말을 꺼내는가? 실로 전례에 따라 무역을 요구하는 물건이 아니지만, 속히 고하여 진작 무역을 허락하여 도주가 에도에서 떠나기 전에 맞출 수 있도록 해 달라’ 하고 다그쳐 마지아니하는바, 죽기로 다투고 따져도

78) 이성징(李星徵) : 현종 임인(1662) 7월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갑진 윤6월에 병으로 교체된 사람이다.

전혀 들을 기색이 없으니, 다시 형편을 살펴보고 이치를 따져 동래부에 수본(手本)할 계획이며, 사정을 물었더니 ‘도주는 지난달에 이미 귀장(歸葬)하였다고 한다’는 일로 수본한다” 하였음. 당일 바친 가훈도(假訓導) 한시열(韓時說) 등의 수본(手本) 내용에, “이 달 11일 나온 배 및 이 번의 비선(飛船)에서는 무역 요구의 발기를 내어 보이지 않다가, 그저께 비로소 전후의 발기를 내어 말하기를, ‘무역을 요구하는 일은 원래 그냥 주는 물건이 아니거늘, 동래 및 판사 등이 예사로 방색을 능사로 하여 하나도 시원하게 허락하지 않으니 두 나라가 우호로 사귀는 도리가 전혀 아니다. 이번에 이 비선은 오로지 무역 요구를 위하여 에도에서 두왜를 보내온 것인데, 만약 특별히 무역을 허락하지 않으면 도주가 필시 낙망할 것이니, 판사 등이 이 뜻을 동래영감 전에 잘 고하여 한 가지도 빠트림이 없이 기어코 무역을 허락하되, 모름지기 도주가 에도에서 출발하기 전에 맞추어 달라’고 간절하게 이야기하거늘, 그 발기를 열어보니 『이퇴계집(李退溪集)』 등 21종이었습니다. 소인 등은 답하기를 ‘앞서 온 발기에서 요구한 물건은 모두 우리나라 소산이나, 비록 따라주려 하여도 형편이 어쩔 수 없으며, 추가로 온 발기에서 요구한 물건도 그 중에 『성리군서구해(性理群書句解)』나 『사서집석장도(四書輯釋章圖)』, 『성리대전(性理大全)』, 『사기평림(史記評林)』, 『주자어류(朱子語類)』, 『동국통감(東國通鑑)』,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등의 책 및 앞서 온 발기 가운데의 『퇴계집』은, 우리나라에서 일찍이 이런 책을 간행한 일이 없기로 저희들도 이 책의 이름을 듣지 못하였으며, 사서(四書) 오경(五經)은 전에 이미 무역을 허락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닌 즉, 종종의 무역 요구를 어찌 일일이 따라 줄 수 있겠는가? 전일의 무역 요구 중 미처 들여주지 못한 것을 만약 혹 재촉한다면 마땅히 들여주겠거니와, 그 밖의 물건은 결코 들어주기 어렵다’고 연일 왜관에 들어가서 만분 타일러 방색하였더니, 대관 등이 ‘판사 등이 이렇게 말하니, 먼저 온 발기에 부친 것은 상의를 짐짓 천천히 하더라도, 추가로 온 물건은 종류가 빠져서는 안되며, 사서(四書) 오경(五經)은 전일에 무역 요구한 외에 또 새로운 건이거늘, 판사 등이 이렇게 굳게 고집하여 한 물건도 무역을 허락할 뜻이 없는 것이 괴이하다’ 하면서 자못 노한 기색이 있거늘, 소인 등이 간신히 타일러 먼저 온 발기에 부친 『퇴계집』 등 3종과 추가로 온 발기 가운데 『성리군서구해(性理群書句解)』 등 8종의 물건은 우선 방색한 뒤, 물러나와 대관의 일을 보는 자와 조용히 이야기하기를 ‘동 무역요구 중 사서 오경은 무역을 허락하는 뜻으로 모쪼록 고할 계획이며, 4종의 피물(皮物)은 겨우 이미 무역을 허락하였는데 이제 또 계속하여 청

하는 것은 매우 불가하며, 생초(生貂)는 우리나라에 원래 산채로 잡는 곳이 없으며, 각색의 철쭉도 지금 철이 겨울이고 우리나라에는 본디 각색이 없다'고 이치에 근거하여 타일렀더니, 대관왜는 판사 등이 '이렇게 간절한데 그 중 초피 100령, 산서피 200령은 제가 힘써 정지하도록 하겠거니와, 양피, 황광피, 목방기, 상품의 마성(馬省) 등은 무역을 허락하지 않아서는 안되고, 생초도 과연 산채로 잡기 어렵다면 비록 간혹 소금을 넣어 와서 전체를 모두 보존하면 쓸 수가 있으며, 철쭉도 비록 그 각 색깔을 마련하기 어렵지만 몇 떨기라도 찾아 주는 데 무엇이 어려운가? 도주가 집정 등의 요청에 내몰려서 이렇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이제 만약 전량을 방색하여 허락하지 않는다면 형편이 매우 난처하고, 이 외에는 다시 주선할 길이 없다'고 끝내 듣지 아니하는 바, 소인 등이 가차훈도(假借訓導)와 새로 온 별차(別差)로서 힘을 다해 타이르고 죽도록 다투어 그 중 『사서대전』과 『오경대전』 각 1질과 목방기 10근, 생초 1마리, 철쭉 몇 그루, 황광피와 양피 각 200령, 상품의 마성 등의 물건은 끝까지 방색하지 못하였음. 이른바 마성은 각색 말갈기를 옷으로 입혀 보통 것보다 조금 크다고 한다"는 일로 수분하였음. 무역요구의 청이 전후로 계속되어 일이 매우 번거롭기로 역관에게 엄하게 신칙하여 타일러 방색하게 하였는데, 그들이 무역을 요구하는 것 가운데 『퇴계집』 이하 13종은 어렵게 방색하였는바, 에도에서의 요구에 응하는 물건이라 청탁하면서 두왜를 보내어 간청하고 심지어는 도주가 대마도로 돌아오기 전에 무역해 가야한다고 허락하지 않아서는 안된다는 뜻을 기어코 보이니, 그 정상이 참으로 통탄스러우나, 매양 매매한다고 말하는데 이제 만약 전연 방색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박절한 듯하고 그들로서도 필시 낙망할 터이니, 철쭉 몇 그루는 본부에서 편의대로 찾아 지급할 계획이나, 그 나머지 7종은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근래 대마도에서 무역을 요청하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니고 이번에 요구한 물건은 또 이렇게 수량이 많아서 참으로 통탄스럽거니와 역관 등이 이미 주선하여 그 태반을 감하였으니 모조리 방색하여 그들의 바람을 잃게 하는 것은 부당하니, 그 중 구하기 쉬운 것은 수량대로 무역을 허락하고, 피물(皮物)과 같이 갑자기 장만하기 어려운 것은 짐짓 수량을 감하며, 생초는 어느 곳에 쓸지 모르지만 죽은 것을 잡아 소금에 넣더라도 전체가 모두 보존되면 쓸 수 있다고 하는 바, 만약 북도(北道)의 산출되는 읍에 명하여 틀을 설치하여 잡으면 구하기 어렵지도 않을 듯하

나, 한 번 무역을 허락한 뒤로 매양 요청을 하면 후일의 폐단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생초 한 마리는 동래부에 명하여 다시 방색하게 하며, 무역을 허락한 잡물은 전례대로 마련하여 계목에 후록하였으니, 해사 및 본도에 알려져 속히 거행하게 함이 어떠할지.

후 록

『사서대전』, 『오경대전』 각 1질. 이상은 본도에서 인출하여 줌. 상품의 마성 100개 오색 말갈기로 옷을 한 것. 본도에 명하여 만들어 주게 함. 목방기 10근. 본도에 명하여 찾아주게 함. 황광피 200령 가운데 100령, 양피 200령 가운데 100령. 이상은 해조에 명하여 사들여서 내려보내게 함. 철쭉, 본부에서 찾아 줌.

입계한 대로 윤택함.

갑진(1664) 2월 초2일

동래부사 이성징(李星徵)이 정월 25일에 성첩한 장계. 본부의 장계로 인하여 도주의 무역 요구 잡물은 역관 등에게 엄하게 신칙하여 관왜에게 잘 타일러 기어코 반드시 듣게 하라는 뜻으로 분부하였는데, 방금 바친 가훈도(假訓導) 한시열(韓時說)⁷⁹⁾ 등의 수본(手本) 내에, “이번에 무역 요구한 잡물 중에 양피, 황광피 각 200령 중 100령 썩은 수량을 감하고, 산 담비(生貂)는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날마다 왜관에 가서 말을 만들어 타일러 이야기 하니, 여러 왜인들이 모두들 실색하고 노하여 말하기를 ‘이번에 무역 요구한 물건의 종류가 비록 많으나 영롱철안(玲瓏鐵鞍) 등의 물건 14종은 구하기 어렵다고 하기로 그 중 구하기 쉬운 것만 상의하여 무역 요구하여 즉시 이 뜻을 대마도로 통기하였는데, 이제 이렇게 피물(皮物)을 반감하여 무역을 허락하고, 산 담비는 원래 무역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는바, 이 일은 원래 그저 주는 물건이 아닌데도 이렇게 방색하여 허락하지 않으니, 두 나라가 서로 후하게 지내는 도리에 있어서 그 뜻이 어디

79) 한시열(韓時說.1634-?) : 청주한씨로 자는 자흥(子興)이며 효종 갑오(1654)의 역과에 합격하여 왜역에 종사하다가 통정대부의 품계까지 받았다.

있는가? 이 물건들은 만약 집정 등이 요구하지 않았다면, 도주가 새로 모친 상을 당한 중에 어떻게 두왜까지 보내어 이렇게 급급히 무역을 요구하겠으며, 저희들이 어찌 이렇게까지 구구하게 하겠는가? 이 뜻을 다시 대마도로 통기하면 도주가 낙망할 뿐만 아니라, 집정 등에게도 부응하기 어려워 장차 일이 생길 형편이다' 하고, 인하여 또 큰 소리로 말하기를 '무릇 무역을 요구한 물건을 한번도 시원하게 허락한 일이 없는 것은, 조선이 일본을 대접하는데 과연 너무 각박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다시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어제 차왜 굴성진(橘成陳)이 소인 등을 불러서 말하기를 '저는 두 나라의 일을 담당하는 책임으로 조선의 후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무릇 일을 처리함에 어찌 양쪽이 편할 도리를 생각하지 않겠는가? 공목(公木)을 복구하고 공작미(公作米)를 그대로 두는 일은, 두 가지 중 하나로 미리 정하여 후일 서로 다투게 되지 않도록 하자는 뜻으로 이미 다 진술하였는데 과연 믿어줄 지 모르겠고, 이제 이번에 무역을 요구한 물건은 본디 몹시 어려운 청이 아닌데 그 중 피물은 절반을 허락하지 않으며, 산 담비는 원래 무역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하는 바, 이는 실로 여러 집정 등이 요구하는 것으로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피차의 일로 말하더라도 기해년(1659)에 왜관과 대마도에 주홍(朱紅)이 전혀 없어졌을 때, 귀국에서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다고 하여 주홍 20근을 요구하거늘, 우리나라에서는 비선(飛船)을 보내어 남경(南京) 땅에서 구하여 그 청에 부응하였거늘, 조선에서는 자잘하고 구하기 쉬운 물건을 이렇게 방색하며 시원하게 허락할 생각이 없으니, 대관 등이 운운하는 것도 마땅하지 않느냐? 이제 이번 무역 요구는 부득이한 형편이라, 이 뜻을 동래 영감 전에 갖추어 진달하여 속히 장계로 알려져 작은 일로 소란이 되지 않도록 하라' 하거늘, 소인 등이 다시 그 체구가 온전한 담비와 피물(皮物)을 구하기 어려운 사유를 진술하려고 하였더니, 성진이 손을 저으며 말하기를 '제가 말한 바는 양쪽에 편하고자 함인데, 판사 등은 도리어 믿지 않느냐? 다시 말을 하지 말고 모름지기 즉시 고하여 달라'고 하기로 지극히 염려되어 이 일을 수본으로 한다" 하였음. 공목(公木)을 복구하는 일은 삼가 조정의 품의 조처를 기다리고 있거니와, 무역 요구한 잡물 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것 14종은 당초 이미 방색하였고, 양피와 황광피는 절반을 또 감하였으며, 몸이 온전한 담비[全體貂] 한 마리는 원래 무역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기해년(1659)에 주홍(朱紅)을 무역하여 보낸 이야기를 발설하며 떠들어 마지 아니하면서 끝내 들지 않는바, 두 종류의 피물은 그 수량이 많지 않으며, 담비 한 마리의 무역을 허락하는 데는 대단한 후일의 폐단은 없을 듯할 뿐 아니라, 도주가 바야

호로 예도에 있으면서 집정 등이 청하는 것이라고 청탁하며 두왜를 보내어 이렇게까지 간절히 구하니, 굳이 거절하기는 어려운 형편이기로 다시 번거롭게 품의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청컨대 해조(該曹)에 명하여 품의 조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제목. 도주가 무역을 요청한 여러 물건 중에서 피물은 근래 서울에서도 매우 희귀하기로 짐짓 반감하였고, 산 담비에 있어서는 만약 온몸을 그들이 청하는 바대로 소금을 쳐서 보낸다면 구하기 어려운 물건은 아닐 듯하나, 한번 길을 열어준 뒤로는 뒷날의 폐단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동래부로 하여금 말을 만들어 방색하라는 뜻으로 복계(覆啓)하여 행회(行會)하였는데, 이제 동래부사 이성징(李星徵)의 장계를 보면 관왜(館倭) 등이 양피와 황광피를 각기 반으로 수량을 감하고 산 담비를 방색하는 일로 실색하여 노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기해년(1659) 주홍을 보내준 일까지 거론하며 떠들어 마지않는다고 하는바, 그 전후의 문답을 살펴보고 또 장계 내의 사연을 보면, 동래부에서 이미 시종 굳게 거절하지 못하였으니, 양피와 황광피는 당초 요구한 수량대로 호조에 명하여 각기 100령을 급급히 더 사들여서 보내며, 산 담비는 결코 무역을 허락할 수 없고 북도(北道)의 아주 먼 곳에서 산출되기에 채구가 온전한 담비는 십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다시 엄하게 말을 하여 방색하라는 뜻으로 회이(回移)함이 어떠할지.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갑진(1664) 2월 초5일

동래부사 이성징(李星徵)이 정월 29일 성첩한 장계. 28일에 나온 왜선 3척 중 제1척(第一隻)과 제2척(第二隻)은 규정 외에 나왔기에 노인(路引)을 받지 아니했고, 제3척(第三隻)은 비선(飛船)에 두왜(頭倭) 한 사람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기에, 즉시 가훈도(假訓導) 한시열(韓時說)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물어보게 하였더니 회언(回言) 내용에, “두왜의 말이 ‘호피(虎皮) 60령, 가라⁸⁰⁾ 위라⁸¹⁾ 두색 중 두필의 무역을 요구하러 나왔거니와, 이는 집정(執政) 등이 전례에 따라 무역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곧 관백(關白)이 구하는 물건이니 값의 고하는 따지지 말고 좋은 품질의 호피와 준수한 말로

80) 가라 : 털빛이 검은 말이 가라말이다.

81) 위라 : 털빛이 얼룩덜룩한 말이 위라말이다.

급급히 무역을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히 이야기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지난번에 전후로 무역 요구한 물건을 속히 무역 허락하라는 뜻을 아울러 고하기 위해 오로지 이 일로 나왔다고 운운하였다'고 함. 규정 외의 배 두 척은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역관 등에게 엄하게 신칙하였으며, 무역 요구의 청이 전후로 계속되는데, 호피 60령과 준마 두 필을 관백이 구하는 것이라고 이제 또 무역을 요청하는데, 값의 고하는 따지지 않겠다고까지 말을 하니 일이 비록 지루하나 허락하지 않기는 어려운 듯하니 청컨대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을 이어서 계하함. 방금 동래부사 이성징의 장계를 접하니 제3척 비선은 호피 60령과 가라말 위라말 두 색깔 중 두 필의 무역을 요구하는 일로 나왔는데, 관백이 구하는 것이라고 칭하면서 값의 다소를 따지지 않는다고 하는바, 이는 필시 무역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인지라 방색하여 허락하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고, 호피는 비록 60령의 수량이지만 수량대로 무역을 허락할 필요는 없으니, 짐짓 절반으로 하여 30령의 무역을 허락하되, 일찍이 정유년(1657) 예도 섬에서 차사를 보내어 관백이 요구하는 호피 70령의 무역을 요청하거늘 짐짓 40령을 허락하여 해조에 명하여 약간을 내려보내게 하고, 또한 해조에 명하여 동래에 분부하여 장사꾼들이 가져가는 사장(私藏)의 호피를 내려가서 환무(換貿)하게 하라고 하였는데, 이제 또한 이 사례에 의거하여 호피 15령은 해조에 명하여 내려보내게 하며, 말도 두 가지 색깔 가운데 두 필을 또한 해시(該寺)에 명하여 지난 해의 예에 의거하여 먼저 값을 주어 사들여서 내려보냄이 어떠할지.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예조에서 입계하기를, “도주가 무역 요구한 양피와 황광피 각 100령은 호조에 명하여 더 사들여 내려보내는 일로 계하하였는데, 병조(兵曹)에 명하여 별도로 금군(禁軍)을 정하여 말을 주어 가지고 밤낮 없이 내려보내라는 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하였더니, 전교에 윤허한다 하였음.

갑진(1664) 2월 14일

예조에서 입계하기를, “대마도 도주가 요구한 가라위라 및 가라말을 해시(該寺)에 명

하여 여러 가지로 구하였으나, 근래 여염 사이에는 준마가 전혀 없고 가라 및 가라워라는 더욱 구하기 어려우며, 사복시(司僕寺)에 가라워라와 유월라(驪月羅) 두 필이 있어서 여염집에서 얻는 말보다 조금 나운데, 유월라는 털 색깔이 가라워라에 비하여 그다지 떨어지지 않으니 부득이 이 두 필을 내려보내되, 저쪽에서 혹 탈을 잡을 폐단이 있으면 미리 준비한 말이 없어서는 안될 것인지를, 오류월라(烏驪月羅) 한 필과 오류삼족백마(烏驪三足白馬) 한 필을 여염집에서 얻었는데 자못 살찌고 걸음을 잘 걸으니, 지난해의 예 대로 이 두 필 또한 내려보내어 선택하도록 하고, 전례에 의거하여 별도로 말을 사육하고 말을 다듬는 사람 각 한 사람을 정하여 말을 주어 데려 보내라는 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하였는데, 전교에 윤택한다 하였음.

예조에서 입계하기를, “대마도 도주가 무역을 요구한 호피는 해조에서 이제 방금 마련하여 별도로 금군을 정하여 전례대로 말을 주어 내려 보내라는 뜻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하였는데, 전교에 윤택한다 하였음.

갑진(1664) 3월 초5일

동래부사 이성징(李星徵)이 지난 3월에 성첩한 장계. 이달 27일 왜의 작은 배 한 척에 두왜(頭倭) 1인이 노인(路引)을 가지고 나왔기에 역관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물게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두왜의 말에 ‘도주가 금년 정월 22일에 아들을 낳아 무역을 요구한 호피(虎皮)를 재촉하는 일로 나왔는데, 이제 또 도주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말 안장 2부, 한결같이 조선의 체제대로 하되, 안갑(鞍甲) 전후의 가지(加枝)⁸²⁾는 백어피(白魚皮)로 싸고, 전후 가지 위에는 입사철(入絲鐵)로 호안(胡鞍)처럼 매고, 가지 위에는 쇠를 두들겨 만든 광주(鑛周)를 하고, 가죽 재갈(皮勒) 및 등자(鎧子) 또한 정밀하게 만들고, 다래[月乙乃]는 순색으로 한 것의 무역을 허락하여 들여보내며, 연례(年例) 응자(鷹子)를 재촉하여 들여보내라고 하였다’는 일이라”고 회언(回言)하였음. 전후로 무역 요구가 끊어지지 않는데 이제 또 두왜를 보내어 앞의 무역을 독촉하고

82) 가지(加枝) : 말 안장의 앞 뒤로 솟아오르게 만든 부분인 앞가리개[前輪]와 뒷가리개[後輪]를 가리킨 듯하다.

다시 말 안장 두 개를 청하는바, 이미 말 두 필을 요구하였으니 그대로 안장을 갖추려는 뜻으로 긴급하게 쓸 곳이 있다고 청탁하여 두왜를 보낸 일은 비록 지루하지만 굳이 거절하기는 어려운 형편이고, 또 마련하기 어려운 물건도 아니며 방색할 말도 없으니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공무목을 복구하여 쌀로 바꾸는 일의 편의 여부는 전에 동래부사의 장계로 말미암아 본도에 물어본 뒤에 품의하여 조치하는 일로 조정에서 복계하여 행회하였거니와, 근래에 연속하여 무역을 요구하던 끝에 또 말 안장을 청함은 일이 매우 지루하나 또한 심히 마련하기 어려운 물건은 아니어서 방색할 수 없으니, 말 안장 2부를 그들이 요구하는 체제대로 해조에 명하여 정밀하게 만들어 내려보내며, 연례로 지급하는 응련(鷹連)은 전례대로 본도 및 강원도에 재촉하여 들여보내되, 일찍이 경진년(1640)에 전 도주가 아들을 낳았을 때 축하하는 예물이 있었는데, 축하하는 한 가지 일은 도주가 섬으로 돌아온 뒤에 소식을 기다려 품의 조치함이 어떠할지. 입계한 대로 윤택함.

갑진(1664) 4월 16일

동래부사 이성징(李星徵)이 4월 초8일에 성첩한 장계. 이달 초7일 왜선 3척이 나왔기에 즉시 훈도 김시성(金時聖)⁸³⁾ 등에게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언 내용에, “제1척은 임인조(壬寅條) 세견제13선(歲遣第十三船), 제2척은 동년조 제14선, 제3척은 동년조 제15선으로 공작미(公作米)를 실어가려고 노인(路引)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데, 전일에 말한 바 공작미(公作米)는 그대로 두고 공목(公木)을 복구하는 일 이 두 가지 조목 가운데 하나로 확정하는 일과, 무역을 요구한 말 안장 등의 물건을 재촉하려고 두 왜 1명이 또한 함께 타고 나왔다고 하거니와, 백합피갑(白蛤皮匣) 3,500개, 황랍(黃蠟) 30근을 새로 무역 요구하였는데, 전후로 무역을 요구한 물건을 일시에 무역을 허락하여 들여보내 달라는 뜻을 동래 영감 전에 속히 고하여 시행하여 달라 하거늘, 소인 등이 답하기를 ‘백합피는 비록 우리나라 소산이나 크고 색깔이 같은 것 3,000여 갑을

83) 김시성(金時聖, 1616-?) : 안산김씨로 자는 비현(丕顯)이며 인조 임오(1642)의 역과에 합격하여 왜역에 종사하였다.

갑자기 얻을 수는 없다'고 이치에 근거하여 타일렀더니, 대관 및 두왜의 말이 '관사 등은 탈을 잡지 말고 속히 무역을 허락하라'고 누누이 이야기하였다"고 회언하였음. 상항의 배 세 척의 노인을 받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거니와, 공작미의 일은 조정에서 회답이 오기를 기다리며, 말 안장의 여러 기구들도 해조에서 만들어 보내기를 기다리고 있음. 이제 이번에 무역 요구한 백합피(白蛤皮)와 황랍(黃蠟) 등은 이미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 아니라면 비록 다시 더 타일러도 끝내 방색하기 어려울 것이니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대마도에서 요구하는 말 안장 여러 도구 2부는 저번에 내려보냈는데, 생각건대 아직 도달하지 못하여 이런 치계를 하였을 것이고, 동 무역을 요구한 백합과 황랍은 본도에 명하여 수량대로 찾아 주라는 뜻으로 회이함이 어찌할지. 입계한 대로 윤택함.

갑진(1664) 4월 18일

동래부사 이성징(李星徵)이 4월 초8일에 성첩한 장계. 방금 도부한 예조의 관문 내에 이르기를, 해조(該曹)에서 내려보낸 말 네 필 가운데 그들의 소청에 의거하여 두 필을 피집(被執)⁸⁴하라는 뜻으로 신척하였는데, 방금 바친 훈도 김시성(金時聖) 등의 수본(手本) 내에, "서울에서 내려온 말 네 필 중 두 필을 가려 들여주었더니, 대관왜(代官倭) 등이 동 말 네 필의 품질을 시험하고는 말하기를 '천리 밖에서 내려온 말을 이렇게 점퇴(點退)하여 피집(被執)하지 않는 것이 미안한 듯하나, 도주가 귀국의 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애도에 잘 보이기 위한 것인데, 그러므로 변쇄함을 피하지 아니하고 간청하였으나, 이제 온 말 네 필 가운데 오류마(烏驪馬) 및 가라위라[加羅月羅]는 나이가 많고 노둔하며, 오류위라말[烏驪月羅馬]은 나이가 많을 뿐 아니라 꼬리 위에 흉터가 있고, 유위라[驪月羅]는 비록 나이가 적으나 고리눈에 흰 코이기로, 한 필도 피집할 만한 게 없다'고 하면서 자못 노한 기색이 있거늘, 부득이 도로 동래부로 올리고 짐짓 대관(代官) 등이 하는 바를 보았는데, 방금 도부한 전령(傳令)의 말 뜻이 극히 엄준하기로

84) 피집(被執) : 대금을 먼저 주고 뒤에 물품의 수령을 약속하는 거래 방식.

상항의 말 네 필을 다시 왜관에 들여가서 말을 하여 대관 등을 타이르기를, ‘당초에 공 등의 말에 가라월라 한 필 및 가라말 한 필은 도주가 구하는 것인데 모름지기 두 세달 사이에 맞추어 달라고 간절히 이야기하기로, 이러한 곡절을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사유를 갖추어 장계로 알렸고, 예조에서는 두 필의 말이 도주가 무역을 요구하는 말에 합당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미리 말 두 필을 더 차출하여 보냈거늘, 공 등은 이렇게 곡절을 생각하지도 않고 모조리 점퇴하여 피집하지 않는 바, 일이 극히 부당하다’고 이치에 근거하여 타일렀더니, 대관왜 등이 말하기를 ‘판사 등의 말이 비록 이러하나, 무릇 모든 무역 요구는 원래 그냥 얻는 물건이 아니고,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골라 보내지 않으면 반드시 중한 추궁을 당하기에, 결코 피집하여 보내기가 어렵다’고 하거늘, 소인 등이 답하기를 ‘서울에서 내려온 말을 이렇게 점퇴하여 피집하지 아니하니, 이 후로는 결코 얻을 가망이 없다’고 하면서 십분 다투었더니, 대관왜 등이 머리를 맞대고 한참 상의하고는 말하기를 ‘유월라는 비록 흠이 있으나 재질과 품격이 조금 낫기로, 이 한 필만 짐짓 잡아두되, 이 말이 매우 수척하여 동래부에서 가까이 먹이다가 살이 찌고 윤택이 나기를 기다린 뒤에 도주에게로 들여보낼 계획이고, 가격 결정은 조용히 상의하여 알맞게 하겠다’고 하였으며, 1필을 개비(改備)⁸⁵⁾하는 일은 저들이 짐짓 발설하지 않기로, 소인 등도 형세를 보아 타일러 모조록 방색하려고 또한 제기하지 않았다는 일로 수분한다” 하였음. 동 말 네 필을 혹은 품격이 열등하다 하고 혹은 수척하다 하여 가려서 피집할 생각이 없기로, 본부에 머물러두고 달을 넘겨 특별히 먹여서 매양 역관 등에게 명하여 피집하도록 타이르다가 어제 들여보냈더니, 그 중 유월라 한 필만 가려 피집하였는데, 수척하다고 칭탁하면서 살찌서 윤택이 나기를 기다려 들여보내겠다고 다시 먹여줄 것을 청하기로, 짐짓 데려 와서 이마(理馬)가 간호하며 특별히 먹이고 있고, 그 나머지 세 필은 데려온 양마(養馬)로 하여금 도로 올려보냄. 당초 구한 바가 이미 두 필이니 앞으로 혹은 한 필을 개비하겠다는 청이 없지 않을 것이니 다시 타일러 기어코 방색할 계획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동래부사 이성징의 이 장계를 보니, 전일에 내려보낸 마필 가운데 사복시(司僕寺)의 유월라 한 필만 가려 피집하고, 그 나머지 세 필은 혹은 나이가 많고 노둔하다고 칭탁하고, 혹은 꼬리 위에 흉터가 있다고 칭탁하며 물리쳐서 피집하지 않는다고 하는바, 당초 내려보낼 때 평시서(平市署)로 하여금 여염 간에

85) 개비(改備) : 물건을 갈아 내고 다시 장만함.

있는 말을 여러 가지로 찾았는데, 비단 대마도에서 요구하는 색깔의 말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색깔 있는 말이 아니라도 또한 재질과 품격이 취할 만한 것도 없었으므로, 부득이 사복사에서 가라워라와 유월라 두 필을 숫자 외로 더 보내어 저 사람들이 가려 피 집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한 필만 머물러 두면서 또한 그 뜻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일컬으니, 앞으로 또 한 필을 개비하겠다는 청이 없지 않을 것인데, 동래부사 이성징이 만약 끝까지 방색하지 못하면, 한 필의 말로써 먼 곳 사람의 바람을 저버려서는 안되겠기에 짐짓 평시서에서 가라워라와 유월라 두 색깔 중에 좋은 품격의 말 한 필을 미리 있는 곳을 알아두고 대기하라는 뜻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입계한 대로 윤택함.

갑진(1664) 윤 6월 초3일

경상좌수사 및 동래부사 이성징(李星徵)이 6월 24일에 성첩한 장계. 이달 23일에 왜선 4척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기에, 즉시 가훈도 이상한(李尙漢)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는데 돌아와 하는 말이, “제1척(第一隻)은 계묘조(癸卯條) 부특송1호선(副特送一號船)이고 제2척은 동 특송제2호선이며, 제3척은 동년조 만쇼오잉[萬松院] 송사선(送使船)이고, 제4척은 동년조 평의진송사선(平義眞送使船) 등인데, 공작미(公作米)를 실어가려고 나왔다고 하나, 모두 규정 외로 나왔거늘 속히 되돌려 보내라는 뜻으로 관수(館守)에게 타이르고 노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거니와, 전일에 확정된 일로 들어가 있었던 유관(留館) 대관왜(代官倭) 한 사람이 함께 타고 나왔는데, 관수의 말이 ‘도주가 에도에서 돌아올 때 관백(關白) 및 여러 집정(執政), 봉행(奉行) 등에게 하직하였더니, 관백 이하의 말이 무역을 요구하는 한 가지 일은 조상으로부터 흘러온 규정이니, 빈번하다고 흠을 잡지말고 조선국에다 발기(件記)에 의거하여 일일이 무역을 요구하여 들여 보내라고 하기로, 도주가 부득이 이렇게 무역을 요구하는 것이라’ 하면서 발기를 내어 보이거늘, 열어보니 『이퇴계집(李退溪集)』 2건, 『고사촬요(攷事撮要)』 3건, 비둘기 알 만한 산호(珊瑚) 10매, 영롱철안(玲瓏鐵鞍) 2좌(座), 호박주(琥珀珠) 대소 10매, 사향(麝香) 3부, 백사로(白紗路) 5필, 적죽(笛竹) 10개, 호설(虎舌) 3부, 호담(虎膽) 3부, 무문자색입염사(無紋紫色入染紗) 3필, 극품의 백저포(白苧布) 30필, 부용향(芙蓉香) 300개, 월린향(越隣香) 500개, 초피(貂皮) 50령 중 꼬리 있는 것 30령, 극품의 황모(黃毛) 10주(株), 극품의 청서모(靑鼠毛) 10주, 호도 10섬, 잣 10섬, 건황대구어

(乾黃大口魚) 700마리, 극품의 쇠금(洒金) 취운묵(翠雲墨) 50홀, 극품의 쇠금 한림풍월(翰林風月) 50홀, 마성(馬省)- 검은 말 꼬리로 옷을 입히고 색깔 있는 말꼬리로 망을 엮은 것 100개 등의 물건이었습니다. 관수의 말이 ‘이는 도주가 친히 관백의 말을 듣고서 이렇게 무역을 요구하니, 급속히 무역을 허락하라는 뜻을 동래영감 전에 고하여 달라’고 하거늘, 소인 등이 답하기를 ‘무역을 요구하는 물건이 한 두 번이 아니고, 물종의 많기가 예전보다 배가 될 뿐만이 아니며, 『이퇴계집』 및 『고사촬요』 등의 책은 전에도 무역을 요구하였으나, 판본이 산실된지 이미 오래이기에 무역을 허락할 수 없으며, 비둘기 알만한 산호와 영롱철안, 호박주는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어서 결코 무역을 허락하기 어렵다’는 뜻을 십분 타일러 간신히 방색하였거니와, 그밖의 잡물은 온갖 방법으로 다투었으나 끝내 듣지 아니하여 극히 민망하다’는 일로 회언하였음. 이제 이번에도 배가 비록 공작미를 실어 가려고 나왔으나, 이는 규정 외이기로 즉시 역관 등에게 명하여 엄하게 신칙하였으며, 전후로 무역 요구가 한두 번이 아닌데 이제 또 무역을 요구한 물건의 종류가 매우 많고, 그 중에서 이퇴계집 등 5종은 역관 등이 이미 스스로 방색하였으되, 사향(麝香) 등 18종은 방색하지 못하였는바, 이미 관백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니 일체 굳게 거절하여 그 바람을 잃어서는 부당할 듯하니, 동 무역요구 물종을 해조(該曹)에 명하여 참작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도주의 무역요구가 근래에 가장 빈번하여 매양 따라주는 것은 부당한데, 이 번에는 도주가 나올 때 관백의 말을 직접 들었다고 하는 바, 이제 만약 전연 방색한다면 필시 낙망하여 노할 우려가 있으니 물종 가운데 『퇴계집』, 『고사촬요』, 산호, 영롱철안, 호박주 등의 물건은 역관 등이 이미 방색하였고, 기타 18종은 모두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 아니니 짐짓 무역을 허락하되 황대구어는 서울 시장에서도 매우 희귀하니 본도에 명하여 그 중 조금 큰 것을 절반으로 찾아 주며, 부용향 300개는 과다하지 않으나 다만 외의사(外醫司)에서도 평소 향의 재료를 비축해 두는 일이 없으니 역시 절반으로 마련해 주며, 호도와 잣은 비록 영남 소산이나 10섬은 너무 많으니 각기 5섬씩 무역을 허락하고, 전례대로 해조 및 본도에서 마련할 물건을 계목 후록으로 마련하니 속히 거행하라는 뜻으로 알림이 어떠할지.

후 록

『이퇴계집』, 『고사촬요』, 산호, 영롱철안, 호박. 이상은 이미 방색함. 사향

3부, 적죽 10개, 호설 3부, 호담 3부, 호도 10섬 중 5섬, 잣 10섬 중 5섬, 건 황대구어 700마리 중 350마리. 마성- 검은 말 꼬리로 옷을 하고 색 있는 말꼬리로 그물을 엮은 것 100개. 이상은 본도에서 무역을 허락함. 백사로 5필, 무문자색입염사 3필, 극품 백저포 30필, 월린향 500개, 초피 50령 중 꼬리 있는 것 30령과 꼬리 없는 것 20령, 극품의 황모 10가닥, 극품의 청서모 10가닥, 쇠금 취운묵 50홀, 쇠금 한림풍월 50홀. 이상은 해조에서 무역을 허락함. 부용향 300자루 중 150자루. 해조에 명하여 값을 의사에 주어 조제하여 보냄. 입계한 대로 윤택함.

갑진(1664) 윤 6월 14일

동래부사 이성징이 윤 6월 초8일에 성첩한 장계. 초7일 왜선 1척이 나왔기에 즉시 훈도 김시성(金時聖) 등에게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언(回言) 내용에, “계묘조 세건제 5선(歲遣第五船)이 공작미(公作米)를 실어가려고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저쪽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별로 다른 일은 없다고 하며, 관수의 말이 ‘도주가 간절하게 쓸 일이 있어서 함을 만들어 내어보냈는데 숨씨 좋은 장인을 시켜 나전(螺鈿)을 정밀하게 만들어 속히 들여보내라고 하니, 통영(統營)의 장인 3명을 수삼일 내로 불러와 달라고 간절히 애걸하여 마지않는다’고 한다” 하였음. 나전장(螺鈿匠)을 불러 주는 것은 이미 전례가 있어서 이제 방색할 수 없기에 감사(監司)에게 보고하려 하며, 동 노인 하나는 받아서 올려 보내는 일임.

갑진(1664) 윤6월 16일

동래부사의 장계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방금 동래부사 이성징(李星徵)의 치계(馳啓)를 접하니, 도주의 별차(別差) 정관(正官) 원성륜(源成倫)이 도주가 대마도로 돌아온다는 기별을 알리려고 나왔는데, 살아있는 두루미(野鶴) 10마리, 옥대구(玉帶鉤) 300개의 무역을 요청하였는데, 옥대구는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라 본부에서도 구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바야흐로 방색하였거니와, 두루미는 이전부터 들여보내는 물건이

라 이제 와서 허락하지 않을 수 없으니, 전례대로 각기 3마리씩 하삼도(下三道)에 분정하여 얻는 수량대로 무역을 허락하며, 도주가 나왔다는 보고를 서계(書契) 중에 표시하였으면, 문위역관(問慰譯官)을 전례대로 들여보내어야 마땅할 듯한데, 정월에 아들을 낳았다는 말을 누차 발설하니 또한 축하하는 일도 있어야 하니 묘당(廟堂)⁸⁶⁾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함이 어떠할지. 입계한대로 윤허함.

갑진(1664) 윤 6월 25일

동래부사 이성징(李星徵)이 윤6월 19일에 성첩한 장계. 방금 바친 훈도 김시성(金時聖) 등의 수본(手本) 내용에, “소인 등인 날마다 왜관에 가서 대관왜에게 무역 요구한 물건을 구하기 어려운 이유를 온갖 방법으로 타일렀더니, 동 왜인 등이 답하기를, ‘살아 있는 두루미(野鶴) 10마리는 실로 구하기 쉬운 물건이거늘, 단지 거절하기로 일삼으며 매양 구하기 어려운 것이라 일컫는 것은 전혀 서로 의지하는 본 뜻이 아니며, 전자에 두루미의 무역을 허락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심지어는 20여 마리의 무역을 허락한 적도 있었는데, 일찍이 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는 없었으며, 옥대구는 비록 귀국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아니지만, 귀국 사람들이 많이 차고 있는 것이므로 저희들이 익숙히 본 것이라, 300개를 무역하는 것이 혹 쉽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대로 무역을 허락하되, 쓸 곳은 또한 70, 80개 아래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거늘, 소인 등이 또 말하기를 ‘두루미 10마리를 산 채로 잡기는 또한 매우 쉽지 않고, 수시로 잡으면 혹 한 두 마리 라면 산 채로 잡을 수가 있을 것이며, 70개의 대구는 결코 찾아내기 어렵다’고 만분 다 투었더니, 동 왜인 등이 또 말하기를 ‘옥대구는 실로 귀국의 소산이 아니라서 많이 구할 수가 없는 형편이니, 만약 수십 개의 무역을 허락할 수 있으면 이런 뜻을 대마도에 통보해도 근거 있는 말이 될 듯하지만, 10마리의 두루미를 산 채로 잡는 일의 어렵고 쉬운 문제는 대마도에 통보해도 변명할 할 말이 없다’고 하기에, 십분 타일렀으나 끝내 듣지 아니하였다는 일로 수본한다” 하였음. 살아 있는 두루미와 옥대구는 여러 날 다투어도 방색하지 못하였는바, 옥대구는 이미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고 또한 후일의 폐단이 있으니,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

86) 묘당(廟堂) : 의정부(議政府)의 별칭.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운운한 옥대구는 전일에 말하지 않은 물건인데 이제 처음으로 무역을 요청하여 비록 조정에서 무역을 허락하여 후일의 폐단을 열어주는 것은 불가하나, 동래 장사꾼들이 일찍이 사사로이 왜관에서 매매하고 저쪽에서 사용하는 것도 그릇을 장식하여 감상하는 도구로 삼는 데 불과하다고 하니, 본부의 장사꾼들이 가지고 있는 대로 사사로이 매매하는 것을 허락하게 하며, 두루미는 반드시 방색할 물건은 아니므로 하삼도에 분정하라는 뜻으로 이미 복계하여 행회하였는데, 이제 들으니 경상도는 산출되는 곳이 아니어서 이전부터 구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니, 충청 전라 등의 도에서 앞서 정한 3마리 외에 각기 2마리를 더 분정하여 곧바로 동래부로 보내라는 뜻으로 다시 분부함이 어떠할지. 입계한 대로 윤택함.

갑진(1664) 7월 초5일

一. **경상감사의 장계에** 운운하기를, “이른바 두루미[野鶴]는 본도에서 산출되는 물건이 아니기에 동 두루미 3마리를 전례대로 호남(湖南)과 호서(湖西)로 옮겨 분정(分定)하는 일을 해조(該曹)에 명하여 급속히 품의 시행하라는 일”이라는 데 대하여,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하기를, “대마도에서 무역 요구한 물종 중 살아 있는 두루미는 본도 소산이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저번에 호남·호서로 옮겨 분정한다는 뜻으로 계하하여 분부하였는데, 경상감사 이상진이 미처 알지 못하고 이런 치계를 하였으니, 호남·호서로 옮겨 분정한다는 뜻으로 다시 회이함이 어떠할지.” 하였음. 입계한 대로 윤택함.

一. **동래부사 안진(安縝)⁸⁷⁾이 윤 6월 27일에 성첩한 장계**. 이달 26일에 왜선 2척이 나온 일로 즉시 훈도 김시성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물어보게 하였는데 회언(回言) 내용에, “제1척 계묘조 세견 제6선(歲遣第六船)과, 제2척 제7선 등이 공작미를 실어가려고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저쪽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관수(館守) 및 대관왜(代官倭) 등의 말에, ‘대마도의 봉행(奉行) 등의 사서(私書) 내용에 도주가 에도에서 긴요하게 쓸 일로 생조포(生照布)⁸⁸⁾ 2필, 백조포(白照布)⁸⁹⁾ 4필 중

87) 안진(安縝) : 현종 갑진(1664) 윤6월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병오(1666) 9월에 병으로 교체되었다.

88) 생조포(生照布) : 생저포(生苧布). 누이지 않은 모시. 생모시.

89) 백조포(白照布) : 백저포(白苧布). 흰 모시베.

속칭 대모(玳瑁)⁹⁰⁾라는 것 2필 및 호을골(虎乙骨) 10개, 자안패(子安貝)⁹¹⁾ 10개, 부후석(浮厚石) 1근 등의 물건을 속히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라고 하였기에, 이 사유를 동래영감 전에 고하여 급급히 무역을 허락하라'고 누누이 이야기하거늘, 소인 등이 답하기를 '무릇 무역 요구가 한두 번일 뿐만이 아니고, 이른바 자안패와 부후석과 호을석은 원래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고 일찌기 보지도 못한 물건이니 결코 무역을 허락하기 어렵다'고 백반으로 따졌는데, 관수가 말하기를 '자안패는 대마도에서 그 견본을 내어보냈으니, 그 모양을 보고 어부 등에게 찾아서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끝내 듣지 않거니와, 자안패와 호을골을 다시 타일러 방색할 계획이며, 부후석은 간신이 방색하였다"고 운운함. 이제 이번 무역 요구한 생조포와 백조포와 호을골, 자안패, 부후석 가운데 이른바 부후석은 역관 등이 이미 방색하였다 하거니와, 자안패는 일찍이 무역을 요구한 때가 없었는데 이제 비로소 처음 들을 뿐 아니라 실로 우리나라 소산이 아닌즉, 비록 대마도에서 내어보낸 겨냥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무역을 허락하기는 어렵겠기로, 다시 역관 등에게 명하여 타일러 방색하겠으며, 호을골은 역관이 또한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라는 뜻으로 여러 가지로 따져서 방색할 계획이라 하였거니와, 임진(1652)·계사(1653) 양년의 『왜인구청등록(倭人求請謄錄)』을 가져다 살펴보니, 과연 호위골(虎威骨)의 가격을 정한 발기(件記)와 호을골(虎乙骨)을 거둔 문서가 있는데, 위골(威骨)과 을골(乙骨)이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거니와 이미 무역 요구한 전례가 있다면 한결같이 방색하기는 어려운 듯하되, 그 때 입급(入給)한 뒤 훈도 별차 등의 수본은 허다한 문서 중에 찾아낼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여야 할지, 청컨대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대마도에서 무역을 요청하는 것이 이렇게 빈번하니 또한 매우 지루하지마는, 생조포 2필, 백조포 4필 중 대모가 있는 것 2필은 그 수가 많지 않고 또한 마련하기 어려운 물건도 아니나, 이른바 대모(玳瑁)가 있다고 한 것은 백포(白布) 중간에 검은 개 흔적이 있는 것이니, 수량 대로 무역을 허락하며, 부후석은 이미 방색하였다 하거니와 호을골과 자안패 두 종류 역시 역관이 바야흐로 방색하고 있다 하는 바, 그들이 듣는가 여부를 기다렸다가 다시 장계로 알리라는 뜻으로 회이함이 어떠할지. 입계한 대로 윤허하였음.

90) 대모(玳瑁) : 모시를 바랄 때 간간이 생기는 검은 점.

91) 자안패(子安貝) : 아름다운 반점 무늬가 있는 조개로, 일본 풍습에 산부(産婦)가 가지고 있으면 안산(安産)의 효험이 있다고 믿었다고 한다.

갑진(1664) 7월 초9일

一. 동래부사 안진(安縝)이 7월 초1일에 성첩한 장계. 계묘조 세견선(歲遣船) 등이 나올 때 무역 요구한 각종 중에서 호을골(虎乙骨)의 무역을 허락한 일은 이미 전례가 있어서 해조(該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할 일로 한편으로 치계하였으며, 자안패(子安貝)는 다시 방색한다는 뜻으로 한편 역관 등에게 신칙하였는데, 훈도 김시성(金時聖) 등의 수본 내용에, “지난 달 26일에 나온 배에 사정을 물을 때 도주가 무역 요구한 잡물 가운데 부후석(浮厚石)은 그 때 타일러 방색하였으며, 자안패(子安貝)와 호을골(虎乙骨) 등의 물건은 무역을 허락할 수 없다는 뜻으로 여러가지로 타일렀으나 끝내 듣지 아니하였는데, 어제 또 왜관에 가서 대관왜 및 관수왜 등과 모여 말하기를, ‘무릇 무역 요구와 관계된 물건은 있으면 허락하고 없으면 무역을 허락하지 못하는 것은 이치나 형편으로나 본디 그렇지만 또한 전례가 있거늘, 이제 이 자안패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이고 귀국에서 산출되는 것인데, 어찌 반드시 없는 우리나라에 건너와 요구해야 하는가? 또한 우리나라에서 쓰는 것은 단지 호두(虎頭), 호경골(虎脛骨), 호안(虎眼), 호설(虎舌), 호담(虎膽), 호육(虎肉)일 뿐, 이른바 을골(乙骨)이란 범의 어느 부위에 있으며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있는 곳이 없고, 평소에 없고, 또한 알지도 못하는 물건을 이렇게 강박함은 양국이 서로 잘 지내자는 도리에 손상이 있지 아니하냐?’ 하고 이치에 근거하여 말하였더니, 관왜(館倭) 등이 답하기를 ‘판사 등이 하는 말이 또한 이치가 있는 듯하나, 자안패는 실로 귀국 소산이 아니면 구할 길이 없으니 역지로 구할 필요는 없고, 호을골(虎乙骨)은 전에도 무역을 허락한 때가 있었으며 또한 얻기 어려운 물건도 아니라, 범의 옆구리 사이의 꼬리 끝이 닿은 부분에 있는 을(乙)자 모양으로 길이 한 두 치 되는 것이 이른바 을골(乙骨)인데, 또한 위골(威骨)이라고 통칭하니, 방색하지 말고 일을 좋게 하여 동래부에 잘 고하여 모름지기 속히 무역을 허락하라’고 운운하거늘, 소인 등이 또 말하기를 ‘을골이 비록 얻기 쉽다고는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별도로 사용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일찍이 보관해둔 것이 없는데, 10개나 찾아내려면 10마리의 범을 잡아야만 10개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을골이 있는 것이 열에 한 둘이라고 하니, 그러므로 찾아낼 길이 없어 결코 부응하기 어렵다’고 만분 다투었더니, 동 왜인 등이 또 말하기를 ‘이렇게 어려우면 두 세 개라도 편리한 대로 무역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하게 이야기하였다는 일로 수본(手本)한다” 하였음. 부후석(浮厚石)은 당초 이미 방색한 뒤에 자안패 또한 이렇게 방색하였는바 참으로 다행이거니와, 호을골은 저 사람들

이 전에 일찍이 무역을 허락한 일을 사례로 인용하여 간청하기로 역관 등이 끝까지 굳게 방색하지 못하였는데, 당초 10개의 무역을 청한다고 발설하였다가 드잡이 한 뒤에 두 세 개를 편의대로 무역을 허락해 달라는 뜻을 누누이 간청하여 말하였다고 하기로, 다시 더 치계하는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대마도에서 무역 요구한 물종 중에서 자안패와 호을골 두 종류는 다시 방색하여 저들이 들어줄 지 여부를 기다렸다가 장계로 알리라는 뜻으로 복계하여 행회하였는데, 방금 동래부사 안진의 장계를 보니, 자안패는 과연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라고 즉시 따라 들었지마는, 호을골은 전에 없던 물건이나 범의 옆구리 사이에 꼬리 끝이 닿는 곳에 있는 을자 모양의 뼈라고 하고, 비록 10개나 많이 얻지는 못하더라도 짐짓 두 세 개라도 무역을 허락하라고 누누이 말로 이야기하는바, 호을골이 과연 꼬리와 옆구리 사이에 있는 뼈라도, 근래 대마도에서의 무역 요구 중에는 단지 경골(脛骨)과 호담(虎膽), 호육(虎肉)만 사용하고 을골(乙骨)은 사용하지 않아서 사냥꾼 등이 평상시 저축하여 놓은 곳이 없으니 참으로 갑자기 구하기가 어렵거니와, 본도에서 동래에 사용하기 위하여 호골(虎骨)과 호육(虎肉) 등의 물건을 저축하여 불시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 많이 있을 터이니, 본도에 명하여 도내의 각 읍에서 여러 가지로 찾아 구하는 대로 무역을 허락하라는 뜻으로 경상감사에게 아울러 알림이 어떠할지, 입계한 대로 윤택함.

一. 예조(禮曹)에서 상고할 일. 대마도의 왜인이 무역 요구한 생모시베[生照布] 2필과, 흰모시베[白照布] 4필 중 대모(玳瑁)가 있는 것 2필을 호조(戶曹)에서 사들여 내려보내는 일로 계하(啓下)하였는데, 이른바 모시베[照布]는 시장에서 물종이 끊어진지 이미 오래이기로 시장 주민 등도 어떤 베가 조포인지 몰라서, 생세포(生細布) 2필과 세포(細布)⁹²⁾ 2필, 백세포(白細布)에 대모가 있는 것 2필 등 합 6필을 내려보내거니와, 조포는 본래 본도 소산으로 경주(慶州)에서 가장 많이 산출된다고 하니, 본도에서 찾아 본도에서 조포라고 하는 것이 그 베의 품질과 색깔과 모양이 호조에서 보낸 베보다 낫거든 수량대로 바꾸어 지급하고 해조(該曹)에서 내려보낸 베는 도로 올려 보낼 일. 경상감사 및 동래부사에게 아울러 이문함.

92) 세포(細布) : 곱게 짠 삼베.

갑진(1664) 7월 13일

一. 예조에서 상고할 일. 왜인이 무역하는 조포(照布) 대신으로 여러 가지의 베를 찾아보냈는데, 이것이 본디 조포가 아니라고 저 사람들이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본도에서 경주(慶州)의 생산품을 편의대로 찾아 지급하고, 해조에서 내려보낸 베는 도로 올려보내라는 일로 이문하였는데, 무릇 저 사람들의 예단(禮單) 중에 백저(白苧), 백면(白綿), 백목(白木)은 모두 35자를 정식(定式)으로 하여 지급하니, 이제 이 베도 역시 그 잣수 35에 준하여야 하나, 이 베를 무역할 지 안 할 지를 미리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시장 백성들의 값이 높고 중한 물건을 만약 이렇게 돌려보내는 일이라면 35자로 잘라서는 안되기 때문에, 거둔 대로 40여 자를 내려보내니, 본부에서 십분 상량하여 무역을 허락할 것이거든 35자로 잘라 지급하고 만약 무역을 허락하지 않거든 도로 올려보낼 것.

갑진(1664) 7월 22일

一. 동래부사 안진(安縝)이 7월 15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에 이르기를, “돌아가겠다고 고한 차왜(差倭)의 반종(伴從) 중 한 명을 감하여 6명을 접대할 계획이라 하였고, 옥대구(玉帶鉤)도 해조(該曹)에서 회관(回關)한 내용으로 장사꾼들에게 분부하여 사사로이 매매하게 함이 마땅하되, 본부의 경상(京商) 가운데는 이미 저축한 곳이 없다고 들었고, 설사 한 두 개 있는 곳이 있다 하더라도 왜관에 들어가게 허락한 뒤에 왜인 등이 만약 혹 말꼬리를 잡고서 장사꾼 등이 가진 물건을 귀국에서 왜 무역을 허락하지 않느냐고 한다면 어떻게 답할지, 이 역시 난처할 뿐 아니라, 역관이 전하는 말을 들으면 타일러 방색할 때 왜인 등이 말하기를, ‘옥대구는 당초 300개의 무역을 청하였다가 이제 이미 수량을 감하여 30개만 무역을 허락하였을 뿐 아니라, 도주가 예도에서 긴요하게 사용할 곳이 있어서 이런 무역 요구가 있었기로 결코 방색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섬에 알려왔다’고 하며 끝내 듣지 아니한다고 하는 바, 연소한 역관들이 이치를 들어 말을 하지 못한 데다가, 왜어(倭語)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서로 따질 적에 필시 궁색함이 많았던 소치이기로, 다시 가서 타일러 기어코 방색하라는 뜻으로 십분 엄하게 신칙하여 보내었거니와, 실제로 끝내 듣지 아니하면 또한 어떻게 하올지, 반복하여 생각하고는

어쩔 수 없이 황공스럽게 치게하오니, 청컨대 해조(該曹)에 명하여 다시 지휘하여 주시기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에, 옥대구는 전에 말하지 않던 물건이니 길을 열어주는 것은 불가하므로, 짐짓 장사꾼들로 하여금 사사로이 매매하게 하는 일로 계하하여 행회하였는데, 이제 동래부사 안진의 장계를 보니 본부의 경상(京商) 가운데 저축한 바가 있는 자가 없고, 도주가 예도에서 긴요하게 사용할 곳이 있다고 청탁하여 끝내 방색할 수 없다고 하였는바, 당초 300개라 말하였다가 이제 30개의 무역을 청하였으면, 저들 또한 우리나라에서 얻기 어려운 물건인 줄 알 것이나, 그 수량이 많지 않으니 해조에 명하여 시장의 백성 중 가진 곳마다 값을 주어 사들여 표피(豹皮)와 같이 일시에 내려보낸다 하여 이런 뜻으로 회이(回移)함이 어떠할지. 입계한 대로 윤택함.

一. **동래부사 안진이 7월 15일 성첩한 장계.** 지난 6월 24일 전 부사 이성징(李星徵)이 재임할 때 관수왜가 관백(關白) 등의 소청으로 말미암아 사향(麝香) 등 18종의 무역을 요구한 것을 방색하지 못하고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할 일이라고 치계하였는데, 그 중 적죽(笛竹) 10개는 본도에서 이미 밀양(密陽)과 청도(淸道) 등지에 분정하였기로, 밀양과 청도 양 관아와 각 도의 적죽이 본부에 내도하였거늘 즉시 들여주었더니, 관왜 등이 모두 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모조리 퇴송(退送)하고, 대마도에서 내어 보낸 겨냥의 적죽은 한 마디 사이가 포백척(布帛尺)으로 거의 한 자 남짓 되는데, 그 형체는 결코 우리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대나무가 아니므로, 역관 등이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타일러 방색한 뒤에, 신이 즉시 밀양 청도 두 읍으로 이문하여 찾아보내지 말라고 하였는데, 훈도 김시성(金時聖) 등이 와서 말하기를 “소인 등이 차왜(差倭)에게 반종(伴從)을 확정하는 일로 왜관에 들어갔더니, 관수왜의 말이 전일에 무역을 요청한 표피(豹皮) 20령은 예도의 여러 집정(執政)과 봉행(奉行) 등에게 사용할 것이니 모르지기 품질이 좋은 표피의 무역을 허락하여 달라 하거늘, 마음에 매우 놀라고 괴이하여 즉시 그 때 사정을 물었던 가훈도(暇訓導) 이상한(李尙漢)에게 와서 묻고, 인하여 이상한이 가지고 있는 관왜(館倭) 등이 써서 준 무역 요구 받기를 보았더니, 초피(貂皮) 30령 꼬리 있는 것 및 표피(豹皮) 20령이라고 각각 줄지어 썼거늘, 이상한이 잘못 보고 잘못 고하여 이렇게 치계하였는데, 상항의 표피 20령을 어찌하여 함께 무역

을 허락해 오지 않느냐고 관왜 등이 만약 혹시 재촉한다면 적당하게 할 말이 없기로 감히 이렇게 와서 고한다”고 하거늘, 신이 역시 극히 놀라 즉시 이상한을 불러 그 왜인이 써서 준 발기를 바치게 하였더니, 초(貂)자와 표피(豹)자의 초서(草書) 획이 같은 듯하나 초피(貂皮) 30령 꼬리 있는 것과 표피(豹皮) 20령은 각기 두 줄로 명백하게 썼을 뿐 아니라 두 줄 사이에 각종의 물건을 줄지어 썼기로 사이가 제법 멀어서 별로 뒤섞일 일이 없거늘, 이상한이 범연히 지나쳐 보고 살피지 못하여 그 두 줄에 쓴 수량을 혼동하여 초피 50령이라고 다른 의견을 내어서 잘못 고한 것이기로, 전례에 따라 치계하는데, 초피는 20령 수량을 더하였고, 표피 20령은 모두 누락되었는바, 이상한이 비록 무슨 사정을 가지고 고의로 범한 일은 아니나, 그 당초 상세하고 신중하지 못하여 깨닫지 못한 것은 극히 통탄스럽고 놀랍기로, 신이 먼저 엄한 말로 준절하게 책망하였고, 감히 이렇게 사유를 갖추어 치계하여 조정의 처분을 기다리거니와, 상항의 표피 20령은 당초에 이미 방색하지 못했으니 이제 와서 방색하는 것은 실로 어려울 뿐 아니라, 6월에 무역 요구한 물건도 아직 분부한 일이 없으니, 앞으로 무역을 허락하는 사이에 필시 재촉하여 궁색한 걱정을 면치 못할 것이니, 청컨대 해조에서 품의 조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제 동래부사 안진의 치계를 보니, 당초 대마도에서 무역을 청한 것은 꼬리 있는 초피 30령과 표피 20령이거늘, 가훈도 이상한이 왜인이 써준 발기 중에서 표피의 표자를 초자로 잘못 알고 초피 50령으로 부산첨사에게 고하여 그대로 동래부사에게 치통하여 장계로 알리게 되었다가, 이제 이미 달을 넘겨 초피를 내려보낸 뒤에 관수왜의 발설로 말미암아 비로소 표피 20령의 무역을 요구하였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바, 이상한이 상세히 살피지 못하여 일을 그르치는 죄를 짓게 되어 다스리지 않을 수 없으니 동래부에 명하여 중하게 죄를 다스리게 하며, 표피 20령은 해조에서 마련하기 쉬운 물건이고 또 그냥 주는 것이 아니니 수량대로 마련하여 급속히 내려보냄이 어떠할지. 입계한 대로 윤택함.

갑진(1664) 8월 초8일

동래부사 안진(安縝)이 8월 초2일 성첩한 장계. 본월 초1일 훈도 김시성 등의 수본 내용에, “어제 나온 배에 대마도의 봉행 등의 사서(私書) 가운데 도주의 무역 요구가 석

대성(石帶星) 작은 것 60개, 큰 것 5개는 겨냥이 나왔고, 황랍(黃蠟) 50근, 대모필(玳瑁筆) 50자루, 오죽필(烏竹筆) 100자루, 홍당죽필(紅唐竹筆) 100자루, 황모필(黃毛筆) 200자루, 각양 진묵(眞墨) 200홀, 도화지(圖畫紙) 50장, 홍청황(紅靑黃) 삼색지(三色紙) 중 마련되는 대로 50장인데, 이제 이번에 무역 요구한 물건은 도주가 쓸 곳이 십분 긴급하고 또한 얻기 어려운 물건도 아니니 속히 무역을 허락하여 달라고 운운하기에, 소인 등이 극구 방색하였으나, 왜인 등이 손을 짓고 머리를 흔들면서 듣지 아니하였고, 대관 등이 또 말하기를 ‘부용향은 반을 꺾어 내려보냈는데 300자루 전량을 무역 허락하라’고 운운하였다”고 하며, 역관 등이 친히 와서 고하기를, “소위 석대성(石帶星)은 우리나라 도서석(圖書石)으로, 겨냥대로 만드는 것이 합당하다고 대소 겨냥을 내어 보내기에 가져다 드리며, 대모필은 전주(全州) 소산의 화병(畫柄)이라 한다” 하는바, 도서(圖書) 겨냥은 본부에 놓아두고 본도 감사에게 낱낱이 보고하여 경주부(慶州府)에 있는 돌을 떼내어 와서 그 겨냥대로 만들어 줄 계획이며, 그 나머지 황랍과 각색 종이와 필묵 등의 물건은 해조에 명하여 마련하여 내려보낼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제 동래부사의 장계를 보니, 대마도에서 봉행 등이 도주가 긴급하게 쓸 곳이 있는 물건이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무역 요구를 하였는바, 도주가 섬으로 돌아온 뒤에 계속된 무역 요구가 이미 네 차례나 되었으니 일이 매우 지루한데다가, 청한 물건 가운데 석대성과 황랍(黃蠟), 각색 붓자루와 진묵(眞墨), 색지(色紙) 등의 물건은 모두 마련하기 어려운 물건은 아니나, 필묵 외는 모두 본도 소산이기에 수량 대로 무역을 허락하며, 부용향 또한 구하기 어려운 물건은 아니나 다면 향의 재료가 약재 같은 것과는 달라서 외의사(外醫司) 및 민간에서 다수를 보관해두는 것이 없으므로, 당초 구청할 때에 곳곳에서 모아들여 겨우 절반을 구하여 만들어 보냈고, 표피(豹皮)와 옥대(玉帶)도 이미 수량대로 내려보냈는데, 부용향은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 아니어서 끝까지 방색할 수 없으니 해조(該曹)에 명하여 조금 더 값을 주어 150자루를 더 조제하여 내려보내되, 무릇 대마도에서 요구하는 물건은 구하기 어렵거나 쉽거나 간에 장계로 알려져 조정의 조처를 기다림이 마땅하거늘, 동래부사 안진의 장계 가운데 석대성은 경주부에 있는 도서석(圖書石)⁹³⁾으로 그 겨냥에 의거하여 만들어 주고, 황랍과 지필묵 등의 물건은 해조에 명하여 마련하여 내려보내라고 하였는바,

93) 도서석(圖書石) : 문서에 찍는 도장을 새기는 돌.

변신(邊臣)으로서의 처신을 전혀 잘못하였으니, 짐짓 먼저 추고(推考)하되, 경상감사에 게 아울러 알리며, 무역 요구한 물종 중 석대성은 이미 경주에서 떠온다고 하였고, 그 나머지 황랍 50근과 도화지 50장, 홍청황 삼색 중 50장은 본도에 명하여 마련해 주고, 대모필 50개는 전라도에 명하여 서울로 올려보내게 하고, 오죽필(烏竹筆)과 홍당죽필(紅唐竹筆)과 황모필(黃毛筆)은 일시에 해조에 명하여 만들어 보내게 하며, 진묵 200 홀도 해조에 명하여 정밀하고 좋은 것을 마련하여 속히 내려보내게 함이 어떠할지. 입계한 대로 윤택함.

갑진(1664) 8월 12일

동래부사의 장계. 왜인이 무역 요구한 표피(豹皮) 20령을 가훈도 이상한이 초피(貂皮)로 잘못 적어 해조의 계하(啓下) 공사(公事)에 의거하여 이 달 초3일 가훈도 이상한을 잡아들여 곤장 50대를 친 연유의 일.

갑진(1664) 8월 24일

동래부사가 8월 17일 성첩한 장계. 이달 16일 왜선 5척이 나왔기에 즉시 훈도 김시성(金時聖) 등에게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언(回言) 내용에, “제1척(第一隻)은 갑진조(甲辰條) 만쇼오잉[萬松院] 송사(送使) 정관(正官) 등성정(藤成貞) 등이고, 제2척은 동수목선(水木船)⁹⁴으로 서계를 가지고 나왔는데, 동 서계는 다례(茶禮)하는 날 전례대로 바친다고 하였으며, 정관 등의 말이 ‘도주가 에도에서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소유지(小油紙) 300장, 극품의 진묵(眞墨) 200정, 색랍지(色蠟紙) 350장 중 청(靑) 황(黃) 적(赤) 백(白) 초록(草綠) 천황(淺黃) 도화(桃花) 등 7색을 각기 50장씩, 황옥석(黃玉石) 10개를길이 5-6촌, 너비 4촌, 두께 2-3촌으로, 살아있는 피꼬리 10마리 등의 물건을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라고 하였는데 속히 무역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거늘, 소인 등이 답하기를, ‘무릇 무역 요구가 한 두 번이 아닌데 그 중에서 살아있는 피꼬리

94) 수목선(水木船) : 정선(正船)이 올 때 물, 나무, 식량 등을 공급하기 위해 따라 오던 선박.

는 제 철이 아니어서 잡을 수가 없고, 황옥은 원래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어서 구할 길이 없으니 결코 고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였더니, 정관 등이 발끈 노하여 말하기를 '살아 있는 찔레는 과연 제철이 아니어서 잡기가 어려운 듯하거니와, 황옥석 및 진묵과 색지 등의 물건은 모두 귀국에서 산출되는 물건이다. 판사 등은 중간에서 막지 말고 이 겨냥을 가지고 속히 고하라'고 하며 동 겨냥을 내어 보여주거늘, 소인 등이 또 말하기를 '진묵과 색지(色紙)는 우리나라 물건인 듯하나, 황옥석은 일찍이 보지 못한 물건이다' 하고 여러 가지로 방색하였으나 끝내 듣지 않았거니와 다시 방색할 계획이며, 제3척은 계묘조 세전 제10선이고, 제4척은 제11선, 제5척은 제12선 등인데, 공작미를 실어가려고 노인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고, 관수왜(館守倭)의 말에 운운하며 또 말하기를 '도주가 사용할 유기(鑰器) 서너 종류의 겨냥이 또 나왔는데, 동 유기를 주조할 유장(鑰匠) 김용암(金龍岩)과 이성림(李成林) 등을 불러 왜관에 들여주면 상의하여 주조하겠다'고 하는바 수본(手本)한다' 하였음. 이전의 배는 아직 돌아가지 않고 뒤의 배가 잇달아 와서 접대하는 등의 일이 만분 걱정인데, 각종의 무역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져서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산출되지 않는 물건을 매양 와서 청하는 바 더욱 지루하거니와, 그 중 찔레는 등성정이 이미 제철이 아니어서 구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니 이미 방색한 듯하며, 황옥석은 신 역시 역관 등이 가져온 겨냥을 보니 옥인 듯 하나 옥이 아니고, 돌인 듯 하나 돌이 아니며 한 조각 안에 누렇고 검은 점이 낭자한데 투명하고 매끄러워 우리나라 물건이 아니기로, 다시 좋은 말로 기어코 반드시 방색하라는 뜻으로 역관 등에게 엄하게 신칙하여 보냈으며, 진묵은 겨냥의 먹이 부러질까 염려되어 왜관으로 되돌려 보냈고 그 장단과 후박은 나무를 깎아 모양을 만들어 해조(該曹)로 올려 보내거니와, 전면에는 전자(篆字) 음획(陰畫)으로 '유연작운(油然作雲)' 네 자를 바로 써서 주홍(朱紅)으로 메꾸 놓고, 그 아래에 또 전서(篆書) 음획으로 두 줄로 '기천신제(杞泉新製)' 녁 자를 썼는데, 녁자 위에 이금(泥金)을 입히고, 자획 사이에는 주홍으로 메꾸 놓았으며, 후면에는 용 형상을 그려서 또한 이금(泥金)을 입혀 놓았고, 등 위의 갈기는 주홍을 입혀 놓았으며, 황색과 홍색의 납지(蠟紙)는 황색과 홍색의 장지(壯紙)에다 황랍(黃蠟)을 입힌 것을 와서 보였으며, 유기장(鑰器匠)은 도내 진주(晉州)의 장인 이름을 거명하여 불러주기를 청하였기로, 전례대로 불러주는 일로 순영(巡營)에 보고하여 청하였다는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대마도에서 무역 요구한 물건이 매우 많아서 아직까지 마련하여 내려보내지 못했는데, 이제 또 긴급하게 사용한다고 이렇게 각종 물건의 무역을 요구하는 청을 하니 매양 따라 줄 수는 없겠으나, 그 중 소유지 300장, 진묵 200정, 색랍지 350장은 그다지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 아니어서 수량대로 무역을 허락하고, 묵정(墨丁)은 겨냥까지 보여주었으니 해조에 명하여 겨냥대로 새로 만들어 내려보내고, 유지 및 납지(蠟紙)는 본도에 명하여 마련해 주게 하며, 살아 있는 찌꼬리는 이미 제 철이 아니라고 방색하였다고 하며, 황옥도 우리나라에서 산출되는 물건이 아니라고 이미 이야기하였다니 역관으로 하여금 끝까지 방색하게 하며, 문위역관은 저들이 발언하기를 기다려 전례대로 들여보낸다는 뜻으로 전에 이미 계하하였으니 진작 다음달에 내려보내는 일로 해원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입계한 대로 윤택함.

갑진(1664) 9월 초5일

동래부사가 9월 초4일 성첩한 장계. 지난 8월 초2일 경주부에서 신에게 이문하여 조포(照布)의 색깔과 모양을 묻거늘, 신이 또 생조포(生照布)는 곧 생저포(生苧布)이고 백조포(白照布)는 곧 백저포(白苧布)인데, 이른바 대모(玳瑁)라는 것은 곧 저포를 바래면서[磨湍] 간간이 검은 점이 있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회답하였는데, 한 달이 다 가도록 구하여 보내지 아니하거늘, 신은 이게 필시 적합한 저포를 구하기가 어려운 소치리라 생각하고는, 한편으로 역관 등에게 신칙하여 관왜(館倭)에게 저포 철이 늦어서 구하기 어려우므로 해조에서 극세(極細) 마포(麻布)를 가려서 보냈다는 뜻으로 말을 만들어 들려주겠다고 이야기하게 하여, 역관 등이 신의 말대로 왜관에 가서 타일렀더니, 관왜 등이 받아들여려는 생각이 있는 듯하나 저들 가운데 논의가 일치하지 않아 즉시 시원하게 허락하지 않기로, 하루 이틀 그들이 받아들일겠다고 말하기를 바라면서 그로부터 지금까지 미루었는데, 이 달 초3일에야 동 해조에서 내려보낸 생세포(生細布) 2필과 백세포(白細布) 4필 중 대모가 있는 것 2필 도합 6필을 해조의 분부대로 각기 35자씩 자를 재어 재단하여 양쪽 끝에 각기 본부에서 받는 두 가지 대조 인을 찍어 왜인에게 병폐 없이 들려주었다고 역관 등이 수본(手本)을 바쳤기로, 혹 해조에서 다른 도에 저포를 분정하였기에, 일변으로 경주부에 분정한 조포를 마련해 보내지 말라는 뜻으로 경주

부에 이문하고 순영에 첩보하였으며, 연유를 치계하는 일. 이에 근거하여 이를 호조(戶曹)로 이문함.

갑진(1664) 9월 15일

동래부사가 9월 초9일 성첩한 장계. 이달 초8일 왜선 한 척에 두왜(頭倭) 1인이 나왔는데, 하는 말이 ‘도주가 간절하게 사용할 곳이 있어 상품 인삼 30근의 무역을 허락하라’고 하면서, ‘30근이 안되더라도 20근은 편의대로 무역하도록 요청하였다’고 하는 바, 비록 그냥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극히 지루할 뿐 아니라 역관 등이 끝까지 방색하지 못한 것은 더욱 부당하거니와, 이미 도주가 간절하게 쓰는 것이라고 칭하면서 수량을 감하여 무역을 청하였으니, 비록 역관들로 하여금 다시 타이르게 할지라도 그대로 들을 리가 없겠기로 청컨대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대마도의 왜인이 계속하여 무역을 요구하는 모양이 매우 미운데, 인삼은 이전부터 평소에 무역을 허락한 물건이라 이제 방색할 수 없으니 청하는 대로 20근을 해조에 명하여 마련하여 내려보내게 하여 문위역관(問慰譯官)이 들어갈 때에 맞추도록 함이 어떠할지. 입계한 대로 윤택함.

갑진(1664) 10월 28일

동래부사가 10월 23일에 성첩한 장계. 이달 21일에 왜의 작은 배 한 척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기에, 즉시 훈도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물어보게 하였더니 회언(回言) 내용에, “대관왜의 말이 ‘봉행 등의 사서(私書)로 예도의 집정 등이 구하는 털이 있는 곰 가죽 20령과 목방기(木防己) 3근의 무역을 요구하여 들여보내는 일’이라 하거늘, 소인 등이 답하기를 ‘전후의 무역 요구가 비록 그냥 주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빈번한 것은 매우 타당치 못하니, 결코 번거롭게 고하기가 어렵다’고 이치에 근거하여 방색하였더니, 대관 등이 답하기를 ‘이는 예도의 집정 등이 구하는 것이므로 도주도 부득이 무역을 요구하는 것이니 중간에서 방색하지 말고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속히 무역을 허락

해 달라'고 하였다” 하는데, 이제 이번 두왜 두 사람이 이를 위해 나왔다고 하는 털이 있는 곰 가죽 20령과 목방기 3근은 비록 종전에 무역을 허락한 물건이나 무역 요청이 빈번한 것은 극도로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역관 등이 좋은 말로 방색하지 못하였으니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할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면 도주가 집정 등이 구하는 목방기 3근과 털이 있는 곰 가죽 20령의 무역을 요구하였는바, 저 사람들이 무역을 요구하는 물건이 비록 공무목으로 절가 계감하여 환무하는 것이지만, 털이 있는 곰 가죽은 우리나라에서는 본디 희귀한 물건이라 그대로 그 청에 부응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니, 20령 중에서 10령을 해조에 명하여 속히 마련해 보내게 하고 그 값은 공목으로 전례대로 계감하게 하며, 목방기 3근은 그 수량이 많지 아니하고 또한 구하기 어려운 약재도 아니니, 본도에 명하여 편의대로 무역을 허락한다 할 일. 입계한 대로 윤허함.

갑진(1664) 12월 21일

동래부사가 12월 13일에 성첩한 장계. 왜선 한 척이 나왔기에 즉시 훈도 변승업(卞承業)⁹⁵⁾ 등에게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언(回言) 내용에, “비선(飛船) 한 척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사정을 탐문하니, 두왜(頭倭)의 말이 ‘요시자네송사(義眞送使)의 정관(正官)에게 도주를 모시고 가기 위해 이 달 내로 먼저 들어오라고 분부하는 일 및 세견제4선(歲遣第四船) 정관이 전일에 나올 때 서계(書契)를 잊고 놓아두었기에 가지고 나왔으며, 도주가 명년 2월 초순에 예도에 돌아가야 하기로 집정 등에게 사용할 잡물을 무역 요구하기 위해 나왔다고 발기를 내어 보여주거늘, 열어보니 옥대전(玉帶錢) 20개, 상저포(上苧布) 60필, 금선(錦綵) 10필, 문주(文紬) 30필, 호피(虎皮) 15령, 표피(豹皮) 10령, 모전(毛氈) 20립, 생마포(生麻布) 2필, 호도와 잣 각 20섬, 방백자(房栢子) 2000개, 녹두가루 500근, 살아 있는 두루미〔野鶴〕 2마리, 검은 색의 살아 있는 두루미 2마리, 호을골(虎乙骨) 30개, 소유지(小油紙) 200장, 대절묵(大節墨) 20홀,

95) 변승업(卞承業, 1623-?): 밀양 변씨로 자는 선행(善行)이며, 인조 을유(1645)의 역과에 합격하여 왜역에 종사하였으며 품계가 가의대부에 이르렀다.

황대구어(黃大口魚) 1,000마리, 대구어(大口魚) 1,000마리, 대문어(大文魚) 50마리, 마성(馬省) 200개, 미선(尾扇) 100자루, 대추 4섬, 양피(羊皮) 200령, 황필(黃筆) 200자루, 초피(貂皮) 100령, 털이 있는 곰 가죽 50령, 대모필(玳瑁筆) 200자루, 응령(鷹鈴) 20개, 응장구(鷹粧具) 녹각(鹿角)으로 조각한 것 15개이거늘, 소인 등이 관수 등이 모인 자리에서 타이르기를, ‘무역을 요구하는 물건이 한두 번도 아니고 물건의 수량이 이렇게 많아서는 부응하기 어려운 형편이고, 옥대(玉帶)와 대금선(大錦綵)과 문주(文紬)와 모전(毛氈)과 양피(羊皮) 등의 물건은 우리나라 산물이 아니어서 결코 무역을 허락하기 어렵다’고 말을 만들어 방색하니, 관수 등이 말하기를 ‘도주가 에도에 들어가면 여러 곳에 사용할 데가 너무 많아서 부득이 무역을 요구하는 것이지 사사로운 일이 아니거니와, 판사 등의 하는 말이 이러하나 호피와 표피는 왜관에서 편의대로 무역할 계획이니 동 호피와 표피, 대금선, 문주, 모전 등의 물건은 감하고, 그 밖의 물건은 오는 정월 내로 일일이 무역을 허락하라’는 뜻으로 간절히 이야기하였으며, ‘나전(螺鈿)으로 만들 물건이 또한 나왔는데 전일에 부리던 귀국의 나전장(螺鈿匠)을 이전의 인원 수대로 불러 달라’고 하는 일로 회언(回言)하였음. 전후로 무역 요구하는 잡물을 다 지급하기도 전에 또 내어 보내면서 도주가 에도에 들어가서 집정 등에게 사용할 것이라고 하며 이렇게 무역을 요구하는데, 물종의 수가 극히 번다하여 그 중에 호피 등 5종은 역관 등이 이미 방색하였거니와, 그 나머지 옥대전 등 25종은 끝내 방색하지 못했다고 하는바, 비록 그냥 주는 물건은 아니지만 결코 그대로 허락할 수 없겠기로 다시금 역관 등에게 명하여 타일러 수량을 감하라고 엄하게 신칙하였는데, 다음날 본부로 돌아가 수량을 감한 수본(手本)을 기다려서 다시 추가로 장계를 올릴 계획이니 청컨대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며, 옥대전(玉帶錢)은 전일에 무역을 요구할 때 해조에서 내려보냈으나, 신이 반복하여 생각건대 이는 우리나라 소산이 아닐 뿐 아니라, 한 번 무역을 허가한 뒤로 장래의 무궁한 폐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기로, 동 옥대전을 짐짓 역관의 처소에 놓아두고 들여주지 말라는 뜻으로 늘 엄하게 신칙하여 왜인 등이 다시 재촉할지의 여부를 살피도록 하였는데, 이번에 또 옥대전을 요구하였으니 1년에 두 번 요청하는 것이 더욱 극히 통탄스럽기에 역관 등을 엄하게 책망하여 기어코 방색하게 하였으며, 나전장은 전일에 불러주기를 청하였을 때 혹 본도 감사에게 보고하여 통영(統營)으로 이문하여 편의대로 불러 주었기에 또한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갑진조 세건 제4선(歲遣第四船)이 단목(丹木)을 진상하였는데, 명반(明攀) 등의 물건을 써서 보냄에 전례를 어김이 있으니 엄하게 신칙하여 한결같이 전례대로 시행하게 하며, 도주가 예도에서 쓸 것이라고 무역을 요구한 물건에 있어서는, 종전에 빈번하고 물종이 많았던 것이 이렇게까지 심한 적이 없었기에 굳이 일일이 부응해 줄 수 없으나, 이는 대마도에서 사용하는 것과 다른 점이 있어서 또한 일일이 방색하여 낙망하는 걱정이 있게 하여서는 안되겠지만, 무역을 요구한 물종이 30종이나 되고, 그 중에 호피 등 5종은 역관 등이 이미 방색하였거니와, 그 나머지 25종은 또한 장계대로 타일러 수량을 감한 뒤에 다시 장계로 알린 뒤 품의 조처하며, 옥대전은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고 전자에 해조에서 내려보낸 것도 또한 어렵게 사들인 것이어서 지금까지 본부에 놓아두고 있는 데는 그 의도가 있는 것인데, 이제 만약 한번 길을 열어준 뒤로 매양 이 물건을 구하면 결코 부응하기 어렵기에 엄하게 역관들을 신칙하여 기어코 방색하고, 부득이하다면 형편을 보아 들여주되 잘 말을 하여 후일에 다시 요구하는 걱정이 없게 함이 마땅하며, 털이 있는 곰 가죽도 얼마 전에 해조에서도 시장에서 품질되어 지방에 분정함을 면치 못하였는데, 이제 25종을 방색할 때 털이 있는 곰 가죽 50령은 결코 사들이기에 어렵다는 뜻으로 반복하여 타일러 기어코 전량을 감하였으며, 나전장은 편의대로 불러 주는 데 이미 전례가 있어서 이대로 시행함이 마땅하니 이렇게 회이함이 어떠할지. 강희 3년(1664) 12월 21일 입계한 대로 윤희함.

갑진(1664) 12월 25일

동래부사가 12월 16일 성첩한 장계. 동월 14일에 신이 동래부 임소(任所)로 돌아와서 즉시 역관 등에게 전령(傳令)하여 동 무역 요구한 잡물을 방색하고 수량을 감한 뒤에 수본(手本)하라고 엄한 말로 책망하였는데, 당일 바친 훈도 변승업(卞承業) 등의 수본 내에, “전령의 사언에 근거하여 여러 대관(代官) 등에게 타이르기를, ‘무역을 요구하는 청이 근래에 자심한데, 우리나라에서 산출되지 않는 물건은 부득이 조정에 장계로 품의하여 구하여 주기까지 하는데 매양 장계로 품의하기가 실로 황공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산출되는 물건도 혹 제철이 지나거나 혹 구하기 어려운 것이 있거늘, 이제 이번 무역 요구의 수량이 또 이렇게 많기로, 동래 영감께서 분부하기를 만약 수량을 감

하지 않는다면 결코 번거롭게 품의할 수 없다고 하는바, 일의 형편이 과연 지당하니 공 등은 만분 생각하여 수량을 감하라' 하고 여러가지 말로 책망하였더니, 대관 등이 말하기를 '이는 도주의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예도의 여러 곳에 사용할 것이므로 도주가 부득이하여 무역을 요구하는 것이고, 판사 등의 말이 혹 이치가 있는 듯하나 그 중에 각 종은 이미 감하거나 제외하였는데 또 어찌 감히 매양 감하고 제외하겠는가?' 하면서 머리를 흔들며 듣지 아니하거늘, 소인 등이 또 타이르기를, '동래 영감은 수량을 감하려고 하는 뜻이지 도주의 청을 따라 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대략 수량을 감하면 모조록 찾아줌으로써 번거롭게 품의하는 일을 없애자는 뜻이니, 다시 더 생각하여 고집하지 말라'고 하였더니, 대관 등이 서로 논의하여 상상저포(上上苧布) 60필 중 20필, 호도 20섬 중 5섬, 잣 20섬 중 5섬, 방백자(房栢子) 2,000개 중 500개, 녹두가루 500근 중 200근, 황대구(黃大口) 1,000마리 중 500마리, 대구 1,000마리 중 500마리, 양피(羊皮) 200령 중 100령, 털이 있는 곰 가죽 50령 중 20령, 호을골(虎乙骨) 30개 중 10개 등의 물건을 감하였으며, 대절묵(大節墨) 200개, 생모시(生苧布) 2필은 전량 감하였거늘, 소인 등이 또 말하기를 '수량을 감한 물건은 이러하거니와, 그 중 옥대전(玉帶錢)은 우리나라 소산이 아닌 사유를 공 등도 알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찌하여 감하지 않는가?' 하였더니, 대관 등이 말하기를 '이른바 옥대(玉帶)는 과연 전일에 구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대마도에 통지하였는데, 이 번에 대마도에서 보낸 서찰에 예도의 집정의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선에서 널리 구하여 모조록 찾아보내라고 하였으니 기어코 찾아 달라'고 하거늘, 구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다시 타일렀으나 간절하게 요구하여 마지아니하며, 또 말하기를 '도주가 수량을 정하여 무역을 요구하는 물건은 마음대로 감량하기 어려운데, 이는 도주 일행이 가지고 갈 물건이기 때문에 일의 형편이 급박할 뿐 아니라, 동래 영감의 말씀을 감히 어길 수 없어서 모조록 속히 무역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렇게 감하였으니, 이 뜻을 모름지기 속히 고하여 일일이 무역을 허락하여 달라' 하였다는 일로 수본한다" 하였음. 이제 이 무역 요구의 잡물 가운데 상상저포 등 10종은 혹 반감한 것이 있고 혹 3분의 2를 감한 것이 있으며, 대절묵과 생모시 등의 물건은 전량을 감하였는바, 당초에 비교한다면 다행인 듯하나, 초피 등 13종은 그래도 감량하지 않았는 바 그 수량이 아직도 많을 뿐 아니라, 도주가 예도로 가는 것이 명년 2월이라 반드시 그 전에 전량을 무역하여 달라고 간절하게 이야기한다 하는데, 어떻게 기일에 맞추어 마련하여 무역을 허락할 수 있을는지. 기한이 멀지 않아 극히 염려되는

데, 청컨대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시되, 옥대전(玉帶錢)은 이미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니 결단코 가벼이 무역을 허락하여 후일의 무궁한 폐단을 열어주어서는 안되겠기로, 전일에 해조에서 내려보낸 옥대구(玉帶鉤)도 짐짓 들여주지 않았으며, 이제 이 옥대전도 다시 역관에게 전령(傳令)하여 만분 다투어서 기어코 반드시 방색할 계획이며, 세견 제4선(歲遣第四船)의 별폭(別幅)을 다시 고쳐 써서 받아 올린 뒤에 인하여 다례(茶禮)를 행할 계획이라는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도주가 무역 요구한 30종의 물건 중 5종은 당초에 이미 전부 감하였고, 25종은 또 타일러 비록 몇 가지는 감하지 못하였지만 감량한 것 또한 많고, 대절목과 생모시는 전량 감하였다 하는바, 당초와 비교하면 다행인 듯한데, 호을골(虎乙骨)은 호골(虎骨)이나 호육(虎肉)과 비교되지 아니하고, 옆구리 아래 꼬리 사이에 형태가 을(乙)자와 같은 것이나, 만약 별도로 저장해 두지 않으면 갑자기 구하기 어려워 10개의 수량은 또한 그대로 부응하기 어려우니, 4개를 본도 및 강원도에 분정하여 곧바로 동래부로 보내게 하며, 황대구어(黃大口魚)는 이 전부터 서울 시장에서도 항상 희귀하다고 걱정하였으니 북도의 먼 곳에 분정하는 것이 불가하여 원 수량 1,000마리 중에서 이미 500마리를 감하였고, 또 본도에 명하여 200마리를 감하여, 대구어 중에 조금 큰 것을 전례대로 바꾸어 충당하여 주며, 초피(貂皮) 100령 또한 그대로 부응하기 어려워 해조에 명하여 50령을 사들여 내려보내게 하며, 꼬리 있는 곰 가죽은 구하기가 가장 어렵고 또 지방에 분정할 수 없어 기어코 전량을 방색하라는 일로 방금 이미 복계(覆啓)하여 행회(行會)하였는데, 다시 장계로 알려오기를 기다려서 다시 품의 조처함이 마땅하며, 5·6령을 해조에서 편의대로 사들여서 기다리되, 이런 각종의 물건은 도주가 예도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라 이전에 무역을 요구하던 것과는 다름이 있고 또한 그냥 주는 데 건줄 것이 아니어서, 일일이 방색하여 먼곳의 사람이 낙망하는 탄식을 하게 하는 것도 부당하니, 여러 가지의 물종을 전례대로 해조 및 각 도에 분부하여 정월 보름 전까지 마련하여 동래부로 곧바로 보내어, 도주가 2월에 예도에 갈 때에 맞추도록 할 일로 계목(啓目) 후록(後錄)을 하며, 이른바 옥대전(玉帶錢)은 곧 옥대구(玉帶鉤)인데, 장계대로 다시 역관들에게 명하여 잘 타일러 반드시 방색하고, 전일에 해조에서 내려보낸 것은 짐짓 들여주지 않는 것이 마땅하니, 이 뜻을 아울러 회이(回移)함이 어떠할지.

후 록

옥대전(玉帶錢) 20개, 대금선(大錦綰) 10필, 문주(文紬) 30필, 호피(虎皮) 15장, 표피(豹皮) 10장, 모전(毛氈) 20립, 생저포(生苧布) 2필, 대절묵(大節墨) 200홀. 이상은 방색하여 전부 감함. 상상저포(上上苧布) 60필 중 20필, 양피(羊皮) 200령 중 100령, 표피(豹皮) 100령 중 50령, 황모필(黃毛筆) 200자루, 대모필(玳瑁筆) 200자루. 이상은 해조에서 마련하여 내려 보냄. 털이 있는 곰 가죽 50령 중 5·6령은 짐짓 해조에 명하여 사들이게 함. 살아 있는 두루미(野鶴) 흑백으로 4마리 중 흰색의 살아 있는 두루미 1마리와 검은 색의 살아 있는 두루미 1마리는 충청도에서 마련하여 동래부로 곧바로 보냄. 흰색의 살아 있는 두루미 1마리와 검은 색의 살아 있는 두루미 1마리와 미선(尾扇) 100자루는 전라도에서 마련하여 동래부로 곧바로 보냄. 호두, 잣 각 20섬 중 각 5섬, 방백자(房栢子) 2,000개 중 500개, 녹두가루 500근 중 200근, 호을골(虎乙骨) 30개 중 2개, 소유지(小油紙) 200장, 황대구어(黃大口魚) 1,000마리 중 300마리, 대문어(大文魚) 50마리, 대구어(大口魚) 1,000마리 중 500마리, 마성(馬省) 200개, 대추 4섬, 응령(鷹鈴)⁹⁶⁾ 20개, 응단장구(鷹團粧具) 녹각(鹿角)으로 새겨 만든 것 15개. 이상은 본도에 마련함. 호을골(虎乙骨) 2개는 강원도에서 마련하여 곧바로 동래부로 보냄.

강희 3년(1664) 12월 25일 행도승지 신 박(朴)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96) 응령(鷹鈴) : 매의 꼬지 깃에 다는 방울.

● 집필위원

자료해제 : 김동철 (부산대 교수)

자료국역 : 정경주 (경성대 교수)

국역감수 : 이원균 (부경대 명예교수)

● 편집위원

위원장 : 이원균 (부경대 명예교수)

위 원 : 최해균 (항토사학자)

” : 강대민 (경성대 교수)

” : 김준섭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장)

” : 홍연진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실)

釜山史料叢書 12

國譯 倭人求請謄錄(Ⅱ)

2005년 5월 20일 인쇄

2005년 5월 30일 발행

발행처 : 부산광역시

편 집 :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실

인 쇄 : 부산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非賣品〉

【연락처】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부산광역시청 시사편찬실

TEL. 051)888-3468, FAX. 051)888-3469